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73-000081-11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2018. 7 ~ 2020. 6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2018. 7 ~ 2020. 6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전경

GYEONGGIDO ASSEMBLY
의회다운 의회

발간사

‘걸림돌’을 걷어내고 새로운 변화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제9대 의회까지는 4년간의 의정활동 전체를 모아 의정백서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의정백서를 발간합니다. 조금 덜 부담스럽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백서〉는 이름 그대로 회기별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 처리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활동, 국제교류, 의원연구단체, 정책토론대축제, 지역상담소, 청소년의회교실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현장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42석의 의석수, 여성의원 비율 22%를 기록하며 전국 광역의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과 유일 교섭단체 체제라는 초유의 환경에서 출발한 의회이기도 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선거 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집행기관 및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고교 무상급식 확대’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등 수많은 정책 공약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본 임무인 조례 제·개정 작업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2018년 7월 제329회 임시회부터 2020년 6월 제344회 정례회까지 총 16차례의 회기 동안 처리된 의안은 조례·규칙안 875건, 승인·동의안 196건, 결의·건의안 86건, 기타 125건 등 총 1,282건으로 9대 후반기 1,119건, 9대 전반기 1,0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빨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속히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2019년 8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 구성 등도 경기도의회 적극 대응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전반기의 슬로건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 존중'과 '소통 공감'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공약 프로젝트를 후반기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참여가 행복이 되는 기분 좋은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들이 도민의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도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걸림돌'을 걷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발간될 10대 후반기 의정백서는 그 디딤돌이 모인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장 현 국

축 사

‘공존의 씨앗’이 ‘더불어 숲’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일선 의원으로 돌아가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0대 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이 담겨서 뿌듯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공약 실현’을 통해 도민과의 신뢰를 쌓는 시간은 여느 때에 볼 수 없었던 방식이라 더욱 특별한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이 백서의 출발점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선택으로 거대 여당 구조가 됐습니다. 집행부인 경기도의 수장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교섭단체조차 꾸릴 수 없는 야당,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야당의 역할을 자처했고, 소수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만나는 자리마다 ‘서로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을 찾아가 재발 방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제10대 의회가 ‘사람중심 민생중심’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을 섬기며 함께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힘썼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 개의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의원 전체 공약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나하나 정책과 예산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고군분투하면서, 공약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진 보람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위상을 한껏 높인 자부심도 느낍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고자 애썼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자동폐기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더 분발해야 할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이밖에도 5·18망언이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 때는 지방의회가 연대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남다른 역사의식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대외 활동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역할을 일깨웠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백서는 말 그대로 의정활동 중심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는 또 다른 시각의 백서들이 나옵니다. 〈정책공약 백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백서〉, 〈교섭단체 대변인 백서〉 등 기록물이 풍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의 역사가 더욱 꼼꼼한 기록으로 후세에 전해져 든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즉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다소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반기에 뿌렸던 '공존의 씨앗'이 다함께 잘 사는 '더불어 숲'이 되기를 기원하며, 의정백서 발간에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송 한 준

경 기 도 의 회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축하연
2018. 7. 10(화)
경 기 도 의 회

경기도의회 이모저모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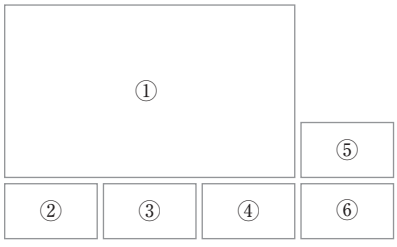

①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의원 선서(2018.7.10.)
②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의원 선서(2018.7.10.)
③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축하연(2018.7.10.)
④ 제62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2018.8.28.)
⑤ 전국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2018.10.22.)
⑥ 2019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2019.4.2.)

사랑중심 민생중심
2020 Red Cross people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20 Red Cross people

경기도의회 이모저모

나눔·봉사활동

①				⑤
②	③	④	⑥	

①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2019.11.29.)
②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2019.12.18.)
③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2019.12.4.)
④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사진전(2019.12.16.)
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 및 이천 농산물 구매행사(2020.2.17.)
⑥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2020.2.19.)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회 친선교류합의서 체결
The Signing Ceremony of MOU on the Establish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Gyeonggido Assembly and the Legislative Assembly of British Columbia
일시: 2019. 12. 5(목) 10:30
장소: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이모저모

국제교류활동

①				⑤
②	③	④	⑥	

①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노동조합 대표단 접견(2019.9.4.)
②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회 친선교류합의서 체결식(2019.12.5.)
③ 아시아 장애인 운동 활동가 연수단 방문(2018.12.5.)
④ 베트남 응헤안성 노동조합 대표단 방문(2019.10.21.)
⑤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장쑤성 방문(2020.1.6.)
⑥ 국제친선의원연맹 몽골 다르항올도 방문(2019.6.30.)

경기도의회 이모저모

정책연구활동

① 경기도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움 개회식(2018.11.1.)
②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토론회(2019.5.14.)
③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제1차 회의(2018.10.11.)
④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2018.9.14.)
⑤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2018.11.4.)

①		⑥	⑦
②	③	⑧	⑨
④	⑤	⑩	

⑥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움(2018.12.11.)
⑦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2020.3.24.)
⑧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 2차 회의(2020.1.22.)
⑨ 2020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방안(2020.5.28.)
⑩ 경기도의회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2019.8.6.)

경기도의회 이모저모

상임위원회 활동

①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청 건설 현장방문(2019.6.20.)
② 기획재정위원회, 연찬회(2019.8.20.)
③ 경제노동위원회, 여성능력개발본부 현장방문(2019.7.11.)
④ 안전행정위원회,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현장방문(2019.8.22.)
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도자재단 현장방문(2019.5.17.)
⑥ 농정해양위원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현장방문(2018.9.4.)

①	②	⑦	⑧
③	④	⑨	⑩
⑤	⑥	⑪	⑫

⑦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2019.11.15.)
⑧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현장방문(2019.6.19.)
⑨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2019.11.12.)
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현장방문(2019.4.2.)
⑪ 제1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2019.11.22.)
⑫ 교육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2019.11.12.)

국회는 꼼수없이 유치원 3법 즉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찬회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예산정책협의회
공정한 경기도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이모저모

교섭단체활동

①				⑤
②	③	④	⑥	

① 유치원 3법 성명서 발표(2019.11.26.)
②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찬회(2018.9.12.)
③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2019.11.8.)
④ 일본정부 경제침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보고대회(2019.8.26.)
⑤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2019.1.16.)
⑥ 비교섭단체 의원 연찬회(2019.12.16.)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총람

(2020년 6월 30일 기준)

수원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이필근 (李弼根/1965) Lee, Pilgeun	수원시 1 더불어민주당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년 장기교육(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 경기도시공사 20여년 근무(기획홍보처장 外) • 수원제일야학 중등부 사회교사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지역발전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원시(병) 조직특보 • 에콘힐자산관리㈜ 사장 • 수원시충청도민연합회 부회장 • 무료급식봉사단체 '사만사' 회장 •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박옥분 (朴玉分/1966) Park, Okbun	수원시 2 더불어민주당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공공정책)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사회복지)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 부원장 • 경기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 중앙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국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포용도시포럼 회장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이 필 근 (李弼根/1958) Lee, Pilgeun	수원시 3 더불어민주당 • 한경대학교 졸업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수원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문 • 수원시 권선구노인지회 자문위원 • 수원시 권선구청장, 일자리경제국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안전행정위원	
 황 대 호 (黃大虎/1986) Hwang, Daeho	수원시 4 더불어민주당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석사 졸업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수료 •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전) • 대통령직속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 •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문위원 •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위원 • 대한축구협회/대한체육회 강사 • 수원경실련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교육행정위원/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청년대책특별위원	
 김 봉 균 (金俸均/1968) Kim, Bongguyn	수원시 5 더불어민주당 • 수성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4학년 제적 •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 수원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지방정책 연구위원 • 더불어민주당 평창올림픽 비전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찾기 한민족 네트워크 사무총장 • 경기도 조정협회 부회장 •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황수영 (黃守永/1967) Hwang, Suyoung	수원시 6 더불어민주당 • 유신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도서학과 졸업 • 경기도당 청소년교육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재단이사 • 숙지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소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수원(병) 지역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장 • 국회의원 김영진 후원회 사무국장 • 화서 신협 홍보위원 • 화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숙지중학교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장현국 (張賢國/1963) Jang, Hyunkuk	수원시 7 더불어민주당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경영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수료 • 한국 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 수원시 정책자문위원, 당구연맹회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 경기도민 교통안전자문위원장 • (사)경기청소년희망센터 명예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 지회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건설교통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 / 후반기 의장	
 양철민 (楊澈敏/1979) Yang, Chulmin	수원시 8 더불어민주당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청년위원장 • 수원시 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수원시당구연맹 회장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제21대 원우회장 • 수원 생명의전화 이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김 직 란 (金直蘭/1971) Kim, Jikran	수원시 9 더불어민주당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 수원시(무) 여성위원장(전) • 제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전)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도의회 코로나19 감염병 비상대책단 위원 •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주민참여분과 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권선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윤리특별위원	
 김 강 식 (金康植/1973) Kim, Kangsik	수원시 10 더불어민주당 • (포항)대동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국유니마 이사 • 수원선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 혜 영 (安惠英/1972) An, Hyeyoung	수원시 11 더불어민주당 •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대학 석사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수료 • 서울대, 아주대, 강남대, 경찰대 시간강사/수원대학교 객원교수 • 국회의원 김진표 비서관 •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민사조정위원 및 홍보위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초대회장,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교육연수원 부원장, 청년정책연구소장 • 국회 청년미래특위 자문위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인재육성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청년공동본부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전반기 부의장/농정해양위원	

고 양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남 운 선 (南雲仙/1970) Nam, Ounsun	고양시 1 더불어민주당 • 동국대학교 수학과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역사학과 • 제17대 국회의원 유시민 정무특보 •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공보팀 • 제19대 대선 문재인후보 민주시민특보 • 월간 고양사람 발행인 • (주)영일에이치앤티 대표이사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방 재 율 (房在律/1950) Bang, Jaeyul	고양시 2 더불어민주당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역임(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부위원장 • 고양(갑)지역위원회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제10대 초선의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덕양갑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신 정 현 (辛定炫/1981) Shin, Junghyun	고양시 3 더불어민주당 • 가톨릭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경제학과 학사 졸업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정치통일 분야)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 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장 •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대표 • 사람도서관 리드미 대표 •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회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민 경 선 (閔敬善/1971) Min, Kyoungsun	고양시 4 더불어민주당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경제학과 졸업 • 최성 국회의원 보좌관(4급)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위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건설교통위 간사)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위 위원장/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장) • 국토부 주관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관계기관협의체 시민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원 용 희 (元龍喜/1967) Won, Yonghee	고양시 5 더불어민주당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 • 경실련 중앙위원 • 산업자원부 E-Biz인적자원협의체 운영위원 •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이사 • 고양시민회 자치정책 위원 • 저서 : 「생존불안시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김 경 희 (金京姬/1965) Kim, Kyunghee	고양시 6 더불어민주당 •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재학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 고양시의회 의원(제5대, 6대, 7대) • 고양사회창안센터 이사(전) • 고양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	
 소 영 환 (蘇泳煥/1963) So, Youngwhan	고양시 7 더불어민주당 •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행정컨설팅학과 •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최 승 원 (崔承源/1975) Choi, Seungwon	고양시 8 더불어민주당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 연세대 공학대학원 재학 • 고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 김근태재단 운영위원 • 유은혜 국회의원실 비서관(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전) • 김근태 국회의원실 비서(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윤리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고은정 (高恩貞/1970) Ko, Eunjung	고양시 9 더불어민주당 •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재학 중 • 제6, 7대 고양시의회 의원(제7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자문위원 •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	
 김달수 (金達洙/1967) Kim, Dalsu	고양시 10 더불어민주당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석사 졸업(NGO정책학) • 경기도 제4연정위원장 • 경희대학교 후나미타스 칼리지 강사 •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 도의원단 간사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감사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미디어홍보국장 • 제4대 고양시의회 의원 • 제8, 9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용인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지석환 (智錫煥/1976) Ji, Seokhwan	용인시 1 더불어민주당 • 신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광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당현대화특위 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엄교섭 (嚴敎燮/1966) Eom, Gyoseop	용인시 2 더불어민주당 • 태성중·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육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민주넷 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사무총장 • 경기도 학교개방설계 심의위원 •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 • 경기도 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전) •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윤리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진 용 복 (陳庸馥/1962) Jin, Yongbok	용인시 3 더불어민주당 • 수성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한국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강사 •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경기도 육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한국 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전반기 여가교위, 예결특위/후반기 도시위 간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후반기 부의장	
 남 종 섭 (南鍾燮/1966) Nam, Jongsuv	용인시 4 더불어민주당 •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방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위 간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농정해양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괄수석 부대표	
 김 용 찬 (金容讚/1965) Kim, Yongchan	용인시 5 더불어민주당 • 강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졸업 • 수지신용협동조합 이사 • 용인시 체육회 이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유 영 호 (劉榮鎬/1965) Yoo, Yeongho	용인시 6 더불어민주당 • 수원고등학교 졸업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용인포럼 수지구 위원장 •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 / 용인시 신일초등학교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 •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 위원 •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	
 김 중 식 (金重植/1961) Kim, Joongsik	용인시 7 더불어민주당 • 수원농생명과학고 졸업 • 수원과학대학교 기계과 졸업 • 제6, 7대 용인시의회 의원(7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위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수지라이온스클럽 이사 • 대지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8대 수지구 축구협회 회장 •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고 찬 석 (高燦錫/1960) Ko, Chanseok	용인시 8 더불어민주당 • 강남대학교 부동산법무행정대학원 법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 7대 용인시의회 의원(민주당 대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 • 용인시 도시분쟁위원회 위원(전) • 더불어민주당 용인(정)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최만식 (崔萬植/1970) Choi, Manshick	성남시 1 더불어민주당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제5, 6, 7대 성남시의회 의원(경제환경, 의회운영, 예산결산위원장) • 은수미 성남시장후보 대변인 • 성남시 상인연합회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박창순 (朴昌淳/1962) Park, Changsoon	성남시 2 더불어민주당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성남 수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 수정구 배드민턴연합회 자문위원 • 천주교수원교구성남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 자문위원 • 단국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부회장 • 성남시 호남향우회 상임위원 •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행정위 간사,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조 광 주 (趙光珠/1960) Cho, Kwangju	성남시 3 더불어민주당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사회적기업학 석사 • 친환경산업연구포럼 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결산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운영위원장 • 천주교 노동상담소 만남의집 간사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정무특보 •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위원장 •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단장 • 제8, 9대 경기도의회 의원(제8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제9대 경제과학기술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국 중 범 (鞠重範/1969) Kuk, Jungbum	성남시 4 더불어민주당 • 송림고등학교 졸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외협력국장, 홍보미디어국장 •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 • 김태년 국회의원 비서관, 수정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 • 이상락 국회의원 비서관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	
 임 채 철 (林采哲/1973) Lim, Chechul	성남시 5 더불어민주당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졸업 • 가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권 락 용 (權樂容/1982) Kwon, Rakyong	성남시 6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학교 공학박사(도시계획 전공)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원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 경기도의회 마이스(MICE) 포럼 회장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7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 제 영 (李濟永/1960) Lee, Jaeyoung	성남시 7 더불어민주당 •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의정리더십과정 1기 수료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장 •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장, 백현동장, 구미동장 • 제7대 성남시의회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 분당 장안초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	
 이 나 영 (李娜榮/1986) Lee, Nayeong	성남시 7 더불어민주당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MBA전공(재학중)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청년공동본부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0. 1. 15. 사직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최 세 명 (崔世明/1983) Cho, Semyoung	성남시 8 더불어민주당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법률지원 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청년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율석 수원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전) • 법무법인 서린 파트너 변호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교육행정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부 천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염 종 현 (廉宗鉉/1960) Yom, Jonghyun	부천시 1 더불어민주당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도시환경위 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회운영위원/농정해양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이 선 구 (李宣求/1958) Lee, Sungoo	부천시 2 더불어민주당 • 주산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 국제로타리 3690지구 새부천 R.C클럽 회장 역임 • 도당초등학교 / 부천 북여중 운영위원장 • 심곡초등학교 운영위원 • 부천시 충청향우회 총회장 역임 •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위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갑)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부천시장 선거대책위원장 • 부천시 체육회 사무처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황 진 희 (黃眞姬/1962) Hwang, Jinhee	부천시 3 더불어민주당 • 경남대학교 화학과 학사 • 성산효대학원 석사 • 부천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국제통상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임 성 환 (林成桓/1965) Lim, Sungwhan	부천시 4 더불어민주당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사)행동하는 양심 정책위원 • (사)부천, 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지부장 • 부천시체육회 이사 • 부천시 생활예술협의회 운영위원 • 중원중학교 운영위원 • 상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권 정 선 (權正善/1966) Kwon, Jungsun	부천시 5 더불어민주당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경기도 지속발전 가능협의회 위원 •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위원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자문위원 •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아동복지발달특보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보건복지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김 명 원 (金明源/1955) Kim, Myungwon	부천시 6 더불어민주당 • 목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졸업 • 민주화운동관련 투옥(특별사면 석방) • 부천소재 경원세기주식회사 입사(프레스공) 및 해고(야학연합회 사건) •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소장 •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천연합의장 • 새천년민주당 부천소사지구당 위원장 직무대행 • (국립)한국환경공단 감사 • (주)월드에너지 전무이사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특보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 진 연 (李晋延/1966) Lee, Jinyun	부천시 7 더불어민주당 •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 •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재정문화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윤리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최 갑 철 (崔甲鐵/1962) Choi, Gabchul	부천시 8 더불어민주당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목산업공학과 졸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토목공학 석사 졸업 •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오정지역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 • 부천시 도시정책포럼 간사 • 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오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장 • 부천시 오정동 주민자치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화 성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 인 순 (金仁順/1967) Kim, Insoon	화성시 1 더불어민주당 • 한세대학교 경찰법무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크리스토퍼 리더십 평생교육원 화성지부 고문 • (협동조합)독일 정치 경제 연구소 감사 • 서해선 향남 지하화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화성 문화원 이사 • 사랑한모금연합회 이사 •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 •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부회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오 진 택 (吳鎭澤/1958) Oh, Jintaek	화성시 2 더불어민주당 • 수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 대학원 고용서비스학과(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 화성시청 대외협력관(전) • 제20대 총선 김용 후보 선대위원장(전) • 제21대 총선 송옥주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경기도지회 공동대표(전) • 화성시 족구협회 자문위원,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고문 • 남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화성시 서부축구협회 자문위원(전) • 서수원 라이온스클럽 이사(전) • 화성시 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 시각장애인협회 후원회장 •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윤리특별위원	
 김 태 형 (金兌炯/1970) Kim, Taehyoung	화성시 3 더불어민주당 • 유신고등학교 졸업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국회의원 이원욱 사무국장 • 화성시체육회 자문위원 • 화성시읍면동봉사단자문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조직국 부국장 •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기획팀장 • 경기도당 총무국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	
 박 세 원 (朴世源/1971) Park, Sewon	화성시 4 더불어민주당 • 장안대학교 환경관리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동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동탄예당중학교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박윤영 (朴允泳/1959) Park, Yoonyoung	화성시 5 더불어민주당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 제2대, 3대 화성시 의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李殷周/1972) Lee, Eunju	화성시 6 더불어민주당 • 성신여자대학교 보건학과 졸업 • 전남과학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 경기도당 운영위원 • 전국 여성협의회 감사 • 중앙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보건복지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 산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송 한 준 (宋漢俊/1960) Song, Hanjun	안산시 1 더불어민주당 • 서강대학교 대학원 시민사회학 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 同 노동조합 위원장 • 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선대위 상근부위원장, 대선백서제작 위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경제투자위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교육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6대 회장(전반기, '18.8.16 ~'19.8.19)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전반기 의장	
 천 영 미 (千映美/1966) Chun, Youngmi	안산시 2 더불어민주당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부 졸업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 경기도보육정책포럼 부회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 대변인)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위원/윤리특별위원/건설교통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장동일 (張東一/1958) Chang, Dongil	안산시 3 더불어민주당 • 연세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도시행정 석사 졸업 • 안산민주평통 자문위원 • 경기도당 교육연수 수석부위원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부대표/민생대책특별위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기획재정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	
 정승현 (鄭承賢/1966) Jung, Seunghyun	안산시 4 더불어민주당 •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공, 행정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 •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제산업특보 • 제5, 6, 7대 안산시의회 의원(부의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대표, 기획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 제15, 16대 국회 비서관, 보좌관 • 안산 경실련 집행위원,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준모 (成峻模/1966) Seoung, Junmo	안산시 5 더불어민주당 •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수원대학교 객원교수(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단원(갑) 공동선거 본부장 • 제5, 6, 7대 안산시의회 의원(민주당 대표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제7대 전반기 의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강 태 형 (姜汰亨/1969) Kang, Taihyung	안산시 6 더불어민주당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 •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인권과노동특별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 •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민주넷 특별위원회 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	
 김 현 삼 (金鉉三/1965) Kim, Hyunsam	안산시 7 더불어민주당 •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중 • 경희사이버대학 NGO학과 졸업 • 민주노총 안산지구협 수석부의장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제종길 국회의원 보좌관(4급)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수석대변인/기획재정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운영위/농정위/경제위/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 미 정 (元美貞/1972) Won, Mijung	안산시 8 더불어민주당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안산YWCA 이사/ 안산의정지킴이 회장 •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경기도당 학부모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경기·인천 권역대표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정보화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미리 (金美利/1964) Kim, Miri	남양주시 1 더불어민주당 • 숭의여자대학교 도서관과 졸업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전) • 사단법인 한학사 이사장 • 비영리민간단체 한국학교 사서 협회 회장 • 남양주교육포럼 자문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나무늘보 작은도서관 관장 • 호평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답내 초등학교 사서(휴직중)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정보화위원/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부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경희 (文暻姬/1965) Moon, Kyeonghee	남양주시 2 더불어민주당 •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육군 여군학사장교 중위 전역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중앙위원(전) • 경기도당 디지털소통위원장(전) • 경기복지거버넌스 공동대표(전) • 경기도 교육재정 강화 특위 위원장(전) • 화도교복은행 추진위원장(전), 마석고 혁신고 추진위원장(전) • 의원연구단체「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회장(전)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위 간사)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간행물편찬위원장/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후반기 부의장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윤용수 (尹湧洙/1964) Yun, Yongsu	남양주시 3 더불어민주당 • 국립철도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법학과 • 철도청 근무(현 철도공사) • 남양주시YMCA이사 • 강북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	
 박성훈 (朴聖薰/1976) Park, Sunghoon	남양주시 4 더불어민주당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비서관(2급 상당)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수소산업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너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창균 (李昌均/1961) Lee, Changkyun	남양주시 5 더불어민주당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 새천년민주당 경기도당 이공계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통합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남양주소방서 도농의용(여성)소방대 고문 • 동화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장 • 양정초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장 • 남양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자문위원 • 제6, 7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도시환경위원/윤리특별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경근 (金慶根/1954) Kim, Kyungkeun	남양주시 6 더불어민주당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휴학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장(직)(전)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수석부위원장(전) • 남양주시 예산연구위원(전) • 의정부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전) • 양정동 복지넷 위원장(전) • 남양주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	

안양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성수 (金成洙/1966) Kim, Sungsoo	안양시 1 더불어민주당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한국전략 특보 •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안양시협의회 자문위원 • 안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명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 경기중부노사모 제9대 대표일꾼 • 제6대, 7대 안양시의회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 더불어민주당 부대표의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 종 찬 (金鍾讚/1960) Kim, Jongchan	안양시 2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평생교육사)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만안초등학교 운영위원 • 안양관악라이온스 제26대 회장 • 국회의원 이종걸 보좌관 • 안양시 호남향우회 상임부회장 • 제11대 안양시학원연합회장 • 박달중학교 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유쾌한공동체 이사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평화경제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	
 문 형 근 (文炯根/1962) Mun, Hyungkun	안양시 3 더불어민주당 • 운봉공업고등학교 졸업 • 동서울대학교 졸업 • 국제로타리 경안로타리클럽 회장 • 안양시 광고협회 회장 • 안양시 광고물관리 및 심의위원 • 만안경찰서 교통심의 위원 •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위원 •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비산동협의회 협의회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	
 심 규 순 (沈揆順/1958) Shim, Kyusoon	안양시 4 더불어민주당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경관위원회/환경정책위원회/화학물질관리위원회/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안양시의회 제5, 7대 의원(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안양시 민주평통 자문위원/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안양시 재안양 충청향우회 부회장 • 관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나눔봉사단 단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기획수석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조 광 희 (趙光熙/1965) Cho, Kwanghi	안양시 5 더불어민주당 • 안양초, 안양중, 안양신성고 졸업 • 경희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총동문회 회장 • 안양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전) • 경기도 교통장애인협회 고문 • 안양과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 경기지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 혁신교육위원회 위원장(전) • 경기도의회 복지포럼 회장(전)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 부대표/연정실행위원회 위원/친환경 농축산물 및 혁신학교위원회위원장/교육위원/경기도 미래신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특위 간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국 중 현 (鞠重鉉/1966) Gook, Junghyun	안양시 6 더불어민주당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과 졸업 • 연성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하늘복지재단 초대이사장 • 대한건축사협회 안양동안지역회장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경기남서지역 본부 공동의장 • 안양시 나눔봉사연대 대표 • 호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안양지역건축사회 대외정책단장 • 국내외전국호남향우회 부회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안전행정위원	

평 택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양 경 석 (梁慶錫/1967) Yang, Kyungsuk	평택시 1 더불어민주당 • 국제대학교 정보통신IT학과 졸업 • 평택대학교 물류정보대학원 부동산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제5, 6, 7대 평택시의회 의원(제7대 전반기 부의장) • 국제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 위원 • 이충고등학교 운영위원 •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민주평통 평택시 협의회 자문위원 • 송탄라이온스 봉사분과 위원장 • 송탄소방서 진위 의용소방 대원 • 적십자 송탄 봉사회 봉사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김 재 균 (金載鈞/1962) Kim, Chaegyun	평택시 2 더불어민주당 • 국제대학교 졸업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 부락복지관 운영위원 • 평택갑 운영위원장 권한대행(전) • 제4, 5, 6, 7대 평택시의회 의원(전) • 평택시 북부복지관 운영위원장(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 영 해 (金榮海/1972) Kim, Younghae	평택시 3 더불어민주당 • 건국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 장애인보호자협동조합 '오름' 이사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 •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 •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윤리특별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오 명 근 (吳明根/1953) Oh, Myeongkeun	평택시 4 더불어민주당 • 국제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 평택대학교 총동문회장 • 상록산업 장학회장 • 제6, 7대 평택시의회 의원 • 한광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효덕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평택시 새마을회 감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	
 서 현 옥 (徐賢玉/1968) Seo, hyeonok	평택시 5 더불어민주당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 • 제7대 평택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지역 사무국장 • 바르게살기 평택시협의회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	

시흥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안 광 률 (安光律/1971) An, Kwangruyl	시흥시 1 더불어민주당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업경영학 학사 •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전공중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권익보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민주넷특별위원회 위원 • 시흥시축구협회 상임이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장 대 석 (張大錫/1972) Jang, Daeseok	시흥시 2 더불어민주당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백원우 국회의원 비서관(전) •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시흥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종배 (金鍾培/1960) Kim, Jongbae	시흥시 3 더불어민주당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졸업 • 시흥도시재생포럼 대표 • 하나의료생협 장학회 운영위원장 • 군자중학교 운영위원장 • 월곶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군자동 어머니 방범대 자문위원 • 시흥시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회장(전) • 도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시흥녹색포럼 대표(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이동현 (李東炫/1977) Lee, Tonghyon	시흥시 4 더불어민주당 • 호서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조정식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 국토정책전문보좌역 • 경기도 인수위 농정·건설분과 간사위원(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안전행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파 주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조 성 환 (曺晟桓/1971) Cho, Seonghwan	파주시 1 더불어민주당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졸업 •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파주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 한빛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가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성모병원 원무팀장 • 국민참여당 파주시 지역위원장 • 열린우리당 파주시 중앙대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	
 손 희 정 (孫希禎/1967) Son, Heejeong	파주시 2 더불어민주당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파주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직업전문학교 및 여성인력 개발센터 강사 • 한국은행 근무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의회운영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김 경 일 (金京一/1966) Kim, Kyungil	파주시 3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신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파주(을) 선거연락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지방자치 위원장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이 진 (李鎭/1956) Lee, Jin	파주시 4 더불어민주당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본부장(전) • 파주시 중등교장 협의회 회장(전) • 파주초등학교 총동문회 13대 회장(전) • 탄현/금릉중학교 교감(전) • 연천 백학중학교, 파주 두일중학교 교장(전) • 파주시 문산읍 체육회 부회장(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최경자 (崔庚子/1960) Choi, Kyungja	의정부시 1 더불어민주당 •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제5, 6, 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제7대 의장) (전) • 새꿈어린이집 시설장(전) • 신한대학교 사회복지과 외래강사(전) •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외래강사(전) • 다온중학교 운영위원장(舊 의정부서중학교) (전) • 광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	
 이영봉 (李榮琫/1968) Lee, Youngbong	의정부시 2 더불어민주당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 의정부시 체육회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부위원장 • 호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복지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권 재 형 (權宰亨/1963) Kwon, Cheahyung	의정부시 3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원(특수)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전) • 의정부 신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전) • 의정부시 컬링연맹회장(전) •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전) •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자문위원장(전) •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	
 김 원 기 (金元基/1962) Kim, Wonki	의정부시 4 더불어민주당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 졸업 •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 • 의정부시 초대 평생교육비전센터장 • 한국능력교육개발원 연구교수 •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강사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안전행정위원/간행물편찬위원장/정보화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전반기 부의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김 포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심 민 자 (沈鐄子/1961) Shim, Minja	김포시 1 더불어민주당 •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씨티21 편집부국장 • 김포경실련 사무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대행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노무현재단 회원 • 나눔문화 회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	
 채 신 덕 (蔡信德/1964) Chai, Sinduk	김포시 2 더불어민주당 • 서강대학교 수학과 졸업 • 민주평통 자문위원 • 김포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김포중, 제일고, 제일공고 총동문회 부회장 • 김포 더불어포럼 대표 • 김포시 체육회 사무국장 • 김포 경실련 집행위원장 •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 선대부본부장 •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거대책위 공명선거실천단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 철 환 (金喆煥/1982) Kim, Chulhwan	김포시 3 더불어민주당 • 한국농수산대학 축산학과 졸업 • 수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경기도 4-H연합회 회장 • 한국 4-H중앙연합회장 • 경기도 4-H후원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중앙상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	
 이 기 형 (李奇衡/1971) Lee, Keehyoung	김포시 4 더불어민주당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 김포시민원조정관 •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고문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광 주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안 기 권 (安基權/1973) An, Gekwon	광주시 1 더불어민주당 • 상지영서대학교 관광비즈니스중국어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광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지역공동체 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광주시 식생활교육협회 이사/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 비영리민간단체 경기광주교육포럼 운영위원 • 탄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박 관 열 (朴灌烈/1957) Park, Gwanyeol	광주시 2 더불어민주당 •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졸업(정치학석사) • 인덕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및 위원장 •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광주시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경기광주(갑) 연락소장 • 경기도광주시호남향우회 연합회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부위원장/정책위부의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이 명 동 (李明東/1965) Lee, Myungdong	광주시 3 더불어민주당 • 동지상업고등학교 졸업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광주시지부)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지역부위원장 • (사)곰두리봉사회 (경기도지회) 상임이사 • 착한친환경협동조합 부이사장 • 임종성 국회의원 보좌관 • 행복한협동조합 이사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윤리특별위원	
 박 덕 동 (朴德東/1960) Park, Duckdong	광주시 4 더불어민주당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희망제작소 목민관 학교동문회 사무총장 •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중앙회 이사 •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 국가정책자문단 중앙위원 • 경기광주(을)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광 명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김 영 준 (金榮俊/1967) Kim, Yeongjun	광명시 1 더불어민주당 • 대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ROTC 장교 임관 군복무 9년 • 삼부통상 & 삼부종건 대표 •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무국장 • 백재현 국회의원 보좌관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정 대 운 (鄭大雲/1966) Jeong, Daewoon	광명시 2 더불어민주당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 및 혁신학교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위원장 • 경기아이누리놀이터협의회 위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후반기 정보화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여성가족교육협력위 간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오광덕 (吳광덕/1965) Oh, Gwangduk	광명시 3 더불어민주당 • 목포 영흥고등학교 졸업 • 광명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민선3, 5, 6기) • 광명시 호남향우연합회 사무총장 • 광명시 지역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광명시 체육회 이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유근식 (兪斤植/1955) Yoo, Kuensik	광명시 4 더불어민주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광명경찰서 시민경찰 회장 • 현대건설 영광원자력 근무 • 우신중기 대표 • 희망건축 희망직업소개소 대표 • 안서중학교 운영위원장 • 바르게살기 광명시협의회 소하2동 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군포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정윤경 (丁允京/1967) Jung, Yoonkyung	군포시 1 더불어민주당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지방자치 전공) • 금정중학교 운영위원장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위원 • 군포문화원 이사 • 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사무총장 • 경기도의회 정치연설연구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국장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가지도자과정 주임교수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후반기 문체위 간사,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정희시 (鄭禧時/1962) Jung, Heesi	군포시 2 더불어민주당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국 피츠버그대학 전략마케팅과정(단기) • 삼성물산, 루이지보토(HK)리미티드 한국지사장 •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 경기도 공공의료발전 TF위원장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위원 •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의원 •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김 미 숙 (金美淑/1964) Kim, Misook	군포시 3 더불어민주당 •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재학(석사과정) • 군포시 약사회 회장 •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군포시을지역위원회 부위원장(전) •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전) •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전) •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 군포시 광정로 대림약국 경영 •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위원 • 경기도교육청 꿈의대학 운영 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지역위원회 학교발전위원장 • 대통령직속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 판 수 (金判洙/1957) Kim, Pansoo	군포시 4 더불어민주당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군포을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제4, 5, 6대 군포시의회 의원(제6대 후반기 의장) •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하 남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김 진 일 (金辰鎰/1976) Kim, Jinil	하남시 1 더불어민주당 • 서일대학교 부동산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 분과위원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윤리특별위원/청년대책특별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추 민 규 (秋敃圭/1972) Choo, Mingyou	하남시 2 더불어민주당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 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2기 지방의정리더십 과정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전) • 문재인 대통령후보 하남시 선거대책본부장(전)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 한국청년회의소(JCI) 이사(전) • EBS교육방송 강사(전) •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강사(전)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 경기도의회 정치토론연구회 회장(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	

오산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송영만 (宋永萬/1957) Song, Youngman	오산시 1 더불어민주당 • 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졸업 • 성호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오산시 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의장 • 더불어민주당 오산시협의회 수석부위원장 • 오산 중앙로타리클럽 회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오산시협의회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간행물편찬위원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장/보건복지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경제노동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조재훈 (曺在薰/1967) Jo, Jaehoon	오산시 2 더불어민주당 • (수원)유신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오산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오산시 탁구협회, 연합회 회장 •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 경기도 FTA대책위원회 위원(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전)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 부위원장(전)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농정해양위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윤리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 부대표/교육위원/정보화위원회 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양 주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박 태 희 (朴泰熙/1974) Park, Taehee	양주시 1 더불어민주당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 석사 • 정성호 국회의원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 옥정중학교 운영위원장 • 경기도의회 경기도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박 재 만 (朴在萬/1963) Park, Jaeman	양주시 2 더불어민주당 • 경희대학교 졸업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졸업 •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 • 양주청년회의소(JCI) 회장 •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양주 덕계중학교 운영위원장 • 양주 민주연대 공동대표 • 양주시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주시 축구협회 회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도시환경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천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성수석 (成洙釋/1970) Seong, Susuk	이천시 1 더불어민주당 • 이천고등학교 졸업 • 장안전문대학교 졸업(現 장안대학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이천시체육회 이사(이천시택견회장) • 대한적십자사 이천 구만리봉사회원 • 경기도무형문화재50호 이천거북놀이 이수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영 (金仁榮/1958) Kim, Inyoung	이천시 2 더불어민주당 • 이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원대학교 졸업 •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부발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이천시 특공무술 자문위원 • 제5대 이천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부발체육회 자문위원 • 부발발전협의회 회장(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구리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故 **서형열** (徐亨烈/1956~2020) Shu, Hyungryur	구리시 1 더불어민주당 •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독도지킴이(전 가족 본적 독도)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안전행정위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윤리특별위원/건설교통위원/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건설교통위원 • 2020. 6. 7. 별세	
 임창열 (任昌烈/1961) Im, Changyeol	구리시 2 더불어민주당 •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舊 안동농림고등학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8대, 9대 구리시지회장 • 구리시 체육회 이사 • 구리시 시정자문위원 •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 제2대, 3대 회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구리, 하남, 양평, 가평) • 윤호중 국회의원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구리시 배드민턴협회 자문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성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양운석 (梁雲錫/1961) Yang, Unseonk	안성시 1 더불어민주당 •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1년 제적 • 새천년민주당 안성지구당 사무국장 • 김선미 국회의원 보좌관 •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안성시 총괄본부장 • 국제키와니스 안성시지회 회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백승기 (白承基/1962) Bak, Seungki	안성시 2 더불어민주당 • 죽산상업고등학교 • 안성시 체육회 이사 • 안성청년회의소 감사 • 죽산면 체육회장 • 안성신용협동조합 감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포천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우석 (金禹錫/1974) Kim, Woosuk	포천시 1 더불어민주당 •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시스템경영공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졸업 • 포천사랑시민연대 사무국장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부회장 • 국회 비서관 •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존' 공동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	
 이원웅 (李元雄/1970) Lee, Wonoung	포천시 2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환경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의 왕 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박 근 철 (朴根哲/1967) Bark, Keunchoul	의왕시 1 더불어민주당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 경희대 대학원 석사 졸업 • 강원대학교 학사 졸업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 • 의왕시 유소년 축구단 단장 • 경기도 학원연합회 자문위원 • 의왕시 태권도연합회 회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경제위 간사, 복지위 간사, 안전사회건설특위 간사, 의회운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간행물편찬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 태 환 (張台煥/1961) Jang, Taewhan	의왕시 2 더불어민주당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안양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 역임 • 의왕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대의원 •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 의왕시지회 회장 • 제19대 대선 의왕시 공동선대위원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후반기 민주당 수석부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교육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	

양평군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이영주 (李榮柱/1970) Lee, Youngjoo	**양평군 1 무소속**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언론학 박사) • 한국입법학연구소 연구위원 •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 • 〈전환과 미래〉 연구소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민주연구소 정책위원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 YTN 시청자위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	
 이종인 (李鍾仁/1969) Lee, Jongin	**양평군 2 더불어민주당** •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 • 민주연합청년회(연청) 양평군 부회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의정리더십과정(A.I.C) 2기 사무총장 • 양평군 체육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양평군 협의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여주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유광국 (柳光國/1957) Ryu, Kwangkook	여주시 1 더불어민주당 • 여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육군병장 만기전역 • 여주시 공무원 37년 근무(여주시 산북면장, 농정과장, 영흥동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농정해양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김규창 (金奎昌/1955) Kim, Kyuchang	여주시 2 미래통합당 • 대신고등학교 졸업 • 대신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 • 제5대 여주군의회 부의장(전·후반기) • 제6대 여주군의회 의장(전·후반기) • 제1대 여주시의회 의장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도시환경위 간사/윤리특별위원/건설교통위원/새누리당 부대표) • 여주축산협회 감사(전) • 동북권의장단 협의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동두천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유광혁 (兪昢爀/1974) Yu, Gwanghyeok	동두천시 1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 사무국장 • 동두천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	
 김동철 (金東哲/1965) Kim, Dongchul	동두천시 2 더불어민주당 • 동두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신문사 제2사회부 취재부 기자 • 제7대 동두천시의회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안전행정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가평군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경호 (金慶浩/1964) Kim, Kyungho	가평군 더불어민주당 •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 석사 • 강원대학교 사회학 박사 수료 •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가평군국회의원선거구이전분할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팔당7개시군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처장 • 조종면사회복지협의체 위원 • 청평면주민자치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기획재정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배수문 (裵秀紋/1965) Bae, Soomoon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 • 과천중학교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지방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기획재정위 간사/보건복지위원/민주당 부대표)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기획재정위원장/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환경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연천군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유상호 (柳相虎/1965) Yoo, Sangho	연천군 더불어민주당 •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졸업 • 민주당 대의원 • 제5대 연천군의회 의원(열린우리당) • 제6대 연천군의회 의원(새천년민주당) • 연천의용소방대 부대장/연천자율방범대 대장(전) • 연천청년회의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장애인휠체어펜싱연맹 이사(전)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건설교통위원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용성 (金龍成/1968) Kim, Yongsung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원(2급상당)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백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 위원장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사무총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	
 김은주 (金誾株/1972) Kim, Eunjoo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상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 수료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위기관리전공 박사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 • 한국노인상담연구소 소장 /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수원시 예산재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수원여성의전화 고문 • 수원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행동지원 자문위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김 장 일 (金章鎰/1959) Kim, Jangil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수원노총 장학회 이사장 •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노동자측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	
 오 지 혜 (吳智惠/1985) Oh, Jihye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이학박사 • 국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연구교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장	
 왕 성 옥 (王成玉/1964) Wang, Sungok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고양시의회 의원 •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 •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팀장 • (주)Teen-Zone 팀장 • 여세연 경기지부 대표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위원 • 인천경실련 대중매체연구회 교육팀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전승희 (全承姬/1964) Cheon, Seunghee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순천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 순천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수료 • 경기호남향우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친화마을 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의회운영위원	
 최종현 (崔鐘賢/1965) Choi, Jonghyun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명지대학원 지방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위원 • (사)청소년선도위원회 수원시지부 지부장 • (사)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장애인위원회 위원장 •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애형 (李愛炯/1962) Lee, Aehyung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 숙명여자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본부장 •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 홈케어생명약국 대표약사 •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전문강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보건복지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성명/출생연도	주요약력	비고
 한미림 (韓美林/1961) Han, Mirim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이학박사)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미용사네트워킹위원회 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허원 (許元/1960) Heo, Won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노동행정학 석사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전)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전) •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 의장(전) • 경기도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전) • 경기도 인적자원위원회 공동대표(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	
 송치용 (宋致龍/1964) Song, Chiyong	비례대표 정의당 • (천안)북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 보람동물병원 원장 • 제이비동물약품(주) 대표이사(전)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방역협의회 위원(전) •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명/출생연도	주 요 약 력	비 고
 이 혜 원 (李惠苑/1965) Lee, Hyewon	비례대표 정의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졸업 •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 위원장 •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갑을프라스틱지회 지회장 • 광주 대하전자공업사 노동조합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기획재정위원/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	
 김 지 나 (金지나/1983) Kim, Jina	비례대표 민생당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수료 • 안산시청 노사전문위원 • 갈등관리사(1급)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대유 안산지사 대표노무사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제노동위원/윤리특별위원/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일러두기

1. 본 의정백서는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활동내용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18년 7월 1일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시작(제329회 임시회)부터 2020년 6월 30일 전반기 마지막(제344회 정례회)까지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했다.

2. 본 의정백서는 제1편 기본편, 제2편 의정편, 제3편 자료편으로 구성했으며, 기본편은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총평 및 기본현황을 수록하고, 의정편은 회기별로 구분해 의정활동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자료편은 종류별로 5개의 장으로 나눠 구성했다.

3. 의정편의 제1절 개관에는 회기의 집회 경위와 의사일정, 본회의 운영상황, 개회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수록했다.

4. 의정편의 제2절 주요 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청원, 예산·결산안, 선서·선임, 보고·청취, 기타 안건 등으로 분류해 제안일자, 제안자,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결과를 수록했다.

5. 자료편은 1장 원구성 현황, 2장 집회와 회기, 3장 안건처리 현황, 4장 의정활동, 5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근거 법규 및 연혁을 수록했다.

6. 그 밖에 화보를 통해 주요 의정 관련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현장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목 차 | CONTENTS

■ 발간사 ····· 4
■ 축사 ····· 6
■ 화보 ····· 8
■ 10대의원 총람 ····· 20
■ 일러두기 ····· 83

제1편 기본편

제1장 10대 전반기 의회를 돌아보며 ····· 93
제1절 총평 ····· 95
제2절 숫자로 보는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 98

제2장 경기도의회 현황 ····· 105
제1절 일반현황 ····· 107
1. 지방의회 연혁 ····· 107
2. 초대 경기도의회(전국2대) ····· 107
3. 제2대 경기도의회(전국3대) ····· 107
4. 제3대 경기도의회(전국4대) ····· 108
5. 제4대 경기도의회(전국5대) ····· 108
6. 제5대 경기도의회(전국6대) ····· 109
7. 제6대 경기도의회(전국7대) ····· 109
8. 제7대 경기도의회(전국8대) ····· 110
9. 제8대 경기도의회(전국9대) ····· 110
10. 제9대 경기도의회(전국10대) ····· 110
11. 제10대 경기도의회(전국11대) ····· 111
제2절 의회의 역할 ····· 112
1. 의회의 권한 ····· 112
2. 소집과 회기 ····· 112
3. 의회의 구성 ····· 113

제2편 의정편

제1장 제329회 임시회 ····· 117
제1절 개관 ····· 119
1. 집회 경위 ····· 119
2. 의사일정 ····· 119
3. 본회의 운영상황 ····· 120
4. 교섭단체 대표연설 ····· 121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30

제2장 제330회 임시회 ····· 135
제1절 개관 ····· 137
1. 집회 경위 ····· 137
2. 의사일정 ····· 137
3. 본회의 운영상황 ····· 138
4. 개회사(개원사) ····· 141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42

제3장 제331회 임시회 ····· 159
제1절 개관 ····· 161
1. 집회 경위 ····· 161
2. 의사일정 ····· 161
3. 본회의 운영상황 ····· 161
4. 개회사 ····· 164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66

제4장 제332회 정례회 ····· 191
제1절 개관 ····· 193
1. 집회 경위 ····· 193
2. 의사일정 ····· 193
3. 본회의 운영상황 ····· 195
4. 개회사 ····· 201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03

제5장 333회 임시회 ····· 257
제1절 개관 ····· 259
1. 집회 경위 ····· 259
2. 의사일정 ····· 259
3. 본회의 운영상황 ····· 260
4. 개회사 ····· 26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64

제6장 334회 임시회 ····· 285
제1절 개관 ····· 287
1. 집회 경위 ····· 287
2. 의사일정 ····· 287
3. 본회의 운영상황 ····· 288
4. 개회사 ····· 292
5. 교섭단체 대표연설 ····· 293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302

제7장 335회 임시회 ····· 337
제1절 개관 ····· 339
1. 집회 경위 ····· 339
2. 의사일정 ····· 339
3. 본회의 운영상황 ····· 340
4. 개회사 ····· 343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344

제8장 336회 정례회 ····· 377
제1절 개관 ····· 379
1. 집회 경위 ····· 379
2. 의사일정 ····· 379
3. 본회의 운영상황 ····· 380
4. 개회사 ····· 38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383

제9장 337회 임시회 ····· 407
제1절 개관 ····· 409
1. 집회 경위 ····· 409
2. 의사일정 ····· 409
3. 본회의 운영상황 ····· 409
4. 개회사 ····· 41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414

제10장 338회 임시회 ····· 447
제1절 개관 ····· 449
1. 집회 경위 ····· 449
2. 의사일정 ····· 449
3. 본회의 운영상황 ····· 450
4. 개회사 ····· 453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454

제11장 339회 정례회 ····· 477
제1절 개관 ····· 479
1. 집회 경위 ····· 479
2. 의사일정 ····· 479
3. 본회의 운영상황 ····· 479
4. 개회사 ····· 48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483

제12장 340회 정례회 ····· 513
제1절 개관 ····· 515
1. 집회 경위 ····· 515
2. 의사일정 ····· 515
3. 본회의 운영상황 ····· 516
4. 개회사 ····· 521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523

제13장 341회 임시회 ····· 573
제1절 개관 ····· 575
1. 집회 경위 ····· 575
2. 의사일정 ····· 575
3. 본회의 운영상황 ····· 576
4. 개회사 ····· 578
5. 교섭단체 대표연설 ····· 579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588

제14장 342회 임시회 ····· 605
제1절 개관 ····· 607
1. 집회 경위 ····· 607
2. 의사일정 ····· 607
3. 본회의 운영상황 ····· 607
4. 개회사 ····· 60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609

제15장 343회 임시회 ····· 613
제1절 개관 ····· 615
1. 집회 경위 ····· 615
2. 의사일정 ····· 615
3. 본회의 운영상황 ····· 616
4. 개회사 ····· 620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621

제16장 344회 정례회 ····· 663
제1절 개관 ····· 665
1. 집회 경위 ····· 665
2. 의사일정 ····· 665
3. 본회의 운영상황 ····· 666
4. 개회사 ····· 671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672

제3편 자료편

제1장 원구성 현황 ····· **733**
제1절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 735
제2절 제10대 전반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구성현황 ····· 738
제3절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변동 ····· 740

제2장 집회와 회기 ····· **741**
제1절 회기별 개회일, 산회일, 개의일수, 본회의 차수 ····· 743
제2절 회기별 본회의 참석률 ····· 744

제3장 안건처리 현황 ····· **747**
제1절 의안별 처리 현황 ····· 749
제2절 위원회별 처리 현황 ····· 750
제3절 의안 접수 및 처리 일람 ····· 751

제4장 의정활동 ····· **823**
제1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 ····· 825
제2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 ····· 828
제3절 교섭단체 활동 ····· 831
제4절 국제교류협력 활동 ····· 846
제5절 상임위원회별 활동 ····· 848
제6절 특별위원회 활동 ····· 865
제7절 특별대책위원회 활동 ····· 872
제8절 의원연구단체 운영 ····· 888
제9절 정책토론대축제 ····· 894
제10절 지역상담소 운영 ····· 902
제11절 시군정책 간담회 ····· 904
제12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906
제13절 SNS, 소셜TV 활용 의정활동 ····· 907
제14절 의정모니터 운영 ····· 908
제15절 공공기관 인사청문 ····· 909

제5장 경기도 의회사무처 ····· **911**
제1절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근거법규 ····· 913
제2절 경기도의회사무처 연혁 ····· 925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편 기본편

1

제1장 10대 전반기 의회를 돌아보며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장 10대 전반기 의회를 돌아보며

■ 제1절 총평 ■

"오늘 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더 좋은 기록을 위해, 다양한 기록을 만들어 갔던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눈을 밟고 밤길을 걸어가니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踏雪夜中去 不須胡亂行 今朝我行跡 遂作後人程)"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걸린 여러 현판 중 하나의 글귀입니다. 서산대사의 선시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즐겨 인용했던 문구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730여 일의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에 대한 평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뒷사람을 생각하며 한눈팔지 않고 똑바로 걷고자 노력했다!"

1330만 경기도민과 시작했던 10대 경기도의회가 이제 1370만 도민과 함께 전반기를 마무리 합니다. 2년 동안 약 40만 명이 늘었습니다. 제법 큰 도시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규모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전국적 관심사가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45명의 의원들로 출발했고, 2018년 10대 의회를 열면서는 3배 이상 늘어난 142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이며, 서울과 인천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만큼 관심과 기대가 많았으며, 또 그만큼의 책임감도 주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142석 중 135석, 전체의 94%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정의당'은 교섭단체도 꾸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 중 76.7%가 초선이었고, 여성 의원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혜안이 요구됐고,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을 계승하며 '의회다운 의회'로 혁신

이에 시대가 요구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사람중심 민생중심'을 계승하며, 나아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시대정신으로는 '공존(共存)'을 선택했습니다.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경기도민의 생각과 생활을 담아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기록은 또 다른 기록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처럼, 더 좋은 기록을 위해 다양한 기록을 만들어 가는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될 공존의 가치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명제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 30여 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이고 토론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을 맡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의 역할은 더욱 컸고 활동은 누구보다 활발했습니다. 2018년 10월, 전국 800여 광역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는 결코 헛되지 않을 기록이며, 이후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나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갈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존의 기록은 '공약의 정책화'입니다.

142명 의원들의 전체 공약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나하나 정책과 예산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들의 선거공약을 도정은 물론 교육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의원 정책제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102건의 정책제안을 통해 229개 사업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예산만 4조 1,129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지방정부 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은 어떻게 정책이 되었나〉라는 정책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뒷사람들의 길이 될 좋은 발걸음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분야별 정책의제 설정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대축제'도 2년 동안 110개의 주제로 진행됐거나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공존의 가치는 '역사 바로알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남다른 역사의식을 알리기도 했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침략에 항의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나선 1인 시위는 한겨울을 넘겨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는 약 120여 명의 경기도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홀로아리랑'을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될 공존은 '민생 돌봄'입니다.

'도민이 곧 의회입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생을 돌보는 데 소홀함이 없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크노밸리 조성 운영지원 특별위원회',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노동·인권 존중 경기도특별위원회' 등 11개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했습니다. 또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추진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돼지열병 극복 T/F',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및 비상대책단' 등이 그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의회'인 지역상담소의 역할도 컸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4만7,524명의 도민이 방문하여,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정책적 대안까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총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읽고 계신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를 포함해 〈정책공약 백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백서〉, 〈교섭단체 대변인 백서〉 등 출판물로 만들어진 기록물뿐만 아니라 매회 10만 부씩 발행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와, 공식 유튜브 '이끌림'에 올라와 있는 수 백 건의 영상물들도 모두 소중한 발자취들입니다. 훗날 뒷사람들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송한준 제10대 전반기 의장은 "전·후반기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후반기 의회에서 더 큰 도민행복이 실현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2절 숫자로 보는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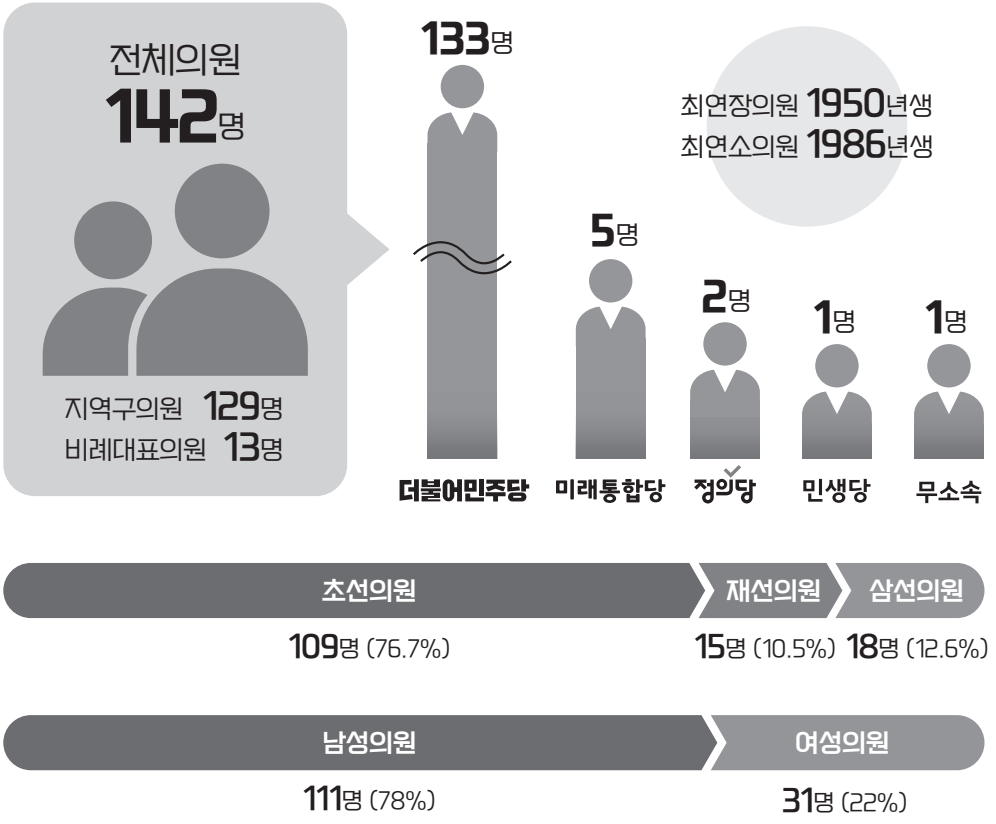

1. 10대 전반기 의원 분포 및 주요 변동사항

○ 10대 전반기 특징

- 제10대 전반기의회는 지역구의원이 129명, 비례대표의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고 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33명으로 전체 의원 142명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이 5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의당이 2명, 민생당이 1명, 무소속의원이 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초선의원의 비중이 109명으로 76.7%를 차지하고 있고 재선의원이 15명으로 10.5%를, 3선의원이 18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구성비율을 보면 남성 의원이 111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원이 31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최연장 의원은 1950년생이며 최연소 의원은 1986년생이다.

○ 주요 변동사항

-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제9대 경기도의회 보다 14명의 의원이 증가한 1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활동하였다.
- 제9대 경기도의회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난 의정 활동 수요에 적합한 지원 조직을 마련코자 기존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분할 운영하였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변경 운영하였다.
- 의정활동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방송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방송홍보 기능을 보완 강화하였고, 기존 의정지원담당관실의 기능을 보완하여 도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여 선거과정에서 수렴한 도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으며, 집행기관과의 협치,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치 의정 지원을 위해 협치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다.

2. 10대 전반기 질문 및 발언현황

○ 10대 전반기 질문현황

(2020.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회수)	총인원	정당별				질문방식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생당 구)바른미래당	일문일답	일괄문답
7회	78명	72	4	1	1	39	39

총인원	기획	경제	행정	문체	농정	복지	건설	도시	여가교	1교육	교행
78명	14	7	5	5	4	7	7	10	6	3	10

○ 10대 전반기 발언현황

(2020.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회수)	총인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생당 구)바른미래당	무소속
15회	241	220	11	9	1	-

총인원	기획	경제	행정	문체	농정	복지	건설	도시	여가교	1교육	교행
241명	25	24	17	22	19	30	27	21	10	20	26

3. 주요 조례 10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양육을 도모함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수중 위기시 학생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조례
–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개선 및 보전에 기여함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에 기여

4. 행정사무감사 처리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 : 3,0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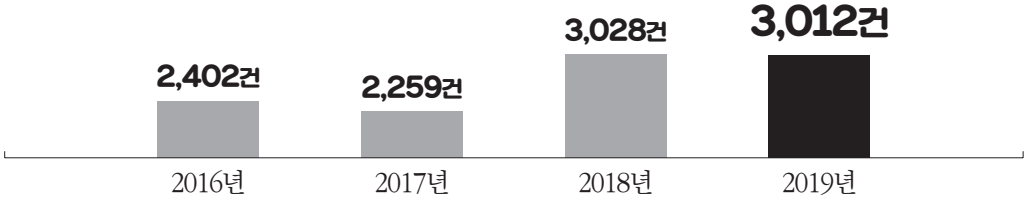

5. 특별위원회 활동

테크노밸리 조성 운영지원 특별위원회
- 경기도의 미래발전의 원동력인 테크노밸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추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 남북교류정책 고안, 통일역량 제고,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도유재산 매각·임대 특혜·불법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진상 조사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친환경 학교 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향후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제도적 정비사항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

노동·인권 존중 경기도특별위원회
-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및 피해사례를 파악해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 일자리창출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 도출

청년대책 특별위원회
-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의회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 항일을 넘어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도내 친일잔재 청산 도모

6. 지역상담소 활동

○ 설치현황 : 31개소(시군별 1개소)

○ 주요기능 : 민원상담, 입법정책건의 수렴, 도의원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 운영실적

기 간	운 영 실 적											
	계	건의	상담	직원 상담	협의·면담	회의	스마트 워크	언론 인터뷰	상담소 안내	상담 신청	상담소 홍보	기타
합계	52,353	22	4,985	1,119	11,675	922	23,454	415	5,859	1,085	2,284	296
9대의회 후반기	22,048	11	1,810	611	4,240	288	10,539	212	2,888	452	720	40
10대의회 전반기	30,305	11	3,175	508	7,435	634	12,915	203	2,971	633	1,564	256

7. 의원 공약 분류 및 정책제안 반영

○ 정책공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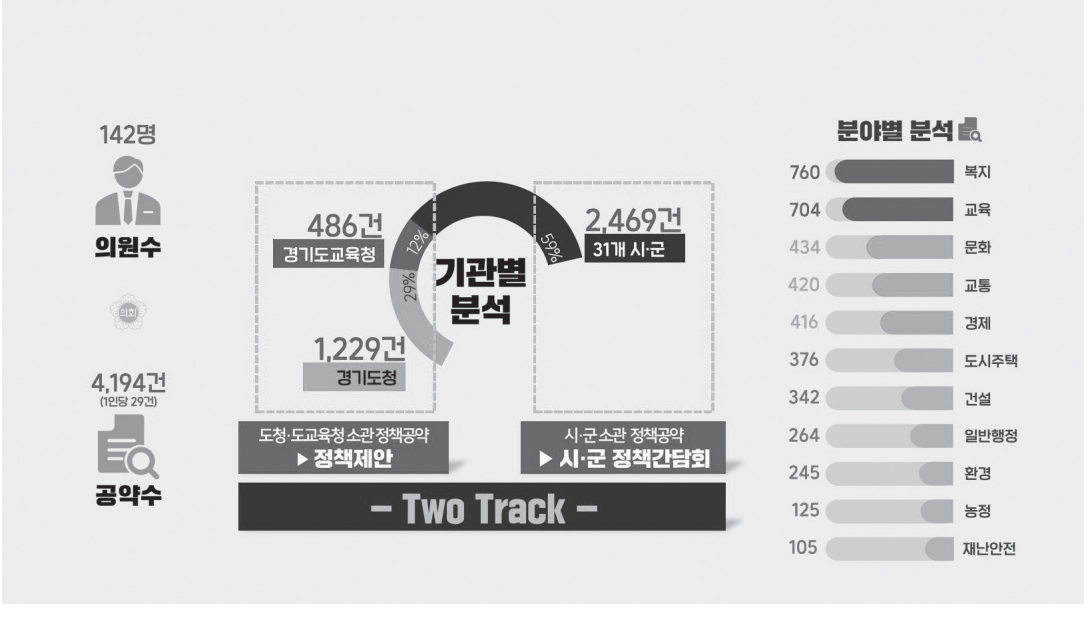

○ 정책제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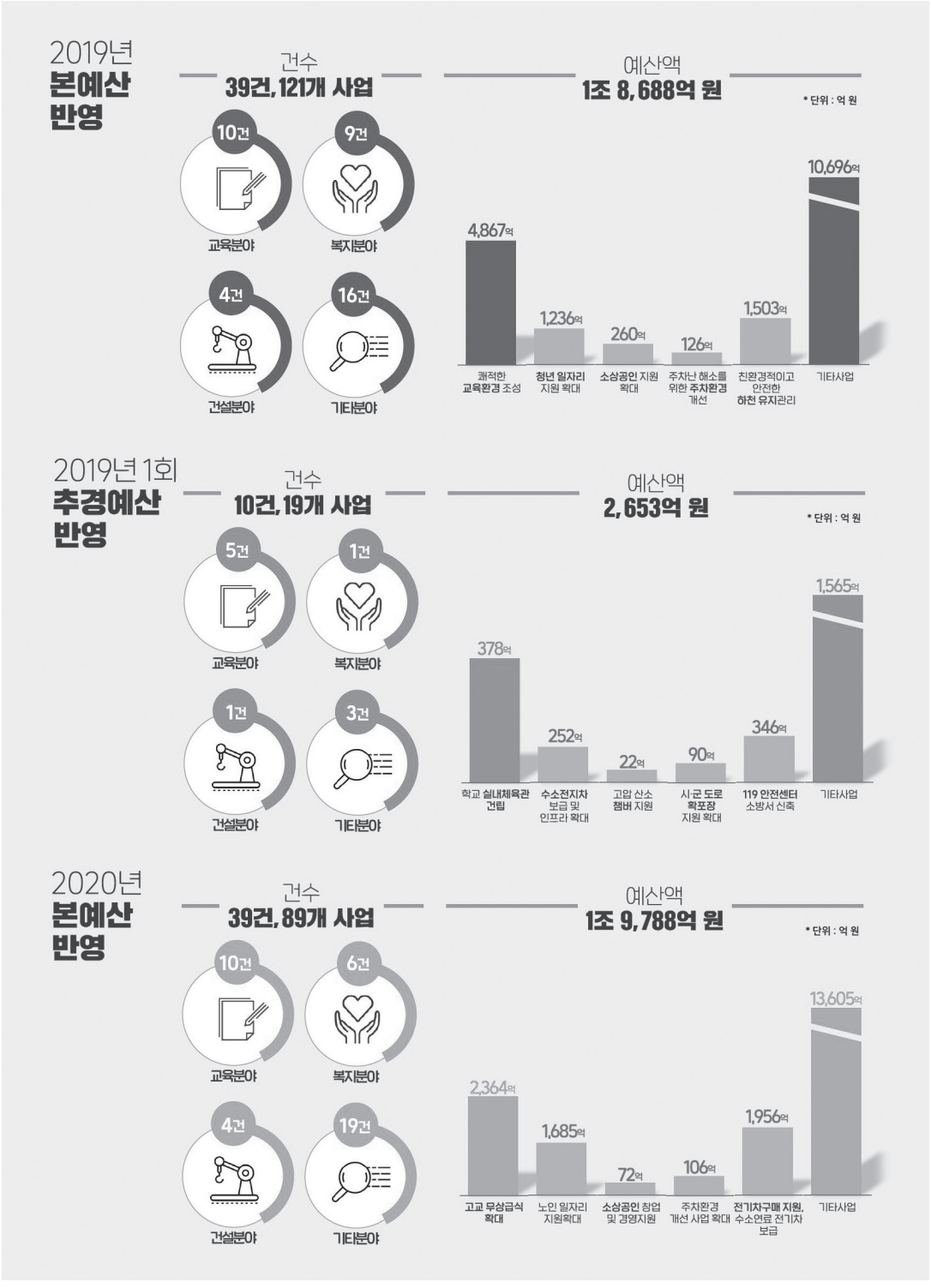
2019년
본예산
반영
건수
39건, 121개 사업
10건
교육분야
9건
복지분야
4건
건설분야
16건
기타분야
예산액
1조 8,688억 원
* 단위 : 억 원
4,867억
1,236억
260억
126억
1,503억
10,696억
괘적한 교육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기타사업
2019년 1회
추경예산
반영
건수
10건, 19개 사업
5건
교육분야
1건
복지분야
1건
건설분야
3건
기타분야
예산액
2,653억 원
* 단위 : 억 원
378억
252억
22억
90억
346억
1,565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수소전지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고압 산소 챔버 지원
시·군 도로 확포장 지원 확대
119 안전센터 소방서 신축
기타사업
2020년
본예산
반영
건수
39건, 89개 사업
10건
교육분야
6건
복지분야
4건
건설분야
19건
기타분야
예산액
1조 9,788억 원
* 단위 : 억 원
2,364억
1,685억
72억
106억
1,956억
13,605억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확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주차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차구매 지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기타사업

제2장 경기도의회 현황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2장 경기도의회 현황

■ 제1절 일반현황 ■

1. 지방의회 연혁

제1대 도의회 의원선거는 정부 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52년 5월 10일 전국 7개 도, 306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란기였던 관계로 강원도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라북도 4개 군(남원군, 완주군, 순창군, 정읍군)과 함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전국 제1대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1952년 5월 10일부터 1956년 5월 9일까지 4년간이었으나, 1956년 2월 10일 지방자치법개정안 부칙에 따라 3개월간 연장되었다.

2. 초대 경기도의회(전국2대)

초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 미수복지역인 연천군과 계엄으로 선거가 연기된 옹진군을 제외한 도내 2개 시, 17개 군에서만 실시되어 총 45명이 선출되었다. 초대 의원의 임기는 1956년 8월 13일부터 1960년 8월 14일까지 4년간이었으나 제2대(전국3대) 도의원 선거가 연기됨에 따라 1960년 12월 1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되었다.

초대 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개원과 더불어 제1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1960년 8월 12일까지 총 40회의 회기(정기회 8회, 임시회 32회)를 개회하였다.

초대 도의회 제1기 의장은 노재억 의원(민주당, 파주), 제2기 의장은 김정순 의원(자유당, 용인), 제3기 의장은 이중섭 의원(자유당, 강화)이 선출되었다. 원 구성은 내무, 문교·사회, 산업, 의회운영, 징계자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6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3. 제2대 경기도의회(전국3대)

제2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연천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도내 2개 시, 17개 군에서 실시되어 총 46명이 선출되었다. 제2대 의원의 임기는 1960년 12월 12일부터 4년간이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강제 해산되었다.

제2대 도의회는 1960년 12월 22일 개원과 더불어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모두 6번의 임시회(제46회 임시회까지)를 개최하였다. 의장에는 양재범 의원(신민당, 인천), 부의장에는 이윤용 의원(무소속, 평택)이 각각 선출되었다. 원 구성은 5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내무, 문교·사회, 산업, 의회운영, 예산결산위원장이 모두 무소속 의원이었고, 징계자격위원장도 야당인 신민당에서 선출된 것이 특색이었다.

4. 제3대 경기도의회(전국4대)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제2대 경기도의회가 해산된 이래 만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실시되어 동년 6월 20일 경기도내 36개 시·군(인구비례에 의거 2~8인, 최대 부천 8명)에서 총 117명이 선출되었다. 제3대 의원의 임기는 1991년 7월 8일부터 1995년 7월 7일까지 4년 동안 총 6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3대 도의회는 1991년 7월 8일 개원과 더불어 제47회 임시회가 개최되어, 1995년 6월 5일(당일) 제92회 임시회(총 44회의 임시회)까지 개최되었다. 제3대 도의회는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었으며, 역시 임기 2년인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제1기 의장은 유석보 의원(민자당, 수원시1), 부의장은 한근이 의원(민자당, 안양시6)·이진철 의원(민자당, 포천군2)이었으며, 제2기 의장은 한근이 의원, 부의장은 천낙범 의원(민자당, 평택시3)·이달승 의원(민자당, 남양주시5)이 선출되었다.

5. 제4대 경기도의회(전국5대)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구비례에 의하여 2~10인(최대 부천10인)씩 선출된 의원 123명과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13명의 의원을 합쳐 136명(지역 123명, 비례 13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4대 의원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1995년 7월 8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4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대 도의회는 제93회 임시회 개회일인 1995년 7월 14일 1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교황식 투표를 통해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제4대 도의회는 임기 1년6개월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었으며, 제3대 의회 때보다 문화공보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돼 10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두 11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제1기 의장은 유재언 의원(민자당, 수원시3), 부의장은 정형만 의원(국민회의, 성남시6)·유천형 의원(의정동우회, 평택시5)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 1일 개회된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형만 부의장 사임건이 가결됨으로써, 제5차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거쳐 이광구 의원(국민회의 대표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1996년 4월 26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재언 의장 사임건이 가결되어, 동년 5월 1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배 의원(신한국, 연천군2)이 신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제4대 도의회 제2기는 제113회 임시회 개회일인 1997년 1월 8일 132인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되어 제2기 신임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신임의장 선거에서 제2기 의장에 홍성호 의원(신한국당, 화성군2), 부의장에는 이계석 의원(국민회의, 평택시9)과 조원근 의원(의정동우회, 남양주시1)이 각각 당선되었다.

6. 제5대 경기도의회(전국6대)

제5대 경기도의회는 1998년 6월 4일 31개 시·군 88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99명과 비례대표 91명을 포함한 97명이 선출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기회 5회, 임시회 40회 등 총 45회 동안에 64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 97인의 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새정치국민회의 66인(5인 비례)으로 68.0%, 한나라당은 21인(3인 비례)으로 21.7%, 자유민주연합 10인(1인 비례)으로 12.4%, 무소속 1인으로 10.3%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 2000년 1월 20일 새정치국민회의가 정당 명칭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7. 제6대 경기도의회(전국7대)

제6대 경기도의회는 2002년 6월 13일 31개 시·군 94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94명과 비례대표 10명을 포함한 104명이 선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례회 8회, 임시회 32회 등 총 40회 동안에 68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2002년 6·13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은 지역구 94명, 비례대표 10명이며, 정당별(비례대표 포함)로는 한나라당 90명(86.5%), 민주당 10명(9.6%), 민주노동당 1명(0.96%), 무소속 3명(2.9%)이었으나 임기가 시작된 8월 1일 도의회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92명(88.5%), 민주당 10명(9.6%), 민주노동당 1명(0.96%), 무소속 1명(0.96%)으로 재편되었다.

104명의 의원 중 3선의원은 4명(3.8%), 2선의원 19명(18.3%), 초선의원 81명(77.9%)이었다. 정당별 선호도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득표율은

한나라당 54.9%(6명), 민주당 32.2%(3명), 민주노동당 5.8%(1명), 자민련 3.8%순이었다.

8. 제7대 경기도의회(전국8대)

제7대 경기도의회는 2006년 5월 31일 31개 시·군 108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108명과 비례대표 11명을 포함한 119명이 선출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 등 총 38회 동안에 1,03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7대 경기도의원은 제6대 의원보다 15명이 늘어난 119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 지역구 의원에 한나라당이 108석을 모두 석권했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 7명,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전체 의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15석을 차지해 96%가 넘는 의석을 점유했다.

9. 제8대 경기도의회(전국9대)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8대 경기도의원은 지역구 의원 112명, 비례대표 12명과 함께 7명의 교육의원 등 제7대 도의회보다 12명이 늘어난 131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 지역구 의원에 민주당 71명, 한나라당 36명, 국민참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순이고, 무소속은 2명이 선출됐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5명, 국민참여당 1명이 차지했다. 전체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76석을 차지해 61.3%(교육의원 제외)로 과반수를 넘었고, 한나라당이 42석으로 33.9%를 차지했다.

도의원 131명을 당선 횟수별로 보면 4선 의원이 1명(0.76%), 3선 의원이 8명(6.10%), 재선 의원이 22명(16.80%), 초선 의원이 100명(76.34%)이었다.

10. 제9대 경기도의회(전국10대)

제9대 경기도의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16명, 비례대표 12명으로 제8대 도의회보다 3명이 줄어든 128명으로 구성됐다.

도의원 128명을 당선 횟수별로 보면 3선 의원이 8명(6.25%), 재선 의원이 56명(43.75%), 초선 의원이 64명(50%)을 차지했다.

정당별로 지역구 의원에는 새정치민주연합 72명, 새누리당 46명이 당선됐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6자리씩 차지했다.

11. 제10대 경기도의회(전국11대)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29명, 비례대표 13명으로 제9대 도의회보다 14명이 증가한 142명으로 구성되었다.

도의원 142명을 당선 횟수별로 보면 3선 의원이 18명(12.7%), 재선 의원이 16명(11.3%), 초선 의원이 108명(76%)을 차지했다.

정당별로 지역구 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자유한국당 1명이 당선됐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이 2명을 차지했다.

그 후 당명 변경, 탈당, 보궐 선거 등을 통하여 정당별 지역구 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126명, 미래통합당 2명 및 무소속의원 1명으로 변경되어 구성되었고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수는 변동 없이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3명, 민생당 1명, 정의당이 2명이 유지되었다.

■ 제2절 의회의 역할 ■

1. 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심의·확정, 예산결산(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승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결정

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집행부(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감사·조사

다. 자율권

의회의 운영사항을 스스로 규율

라. 선거권

의장,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마.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바. 의견 표명권

정부 등에 도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

사. 청원 처리권

집행부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도민의 희망사항을 접수 처리

2. 소집과 회기

경기도의회의 회기는 매년 정례회는 2회 65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고 있다.

가. 정례회

경기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나. 임시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경기도의회는 매회 임시회의 회기를 2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3. 의회의 구성

가. 의장·부의장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2명으로 의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의원

제10대 의회의 경우 129개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의원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 1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합해 142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다. 위원회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1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되며,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도 있다.

라. 교섭단체

의회 내에서 같은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사전에 의사를 조정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이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1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했다.

〈의회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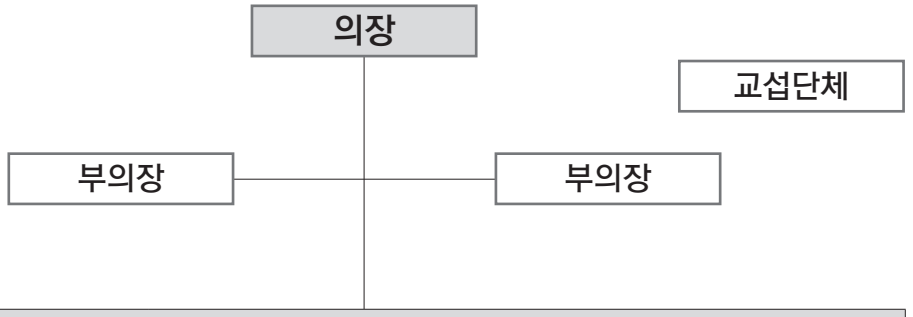

상임(특별)위원회 및 소관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정홍보
기획재정위원회	도정기획, 조정, 예산·투자심사, 소송, 정보화추진, 남북협력, 감사
경제노동위원회	지역경제, 공업, 노동, 중소기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안전행정위원회	인사, 시·군지원, 세정, 회계, 안전행정, 소방재난, 민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 체육정책, 관광개발, 문화재
농정해양위원회	농축수산, 화훼, 농산물 유통, 농촌지도, 산림, 해양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 위생, 보건, 보건연구
건설교통위원회	도로, 교량, 하천, 교통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계획, 주택, 환경, 환경연구, 수질개선, 지적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 가족, 청소년, 평생교육
제1교육위원회	교육기획,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청 인사, 감사, 교육협력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기타 특별위원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2편 의정편

2

제1장 제329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장 제329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3차, 위원회는 총 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7월 10일 (화)	제1차 본회의 - 의장·부의장 선거 등 4건	출석의원 142인
7월 11일 ~ 7월 16일	본회의 휴회	
7월 17일 (화)	제2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등 4건	출석의원 141인
7월 18일 ~ 7월 20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과학기술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1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1차 (이상 18일), 기획재정위 2차, 경제과학기술위 2차, 안정행정위 2차, 문화체육관광위 2차, 건설교통위 2차, 도시환경위 2차, 제1교육위 2차, 제2교육위 2차(이상 19일), 의회운영위 1차, 보건복지위 2차, 도시환경위 3차 (이상 20일)	
7월 23일 (월)	제3차 본회의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10건	출석의원 140인

3. 본회의 운영상황

2018년 7월 10일 개회된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7월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통해 의장에 송한준 의원, 부의장에 김원기·안혜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개의하여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장태환·권재형·조광희·원미정·조성환·김인순 의원)을 실시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12인) 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휴회 결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7월 23일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더불어민주당 염종현)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10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건이 접수되어, 16건(원안 15, 수정 1)을 처리하였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1차	2018. 7. 10.(화) (10:05~11:50)	142	1. 의장·부의장 선거 - 송한준 의장,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2.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태형·고은정 의원) 4. 휴회 결의의 건(7. 11. ~ 7. 16.)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8. 7. 17.(화) (10:16~13:46)	141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5분 자유발언(장태환·권재형·조광희·원미정·조성환·김인순 의원) 1.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12인) 선거 4. 휴회 결의의 건	 보 고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3차	2018. 7. 23.(월) (10:29~11:19)	132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경기도교육청)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4. 교섭단체 대표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경기도의회 142개 의석 중에서 13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안겨주셨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젖히라는 준엄한 명령도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민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절박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란 말씀처럼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제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과업을 해결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경기도민들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 염종현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도의원들 모두는 경기도 16년 적폐를 청산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사명,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남북통일 기반 확대를 위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 맨 앞자리에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이 서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의 삶을 위한 8대 정책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 확대 위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제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편안하게 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뉴타운 후속 대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책과 함께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 주거환경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을 확대 강화하고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중·고생 무상교복,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확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135명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10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7기 경기도, 민선 3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많은 한계에 봉착했던 연정의 시대를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늬만 협치, 구두선에 그치는 협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력이 담보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과정과 결과까지 그 책임을 무한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시대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가칭 경기도정정책협의회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경제와 교육정책 전반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치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여서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수행,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135석의 강한 여당! 강한 도지사!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부여한 본질적인 사명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며 일 잘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자 도의회에 부여된 기본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의회의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해 경기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책임 있게 추동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관계에서도, 경기도의회 여야 관계에서도, 당 운영과정에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의회,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 민주적 절차와 수평적 리더십이 구현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수야당과의 협력과 존중을 실천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이 바라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분, 정의당 두 분, 바른미래당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의회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차별하지 않고 대표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외된 부문이 없도록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추진에 이해와

공감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경기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항구적 평화의 시작이 될 종전협정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번의 회담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난관을 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대결과 반목,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항구적 평화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있어야만 한반도의 번영은 물론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이 매년 0.81포인트씩 추가 성장하고 5년간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3,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이 추진 중인 1,600만 ㎡ 규모의 통일경제특구가 모두 완성된다면 최대 4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분단의 현장이었고 남북의 대치와 갈등의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평화협력의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로 남북협력의 중심이자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평화협력의 시대!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평화경제협의체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제 등 외교적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만들어졌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는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7~8%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득재분배 및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상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사업 확대, 식자재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영세자영업자 긴급대출 이자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확대 추진해 그분들의 어려움을 더 공감하고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 중반에서 답보 중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고용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 21.3%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산하기관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아시아 생산거점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에 공장 증설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를 막아선 것은 공장총량제 규제였고 그 회사는 사업장을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 왔어야 할 4억 달러 투자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 있은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과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거안정은 생존권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 문제가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이동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서울에서 2만 2,367명이 빠져나간 반면 경기도에는 4만 4,57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 대부분의 원인은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만료,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 주택문제가 7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주택수요의 증가와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을 확충하고 그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땅장사, 수익성 부동산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의 주택수요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청춘들은 기운을 잃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수입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첫 번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땅, 헬조선이라 부르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 3위, 2000년 대비 청년실업률이 4.3% 증가해 증가폭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제안하여 경기도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1점을 기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 청년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 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의회는 청년에 대한 좋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청년에게 희망을, 꿈을 살려주는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대책, 공공의료 강화, 여성취업지원, 장애인복지 확대 등 산적한 경기도 민생현안을 꼼꼼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10대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는 경기교육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의 가치를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유롭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고 모든 혁신공감학교를 혁신학교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과 걱정을 경감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과 고교의무교육의 조속한 실현, 학교체육관 건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대책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표방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학교교육급식, 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꿈의 학교, 혁신교육지구의 확대와 9시 등교 및 꿈의 대학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면에 실제 학교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경시된 부분이나 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혹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특성화고 학생중심의 취업지원체계 구축 등 도교육청이 관심을 두지 않아 소외되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제기해 왔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정책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꼼꼼히 헤아려 주시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교육이 진정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1년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와 자치의회는 비록 더디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물길처럼 발전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8대·9대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수없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제10대 경기도의회도 자치와 분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가 촛불혁명에 담긴 요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전제입니다. 자치분권의 중심은 지방의회입니다.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10대 의회가 개원된 지금까지도 아직 뚜렷한 결실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의 일정과 방향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6년 자치분권 개헌을 한 일본은 3만 달러로 주저앉았던 GDP가 2010년 4만 달러로 다시 도약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체제의 단일성보다는 지방분권의 다양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치분권은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특성을 살려 자주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방식으로 더 이상 경기도가 각종 규제의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중심인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헌법이나 법률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 나갑시다.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경쟁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의회사무처 보좌인력들이 집행부 보조자의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전문가로 재탄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조직 내외부의 우수인력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확대는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가점비율을 조정하고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 정책 및 예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도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 1.8명을 전국 평균인 2.7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일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계획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무사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 가두려 했고 언론사를 장악해 비판적 보도를 원천봉쇄할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시민들을 진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우리 군의 최정예들을 투입할 구체적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이 2016년 겨울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00만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국정농단으로 흔들린 나라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도민들의 선택은 경기도도 새롭게 바로잡아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16년간의 경기도 적폐를 개혁하고 새로운 경기도, 평화의 시대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민생을 세심하게 보듬고 경기도 곳곳에서 도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대로 일해 달라는 명령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저 염종현을 비롯한 135명의 의원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승리에 담긴 뜻을 두렵고 또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10일, 민경선 의원 등 42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교장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규정함.

○ 교복구입비는 학교로 지원하며, 학교에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교복 지원 사업이 상생 정신에 입각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추가함.

○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단서 조항을 추가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보호"로 수정함.

○ 부칙에 "단,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를 추가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일하는 정책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책 및 예산 등의 기능과 대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두는 간사제도를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와 위원장·부위원장이 전부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6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함.

○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 직제로 변경함.

○ 부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직무대행 등 부위원장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에 두는 간사제도를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와 위원장·부위원장이 전부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행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였는바, 동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위원장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위원장 규정을 준용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 시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기 타

□ 제10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1) 제안이유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위 원 수 : 26인 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 6. 30.까지

(3) 위원 선임

○ 위원수 : 26명(더민주 24, 한국당 1, 정의당 1)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승현	기획위	안산4	더불어민주당	안기권	도시위	광주1
더불어민주당	이종인	기획위	양평2	더불어민주당	박성훈	도시위	남양주4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수영	경제위	수원6	더불어민주당	최갑철	행정위	부천8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행정위	동두천2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여가교위	안양2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행정위	군포4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여가교위	파주2
더불어민주당	김인영	건설위	이천2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여가교위	화성1
더불어민주당	양운석	문체위	안성1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제1교육위	화성6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문체위	시흥1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제1교육위	의왕2
더불어민주당	유광국	농정위	여주1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제1교육위	김포4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농정위	고양7	더불어민주당	유근식	제2교육위	광명4
더불어민주당	지석환	복지위	용인1	더불어민주당	최세명	제2교육위	성남8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복지위	양주1	자유한국당	한미림	여가교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복지위	의정부2	정의당	이혜원	기획위	비례

□ 제10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 제안이유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위 원 수 : 13인 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년간

(3) 위원 선임

○ 위원수 : 13명(더민주 12, 바른미래당 1)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경제위	오산1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건설위	고양8
더불어민주당	김직란	건설위	수원9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건설위	화성2
더불어민주당	이창균	도시위	남양주5	더불어민주당	이명동	행정위	광주3
더불어민주당	엄교섭	제2교육위	용인2	더불어민주당	김영해	복지위	평택3
더불어민주당	이진연	여가교위	부천7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건설위	하남1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제2교육위	군포3	바른미래당	김지나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진	제1교육위	파주4				

제2장 제330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2장 제330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8월 28일 (화)	제1차 본회의 -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7건	출석의원 140인
	위원회 활동 문화체육관광위 1차, 도덕성검증위원회 1차	
8월 29일 (수)	제2차 본회의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2건	출석의원 139인
	위원회 활동 도시환경위 1차	
8월 30일 (목)	제3차 본회의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2건	출석의원 137인
	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 1차	
8월 31일 ~ 9월 11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안정행정위 1차, 도시환경위 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1차, 제2교육위 1차 (이상 31일) 경제위 1차, 안전행정위 2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2차, 도덕성검증위원회 2차 (이상 9월 3일) 기획재정위 1차, 안전행정위 3차, 건설교통위 2차, 도시환경위 3차, 제1교육위 2차 (이상 4일) 의회운영위 1차, 기획재정위 2차 (이상 5일) 도시환경위 4차 (이상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6, 7, 10, 11일)	
9월 12일 (수)	제4차 본회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49건	출석의원 138인
	위원회 활동 제2교육위 3차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8월 28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창순·김경호·문경희·박관열·추민규·김종찬·조성환 의원)과 5분 자유발언(김우석·권락용·김용찬·안광률·오진택·유상호 의원)을 실시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개의하여 일괄질문 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임창열·이창균·성준모·김동철·진용복 의원)과 5분 자유발언(이영주·이혜원·김성수·이필근(수원3)·김장일·최종현 의원)을 실시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조재훈·최만식·남종섭·채신덕·지석환·왕성옥 의원)을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9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건이 접수되어, 65건(원안 56, 수정 8, 부결 1)을 처리하고 7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8. 8. 28.(화) (11:58~13:06)	140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경기도) 1.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고찬석·국중범 의원)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안설명 제안설명 가 결
2차	2018. 8. 29.(수) (10:07~16:45)	139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박창순·김경호·문경희·박관열·추민규·김종찬·조성환 의원) ※ 5분 자유발언 (김우석·권락용·김용찬·안광률·오진택·유상호 의원)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차	2018. 8. 30.(수) (10:03~15:18)	137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임창열·이창균·성준모·김동철·진용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영주·이혜원·김성수·이필근(수원3)·김장일·최종현 의원)	
4차	2018. 9. 12.(수) (10:33~12:57)	138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경기도) ※ 5분 자유발언 (조재훈·최만식·남종섭·채신덕·지석환·왕성옥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3.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9.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0.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內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1.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3.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5.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	가 결
			26.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가 결
			27.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가 결
			28.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가 결
			29.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31.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가 결
			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4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45.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가 결
			46.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가 결
			47.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결
			48.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결
			49.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4. 개회사(개원사)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오늘부터 제330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경기'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육을 교육답게'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의 주인인 경기도민 여러분! 올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양평 돈사 화재사고, 포천 화력발전소 폭발사고, 김포 수난구조대 전복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을 찾아다니며 원인을 알아보고 재발방지책을 함께 고민하면서 모든 정책에서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힘써야 할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흔히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인재(人災)'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 사고 현장에서 저 역시도 사전예방에 힘쓰지 않은 결과임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야, 평생을 지키고 가꿔온 터전을 잃고 나서야, 탄식하고 후회한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은 제아무리 완벽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안전과 도민의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면서 저는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다워지려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을 섬기며 소통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무엇이 원칙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았다 해도 집행부에서 섬세한 운영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책의 성공이 가능합니다.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도민의 안전에 힘쓰고 도민과 신뢰를 쌓으면서 의회다운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예산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도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에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다양한 조례 제·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 현황과 주민의 고충, 민원해결 방안과 지방의 미래 비전까지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눔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지방이 꿈꾸는 분권의 길은 지지부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존중하는 것임을 촉구하면서 자치와 분권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10대는 연정과 협치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도와서 함께하는 공존의 지혜로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4일, 서형열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2018년 1월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제1호(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현행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에 관한 사항 중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전시시설이 필지가 다르거나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적용기준을 마련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6일, 진용복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전부개정 시행(2018.02.09.)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업무를 명확히 하고, 6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 추진위원, 조합임원 등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위사실 신고 및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김경호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남북 간 또는 동서 간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상향시켜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로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량을 부여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2에 해당하는”을 “2 이내의”로 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김경호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강화와 재정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내실화·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도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및 교류 기능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광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민 누구나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서면·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풀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 위원회가 지역회의를 통해 도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될 우선사업을 발굴하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예산 소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군까지 포함하는 전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안 제10조의3 제3항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0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시·군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유광혁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심의기능 정비가 필요함.

○ 현행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장동일 의원 등 4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강화함(별표 1).

구 분	현 행	변 경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	50㎍/㎥(24시간) (25㎍/㎥(1년))	35㎍/㎥(24시간) (15㎍/㎥(1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김영준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정이유

○ 현행 '임대주택 등록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 2018. 1. 16. 시행 2018. 7. 17.)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기업형임대주택" 정의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함(안 제2조)

○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배수문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9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조성환 의원 등 5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구강보건법」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대상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시·군, 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박창순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사유시설 안전점검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소유·관리주체와 상관없이 시급하고 위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방재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긴급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도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안 제3조제1호나목).

○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1호타목).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의 수를 정함(안 제5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김달수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친환경적인 도립공원을 조성함.

○ 경기도민에 대하여 행궁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4) 주요내용

○ 경기도민에게 행궁 관람료를 면제함(안 제14조제11호, 별표 1).

○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함(안 제17조).

○ 주차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조광주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상위법인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체계적인 조례 양식에 맞추어 완성된 형태의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천연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과 관련된 산업을 뷰티산업에 포함함(안 제2조제1호나목).

○ 조례 체계성을 높이고자 조항 정비함(안 제17조 및 안 제2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김인순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5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손희정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제정이유

○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을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1조).

○ 지원 대상자가 입양축하금 신청 시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시 지원 대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 통장에 지급하여야 함(안 제7조).

○ 입양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별지 서식을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리함.

(수정 주요내용)

○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로 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이진연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지역 대학생"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의 조건 중 소득수준에 관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미취업 졸업생까지 포함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4조).

○ 학자금 이자지원의 특별 지원대상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정 총규모는 28조 7,264억원으로 당초 예산 26조 8,310억원 대비 7.1%인 1조 8,954억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3조 6,035억원으로 기정예산 21조 9,765억원 대비 7.4%인 1조 6,270억원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당초예산(A)	'18년 1회 추경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예 산	219,765	236,035	16,270	7.4%
일반회계	191,348	205,933	14,585	7.6%
특별회계	28,417	30,102	1,685	5.9%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행복주택건설사업지원 등 39,539백만 원 증액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9,871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조 7,603억원 대비 5,185억원이 증액된 16조 2,788억원으로 3.3%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2회 추경안(B)	추경 증감	
			금액(B-A)	비율
총 규 모	157,603	162,788	5,185	3.3%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용〉

○ 예산총칙 [부대의견] “예산총칙 제6조 제3항 삭제”

○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중

- 교실바닥 교체 40억원 감액(400억원→360억원).

- 노후전기설비 보수 40억원 증액(50억원→90억원).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부대의견] “금회 인상분은 냉난방기 전기세에 사용하도록 공문을 시달한다.” 명시.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건의·결의안

□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31일, 정대운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수 : 13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조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논의를 위해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의회 내에 별도의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권재형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주 문

○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은 약 24만명 의정부시민이 거주할 신곡·장암지구와 민락 택지지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예산 반영을 건의드리고자 함.

(4) 주요내용

○ 현재의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에서는 의정부 1공구인 도봉산에서 탑석역까지의 노선 계획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신곡·장암지구를 배제한 채 수락산을 관통하여 탑석역을 향해 직선으로 설계되었으며, 2공구인 탑석역에서 의정부 시계까지의 구간 또한 민락 택지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곧장 양주시를 향해 천보산을 관통하는 직선의 형태로 결정되었음.

○ 의정부시민의 교통 불편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노선과 아주 인접한 인구 밀집 택지지구를 경유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향후 운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역사(驛舍)를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거점 도시인 의정부시에 고작 1개 역사(驛舍)만 설치하는 것은 후대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임.

○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지구로의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을 포함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예산 반영을 건의드리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오진택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주 문

○ 충남 홍성군~화성시 송산 간 서해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의 지하화 요구 묵살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꼼수만 부릴 뿐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재까지도 서해복선전철 건설 강행을 계속 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현장방문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서해복선전철은 경부선 물동량 조절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 홍성군~화성시 송산 간 90.2㎞구간을 잇는 간선철도로서, EMU열차와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화물이 다닐 예정임. 그러나 향후 서해복선전철 운행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음.

○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의 지하화 요구에 대해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묵살해 왔으며, 지하화 요구 이외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천막농성 중인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선량한 주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지경임.

○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서해복선전철 노선의 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함께 주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고자 하며, 경기도지사의 현장방문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6일, 정대운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축소된 각종 사업 재개를 점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양화를 구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정치·군사적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공익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앞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달성과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것임.

○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는 통일준비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함.

(4)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라.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해 시의성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진행하라.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6일, 정대운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한차례도 바뀌지 않은 '연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 기준액으로

인해 '세무상 부담완화'라는 간이과세 제도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 2000년 대비 2017년 간이과세 사업자는 2만3천명 감소했고, 전체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사업자 비율 역시 2000년 53.6%였던 것이 2017년엔 29.6% 수준으로 감소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음.

○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주요내용

○ 20년 가까이 동결된 채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인상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라.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소득세법 상 간편장부 기재 대상자와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일치하도록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금액을 6,000만원으로 하고, 건의안 본문 두 번째 문단 내용 일부에 불분명한 표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박스 문단 중 "1억원"을 각각 "6,000만원"으로 한다.

○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96년부터 도입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례를 허용해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7일, 김종찬 의원 등 3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제안이유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법제화를 통하여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⑷ 주요내용

○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우리사회의 단면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더라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받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임.

⑸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⑹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4. 기 타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⑴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27일, 경기도의회 의장

⑵ 소관위원회 : 본회의

⑶ 제안이유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함.

⑷ 위원선임

○ 선임위원수 : 2명

※ 기선임(2018. 7. 23.) : 26명(더민주 24, 한국당 1, 정의당 1)

연 번	교섭단체명	의원명	소속 상임위	지역구	비 고
1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산1	
2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건설교통위원회	남양주2	

⑸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⑹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3장 제331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3장 제331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10월 16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	출석의원 141인
	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 1차, 기획재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1차, 제1교육위 1차, 도덕성검증위 1차, 지방자치분권특위 1차	
10월 17일 ~ 10월 22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경제과학기술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제2교육위 1차, 도덕성검증위 2차(이상 17일) 안전행정위 1차(이상 22일)	
10월 23일 (화)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7건	출석의원 142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10월 16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남종섭·허원·양운석·김철환·이창균·추민규 의원)을 실시하였으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방재율·김직란·백승기·배수문·황수영·김경희 의원)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7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36건이 접수되어, 26건(원안 21, 수정 5)을 처리하고 10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1차	2018. 10. 16.(화) (11:39~12:24)	141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 자유발언 (남종섭·허원·양운석·김철환·이창균·추민규 의원) 1.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8. 10. 23.(화) (10:05~12:24)	142	※ 5분 자유발언 (방재율·김직란·백승기·배수문·황수영·김경희 의원) 1.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4.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15.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16.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18.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19.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20.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결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30.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3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42.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4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48.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49.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50.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51.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55.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56.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5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오늘부터 제331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경기'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육을 교육답게'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주인인 경기도민 여러분! 벌써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임기

4년 중의 1할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새롭게 개원한 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도의회 142명 도의원의 공약이 하나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가장 값진 성과는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약관리T/F팀을 통해 31개 시군의 도의원 공약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과의 공약은 모두 4,19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다시 위원회별로 분담해서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공약의 공통분모를 묶어서 경기도 33건, 경기도교육청 10건 등 모두 43건의 정책제안 목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약 공동관리에 있어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방의 자치와 분권이 더욱 절실함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100일이 지나고 이제부터 도민들의 냉엄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제10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리·감독 기관이 비록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포천 화력발전소 폭발사고, 고양시 유류저장탱크 대형 화재사고와 같이 도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 사안은 감사 대상에 넣고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비판 못지않게 건전한 정책대안이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최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다소 어수선합니다.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도 한 해의 결산과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요체는 '두려울 외(畏)' 한 글자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공직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도민 행복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최승원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 세출 사용계획을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며,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해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예비비 최소화를 위해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김인영 의원 등 50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7년 12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 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 기존의 도내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따복택시⇒경기복지택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의 포괄적 관리와 운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의 명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따복택시에서 경기복지택시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함(안 제명,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 복지택시의 운행가능 지역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범주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김규창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무료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의 무료 개방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차장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 서식).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김진일 의원 등 41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철도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명 및 불일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맞춰 보상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명 및 불일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맞춰 보상기준을 따르도록 현행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별표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 제7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안 제1조, 제3조, 제10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일부 조항이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불필요한 중복 조항을 삭제함(제5조제1항제3호).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김명원 의원 등 39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능동적인 교통현황 변화에 대한 대처와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단서신설).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분야 공무원과 교통관련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로 점검자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제2호 신설).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15~30명 이내의 구성원을 10~15명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2항).

○ 도로점용공사 완료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김경일 의원 등 3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됨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교통약자는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승합차, 택시 등)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일반·개인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2018. 6. 12., 시행 2018. 12. 13)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일반·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별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3항).

○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 이 조례의 시행일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에 맞춰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시·군 조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후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혼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중복조항인 후단을 삭제함(제20조의4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8일, 문경희 의원 등 43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중독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일, 김인순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따복기숙사"라는 명칭을 "경기도기숙사"로 변경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임을 분명히 하고, 숙식 등 편의제공이라는 기숙사의 보편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변경하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따복기숙사"를 "경기도기숙사"로 함.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기숙사의 정의 및 기능 중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개정 및 제4조제2호의 삭제).

○ 입사생 자격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또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서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일, 남인순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내 정서·행동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현행 조례에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지역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주요내용

○ 도지사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의6).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김경호 의원 등 60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득기반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더 큰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또한 열악한 도로환경 등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에는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도 차원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통비 지원대상을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절차 등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상위법에 맞게 제명 수정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명 중 "농어촌 학생"을 "농어촌학교 학생"으로 수정함(제명 변경).

○ 정의 중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오탈자를 수정함(제2조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정대운 의원 등 47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4년차에 접어들고 문재인정부 이후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1,33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의 자체 홍보대사를 임명·운영함으로써 각종 행사와 홍보물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결격사유, 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위촉 해제의 사유를 규정(안 제6조)

○ 홍보대사의 예우(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홍보대사의 자격에 결격사유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위촉 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 홍보대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 의장이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정함(안 제3조제1항).

○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원미정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사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는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희생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아울러,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의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희생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 범위를 정리함.

(수정 주요내용)

○ 제4조 지원사업의 각 호의 지원내용을 정리 및 삭제하고 제6조의제3항제4호의 “안산지역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일부 조문을 정리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오지혜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제안이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산업체계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자체 과학기술 관심도 및 투자는 이러한 수요증가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개 지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2018. 6. 30. 기준).

① 운영 중 :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② 미운영 :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전라북도

○ 이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지원과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김중식 의원 등 33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2018년 6월 기준, 청년실업자의 수는 38만 8천명으로 청년실업률이 9%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적으로 큰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요는 높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계존속의 직업을 물려받은 가업승계 청년상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4) 주요내용

○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안기권 의원 등 39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배수문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현행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벽면 이용 간판을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이선구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시 학교용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2016.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권락용 의원 등 5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청년의 공공기관 행정체험의 기회제공과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규정 및 연수범위를 지정하고,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사업소 등으로 연수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연수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아르바이트” 용어를 삭제하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위주의 연수 경험을 제공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 의회사무처 등에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

○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으로 정함(안 제3조).

○ 행정체험연수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확대하고, 선발우선순위의 '연장자'를 '고학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행정체험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확대함.

○ 각 순위가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우선을 "고학년" 우선으로 변경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이원웅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함(안 제10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오광덕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함(안 제11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김봉균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강태형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명칭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하고 서바이벌 체험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사용요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격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사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를「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3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사격테마파크 시설의"를 "사격테마파크"로 수정함(안 제4조).

○ "변경할"을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로 수정함(안 제8조).

○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100분의 80 감경대상 신설(안 제13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정윤경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2018. 4. 17. 제정되어, 2018. 10. 18 시행 예정인「바둑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바둑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서현옥 의원 등 49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방분권'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고,

○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된 '자치분권'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자치분권협의'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

○ 또한, 16개 시·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민간인인 점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지방분권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변경함(안 제9조제2항)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함(안 제9조제3항)

○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함(안 제1조~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이필근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8. 6. 27.)됨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재난대응활동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상·원인·과정·결과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함(제4조).

○ 소방활동 종사명령 또는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인적손실보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물적손실 보상기준을 정하고 청구기한을 정함(안 제8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김미리 의원 등 62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위해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대한 충전소를 설치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 현재 도내 시·군마다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장애인들이 충전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충전소 설치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충전소 설치 지원내용(안 제5조)

○ 충전소 설치결과 요청(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내용 중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시·군은 기 설치된 충전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박세원 의원 등 49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제24조의2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교 운영위원의 자격을 해당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의 소지와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학교의 과잉 자격제한 우려가 있음.

(4) 주요내용

○ 운영위원의 자격을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삭제)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4일, 장현국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문

○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이유

○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연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센토사 합의가 선언되는 등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음.

○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는 북한과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장과 도약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음.

○ 과거 경기도,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과거 한반도의 중심이었으나 분단 이래로 군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중첩규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성장과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남북평화협력의 확대는 경기도와 경기북부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따라서 경기도가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향후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이자 신경제지도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도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 정책을 고안하며, 통일역량 제고와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과거 우리 도의회에서 운영해온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다 한층 확장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사업 분야도 남북협력기금 사업에서 더 나아가 남북경협, 통일경제특구 등 평화경제협력 사업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신설함.

(수정 주요내용)

○ 주요활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주요 활동 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점검

② 남북경협, 통일경제특구 등 평화경제협력 정책 발굴 추진

가.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방안

나. 문화·체육 분야 교류 정책

다.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SOC 정책

라. 생태관광지 및 휴양산업 육성 정책

마. 양묘장 조성 등 농·축·산 교류정책

바. 재생에너지 등 협력 정책

사. 긴급구호(의약품, 식량, 재난 등)정책

아.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정책

자. 보건의료 협력 정책

차. 교육·역사·학술 협력 정책

카. 기타 남북 평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③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④ 도의회 방북 추진단 구성·운영 등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김장일 의원 등 44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주문

○ 경기도 내 고용노동 행정 수요 처리를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은 중부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이 경기북부, 경기남부를 따로 관할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지방고용노동청의 구조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경기도 내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함.

(4) 제안이유

○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 수요 처리를 위한 노동청은 경기지역 전체를 총괄하지 못하고, 중부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으로 이원화된 운영을 하고 있어 경기도 내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 마련과 유기적인 협조의 어려움이 있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가지고 있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광역자치단체이기에 고용노동행정 수요가 높아 중부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이 고용노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북부 노동자 및 노동단체는 민원처리를 위해 먼 길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음.

○ 고용노동행정 처리 체계의 비합리성 문제와 노동행정 수요의 확대 대비 측면에서 볼 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권락용 의원 등 8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문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개정을 건의함.

(4) 제안이유

○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규정함으로써,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서 평균가를 적용하고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당시 분양주택보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 촉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짐.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임차인이 건의하는 '감정평가액 이하'의 가격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음.

○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들이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함.

○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기 타

□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4)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13명(더불어민주당 12, 자유한국당 1)

(5) 선임위원 명단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기획재정	광명2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보건복지	양주1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도시환경	광명1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보건복지	비례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문화체육 관광	시흥1	더불어민주당	임창열	안전행정	구리2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제1교육	시흥2	더불어민주당	국중현	안전행정	안양6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제1교육	성남7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경제과학 기술	고양9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문화체육 관광	성남1	자유한국당	허원	경제과학 기술	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창균	도시환경	남양주5				

(6)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7)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4)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17명(더불어민주당 15, 정의당 1, 바른미래당 1)

(5) 선임위원 명단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도시환경	과천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보건복지	의정부2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제2교육	수원4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도시환경	광명1
더불어민주당	원용희	도시환경	고양5	더불어민주당	박덕동	제2교육	광주4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농정해양	고양7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보건복지	양주1
더불어민주당	황진희	제1교육	부천3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제1교육	의왕2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문화체육 관광	안산6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여성가족 교육협력	비례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경제과학 기술	안산8	정의당	송치용	제2교육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경근	제1교육	남양주6	바른미래당	김지나	경제과학 기술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제1교육	평택2				

제4장 제332회 정례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4장 제332회 정례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4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6차, 위원회는 총 7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11월 6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출석의원 139인
	위원회 활동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1차, 제1교육위 1차	
11월 7일 (수)	제2차 본회의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7명) - 5분자유발언(5명)	출석의원 142인
11월 8일 (목)	제3차 본회의 -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등 5건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6명) - 5분자유발언(6명)	출석의원 141인
	위원회 활동 평화경제특별위 1차	
11월 9일 ~ 11월 25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제2교육위 1차(이상 12일) 제2교육위 2차(이상 14일) 제2교육위 3차(이상 16일)	
11월 26일 (월)	제4차 본회의 - 2018년도 제2회 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	출석의원 128인
	위원회 활동 문화체육관광위 1차, 보건복지위 2차, 도시환경위 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2차, 제1교육위 2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 2차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11월 27일 ~ 12월 13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경제과학기술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3차, 건설교통위 3차, 도시환경위 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3차, 제1교육위 3차, 제2교육위 4차 (이상 11월 27일) 기획재정위 1차, 경제과학기술위 2차, 안전행정위 2차, 문화체육관광위 2차, 농정해양위 2차, 보건복지위 4차, 건설교통위 4차, 도시환경위 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4차, 제1교육위 4차, 제2교육위 5차 (이상 11월 28일) 의회운영위 1차, 기획재정위 2차, 경제과학기술위 3차, 농정해양위 3차, 건설교통위 5차, 제1교육위 5차, 제2교육위 6차 (이상 11월 29일) 안전행정위 3차, 농정해양위 4차, 제1교육위 6차 (이상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 1차 (이상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 2차 (이상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 3차 (이상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 4차 (이상 12월 6일) 안전행정위 4차(이상 12월 12일)	
12월 14일 (금)	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42건	출석의원 139인
	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 2차, 농정해양위 5차, 예산결산특별위 5차	
12월 15일 ~ 12월 20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3차, 문화체육관광위 3차, 보건복지위 5차, 건설교통위 6차, 도시환경위 6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5차, 제1교육위 7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 1차 (이상 12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 4차, 제2교육위 7차 (이상 12월 18일) 경기도친환경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 1차 (이상 12월 20일)	
12월 21일 (금)	제6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6명)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2건	출석의원 138인
	위원회 활동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1차	
	※ 폐회중 경기도친환경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 2차 (이상 19년 1월 11일)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위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 2차 (이상 19년 1월 15일)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1차(이상 19년 1월 28일) 평화경제특별위 2차(이상 19년 2월 11일)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11월 6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박관열·한미림·오진택·김미숙·이영봉·권정선 의원)을 실시하고 '제3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개의하여 일문일답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창순·김규창·신정현·김강식·김미리·김명원·심규순 의원)을 실시하고, 5분자유발언 (심민자·박세원·국중현·황진희·김영해 의원)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을 처리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윤경·유영호·정승현·유상호·오지혜·채신덕 의원)을 실시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이동현·송치용·김봉균·최승원·강태형·김은주 의원)을 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을 의결하였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양경석·김종배·김인영·안기권·최경자·전승희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42건을 의결하였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윤경·송치용·이필근(수원1)·김진일·김직란·장대석 의원)을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82건을 의결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8건이 접수되어, 59건(원안 44, 수정 11, 부결 2, 철회 2)을 처리하고 49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석 의원수	심의안건 등	의결 형태
1차	2018. 11. 6.(화) (11:16~12:00)	139	※ 5분 자유발언(박관열·한미림·오진택·김미숙·이영봉·권정선 의원) 1.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8. 11. 7.(수) (10:04~17:11)	142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7명) - 일문일답 : 박창순·김규창·신정현·김강식·김미리·김명원·심규순 의원 ※ 5분 자유발언 (심민자·박세원·국중현·황진희·김영해 의원)	
3차	2018. 11. 8.(목) (10:06~17:22)	115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5. 휴회 결의의 건 6.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6명) - 일괄질문 : 정윤경·유영호·정승현·유상호·오지혜·채신덕 의원 ※ 5분 자유발언 (이동현·송치용·김봉균·최승원·강태형·김은주 의원)	시정연설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4차	2018. 11. 26.(월) (10:08~10:17)	128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 결의의 건	제안설명 가 결
5차	2018. 12. 14.(금) (16:03~18:13)	139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5분 자유발언(양경석·김종배·김인영·안기권·최경자·전승희 의원)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 5.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7.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8.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결
			9.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결
			10.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결
			11.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12.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	가 결
			22.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2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31.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32.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33.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34.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35.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3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3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결
			38.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가 결
			39.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결
			40.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4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결
			4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가 결
6차	2018. 12. 21.(금) (10:05~13:04)	138	※ 5분 자유발언(정윤경·송치용·이필근(수원1)·김진일·김직란·장대석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가 결
			2.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 결
			3.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 결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 결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가 결
			7.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8.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 결
			9.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 결
			10.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 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결
			12.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1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가 결
			31.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가 결
			3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가 결
			3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3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4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52.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55.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가 결
			5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7.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가 결
			58.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9.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가 결
			60.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가 결
			6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67.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68.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69.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 형태
			70.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71.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72.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7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5.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가 결
			7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7.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7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7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1.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8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오늘부터 제332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경기'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육을 교육답게'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달 29일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이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재정분권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권재민에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주권 내용이 골자를 이룹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서 가장 힘들었던 재정분권 비율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2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기에 감회가 깊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하며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12월 중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길목에서 도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토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네트워크 사업도 활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파주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강원도의회와 평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와 철도 등 동서횡단 교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DMZ 생태보존 공동연구에 함께하며 남북 공동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지방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결실이 주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밑거름으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립니다. 우리 의회는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안과 해법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경기도 예산은 약 44조 규모로 예상되며 의원 1인당 3,000억에 이르는 금액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성수석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김성수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따른 수행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20항).

○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리함(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최경자 의원 등 5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나 지인들과 어울리다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도내 학생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예방 교육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 도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학생 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실질적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오진택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점검요원을 추가하며, 조례의 중복 조문 및 용어 등을 새로이 재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전점검'의 용어를 새로이 재정비함(안 제2조제1호·제2호).

○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5호 신설).

○ 점검요원의 구성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같은 항 제4호 신설).

○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8조 삭제,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조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새롭게 정비함(안 제4조제4항제6호, 제5조 및 제6조 개정, 제11조의 제목).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오명근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의2호 신설).

○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최종현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로 개정함.

○ 조례의 근거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함(안 제1조).

○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김영해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도 소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의 대관 사용료 등의 이용자 납부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인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의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권재형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점 부과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제1호·제2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입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담합에 관한 부정행위의 감점 적용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적용기간을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수정(안 별표의 제1호 적용기준).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조재훈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도지사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자체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권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품질·비밀유지 의무, 겸직금지, 운영협의회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효율적인 건설공사의 시민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을 비롯한 임기 등을 수정하고, 발주자와 시민감리단의 임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수정 주요내용)

○ '감리'에 대한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감리대상 공사의 지정 및 통보, 발주자의 시민감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상근·비상근직 형태의 시민감리단을 시민감리 전담조직으로 수정하고,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대해 수정함(안 제6조).

○ 시민감리단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7조).

○ 발주자와 시민감리단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신설함(안 제9조).

○ 매년 시민감리단의 도지사 보고 내용 중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유상호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에 관하여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이창균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빈집의 철거 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로 정함(안 제5조)

○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함(안 제1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 순위를 규정함(안 제20조)

○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21조)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 및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연면적대비 20퍼센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권락용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자투표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전승희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죄율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을 일부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도록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주요내용

○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바목 신설).

○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건전한 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기관 지원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7호 신설).

○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등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3호 및 제4호 신설).

○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제3호 신설).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제10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김동철 의원 등 3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숲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이에 경기도 내 도시숲 면적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의 면적이 일정 기준(시·군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도시숲 조성 확대를 위해 생활권 도시숲 면적 1인당 기준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경기도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조제2항).

○ 개정지시문에서 "제4조"를 "제4조제2항"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황대호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민의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 미흡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과 활용이 미진한 실정임.

○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적극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현행 조례는 당초 입법형식과 체계가 미흡하므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제8조 제목 “(협조)”를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후단 “협조에 응해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9조 상위법령인 조례가 하위법령인 교육규칙을 따르도록 한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조 제목과 조문을 정비.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6일, 김경희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지역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책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자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속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해 동네의 지역서점은 경영악화로 인해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 지역서점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가 교육의 매체인 책을 구매함에 있어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지역서점과의 협력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서점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4호,5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대상에 공공도서관을 추가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를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을 말한다"로 함.

○ 안 제3조제1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

○ 안 제5조제4호를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6일, 김직란 의원 등 41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지난 2018년 9월 27일 수립된 「20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기준 중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 또한 사업별 최대 지원가능한 보조금(10억원)의 한도를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율을 30% 이내로 한정하되,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 중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보조금 지원 기준 중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2개 사업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의 30% 이내(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1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6일, 김경일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 8월 3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실질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사납금의 형태로 납입받는 행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법령에서 규정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수익을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이나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업체 수익 증대로만 활용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사납금 부담을 줄이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기대수익을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개선 이행계획을 강화하고,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 및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익 증대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신설).

○ 택시요금 인상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개선 이행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1항).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확인 및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이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는 규정을 둠(안 제11조의2 제2항 후단 신설).

○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개선 이행 계획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감차명령 및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이종인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9.4.17.시행)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동일한 위원이 위촉된 상태여서 두 위원회의 위촉 대상 위원의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만 포함된 '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위촉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6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정대운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3,700여 억원의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4조와 관련해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별표 제24호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박관열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2018. 12. 31. 만료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로 연장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황진희 의원 등 7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 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9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지정을 규정함(안 제10조)

○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경비보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원미정 의원 등 57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본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익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조례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일부를 보완하고 명료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함.

(수정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 추가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제4호).

○ 위탁의 취소에서 일정한 사항의 위반 주체를 명료히 함(안 제11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이영주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일회성 시상만을 다루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착한기업에 대해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착한기업 인증 및 재인증 후보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착한기업 인증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착한기업 인증 후보기업 추천자를 규정함(안 제6조).

○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인증기업에 대한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인증기업의 취소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8일, 조광주 의원 등 47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제안이유

○ 올해 초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

○ 기존 석유로부터 연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기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친환경소재 생산과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함(안 제6조).

○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민경선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명예감사관 제도는 '명예직' 개념이어서 위촉된 도민 감사관이 실제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 제도는 상근직 2명이 비상근직 13명과 함께 민원 감사 및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유치원 비리를 밝혀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에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해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감사부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성 제고 및 위법·부당한 사항 개선 등에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함.

○ 시민감사관을 상근직을 포함한 총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 상근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도지사가 일반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비상근직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보건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위촉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상근직 및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 등 시민감사관의 권한, 활동실적 보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위촉대상, 감사 참여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업무 지원, 직무 제한, 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것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 강화 및 감사 참여 등으로 민간전문감사관을 별도 운영할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 있음.

○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와 약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이 강화 및 감사 참여 등으로 현행 민간전문감사관 제도 운영실익이 없어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를 비롯해 민간전문감사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함.

○ 제명에서 "등"을 빼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함.

○ 민간전문감사관 폐지 및 시민감사관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수를 70명으로 증원함.

○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와 약어 등을 정비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임성환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영화 등의 제작의 근간이 되는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과 이를 통한 제작 등을 지원하여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용성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체육' 분야를 국제문화교류 대상 분야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2019년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 '체육' 분야를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포함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체육"을 추가함(안 제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수정안 요지〉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안광률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문화예술인들은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활동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2018. 10. 16.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3항을 개정하여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에서 보호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2019. 1. 19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내 예술인들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피해구제 지침마련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양운석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가 한국도자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관리위탁 등을 하는 경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 한국도자재단의 사무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 및 관리위탁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5조).

○ 한국도자재단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경호 의원 등 39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도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국내외 연수,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농어촌민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에게 사업을 신청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7조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중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농어촌민박사업계획서 등을"을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통해 경기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제3항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를 "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으로 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신정현 의원 등 49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교육에 머물러 있음.

○ 이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정비하며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운영 및 경기도형 교재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남북한 간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평화통일교육”으로 개정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평화통일위원회, 제3장 평화통일교육 지원으로 장을 신설함.

○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이념을 규정해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통일계획 수립 내용에 이주배경도민(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통일교육 방안을 포함함(안 5조).

○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를 “평화통일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 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함(안 제11조).

○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해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하며, 전문강사로 구성된 전문강사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시·군별 평화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하위 시·군의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군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평화통일교육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음.

○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와 약어 등을 정비할 필요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에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과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연차별 이행 상황 점검"을 추가함.

○ 안 제7조제3항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이 위원회 운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안 제8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

○ 안 제1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지방공기업등"으로 수정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해 반영함.

○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와 약어 등을 정비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유광국 의원 등 39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말산업은 개인의 레저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의료분야와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서도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 정착 시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향후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단일 축종으로서는 최초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 인프라 및 승마인구 등 제반여건에서 앞서 있는 경기도가 말산업 입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 포함)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3,700억여 원의 경마부문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정희시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2018. 6. 12. 치매관리법 개정(시행일 2018. 12. 13.)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반영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성 확립 위한 명칭과 위·수탁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제명).

○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에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으로 변경함(안 제1조).

○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의 주체성 확립 위해 변경함(안 제2조).

○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 위·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제6항).

○ 위·수탁이 해지된 경우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8조제2항).

○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지정 주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이영봉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도록 함(안 제7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이애형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노인 등 한정된 대상에게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하여, 경기도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제1호 각 목 신설).

○ 의약품판매업자의 예시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5호).

○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7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박태희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개선으로 정책결정과정 상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 “5인 이상”을 “15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5항).

○ 청년정책위원회의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0항).

○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항).

○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항목 중 “보건, 결혼, 보육” 외에 “그 밖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 항목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왕성옥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함(안 제5조).

○ 매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권정선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경기도에 협조를 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를 통하여 경기도의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한 원활한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감염병이 2개 이상 시·군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감염병 예방·관리업무 협조에 따른 비용 및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조성환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내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보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도내 시·군의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8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박재만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는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시·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 및 농작물 피해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배수문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등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 도지사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이필근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가로등·석축·옹벽·옥상(방수)·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종찬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미성년 자녀의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이혼·사별 등 한부모 가족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7호 신설).

○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등을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박옥분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동상 등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5일 이상 입법예고(2018. 11. 21.~ 27.)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4)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호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을 “건강관리비”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의 위로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안 제6조의2는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교육·홍보사업, 국제교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원기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범사업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민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도민참여를 규정함(안 제6조).

○ 시범사업 지역, 규모, 방법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사업평가,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환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9조에서 '해당 시범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위원회 기능에 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해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에서 '해당 시범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삭제함.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위원회가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현삼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 이자지원을 대학원생에게도 지원하여 학자금 이자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대학'에 대학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학생'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 '대학생'에 '대학원생'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및 제3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진용복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의 이용고객 다양화, 시설고급화 등 수요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신규 시설 설치에 의한 사용료 부과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등의 감경규정을 두는 등 신규시설의 운영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수련원과 야영장에 신규 설치된 카라반, 일반야영지, 글램핑 시설에 대하여 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경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제17조 제4항)

○ 신규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 및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취소시기별로 위약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제18조 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신규시설(소규모)인 카라반, 글램핑의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숙박업”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시설의 예약취소 시 환불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 제18조 제1항은 기존수련활동 등 기존 대규모 이용시설에 대한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규시설(소규모)인 카라반, 글램핑은 제18조 제1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숙박업’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시설의 예약취소시 환불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18조 제3항을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성준모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며, 공익제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공익제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 도모.

○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함.

○ 공익제보 대상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국민권익위원회, 2017.8.9.)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추가함.

(4) 주요내용

○ 각급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등의 공익제보 범위 확대(제2조).

-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 '교직원등'에 경기도교육청 파견 근무 직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추가.
- '공익제보' 대상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추가.

○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8조).

○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 신설(제9조).

○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공익제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심의 내용 추가(제11조).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기준 및 중복지급 금지, 환수 규정 신설(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부가 업무처리함에 있어 명확한 해석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의적 표현을 수정함.

○ 잘못 인용된 조문과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요건을 수정하며,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3호바목 중 "각 목"을 "위 각 목"으로 함.

○ 안 제2조5호 중 “제보”를 삭제함.
○ 안 제3조 제명 중 “시민”을 “도민”으로 함.
○ 안 제8조제1항 3호 “공익제보위원회”를 “수사기관”으로 함.
○ 안 제9조 중 “공익신고”를 “공익제보”로 함.
○ 안 제10조제3항 중 “처리에 대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를 “처리가 가능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로 함.
○ 안 제11조제1항4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함.
○ 안 제18조제1항 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함.
○ 안 제19조를 수정함.
○ 안 제25조 제명 중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함.
○ 별표 중 포상금액을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박세원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추민규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생리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이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시급히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교의 경우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생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여성들의 건강할 권리이자 인권의 문제,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건임을 감안하여, 주변에서 생리대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함.

(4) 주요내용

○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학생 복지 강화를 위해 학교 재량으로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곳은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자화장실에는 생리대 및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미리 의원 등 43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분야에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나, 한정된 공무원 감사인력만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하여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임(안 제3조제1항).

○ 역량 있는 시민감사관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 시민감사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조사 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4)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수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시민감사관의 임기 중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신분보장과 면직 또는 위촉·해지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시민감사관 또는 그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을 맡지 못하도록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감사관의 수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수정함.

○ 안 제4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박덕동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는 학교 밖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현재의 사업 신청 요건에는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도덕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신설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등을 바로 잡고자 함.

(4)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잘못 인용된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꿈의 학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제2항 1호 중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를 '단체(개인)소개서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로 하고,

○ 안 제9조제2항 2호 중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황대호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보은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기도교육청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직속기관장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장을 포함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재정 총규모는 29조 1,416억원으로 제1회 추경액 28조 7,581억원 대비 1.3%인 3,835억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3조 9,988억원으로 제1회 추경액 23조 6,349억원 대비 1.5%인 3,639억원 증가
- 기금은 5조 1,428억원으로 제1회 추경액 5조 1,232억원 대비 0.4%인 196억원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제2회 추경안(A)	'18년 제1회 추경액(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91,416	287,581	3,835	1.3%
예 산	239,988	236,349	3,639	1.5%
일반회계	208,690	206,229	2,461	1.2%
특별회계	31,298	30,120	1,178	3.9%
기 금	51,428	51,232	196	0.4%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등 16,066백만 원 증액 및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1,925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30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개요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조 2,788억원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16조 2,920억원으로 0.1%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추경 증감	
			금액(B-A)	비율
총규모	162,788	162,920	132	0.1%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용〉

○ 세입세출 금액조정 없이 세출예산안 중,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 원가통계목 변경.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경기도 재정 총규모는 29조 4,535억원으로 전년도 26조 8,046억원 대비 9.9%인 2조 6,489억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4조 3,604억원으로 전년도 21조 9,765억원 대비 10.8%인 2조 3,839억원 증가
- 기금은 5조 931억원으로 전년도 4조 8,281억원 대비 5.5%인 2,650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 감 (C=A-B)	증가율 (C/B)
총 계	294,535	268,046	26,489	9.9%
예 산	243,604	219,765	23,839	10.8%
일반회계	210,849	191,348	19,501	10.2%
특별회계	32,755	28,417	4,338	15.3%
기 금	50,931	48,281	2,650	5.5%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내부유보금 등 179,058백만 원 증액 및 출연금 등 166,525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개요

○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규모는 15조 4,177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0%, 8,692억원이 증액 편성됨.

(단위 : 억원)

2019년 예산안(A)	2018년 예산액		증감액 및 비율	
	본예산	제3회 추경예산	본예산 대 비	추경예산 대 비
154,177	145,485	162,920	8,692 (6.0%)	△8,743 (△5.4%)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용〉

○ 내부유보금 등 38,177백만 원 증액 및 교육시설안전개선 등 38,177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건의·결의안

□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김우석 의원 등 60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석탄분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원인, 관리책임, 재발우려 등에 대해 조사하고, 2014년경부터 다수 포천주민들이 제기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와 불법 의혹 및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에 대해 조사할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함.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이유

○ 지난 8월 8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는 일반산업단지인 장자산업단지 내 시설로 시범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 포천시와 경기도의 안전관리 책임 준수 여부, 재발우려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함으로써 도내 대형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이번 폭발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 사고가 아니라 대다수 포천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건립이 강행된 것과 연관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있음.

○ 석탄발전소 건립 이전부터 이미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포천시에 GS석탄발전소가 건립된 배경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특혜와 불법 의혹 특히 포천시 또는 경기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그리고 에너지브로커와의 관련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함.

○ 또한 내년부터 본격가동 예정인 석탄발전소 각종 배출물의 직접적 환경오염물질 그리고 GS가 인천에서 포천까지 트럭으로 석탄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분진피해 등 환경피해 영향도를 조사하고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환경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함.

○ 그동안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포천주민들의 각종 의혹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보호의 책임을 해태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번 폭발사고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불법성이 밝혀지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지게하고, GS석탄발전소가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이동현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국가적·사회적 난제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 공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률과 주거빈민율 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이유

○ 청년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적·사회적 난제 중의 난제가 되었음. 고학력 졸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실업률은 미결혼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래 내지 존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임.

○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국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근 2년간(2017~2018년) 일자리 재정에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양적 지표의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인 청년(25세~34세) 가구 비중이 20%에 이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국 이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저소득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고 이마저도 젊은 층은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오늘날의 청년들은 고속 성장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세대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동과 배움에 매달렸던 것과 달리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경험의 추구

및 공유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요즘 청년들의 이러한 인생관 및 가치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실업률, 결혼 기피 현상, 1인 가구 비중 및 주거빈곤율의 증가 등은 상호 독립적이 아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장의 실적을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정책수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요구됨.

○ 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일자리(취업·창업), 주거, 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현삼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이유

○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5,300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7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잠정 집계액은 2만 9,745달러이며, 금년 중으로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하지만 지난 7월 15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최근 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총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59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은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지나친 과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도 금년도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측의 실적 강요와 같이 불합리한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당해고 등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한편 지난 10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04만 5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금년도 8월 기준, 661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우리사회에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만연한 갑질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시 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등 근로인권 피해는 심각한 상황임.

○ 이에 현 정부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축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설정,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민의 인권피해 구제 및 사전 예방 등 지원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특수고용 근로자, 비정규직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인권 피해사례 등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 관계자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5일, 유상호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건의이유

○ 군 훈련장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미활용 군 징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려 함.

(4)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미활용 군 훈련장 징발지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부지의 국유지 편입비율에 대해 제한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고, 미활용 군 훈련장 징발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정평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하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건의안의 제명을 본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

○ 건의안 본문과 붙임 자료(개정 건의안)를 일치시킬 필요.

○ 건의안의 법률과 제도 개정 요구내용을 명확화 시킬 필요.

(수정 주요내용)

○ 건의안의 제명을 '접경지역 내 수용 토지의 매각방식 변경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함.

○ 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중 국가가 수용한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의 신설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함.(전부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경호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문

○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와 달성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라.

○ 한강수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수질관리제도의 통합을 시행하라.

○ 그동안 희생을 감당해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4) 제안이유

○ 98년부터 추진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으로 한강은 현재 BOD 1.3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팔당유역 주민들은 여러 법률에 산재한 이중삼중의 지나친 규제로 심각한 재산상 손실과 지역 발전 정체를 감당해 오고 있음.

○ 이에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팔당유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묵과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팔당유역 관련 법규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심규순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문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서 환경부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확대와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조속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 건의함.

(4) 제안이유

○ 최근 수도권 2천 6백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 조류, 맛냄새 물질 발생으로 인해 수돗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김영준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써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촉구 건의함.

(4) 제안이유

○ 1971년 7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해당 지역 주민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되고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은 재산권 제한 및 생업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지난 2016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였듯이, 개발제한구역에도 원주민 생업을 위하여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세차장의 설치를 허용(다만, 사망에 의한 상속은 가능하나 타인에게 매매 금지)하도록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9일, 남운선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연장하고 하자분쟁발생 시 원활한 분쟁해결 및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함.

○ 공동주택 신축 시 공사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따른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보상 다툼도 심각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도 법개정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함.

(4) 제안이유

○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로 인한 분쟁 시 국토교통부에 모든 권한이 있어 지역에서 스스로 분쟁 조정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또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 시 주변 공동주택 주민으로부터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분쟁에 따른 과도한 또는 경쟁적 보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하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보상보다는 충실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보수 분쟁 시 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두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 공립요양병원은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2017년 9월)에 따라 치매안심요양병원을 구축·운영 중이며, 입원 환자의 70~90%가 치매 환자로 이중 대다수는 정신행동증상 혹은 치매에 동반된 신체 질병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입원한 환자임.

○ 치매전문병동에서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하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예술, 원예, 음악 등 다양하고 개별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정신행동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정신의학 치료까지도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지역사회의 치매환자를 앞장서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장애 및 정신행동증상 치료와 간호에 책정되는 낮은 수가, 인지자극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지원 대책 미비, 포괄수가로 인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진단 평가 기능 상실 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제공은커녕 질적으로도 낮은 치매 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음.

(4) 주요내용

○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동에 입원한 치매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개선을 촉구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4. 기 타

□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0일, 김직란 의원 등 62명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조사목적

○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의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이 제기된 바,

○ 지난 민선 6기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과정과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입찰, 입찰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낙찰취소,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4) 제안이유

○ 2015년 당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의 흑자 노선인 영통과 광교 정류장을 타업체에 이전한다.

○ 2018년 초 한정면허로 허가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가 경영여건도 좋고 근로조건도 제일 좋고 고객 서비스도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정책을 전환한다. (시외버스면허로의 정책 전환 사유가 불분명한 상황임. 오히려 시외버스는 업체가 노선의 소유자가 되고 적자일 때는 경기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사익과 공익 모두 나쁜 조건이다.)

○ 따라서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공항버스 정책 관련 일련의 과정과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 과정의 입찰, 입찰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낙찰취소,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 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당시, 경기도 건설본부 옛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이 제기된바

○ 지난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2018년 11월 28일 접수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규명하고자 함.

(4) 제안이유

○ 2006년 2월 당시 경기도는 옛 건설본부 청사의 토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며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14일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를 하였음.

○ 이후 2006년 10월 삼성SDS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년 준공 이후 삼성SDS 데이터센터로 이용하면서 2008년 10월 특약조항을 임의 삭제하게 됨. 그리고 2010년 8월, 삼성전자는 삼성SDS에 부지 소유권을 이전함.

○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SDS가 사용할 부지를 삼성전자가 대리 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당시 건설본부장은 '삼성에서 건물을 지으면 35억원의 세금 이익과 일자리 1,000여개가 생긴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으나, 사실은 삼성SDS 데이터센터로 이용됨으로써 인력의 5% 절감 효과가 있다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임.

○ 따라서 옛 건설본부 청사 부지 매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리 매입과 특약 조항의 임의 삭제 등 계약 해제 사안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도유재산의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및 불법 소지가 없었는지

전반적인 도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입건된 사건과 관련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

○ 장기적 관점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도내 농가와 학교급식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2018년 11월 29일 접수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규명하고자 한다.

(4) 제안이유

○ 2018년 11월 14일 46억원 규모의 경기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의혹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발표되고, 경기도 공무원을 포함 관계자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한편, 11월 19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마늘 공급과정에서 취급자 인증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마늘 탈피작업을 위탁한 사실과 공급대행업체가 수율조작에 의해 부당이득을 사취한 의혹이 제기됨.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수사와는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5장 333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5장 제333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구성된 후 여섯 번째 회의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3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2월 12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	출석의원 141인
	위원회 활동 안전행정위 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1차,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 특별위 1차	
2월 13일 ~ 2월 18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과학기술위 1차, 안전행정위 2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2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2차 (이상 13일) 기획재정위 2차, 경제과학기술위 2차, 안전행정위 3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건설교통위 2차, 도시환경위 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3차, 제1교육위 2차 (이상 14일) 경제과학기술위 3차, 문화체육광광위 2차, 도시환경위 3차, 제1교육위 3차 (이상 15일) 의회운영위 1차 (이상 18일)	
2월 19일 (화)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등 51건	출석의원 124인
	위원회 활동 청년대책특별위 1차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2월 12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동현·허원·송영만·김용성·성수석·황대호 의원)을 실시하고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을 의결 후 '2019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산회하였다.

2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대운·오광덕·김태형·서현옥·김동철·이진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제안설명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50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건이 접수되어, 58건(원안 46, 수정 12) 처리하고 3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2. 12.(화) (11:31~12:52)	136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경기도·경기도교육청) ※ 5분 자유발언 (이동현·허원·송영만·김용성·성수석·황대호 의원) 1.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업무보고 가 결
2차	2019. 2. 19.(화) (10:03~12:26)	141	※ 5분 자유발언 (정대운·오광덕·김태형·서현옥·김동철·이진 의원)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제안설명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가 결
			7.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가 결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가 결
			18.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19.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4.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25.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결
			27.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가 결
			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가 결
			30.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가 결
			3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3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가 결
			3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가 결
			4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가 결
			4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5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19년 첫 회기 시작과 함께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대의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는 설렘도 잠깐, 안산에는 홍역이, 안성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해 연일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추가발생 신고가 없고 홍역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예방 이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각 안산 단원고에서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명예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학생들을 추모하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중심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평화를 갈구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베트남에서 열리게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희소식을 도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만든 평화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새로운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 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강원도의회와 DMZ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는 인천시의회와 평화의 뱃길을 여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평화의 발걸음에는 지역도 당파도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경북 기초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 예정됐던 국외연수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의회마다 제각각 규정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더 기본에 충실한 국외연수가 되도록 국민이 공감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 경기도의회 공직자 소통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이 선출해 준 의원 중심이지만 정책보좌 인력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상적인 지방자치, 지방의회 롤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절기상 입춘을 지나 어느덧 우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도민 여러분께 따뜻한 희망의 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다운 의회, 변함없이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의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3일, 김지나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규모와 내용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관련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규정을 신설함.

(4) 주요내용

○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안 제7조제8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3일, 황수영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제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결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산업혁명으로서, 기존 경기도의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략산업 육성사업 지정대상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및 기관·단체가 포함되므로 이를 총칭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 전략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함으로써 전략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육성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3항제7호).

○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규정함(안 제6조).

○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3일, 허원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마케팅 및 홍보 측면은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을 통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확보와 판매 촉진을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추첨 금품 지급 등을 포함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9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4일, 황진희 의원 등 4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별영향평가가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책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기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공무원 교육 등을 명시함(안 제13조~제14조).

○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4일, 장대석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5. 11. 4. 제정·시행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주요내용

○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제1항 당연직 위원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하고, 제4항제4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무제한 연임을 두 차례로 정하고, 단서 규정은 삭제함(안 제10조).

○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현행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교육청 행정기구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직제명을 수정함.

○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수정함.

○ 안 제10조제5항 중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김은주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이기형 의원 등 44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학교에만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고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의무교육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 제5조제2항을 삭제.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문경희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진용복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정례회 집회일을 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와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대비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시기가 변경될 사정을 반영하여 회기 운영의 명확성·안정성·탄력성 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는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정례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함(안 제4조제1항 단서).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정윤경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편적 관광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경기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및 제15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안광률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운동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신고·상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고·상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2조).

○ 신고·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김용찬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의 신고포상 시 포상금 외에 활용도가 낮은 상품권 또는 소화기, 경보감지기 등의 물품으로 지급해 도민들이 신고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져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변경함.

○ 신고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4조).

○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신고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5조).

○ 현행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발견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게 하려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 신고 자격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경기도 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박옥분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제안이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도 경기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은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비인가 대안학교” 등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교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교복구입에 따른 지원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 교복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김종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사건 및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폭염 속에 7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와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결정시기를 변경함(안 제15조의 4).

○ 2017년 가정보육교사 제도 사업 일몰로 관련 조항에서 내용을 삭제함(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 어린이집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조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3조제4호, 제7호는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안 제15조의4는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육료 결정시기를 변경함.

○ 안 제 18조의 2항의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을 삭제함.

(수정 주요내용)

○ 제3조제4호의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제21조제4항"으로, 제7호의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수정함(현행 제3조제4호 및 제7호 수정)

○ 보육료 결정시기를 "12월 중 다음연도"에서 "1월 말 이내에"로 수정함(안 제15조의4 수정)

○ 안 제18조제2항의 "그 결과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를 삭제함(안 제18조의 제2항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원용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유사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제부터 제17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원용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기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위원회 운영, 회의진행, 의결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이창균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여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박재만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햇빛과 고온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박성훈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관리계획 수립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5조).

○ 위원회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정함(안 제9조).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시,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 친환경 자동차 구입 및 운행,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함(안 제2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 시 관할 시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 경기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김미숙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행정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행정정보 공개방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능·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황대호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도제교육은 단위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체, 인근학교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제교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도제교육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조광희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내 학교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4) 주요내용

○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

○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을 정함

라. 학교의 장은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용어의 통일을 위해 "식자재"를 "식재료"로 수정함.

○ 학교의 장이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중 "식자재"를 "식재료"로 수정함.

○ 안 제5조제3항을 "학교의 장은 인체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일, 송치용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유아모집·선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유아모집·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황대호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특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소음에 빼앗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사업계획과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수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 강구, 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정 등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4호 중 "교원을 위한 가점제 등 지원 방안"을 "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제2항 중 "군부대에 시정을"를 "군부대에 학교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로 수정함

○ 안 제7조제1항을 안 제7조로 하고,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과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함

○ 안 제8조의 제목을 "교직원 우대"에서 "교직원 복지"로 하고, 제1항 중 "국내외"를 "다양한"으로 함

○ 안 제8조제2항 중 “교직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가점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

○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1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함

○ 안 제10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함

○ 안 제10조제4항 중 “담당”을 삭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2월 12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다양화, 시설고급화 등 수요자 욕구변화에 부응하고자 카라반 및 글램핑 등 신규시설 설치로 인한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청소년 수련원 및 야영장에 신규 설치한 카라반 및 글램핑 등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함.(별표)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유영호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주 문

○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4) 제안이유

○ 2019년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나, 아직까지도 친일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에 대한 청산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과 비교하면 총 11명, 민간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총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해치고 역사적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음.

○ 이에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진정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서현옥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가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하려 함.

(4) 주요내용

○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였음에도 충청남도 등의 소송 및 심판 청구로 인해 최종 귀속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같이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2월 14일, 건설교통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 및 경유지 인식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와 함께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아우르는 광역권으로서 적절한 도로명으로 변경이 타당하고, 현재 건설 및 설계 중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현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이 필요함.

(4) 제안이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상기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던 1990년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등이 서울시의 60% 수준이었으나, 개통된 지 28년이 경과된 현재는 인구, 산업,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총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음.

○ 또한 현재 건설 및 설계 중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역시 전체 12개 구간 총 연장 264㎞ 중 약 87%인 230㎞가 경기도 14개 시·군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정부에서 당초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사용하려다가 우리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된 바가 있음.

○ 따라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에 부합될 수 있게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서울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할 것과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을 강력히 촉구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기 타

□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21일, 정우섭(이창균 의원)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청원요지

○ 경기도시공사가 다신신도시 조성 시 주변의 환경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로망을 계획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비산먼지 등의 공해가 예상됨에 따라

- 부영아파트 1단지와 3단지 옆 도로의 지하 터널화 및 지상 녹지 조성
- 다산 지금지구 내 연결 관통도로(5개소 10개차선)를 경춘선과 연계
- 부영아파트 옆 도로를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신도시 외곽지역으로 변경 운행
-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단지 내 진입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먼지공해, 불법주차, 도로파손 증가 등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청원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15명(더불어민주당 14, 바른미래당 1)

○ 선임위원 명단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여가교위	안산7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제2교육위	군포3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제1교육위	시흥2	더불어민주당	유근식	제2교육위	광명4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제2교육위	수원4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여가교위	파주2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제2교육위	남양주1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문체위	안산6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농정위	용인4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건설위	고양8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문체위	군포1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복지위	부천5	바른미래당	김지나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지석환	복지위	용인1				

제6장 334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6장 제334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4차, 위원회는 총 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3월 26일 (화)	제1차 본회의 -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	출석의원 140인
3월 27일 (수)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6명)	출석의원 140인
	위원회 활동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위 3차	
3월 28일 (목)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8명)	출석의원 138인
3월 29일 ~ 4월 3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과학기술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 1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1차(이상 3월 29일), 제1교육위 2차, 제2교육위 2차(이상 4월 1일),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제1교육위 3차, 제2교육위 3차(이상 4월 2일), 의회운영위 1차, 건설교통위 1차(이상 4월 3일)	
4월 4일 (목)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0건	출석의원 140인
	위원회 활동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4차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4월 15일 (월)	위원회 활동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5차조사	[폐회중]
4월 18일 (화)	위원회 활동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5차	[폐회중]
4월 22일 (화)	위원회 활동 청년대책특위 2차	[폐회중]
4월 30일 (화)	위원회 활동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위 4차	[폐회중]
5월 9일 (목)	위원회 활동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위 1차조사	[폐회중]
5월 13일 (월)	위원회 활동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위 2차조사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6차조사	[폐회중]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3월 26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듣고 산회하였다.

3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임채철·이기형·박태희·최종현·김영해·김용성 의원)을 실시 후 일문일답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진용복·이영주·김경호·권락용·추민규·권정선 의원)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3월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문경희·이애형·왕성옥·박관열·황대호·엄교섭 의원)을 실시 후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광희·김지나·최만식·신정현·원용희·김인순·김경희·김종찬 의원)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4월 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조성환·이나영·김미리·김중식·김영준·황수영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0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건이 접수되어, 92건(원안 59, 수정 29, 철회 2, 폐기 2)을 처리하고 6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3. 26.(화) (11:17~12:01)	140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경기도교육청) 1.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9. 3. 27.(수) (10:05~16:39)	140	※ 5분 자유발언 (임채철·이기형·박태희·최종현·김영해·김용성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진용복·이영주·김경호·권락용·추민규·권정선 의원)	
3차	2019. 3. 28.(목) (10:04~17:45)	138	※ 5분 자유발언 (문경희·이애형·왕성옥·박관열·황대호·엄교섭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조광희·김지나·최만식·신정현·원용희·김인순·김경희·김종찬 의원)	 가 결
4차	2019. 4. 4.(목) (10:06~16:02)	140	※ 5분 자유발언 (조성환·이나영·김미리·김중식·김영준·황수영 의원) 1.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10.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2.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결
			28.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가 결
			29.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가 결
			3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완화 청원	가 결
			3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4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가 결
			46.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가 결
			4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	가 결
			4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0.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가 결
			5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가 결
			54.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5.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56.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9.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6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6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가 결
			6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가 결
			7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7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73.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74.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75.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79.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4. 개회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경기도의회 건물 전면에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로비에 이를 기념하는 기록사진전이 한 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아홉 분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기억을 살리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 변화에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풍한설이 아무리 매서워도 나무는 봄을 준비합니다. 평창에서 뿌린 기적의 씨앗은 끝내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열과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마음을 모으고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평화를 일궜으면 합니다. 그것이 3월의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방자치 심포지엄에 참가해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의 조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양 날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역할은 국회의 몫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존중이 곧 국민존중이라는 바탕 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행복을 체감하는 비결이 자치와 분권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비하면서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더욱 극대화합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5. 교섭단체 대표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 정신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며 현재 우리 헌법 전문은 그 법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1운동에 담긴 평화와 인권을 목숨처럼 여겼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은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을 피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편찬 시도, 반복되는 친일 옹호,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망언들로 국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고 국론은 분열돼야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었다는 막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제 와서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는 궤변을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민특위는 친일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었던 국회 기구였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친일 경찰간부들의 폭동과 이승만 정권의 비호로 안타깝게 실패한 역사가 바로 반민특위 사건의 실체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인 올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왜곡에 당당하게 대응하며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분열과 역사왜곡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0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만을 오직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까지 처리한 조례는 185건입니다. 이 중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는 약 78.9%인 146건입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도 집행부 34건, 도교육청 5건에 그친 집행부의 입법실적과 비교하면 3.7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도 집행부가 제출하여 처리한 34건 중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4건, 부결 3건으로 수정가결 비율이 4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타 광역시도의회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경기도의회가 합리적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주요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의 인사청문 확대를 편하게만 볼 수 없는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했지만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개월간 25회의 도정질문, 71회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2,988건의 시정·처리·건의 요구 등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도정들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등 3개 분야 행정조사특위 및 평화경제 등 6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책토론 대축제를 실시하여 28개 현안을 도민과 함께 정책 논의하였고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대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9개월 눈부신 활약을 함께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의정활동을 함께하시는 일곱 분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9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은 부유한데 국민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10% 국민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 23.9%에서 2배가 넘게 소득불평등 구조가 악화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양극화는 공동체 붕괴의 지름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서민경제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서 포용국가에 부응하는 정책비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책비전이었고 도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경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형 혁신성장, 민생경제 지원과 복지 확충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께서 바라는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또 도민들께서 바라는 개인적 소망도 소득증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첫 번째 요구는 먹고사는 걱정 덜어 달라, 경제문제 없이 살아가게 해 달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기도정이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형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형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핵심입니다. 최근 성과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더욱 투자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경기도가 제외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제외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도 집행부가 국토보유세 도입과 같은 국가적 큰 담론을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도에 실제 필요한 경제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87만 8,0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22%에 이릅니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경기도의 혁신성장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산업혁신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경기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형 혁신성장은 단순히 기업 R&D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5,000억 원 중소·중견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 공장 1만 개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경기도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와 함께 기업 유치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소득증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문제도 경기도형 혁신성장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청년배당, 청년국민연금 도입 추진 등 현금복지성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수립이 또한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청년 친화형 경기도기업 추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보다 과감한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실업 문제는 비단 청년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균 49.1세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당한 우리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와 상대빈곤율 42.2%인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2018년 경기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1.6%로 150만 명이 넘었고 특히 2020년부터 매년 40~50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며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예정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세대입니다. 장석주 시인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불운과 행운을 함께 가졌던 세대, 쓸쓸하고 찬란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내 조기은퇴 중장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8년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약 300만 명이며 평균 49.1세에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 퇴직을 하고 이후 자영업이나 임시·일용근로자로 근로 지위가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중장년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일자리는 주로 임시·일용, 단순노무직으로 임금수준도 크게 감소하여 재취업을 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 개인의 고용 불안정은 가족의 불안으로, 이는 다시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2018년 3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중장년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장년 일자리정책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중장년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함께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손자녀 양육까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온 우리의 중장년세대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며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중장년층 아픔에 함께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발생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높은 건물임대료 문제, 경기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증가, 과다한 가맹수수료 등 보다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홍보 및 인테리어 개선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최초 가입 시 1년간 납입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경기도 생활SOC 확충사업이 골목상권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 예산편성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2월 28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탕으로 추진될 경제협력의 시작을 기대하셨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아쉬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북미회담은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는 아직 과정에 있습니다. 평화와 경제를 위한 남북교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최일선 지역으로, 평화교류는 경기도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의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통일경제특구 및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 DMZ관광 인프라 구축, 통일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지원, 탈북민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북부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평화협력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재난 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정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가 120일로 사흘에 한 번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 온 미세먼지 대책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 미세먼지 5대 입법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도 검증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 중 공기정화기 미설치 학급 수는 3만 2,075개 학급입니다. 정부의 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기도 대응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방안을 도 집행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의 체육교육은 미세먼지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대 의회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관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에 따라 136개 교에 체육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여 개 학교에 대해서는 실내체육시설 유무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일수에 대한 경기도 내 시·군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지역별·구역별 종합적인 점검과 미세먼지 발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 집행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구역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 밀집지역, 도시녹지 부족지역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초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표명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하며 정부와 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유치원 정책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점검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청이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의 주요 주체인 사립유치원의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일선 유치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적 공감을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고교무상교육은 철저히 준비되고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일하겠습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의 적정한 재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에 신중한 안전대책이 또한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학생 자살자 수가 2018년은 43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의정부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게 학생 자살 문제와 학교폭력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을 위한 자치분권에 매진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폭행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분노하셨고 지방의회 전체가 새롭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렴성 재무장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의원윤리규범 실천 결의 다짐 대회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국 지방의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모범적인 교섭단체를 끊임없이 지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있었다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인 지방자치제가 후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합의제 지방의회가 민의의 대변과 제도적 대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제를 만들고 도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발전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온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다수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방 수준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 지방의회가 더 많이 도민들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이 현격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민을 위한 주체적인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집행기관 중심의 조직 논리를 탈피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경기도가 관료 중심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능동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대안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집행부, 이재정 교육청과 함께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저는 지난 9개월간 보여진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회의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0대 경기도의회의 임기 동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도의회의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바라는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품위와 능력을 인정받는 경기도의회로 이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 역할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포용과 통합의 경기도!

함께 잘사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2일, 김미숙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청소년의 외상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4일, 김태형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음(안 제7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설치대상, 충전시설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4일, 최경자 의원 등 44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간 학생선수는 강행적이며 타율적인 훈련으로써 결과만을 중시하여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경기도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손희정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10% 전후로 높으며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것을 감안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대학생 본인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지만 그 직계존속은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까지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졸업생의 정의와 이자지원 기간을 규정함(안 제2조).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확대를 규정함(안 제4조).

○ 지급중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인순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함.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및 자문을 위한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적 판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을 참여토록 수정 필요.

(수정 주요내용)

○ 제6조의2제2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신설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전승희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8호의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역시 조례 제8조제8호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음.

(4) 주요내용

○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제5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한미림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정립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시설물 사용 및 북부 여성비전센터 관련 사항을 현 운영체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및 설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설물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 규정 등을 정함(안 제3조)

○ 시설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 센터 사무의 수행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2조)

○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19조)

○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북부여성비전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1 ~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전승희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학교 건축물에서 제거되어야 하나, 여전히 많은 학교 건축물이 석면 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차적으로 무석면 천정으로 교체중에 있음.

○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되는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에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학부모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학교 건축물의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 마련을 새롭게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석면 해체 등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학교석면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개정 조례안에 담긴 '모니터링 위원회'가 제각각 학교에 설치·운영될 경우 업무의 상충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학교 석면모니터단'으로 일원화하여 조례에 반영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전부를 안 제14조(학교 석면 모니터단)로 전부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인순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사항을 추가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은 용어의 뜻과 기준이 다르므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의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새로 규정함(안 제1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미숙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종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7. 2. 4.] [법률 제13999호, 2016. 2. 3., 일부개정] 개정되면서,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 확대되어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및 활성화 시책수립 등(안 제3조, 제5조)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안 제4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제11조)

○ 포상(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양경석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명칭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 변경하여 정확한 명칭의 사용을 통한 영화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명칭을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 변경함(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29일, 문형근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능동적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4)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성수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 경기도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

○ 5년마다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종전의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도시농업 관련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도시농업인의 의무,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15조 및 제16조).

○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업무의 일부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소영환 의원 등 47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영농폐기물의 조사 및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영농폐기물 조사 범위에서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로 수정함(안 제5조제4호).

○ 예산지원 범위에서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4호).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이영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청문 대상 중 많은 사안이 도민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로서, 지역주민 등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청문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청문대상자)의 비밀보장과 청문 진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의 청문에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이에 청문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청문 결과보고서 등을 지방의회 요청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익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청문관련 이해관계인은 요청에 의해 청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 청문결과에 따른 보고서 등을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4조의2에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청문 참여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함.

○ 안 제19조는 청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인 반면, 안 제19조제3항은 이와 무관해 조문 체계 상 안 제18조의2에 별도로 규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①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안 제4조의2제2항 중 "청문에"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통해 청문에"로 하고, "처분부서"를 "행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분부서는 제1항"을 "행정청은 제2항"으로 함.

○ 안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8조의2(결과보고서 등의 도의회 제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청문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할 수 있다.

○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종배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로봇산업의 정의를 기계장치와 부품에 한정하였던 기존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 로봇산업은 신기술들의 종합판인 산업으로서 기술의 변화만큼 지원정책의 대응도 빨라야 함. 이에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4) 주요내용

○ ‘로봇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송영만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생산성 제고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기존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장하고,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임채철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2018. 5월부터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을 도입해 납세자보호 업무매뉴얼 교육, 홍보, 시·군 홍보, 도 고충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세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도민의 권리 향상과 세무 관련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강식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국제개발 협력사업 위탁과 관련해, 신생 민간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신생 기업들에게도 공모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만,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전문성 또는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과 도지사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함.

(4) 주요내용

○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함(현행 제9조 단서 삭제).

○ 수탁기관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도지사가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또는 지원토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유영호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예천시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이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됨.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또는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경기도 입법 및 정책 제안에 기여하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무국외 "출장"으로 용어를 통일함(조례 제명 등).

○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심사위원회가 계획서를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8조).

○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 등의 경우 서면심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 등에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대표의원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출국 4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계획서에 별첨 사전회의 결과(첨부 서약서 포함)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조).

○ 대표의원이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연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정책검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 대표의원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1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수정제안과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항을 분리함.

(수정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을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민경선 의원 등 35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 등 학습부진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도입됨에 따라,

○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계획, 실태조사,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교원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 제1조 '지원하여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문장에서 '궁극적인 사회구성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안 제4조에서 계획 수립 규정이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행'이 필요하며, 안 제8조는 어순과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본문에서 불분명한 자구를 입법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조).

○ 교육감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이 필요하므로 조 제목을 "(계획의 수립)"을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제1항 후단 "수립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하며, 제2항제7호 중 "연계지원"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변경함(안 제4조)

○ 어순과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정비함(안 제8조)

○ 용어나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임창열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제시, 보조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 지원 대상에 산하조직을 포함(안 제2조제2호).

○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등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도 내 재향군인회 조직은 시·군 단위에서만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회"를 "재향군인회와 시·군회"로 함(안 제2조제2호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판수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에 따라 공무직원 규정을 정비하고, 청원경찰을 명시하는 등 경기도청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제2호).

○ 장의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 이내로 규정하여 도의회 부의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의위원도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추가하여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2항, 제3항).

○ 장례비용 지원 상한액을 2천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범위에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박창순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경기도민의 고통 감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

○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 미세먼지 대응의 가장 기초적인 물품인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중 “재난”과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알기 쉬운 한글 표현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표기 방법과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를 “마이크로미터”로 하고, “나. 미세먼지(PM-2.5)”를 “나. 초미세먼지(PM-2.5)”로 함(안

제2조제4호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최갑철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2018.9.18.)으로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와 폭염이 포함됨에 따라 한파와 폭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사고와 온열 및 한랭질환자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자연재난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재난예방조치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바목).

○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호타목).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국중현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도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국중범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 및 보조사업의 정산 시기,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6호).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규정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박근철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지원 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 주민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해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조성환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화대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화대상'을 시상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평화대상 수상자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지자체 포함)"로 문구로 수정하고자 함.

○ 수상자 결정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위원회의 근거를 명시하고, 수상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사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검토하여 삭제·수정하고, 상금 등의 문구를 "상장 등"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3조제1항,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문구를 수정한다.

○ 안 제6조제1항 중 상기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명시한다.

○ 안 제7조제1항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등을 수여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한다.

○ 안 제8조의 "상패 및 상금 등은 환수 조치한다."를 제7조제1항 수정에 따라 "상장 등은 환수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9조에서 "다만, 이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와 관련된 사무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이애형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은 여러 상위 법령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법령과 이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공공시설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2019. 7. 1.)과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근거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안 별지 별표).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별지 별표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안 별지 별표의 제3순위 내용을 “미과세 대상 장애인”에서 “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정희시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14224호, 2017. 5. 30. 공포·시행)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민간-공공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5조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제5조 지원대상의 규정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함.

○ 제5조의 각 호 중에서 제5호를 “취업한 사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권정선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표기 및 좌석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최적관람석 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남종섭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위원회 부위원장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 중 비교섭단체 위원의 부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해당 위원회 교섭단체 위원수가 많은 부위원장, 비교섭단체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대행하고, 교섭단체 위원수가 같거나 부위원장이 동일한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최다선 부위원장이, 다선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대행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추민규 의원 등 46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그동안 역사교육은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만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져 왔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은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인물과 문화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애향심도 지극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음.

○ 이에 지역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교육의 출발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도출하여 학생들이 성숙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교육지원청에 "지역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 향토사 교육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지역의 문화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 제1조에서 "흥미를 도출하기 위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흥미를 유발하여"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용어나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유근식 의원 등 37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화학물질 침투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 및 학교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실태조사의 실시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김미리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2018년 2월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방재율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시·군 지정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여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공급하고 있어서,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서 다시 먹는 물을 정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육감 소관 건축물 저수조의 소독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에 먹는 물의 정수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5조의2제1항 중 "사용하여야 하고, 정수 등 위생조치를 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을 삭제함(안 제5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의 발의 취지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여 먹는 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이 이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접수되어 발의취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의2 하단 중 "사용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장태환 의원 등 4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수중에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규정함(안 제5조).

○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 수영장평가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학교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생존수영교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 일부 조문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법령의 의미를 명확화·간결화하고, 재정지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의 제10조제2항을 명확화·간결화하고자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하며, 제3조 "경기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제6조제2항 "배려하여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이은주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정부담이 없는 경우도 동의안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교육부 협약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방송 출연금 등 소액에 대해서도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국가 보조금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재정부담이 없거나 약소한 경우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보고로 단순화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이 유발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보고 및 동의의 예외조항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로 수정함(안 제6조,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협약 주관 부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 제6조의 "제1교육위원회", 제7조의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이진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난독학생지원위원회의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로 함.

○ 난독증, 난독증 학생을 정의함(안 제2조).

○ 난독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 제4조제1호 "난독학생"은 "난독증 학생"으로 하고, 제6조제4호 "난독 학생"은 "난독증 학생"으로 하며, 제8조제2항 "해제"는 "해촉"으로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8일, 김인영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지역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발전 수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음.

○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5개 시·군에서는 기업이 성장해 공장 부지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려 해도, 공장부지를 최대 6만㎡에서 단 1㎡도 늘릴 수가 없고 그나마도 3만㎡를 넘어가면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장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부지가 남아돌아도 공업지역에서 조차 1천 내지 3천㎡ 규모밖에 짓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일적 수도권 규제 개선,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사업 제한 등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4)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가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함.

-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수도권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라.
-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개발사업 제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과도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라.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최근 SK하이닉스 입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문단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주요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촉구 건의 내용 중 제4호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건의안 첫 번째 문단을 삭제하고, 촉구 건의 내용 중 제4호를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8일, 유상호 의원 등 81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주 문

○ 정부는 경의선·경원선·동해선 복원 등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철도 인프라 구축이 남북 교류협력과 미래 한반도 번영의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복원에 대해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원선은 서울(용산)에서 경기동북부(의정부~연천)와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철도 노선으로 경원선은 'H'에 해당되며 경원선은 철원역에서 금강산선과 연결되는 철도임.

○ 경원선의 복원은 경기북부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반드시 필요하며 접경지(연천, 철원)까지 실질적인 수도권 수혜 지역으로 편입이 가능, 북방진출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남북교류협력 증진(특히 관북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경원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의 이용편의와 경제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어 기존의 동해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보다 비용과 편의가 압도적이며 수도권과 북의 금강산 및 원산관광특구와 연결이 용이하여 경원선을 통해 TSR 연결 추진, 대단위의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 추진으로 한국의 에너지 허브 건설이 가능함.

○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남북교류와 지역발전의 중대한 연결 고리이며,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원선 복원 사업을 남북협상의제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마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4일, 김영준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강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4)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5톤 미만의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불법으로 투기·방치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폐기물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인한 불법 처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4일, 배수문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주 문

○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하향조정 하거나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4)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보다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며, 대책 수립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시기·단계별로 각각 나누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택지가 기존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면적, 인구 등)을 하향조정 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지구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정대운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단체장의 예산안 제출시기와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기한을 따져 보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단체는 35일, 기초단체는 30일에 불과함.

○ 예산안이 광역지방의회에 제출되는 기한인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11월 11일)은 하반기 정례회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14일) 기간을 제외하고 지방의회가 실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합해 20일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복지예산과 교육재정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지방의회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겨 광역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기초단체의 경우 50일 전까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15일, 장현국 의원 등 63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주요내용

○ 일본이 스스로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를 일본 정부의 변치 않는 입장임을 다시 천명할 것.

○ 일본은 교과서에 일본의 식민 지배의 참담했던 과거를 은폐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자세히 수록하며, 일본 총리대신은 일본 식민 지배 과정의 역사적 과오인 비인도적인 대량살상, 생체실험, 성노예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착취, 재산 수탈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목의 경우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과해야 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본문 중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문장에 대해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제목 중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을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로 함.

○ 본문 두번째 문단 중 “1965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간의 수교도 이루어졌다”를 “1965년 6월 22일에는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다”로 하고, 네번째 문단 중 “번복할 것과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어서,”를 “부정하고 있어”로 함.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기 타

□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4월 3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선임사유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함.

(4)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 원 명(추가)		
성 명	소속정당	지역구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안산7

※ 임기 : 위원 선임일로부터 남은 임기(2020. 2. 11.)로 함

제7장 335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7장 제335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중 본회의는 총 4차, 위원회는 총3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5월 14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	출석의원 136인
	위원회 활동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위 3차조사	
5월 15일 (수)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3명)	출석의원 133인
5월 16일 (목)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3명)	출석의원 126인
	위원회 활동 농정해양위 1차	
5월 17일 ~ 5월 27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과학기술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1차(이상 5월 17일), 기획재정위 2차, 경제과학기술위 2차, 안전행정위 2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보건복지위 2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차, 제1교육위 2차, 제2교육위 2차(이상 5월 20일), 의회운영위 1차, 안전행정위 3차, 보건복지위 3차, 건설교통위 2차, 제1교육위 3차, 제2교육위 3차(이상 5월 21일), 예산결산특위 1차(5월 22일), 예산결산특위 2차(5월 23일), 예산결산특위 3차(5월 24일), 도시환경위 2차, 예산결산특위 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위 3차(이상 5월 27일)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5월 28일 (화)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5명)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78건	출석의원 136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5월 14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소영환·이혜원·박옥분·김성수·권정선·남운선 의원)을 실시하고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후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였다.

5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대운·박덕동·고은정·원용희·이창균·김우석 의원)을 실시 후 일문일답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대석·송치용·김명원 의원)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5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윤경·이애형·장태환·이필근(수원1)·최갑철·심규순 의원)을 실시 후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배수문·이선구·남종섭 의원)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5월 2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서현옥·임창열·김경희·박세원·이원웅 의원)을 실시하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8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3건이 접수되어, 78건(원안 55, 수정 22, 철회 1)을 처리하고 5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5. 14.(화) (11:24~12:20)	136	※ 5분 자유발언 - 소영환·이혜원·박옥분·김성수·권정선·남운선 의원 1.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가 결 가 결 가 결 제안설명 제안설명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차	2019. 5. 15.(수) (10:06~12:53)	133	※ 5분 자유발언 - 정대운·박덕동·고은정·원용희·이창균·김우석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3명) - 장대석·송치용·김명원 의원	
3차	2019. 5. 16.(목) (10:04~12:25)	126	※ 5분 자유발언 - 정윤경·이애형·장태환·이필근(수원1)·최갑철·심규순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3명) - 배수문·이선구·남종섭 의원	가 결
4차	2019. 5. 28.(화) (10:05~12:49)	136	※ 5분 자유발언 - 서현옥·임창열·김경희·박세원·이원웅 의원 1.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18.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27.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가 결
			4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4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가 결
			47.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가 결
			48.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가 결
			49.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가 결
			5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가 결
			55.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56. 경기도시공사 융·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8.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가 결
			59.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60.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가 결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2.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가 결
			63.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가 결
			64.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66.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7.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1.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7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결
			77.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78.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어느덧 5월 중순, 꽃향기 뒤로하고 계절은 푸른빛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담쟁이 푸른 잎들이 벽을 오릅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처럼 담쟁이 같은 심정으로 넘고 싶은 벽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국회의 의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민생법안은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을 오래 꿈꾸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후 우리는 지방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론장을 펼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35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공론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기도의회 주인인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도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일, 김미숙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3조).

○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

○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가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1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3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 제1호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중 도교육청에서는 '국비'나 '도비'라는 용어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시 총괄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임.

○ 안 제6조 중 보궐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 중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를 "국고보조금 등으로"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를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로 하며, 안 제6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단서조항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일, 유근식 의원 등 4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학교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한 이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도 미진한 실정임.

○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일, 엄교섭 의원 등 37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지원 대상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함.

○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복의 품질을 담보하고, 교육가족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재학 학생을 추가함(안 제5조).

○ 교복 품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부칙사항에 따라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전입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칙 단서조항을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입학 및 전·입학생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부칙 단서 조항 중 "2020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를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황대호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꿈의대학'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고등학생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경기꿈의대학'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4) 주요내용

○ 고등학생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장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박세원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감사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행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경우 대부분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운용되고 있어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안정적인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1 이상을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운영하도록 함.

(4)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1 이상을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3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심민자 의원 등 35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폐쇄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입은 영업 손실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건물폐쇄 명령에 따라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를 통해

지원 받은 대상이 협소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이에 조례의 주요내용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9호).

○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장일 의원 등 35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15.6.17), 제정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음('16.7.19).

○ 이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도지사의 책무로서 청소년에게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6항).

○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업·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최승원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내 철도(경전철 포함) 운행과 관련하여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운행 중단 및 감축 운행으로 도민의 교통이용 편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사전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시철도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버스, 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더욱 더 가중되는 상황에 놓임.

○ 따라서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계,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내 철도(경전철 포함)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 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 및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6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본 조례의 목적에 '철도 등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을 포함시키고, 본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수단을 철도, 버스, 택시 등의 육상교통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 주요내용)

○ 개정안 중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을 "육상교통 등"으로 함.

○ 긴급운행계획 부서를 "교통국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정책과"에서 "교통 및 철도 관련 업무 담당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조재훈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실태 파악 기간을 관련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항소음 측정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의 소음피해실태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소음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내용

○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실태 조사 기간을 상위법령 및 소음피해지역 고시 기간을 고려하여 완화함(안 제4조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상위법령의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음영향도의 조사주기의 미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도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3년으로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인순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벌금성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이에 경기도 및 산하 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센터 설치는 향후 지원 사업 내용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 안 제6조의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의 사업 규정 중 3호와 4호를 삭제하고 6호의 내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삭제.

○ 안 제7조(센터)와 제8조(위탁)를 삭제.

○ 안 제14조제3항의 내용을 호로 분리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원기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아동들이 긴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방과 후 사교육을 종용당하는 등 가속화되는 교육 속에서 서열화와 경쟁구도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

종합실태'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한미림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와 미(美)에 대한 욕구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비의 감성화, 고급화 등으로 뷰티서비스산업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beauty 등 한국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과거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사회복지의 도구로 사용된 이·미용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어, 뷰티서비스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의 혁신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뷰티사업자에 뷰티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뷰티산업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뷰티산업 관련 국제대회 참관 및 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호).

○ 뷰티산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9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뷰티서비스사업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에 따르면 뷰티산업에 이미 뷰티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 중복으로써 삭제·수정함.

○ 뷰티사업자의 뷰티 관련 대회 참관 지원 규정을 삭제·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4호 중 신설된 "뷰티서비스사업"을 삭제하고, 제7조제1호 중 "참관 및 출전"을 "출전"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진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교원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동현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범위, 신청 절차, 정산시기 등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방범단체와 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중 "임무"를 "기능"으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조문 중 "임무"를 "기능"으로 수정함(안 제4조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동현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체험센터의 기능이 과거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 어린이 안전관람 등 생활에 필요한 폭넓은 안전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소방관서 신설·이전 시 소규모 소방안전 체험관 병행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항).

○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체험관의 이용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임창열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 수여 이후 포상 부적격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서식 중 공적과 무관한 학력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바람직한 포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함.

(4) 주요내용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와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포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부상품 등을 환수함(안 제13조).

○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중 학력정보 기재란을 삭제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포상의 취소의 사유 발생 시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함(안 제13조제1항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최갑철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용결과와 실적 제출일을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짧은 기한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보조금의 정산이 어렵고, 타 보조금 사업이 정산시기를 법령에 따라 2개월~3개월 사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 정산시기를 「경기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정하려 함.

(4) 주요내용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용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학생 자녀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장학관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푸른미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푸른미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을 인재 양성에서 취약계층 보호로 전환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수정함(안 제1조).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에 시설 유지·관리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 원활하고 안정된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을 위해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 경기푸른미래관 입사 자격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의 경기도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여 경기도민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5조1항).

○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수탁자의 보조금 요구안을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으로 정비함(안 제7조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태형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5조).

○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저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선구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도시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된 단독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집수리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태형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도의원 2명을 수소산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수소산업 관련 사업의 지원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문구를 삭제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9조).

○ 경기도의원 2명을 수소산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양철민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안기권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에너지기금의 융자·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 에너지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사업을 포함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남종섭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연안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항·포구 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신정현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탈핵·탈석탄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임.

○ 그동안 경기도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생활하는 각 가정과 마을의 에너지 체계를 자립 또는 자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음.

○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등의 에너지전환 사업에 마을공동체 단위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 마련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경기도에너지계획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안 제5조).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안 제6조).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및 에너지자립마을 선도사업(안 제7조 및 제8조).

○ 공공부지 등 확보 및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안 제9조 및 제10조).

○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안 제11조 및 제12조).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및 조사·연구(안 제14조 및 제15조).

○ 시·군 등과의 협력 및 지원, 교육·홍보·포상(안 제17조 및 제1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시범지구 조성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 인용 조문 정비 등 일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시범지구 조성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 잘못 인용된 조문의 정비를 위해 "라목"을 "마목"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해당 에너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12조).

○ 부칙에서 잘못 표기된 조례명에 대한 정비를 위해 "경기도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함(부칙 제3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애형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영향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일부 조항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입법영향 분석 평가 지표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 분석 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 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 제1항).

○ 사후 입법영향분석 척도가 통상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지표(리커트 척도)로 설계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례 집행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 등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의견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자 함(별표 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애형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부족 및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주체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4)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사무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4호 신설).

○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교육 내용의 추가·확장 가능성을 두어 다양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 개정안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제1항제2호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 등”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최종현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루·요루 장애인 조사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 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영해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내의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권정선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민간-공공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이애형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기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여,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안광률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장애인 체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 증진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체육시설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면제(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강태형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회계운영 시스템과 직원의 도덕성 해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경기도의 출자·출연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 전자적 회계시스템(e-뱅킹 등) 도입을 통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3항).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소속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준용사항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박덕동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지역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책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자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속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해 동네의 지역서점은 경영악화로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역서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갖추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역서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제2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조광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공립학교의 경우 구성을 의무화한 학부모 자치조직임. 그러나 현행조례가 학교를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함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미비 문제가 발생되었음. 이에 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여 학부모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병설유치원의 경우엔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학부모회의 구성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미리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는 ‘경기꿈의학교’의 선정과 지원,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구이나 운영위원이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자칫 객관적인 심사 저해는 물론 선정의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책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자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 교육지원청에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경기꿈의학교’를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장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위원의 구성을 새롭게 규정함(안제7조제5항).

○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제7조제6항).

○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은 경기꿈의학교에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며,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원 구성을 새로이 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참여"를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로 함.

○ 안 제7조의2제1항 중 "경기꿈의학교의 정책 및"을 "지역별 꿈의학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가능 기관에 경기도의료원을 추가하여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위탁기간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함.

(4) 주요내용

○ 도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경기도의료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기존의 위탁기간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4항 삭제).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함.

○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함(안 제명).

○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정 총규모는 31조 7,153억 원으로 당초 29조4,859억 원 대비 7.6%인 2조 2,294억 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6조 2,633억 원으로 기정예산 24조 3,731억 원 대비 7.8%인 1조 8,902억 원 증가.
- 기금은 5조 4,520억 원으로 기정 5조 1,128억 원 대비 3,392억 원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당초(A)	'19년 제1회 추경안(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294,859	317,153	22,294	7.6%
예 산	243,731	262,633	18,902	7.8%
일반회계	210,974	228,961	17,987	8.5%
특별회계	32,757	33,672	915	2.8%
기 금	51,128	54,520	3,392	6.6%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296,502백만 원 증액 및 내부유보금 등 41,141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5조 4,177억 원 대비 2조 5,906억 원 증액된 18조 83억 원으로 16.8%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추경 증감 금액(B-A)	비율
총 규 모	154,177	180,083	25,906	16.8%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용〉

○ 세출예산 중

- 감액 :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30억 원, 스마트팜 실습교육 시설비 △23억 원 외 6건 총 △161억 원
- 증액 : 체육관 증축사업 6억 원, 국회협력사업 5억 원 외 3건 등 161억 원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건의·결의안

□ 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강식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으로 인해 당초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정산보고서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대한 비용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세무기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이며, 보조금 3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집행한 각종 비용과 계산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이미 세무 및 기장 대리를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음.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경쟁 수행할 수 있게 하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들 전문가 간 경쟁에 의해 집행 내역을 더욱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 이에 경기도의회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보조사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을 받도록 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는 「보조금법」의 취지를 살려 국회와 정부에 법률 개정을 촉구 건의함.

(4) 주요내용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김종배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이유

○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복지, 건설, 농업, 문화,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계층별로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장년 등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처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관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서가 각기 달라, 일자리 정책 간 종합 및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경기도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정책 추진 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그러나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상임위원회 간의 정보교류 및 의견 종합 창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는 경기도의 통일성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남종섭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이 되었으나,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 시도 등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 CCTV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함.

(4)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미진과 새로운 의혹 제기로 세월호 CCTV DVR(영상저장장치) 조작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하여

○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던 일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을 방해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일, 염종현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그 소속에 따라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로 구분되는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인 기준 없이 지방직 개방형 직위는 국가직 개방형 직위에 비해 '직위지정 규모가 적고, 연장임용기간이 짧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같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8장 336회 정례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8장 제336회 정례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는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3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6월 11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출석의원 136인
	위원회 활동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일자리창출특위 1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5차,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위 5차,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6차	
6월 12일 ~ 6월 24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과학기술위 2차, 안전행정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1차(이상 6월 12일), 기획재정위 2차, 경제과학기술위 2차, 안전행정위 2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제1교육위 2차, 제2교육위 2차(이상 6월 13일), 의회운영위 1차, 안전행정위 3차, 도시환경위 2차, 제1교육위 3차, 제2교육위 3차(이상 6월 14일), 예산결산특위 1차(6월 17일), 예산결산특위 2차(6월 18일), 기획재정위 3차, 예산결산특위 3차(이상 6월 19일), 예산결산특위 4차(6월 20일), 기획재정위 4차(6월 24일)	
6월 25일 (화)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8건	출석의원 141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6월 11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유근식·김지나·안광률·김봉균·신정현·왕성옥 의원)을 실시하고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6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남종섭·유광국·문형근·최경자·추민규·최만식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8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이 접수되어, 53건(원안 35, 수정 13, 승인 4, 부결 1)을 처리하고 5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6. 11.(화) (11:19~12:01)	136	※ 5분 자유발언 - 유근식·김지나·안광률·김봉균·신정현·왕성옥 의원 1.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9. 6. 25.(화) (10:18~12:33)	141	※ 5분 자유발언 - 남종섭·유광국·문형근·최경자·추민규·최만식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1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결
			46.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결
			47.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결
			48.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요즘 영화 기생충이 화제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화의 힘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극부와 극빈의 두 가정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실을 풍자와 해학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 기택이네 식구는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제도적 기생이기에 씁쓸합니다. 이를 풀어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느낍니다.

이 영화를 빌려 비유해 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기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조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두 달째 휴업 중입니다. 법안 심사는 일절 없고 정치적 행위도 막말 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지방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간절한 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생관계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고 지역의 일은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댈 언덕은 오직 1,350만 경기도민뿐입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지역을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민심과 민생, 민의를 어떻게 대하고 섬기는지 국회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142명 도의원들은 더욱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한미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인구절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도민인식 제고 등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 이에 현재 인구정책 육성·지원 등을 위해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 또한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 및 단체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인구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행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박옥분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개정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서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함.(안 제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용어를 통일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비인가 대안학교'의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정의) 제1호를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지원대상)제1호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황진희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닌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부터 학업중단 전(前) 단계에 있는 학생을 경기도교육감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이 목적이므로 해당 조문에 '학업을 중단'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6조에서 보조금 관련하여 보조금 결정 취소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안교육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제목과 본문을 정비함(안 제4조).

○ 제목과 본문을 정비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황수영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예방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복구와 안전망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상인 및 상인조직이 적극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규정함.

○ 아울러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기업들과의 경쟁, 상인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빈 점포가 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 또는 고객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함.

(4)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제보험 가입 보조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7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윤용수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섬유산업과 상호 연계성이 높은 패션산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이 부족한 현실임.

○ 미래 유망산업인 패션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섬유, 가죽, 패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등 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섬유·패션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섬유·패션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섬유·패션산업 육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유치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섬유·패션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섬유·패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섬유·패션산업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섬유·패션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최만식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창조·문화 활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로 정하고, 세부과제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과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포함하였음.

○ 따라서, 경기도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권재형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건설근로자를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 건설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4) 주요내용

○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시 지역건설근로자를 선정 및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자 선정 추천 기관을 노동조합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이필근(수원1)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경기도 환경기본조례」제17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역세권개발사업의 면적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12.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함(별표1).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박성훈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들어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함(안 제2조).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함(안 제16조).

○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이창균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도지사는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김태형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함(별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별표)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신 설〉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40 이하 → 100 이하	50 이하 〈신설〉	1,000 이하	100 이하 → 70 이하	-	9 이하 → 7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100 이하 → 75 이하	35 이하 〈신설〉	900 이하	100 이하 → 70 이하	800 이하	9 이하 → 5 이하
다.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70 이하	-	20 이하 → 17 이하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이창균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기존의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정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배수문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설정함(안 제5조).

○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 경기도민은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공 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민간 수경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권고사항을 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 관련 조문을 통합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현행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에서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을 통합함(안 제2조).

○ 공공과 민간 수경시설 관련 조문을 통합하고,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부칙을 신설하여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김재균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학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학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

(4) 주요내용

○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협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백승기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경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등 품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정희시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최종현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및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

○ 경기도는 한의약으로 도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며,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의 형편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유영호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 채택여부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 경기도정 등에 관한 제안제도의 폭을 넓혀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안의 정의와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민과 도 및 도내 시·군 소속공무원에서 '도민 등'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채택여부 심사를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로 변경하고자 함(별표 제5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다시 집행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 수에 대해서 현행대로 도의원 3명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을 "다음 각 호 중 제2호의 사람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을 현행대로 도의원 3명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신정현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제안이유

○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늘고 있음.

○ 전통적 의미의 '프리랜서'는 전문적 능력에 기초해 발주자와 동등한 협상능력을 갖추고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지만, 최근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인 IT, 방송, 디자인, 영화, 문화, 스포츠 등의 경우 근무장소,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해지 또는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도내인 경우, 도내 사업장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함(안 제6조).

○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8조).

○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토록 함(안 제9조).

○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연합 프리랜서 단체에 대하여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1조).

○ 도가 물품·공사·용역·등의 계약을 위한 입찰 추진 과정에서 프리랜서를 부당 대우한 사실이 없는 기업의 경우 입찰평가 시 우대토록 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프리랜서의 모호한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개선하고,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입찰평가 우대 규정을 삭제함.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제1호의 '프리랜서' 정의 수정, 제3조제3호의 조례 적용대상 정비, 제12조 입찰평가 우대 조항 삭제 등.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이명동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최갑철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함.

(4) 주요내용

○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국중현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국중범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이동현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중복지원이 금지되는 규정의 대상을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령, 타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로 수정함(안 제4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엄교섭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민·관 정책협의체」의 기능은 각종 정책의 협의와 조사, 연구 및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민·관 정책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 체계에 맞추어 '정책협의체의 기능'과 '결정사항의 이행'으로 조문을 분리하는 등 일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정책협의체가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해당 시장·군수는 정책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김경희 의원 등 8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4) 주요내용

○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실행계획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4조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학부모 인식개선이 필요하여 연수 대상에 학부모를 추가하고,

○ 제4조제3항은 개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고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4항 성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제5항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제5호 중 "교원"을 "교원 및 학부모"로 하고,

○ 안 제4조제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 안 제8조제5항 중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2회 연임(6년)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의 신규위원 위촉 제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경기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연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 재직했던 기관의 건설 분야 퇴직공무원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참여에 따른 불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심의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심의위원 선정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 본문).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 안건 위원에서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발주청에 재직한 경우 위원 선정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결산개요

○ (회계현황) 경기도의 회계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1개), 기타특별회계(10개), 공기업특별회계(3개), 기금(22개)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중 회계 변동사항으로는 '에너지기금'을 신설 운영 중에 있음.

○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25조 8,411억원이고, 총세출은 22조 9,616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2조 8,795억원임. (순세계잉여금 1조 7,930억원)

- 일반회계는 세입 22조 5,910억원, 세출 20조 3,281억원으로 잉여금은 2조 2,629억원임. (순세계잉여금 1조 2,567억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3,344억원, 세출 1,260억원으로 잉여금은 2,084억원임. (순세계잉여금 2,076억원)
-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2조 9,157억원, 세출 2조 5,074억원으로 잉여금은 4,083억원임. (순세계잉여금 3,287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소계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841,127	22,961,569	2,879,558	1,065,561	21,008	1,792,989
일반회계	22,590,993	20,328,093	2,262,900	985,810	20,409	1,256,681
특별회계	3,250,134	2,633,476	616,658	79,751	559	536,308
공기업특별회계	334,414	126,051	208,363	776	-	207,587
기타특별회계	2,915,720	2,507,425	408,295	78,975	599	328,721

○ (재무제표 결산)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대비 순자산이 1조 5,855억원(4.8%)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2017회계연도 대비 1,775억원(11.5%) 증가하였음.

- 지난해에 비해 총자산이 1조 3,6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투자자산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총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2,19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방채증권의 감소에 의한 비유동부채 3,894억원의 감소에 의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 결과
2018년		37,935,695	3,576,602	34,359,093	20,752,487	22,119,616	(1,367,129)
2017년		36,570,114	3,796,517	32,773,597	18,984,493	20,529,144	(1,544,651)
전년대비 증감	금액	1,365,581	△219,915	1,585,496	1,767,994	1,590,472	177,522
	비율	3.7%	△5.8%	4.8%	9.3%	7.8%	11.5%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 후 재정집행의 최종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승인

(5) 본회의 심의결과 : 승인

□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결산개요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6조 9,154억 원보다 374억 원이 적은 16조 8,780억 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조 9,154억 원보다 1조 685억 원이 적은 15조 8,46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93.9%를 집행함.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 (A)	세출 (B)	세계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69,154	168,780	158,469	10,311	8,319	9	1,983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승인

(5) 본회의 심의결과 : 승인

3. 기 타

□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6조 및「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4)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21명(더불어민주당 20, 자유한국당 1)

(5) 선임위원 명단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운영위	가평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제2교육	하남2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기획위	수원10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제2교육	화성4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경제위	고양9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경제위	시흥3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안행위	군포4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경제위	안산8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문체위	수원5	더불어민주당	김영해	복지위	평택3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농정위	안양1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문체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복지위	부천5	더불어민주당	성준모	제2교육	안산5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건설위	부천6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경제위	남양주3
더불어민주당	심규순	도시위	안양4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기획위	용인6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여가교위	화성1	자유한국당	허 원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제1교육	의정부1				

제9장 337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9장 제337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7월 9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	출석의원 139인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예산결산특위 1차,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위 4차, 일자리창출특위 2차	
7월 10일 ~ 7월 15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경제과학기술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제1교육위 1차, 제2교육위 2차(이상 7월 10일),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도시환경위 1차(이상 7월 11일), 의회운영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보건복지위 2차(이상 7월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차, 예산결산특위 2차(이상 7월 15일)	
7월 16일 (화)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2019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출석의원 136인
7월 29일 (월)	위원회 활동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위 3차	[폐회중]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7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윤경·원미정·허원·방재율·이영봉·원용희 의원)을 실시하고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 후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결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배수문·김경호·오명근·엄교섭·임창열·김명원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건이 접수되어, 64건(원안 45, 수정 17, 부결 2)을 처리하고 3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7. 9.(화) (11:16~12:08)	139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경기도) ※ 5분 자유발언 - 정윤경·원미정·허원·방재율·이영봉·원용희 의원 1.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안설명 가 결
2차	2016. 7. 16.(화) (10:08~12:28)	136	※ 5분 자유발언 - 배수문·김경호·오명근·엄교섭·임창열·김명원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9.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0.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1.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가 결
			1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결
			14.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가 결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가 결
			31.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가 결
			33.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가 결
			3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7.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1.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55.「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56.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공존을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95%입니다. 집행부 수장 역시 같은 당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말하는 협치만으로는 의회다운 의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함께 멀리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혼자 빨리 가면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느꼈습니다.

제10대 의회는 공존의 시대정신으로 다양한 관계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공존의 틀은 자치와 분권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 공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리며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법 개정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이유입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의 공존의 틀은 도민행복에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의회다워집니다. 이러한 기본과 원칙하에서 정책을 바로잡고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도 했습니다. 사람중심·민생중심의 가치가 담긴 생활밀착형 조례 발의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활발했습니다.

셋째, 경기도와 31개 시·군과의 공존의 틀은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규모만 다를 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같습니다. 광역의회에 추가로 주어진 책무는 경기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할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와 시·군의 사상 첫 정책간담회로 제도와 규제를 뛰어넘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도의회와 도민과의 공존의 틀은 공약실현에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의원님들과 만든 4,194건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는 신뢰를 우선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경기도를 만들어 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에 담긴 도민의 요구, 시대정신을 실현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꿈을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의회 여야의 공존의 틀은 상호존중에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이지만 소수를 존중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야당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열 배, 백 배의 힘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공존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의 다른 이름은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나온 길에서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1,35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아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원미정 의원 등 3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성과 확보를 위한 전문성 부족 등이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수탁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재계약'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0조의2).

○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 수행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 사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함을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 재계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내용상 보완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2항 중 총 재적위원의 5분의1 이내를 총 재적위원 중 2명 이내로 함.

○ 안 제11조의2 제목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1호에서 6호를 삭제함.

○ 안 제11조의2 제2항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수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1호에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사무수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편람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 제11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함.

○ 안 제15조의2 제1항 중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을 ‘90’일로 함

○ 안 제15조의3 제1항 중 민간위탁 종료일 ‘90’일을 ‘60’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이영주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 기념사업, 교육, 희생·공헌자 발굴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독립운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념사업 근거 규정이 부족한 현실임.

○ 따라서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독립운동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경기도가 독립운동 가치 계승 등을 위한 시책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서현옥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장에게 용접·용단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고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3조의 제목을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변경함.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가연 물질 제거, 소화기구 준비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박창순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표현을 정비함(안 제1조 및 현행 제2조 삭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하게 함(안 제4조,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16조 및 제17조).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장례비 및 치료비를 추가하고, 각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1항·제3항, 안 제5조제2항 신설).

○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그 구상에 따른 책임을 명시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 공공시설의 복구, 추모사업 등 '피해수습지원'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에 있어서는 재난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 재난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의 신고 항목을 추가함(안 별지서식).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동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함.

(수정 주요내용)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함(안 별지서식).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이필근(수원1)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기술 및 공사를 자문하고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자문단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지원함(안 제3조).

○ 자문단은 설계도서 지원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심규순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환경보전기금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원용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수의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박성훈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2.15.)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조례 제명).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위원회'로 정비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는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7조제1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원용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지사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경기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양철민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림 조성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도지사는 도시림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도지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서형열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 하도급, 면허 대여 등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 거래질서 행위 업체에 대한 계약 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약부서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1항).
-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단속 형태를 규정함(제2항).
- 관련 기관의 지원 및 단속방법(수시·정기단속)을 규정함(제3항).
-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정부 또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를 제외하도록 함(제4항).
-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심사 배제 및 낙찰자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5항).
-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제6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규창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에 조명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목적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하여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함.

(4) 주요내용

○ 조명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 마련(안 제2조제5호 신설).

○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안 제3조제8호 및 제4조제2항 신설).

○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및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조명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철환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소영환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역주민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성수석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봉균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 문학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학창작 및 향유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문학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문학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문학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최만식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 경기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용성 의원 등 49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의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관광'을 추가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광'을 추가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가목).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가목,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로 수정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박옥분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제24조(경제활동 참여)·제25조(일·가정 양립지원)·제2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른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전승희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도민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추진 단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진용복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갈등을 초래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 보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인순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 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현재 제 6조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2항에 의해 위탁 운영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위탁'과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수탁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타 수탁기관에도 선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항을 삭제하기로 함.

(수정 주요내용)

○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이진연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영어마을을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추진방향 및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9호 신설).

○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영어마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다목, 제25조~제2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13조의 협의회의 회의를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13조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현삼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 개정이유

○ '근로(勤勞)'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함을 말하나, '노동(勞動)'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 용어이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인 만큼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 '노동'과 '노동자'라는 용어로 새로이 명시하고자 함.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규정함(안 제명 및 제1조~제12조).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를 규정함(안 제11조 제4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동”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

(수정 주요내용)

○ “노동”의 정의를 제2조제1호로 추가 규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은주 의원 등 7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됨.

○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모색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 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제6조).

○ 해당 시·군에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2년까지 전 시·군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게 될 종합재가센터에 관한 예산(도비 100%)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제6조제1항제10호에 "노인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요양 사업 등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 규정함.

○ 제7조제1항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및 사회취약계층, 타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기피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 규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왕성옥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CCTV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설치 및 이용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최종현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도민촉진단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도민촉진단의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도민촉진단의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비밀준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지도·감독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5조의 도민촉진단 활동비 지급 근거로 제시한 「경기도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20조는 도민촉진단과 자원봉사단체의 성격과 업무가 상이하므로 삭제가 필요함.

○ 조례 내용의 논리적 연계를 위해 제9조제1항을 제4조(도민촉진단 구성·운영) 제3항으로 위치 이동시키고, 제9조제2항의 위촉장 및 증표의 규격과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가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의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활동비를 「경기도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도민촉진안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제9조제1항은 도민촉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4조제3항으로 이동시키고, 제9조제2항은 규칙에서 정할 세세한 사항이므로 삭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영해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5904호, 2019. 6. 4. 공포·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운영 취지에 맞게 근거 법령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종전 시설 퇴소자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쉼터 이용자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의 제명 및 전체 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안 제13조도 "학대 피해장애인"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학대피해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쉼터 이용자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 제명을 "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도 이에 맞게 수정함.

○ 조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제13조 본문 중 "학대 피해장애인"을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권정선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써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안 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기존의 금연구역 대상 지역 중 학교정화구역을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조문이 당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함.

○ 기존의 금연구역 지정 대상 중 제7조제1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방재율 의원 등 4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됨. 따라서 안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이은주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촉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경근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생인권 옹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학생인권 옹호 업무로 명확하게 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약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 학생인권에 대하여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도록 업무수행자를 수정함(안 제5조부터 제32조까지).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의 소집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미숙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2011년 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 기관 및 종류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전시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최 및 주관기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대회가 폐지된 창안품전시회를 삭제함(안 제3조제3항).

○ 심사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전시회의 출품 부문을 다양화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출품 부문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전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장대석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의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교육감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노동인권교육 기본 및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함(안 제11조).

○ 민간위탁, 민관협의체, 재정지원, 표창,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을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학교가 교육시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1항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로 수정함.

○ 안 제11조제1항 중 '학년별 연 2시간 이상'을 '연간 2시간 이상'으로 수정함.

○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함.

○ 안 제11조제1항을 안 제11조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경호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도청, 소속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를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제1항과 합치고 안 제6조를 삭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최세명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 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이혜원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대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실태점검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10일, 보건복지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 근거와 위수탁의 해지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자격을 "의료법인"에서 "「치매관리법」제16조의3 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갱신사항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2항).

○ 「치매관리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 근거를 변경함(안 제4조 제6항).

○ 「치매관리법」제16조의3 제7항에 따른 위·수탁의 해지 항목을 추가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2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조 5,19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원 증가

- [일반회계] 23조 1,523억 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원↑)

[단위 : 억원]

세 입	8	세 출	8
• 특별교부세(성립전)	8	• 출연금(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예비비(내부유보금) • 국고보조사업(성립전)	55 △55 8

- [특별회계] 3조 3,672억 원(변동없음)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비 121백만 원 증액 및 내부유보금 36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건의·결의안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28일, 김경일 의원 등 42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주 문

○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2공구에 대한 턴키 공모시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시한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시·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음.

○ 따라서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가 경기서북부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말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자유로IC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4) 제안이유

○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2공구 턴키 공모시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시한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시·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이대로 자유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고속도로 개설 취지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팽창하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북측의 수도권 접근성 확보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2016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까지 자유로와

연결하는 IC건설은 당연시 되었으나 한강통과 방법이 교량에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하저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부족 문제로 인해 자유로IC가 제외되는 황망한 사태가 초래되었음.

○ 만일 자유로IC가 없어지면 자유로를 이용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운정신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제2자유로로 우회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운정신도시 주민은 신도시 내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및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됨.

○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 서북부 2백만 도민과 함께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금년 10월말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자유로IC를 반영해 줄 것과 경기도의 합리적 대안 마련 및 적극적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10일, 경제과학기술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철회해야 함.

○ 우리 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함.

○ 경기도 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경기도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함.

○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세력은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함.

(4) 제안이유

○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 간의 협정을 파기하고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비난해왔음.

○ 급기야 지난 7월 1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수출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

○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여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기업을 유치하고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함.

○ 경기도 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경기도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함.

○ 이처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발언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를 망각한 치졸한 경제보복과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세력은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10일,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감면 기간의 연장을 건의함.

(4) 제안이유

○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지원(경감) 혜택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함.

관련 조문	내용	종료 시기
제78조제1항	- 사업시행자(부동산) • 취득세 35% 경감 • 재산세 35% 경감	- 2019년 12월 31일
제78조제4항	- 분양자(부동산) • 취득세 50% 경감 • 재산세 35% 경감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4. 기 타

□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4)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위 원 수 : 30인 이내

○ 임　기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 6. 30.까지

(5) 위원 선임

○ 위원수 : 29명(더민주 27, 한국당 1, 바른미래 1)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필근	도시위	수원1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안행위	시흥4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기획위	수원10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문체위	김포2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여가교위	고양1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도시위	광명1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원용희	도시위	고양5	더불어민주당	박덕동	제2교육위	광주4
더불어민주당	김용찬	안행위	용인5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건설위	하남1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제1교육위	성남7	더불어민주당	서형열	건설위	구리1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문체위	성남1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문체위	군포1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도시위	부천2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도시위	과천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복지위	부천5	더불어민주당	이원웅	문체위	포천2
더불어민주당	성준모	제2교육위	안산5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기획위	가평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제2교육위	화성4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복지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창균	도시위	남양주5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농정위	안양1	자유한국당	이애형	복지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영해	복지위	평택3	바른미래당	김지나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건설위	파주3				

□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함.

(4)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13명(더불어민주당 12, 자유한국당 1)

(5)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당 초				변 경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제1교육위	성남7	더불어민주당	임채철	기획재정	성남5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보건복지	비례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문화체육관광	광명3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10장 338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0장 제338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 26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4차, 위원회는 총 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8월 26일 (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	출석의원 139인
	위원회 활동 평화경제특위 3차	
8월 27일 (화)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6명)	출석의원 137인
8월 28일 (수)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8명)	출석의원 138인
8월 29일 ~ 9월 9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경제노동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제1교육위 1차(이상 8월 29일), 기획재정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2차, 보건복지위 1차, 제1교육위 2차, 제2교육위 2차(이상 8월 30일), 농정해양위 3차, 보건복지위 2차(이상 9월 2일), 의회운영위 1차(9월 3일), 예산결산특위 1차(9월 4일), 예산결산특위 2차(9월 5일),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위 4차(9월 9일)	
9월 10일 (화)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5명)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54건	출석의원 141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8월 26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남종섭·송치용·김경희·이영주·황대호·권정선 의원)을 실시 후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후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였다.

8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백승기·이종인·신정현·최승원·김진일·김영해 의원)을 실시 후 일문일답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관열·김종찬·박창순·김경호·조성환·김철환 의원)을 실시하였다.

8월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조재훈·한미림·김종배·서현옥·심민자·김직란 의원)을 실시 후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태환·허원·고은정·강태형·최경자·원용희·오지혜·추민규 의원)을 실시하였다.

9월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선구·유영호·이명동·지석환·왕성옥 의원)을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등 54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3건이 접수되어, 69건(원안 54, 수정 15)을 처리하고 4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8. 26.(월) (10:49~11:43)	139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 자유발언 - 남종섭·송치용·김경희·이영주·황대호·권정선 의원 1.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가 결 가 결 가 결 제안설명 제안설명
2차	2019. 8. 27.(화) (10:06~16:44)	137	※ 5분 자유발언 - 백승기·이종인·신정현·최승원·김진일·김영해 의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6명) - 박관열·김종찬·박창순·김경호·조성환·김철환 의원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차	2019. 8. 28.(수) (10:06~17:05)	138	※ 5분 자유발언 - 조재훈·한미림·김종배·서현옥·심민자·김직란 의원 1. 휴의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8명) - 장태환·허원·고은정·강태형·최경자·원용희·오지혜·추민규 의원	 가 결
4차	2019. 9. 10.(화) (10:17~12:46)	141	※ 5분 자유발언 - 이선구·유영호·이명동·지석환·왕성옥 의원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2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7.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17.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 18.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2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24.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6.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가 결
			34.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가 결
			35.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36.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37.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4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48.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가 결
			49.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1.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5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3.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5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 321억 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을 비롯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한일 관계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국제사회의 새 틀을 짜는 과정에서 도민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힘이 되는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 행복에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과거사에 눈을 감은 일본이 독일의 사례처럼 깊게 반성하고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때마침 경기도의회 개원 6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파도를 만났다고 항해를 멈출 수 없듯이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재균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 자치를 위한 논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음.

○ 기존 협의체, 위원회 등 협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함.

(4) 주요내용

○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위원의 임기와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혁신교육포럼 및 기획위원회 등의 회의와 간사, 실비보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혁신교육포럼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경근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학업지원”을 “교육지원”으로 변경함.

○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정보제공, 재정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이나영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수반되므로, 각급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근거 조문 정비와 띄어쓰기를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조문 정비와 지방자치단체를 제9조 본문과 통일함(안 6조).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과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제목과 본문을 정비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이영주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민주화운동 정신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판단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통된 기본 상식임.

○ 이에 경기도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함.

○ 아울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받는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할 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관련 기념사업의 왜곡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대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 민주화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2조의2제1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중식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침체와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이 창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함.

○ 이에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기술기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창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창업플랫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허원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통하여 '소상공인', '소상공인 연합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소상공인단체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소상공인단체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지원을 하려는 기존 규정을 운영 경비 지원에만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백승기 의원 등 45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지원 등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지원계획,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성수석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종자생산·공급 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의에 보급종 재배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보급종 재배지 선정·운영 및 채종단지별 대표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종자 생산·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진일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

○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학계와 기관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추후 연구결과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개념을 보다 폭넓게(광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률상 개인형이동장치의 보험가입 의무 및 등록 의무가 없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장치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을 “이동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함.

○ 안 제7조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인영 의원 등 51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등)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방안이 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버스외부 음성안내장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4) 주요내용

○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에 관한 용어 정의 마련(안 제2조제3호 신설).

○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4조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최승원 의원 등 35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시·군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 실적은 매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권재형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철도 역사 및 승강대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근거를 두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중 스크린도어(안전시설)를 신설·개량하는 경우 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전승희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현삼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2016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사업의 현황과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노동인권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이애형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헌혈추진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권정선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2조(정의)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를 장애 종류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한정할 경우 영세한 다른 장애인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제7조(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이 우려되므로 일부 사업을 삭제, 추가하여 실현가능한 사업들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중 “장애인의 종류별”을 “등록 장애인에게”로, “사단법인을”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로 수정함.

○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사업, 2. 단체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장애인복지단체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삭제하고,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을 신설하며, “3. 단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을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으로 수정함.

○ 제7조에 보조금 지원 관련 집행방법, 정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권정선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이기형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업장'등 조례 상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근로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수정을 제안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중 '이르는'을 '걸리는'으로 하고, 안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고, 안 제9조제5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는 '임시회의'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안전보건(띄고) 점검'을 '안전보건점검'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장태환 의원 등 44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 일부 개정을 통하여 1998년 만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음(2018.12.31. 개정, 2019.7.1. 시행).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박근철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돕고 있는 이장·통장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등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이·통장 연합단체로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이·통장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이·통장 연합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연합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4조).

○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 도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통장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용찬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를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정경제' 목적과 개념을 '경제민주화'에 추가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공정경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경제민주화'용어를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이하 경제민주화 등)'으로 변경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김경희 의원 등 3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추세는 결국 높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협력방안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 의료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도 조례에 시·군의 사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무 위임의 형태를 취하여야 함.

○ 바우처 명칭을 일관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 내용 중 "시·군의 관할 부서"를 "관할 부서"로 수정.

○ 안 제7조 본문 내용 중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수정.

○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수정하고,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관련 업무 신설.

○ 별지서식 제목을 "노인의료 안심바우처 관리대장"에서 "경기도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관리대장"으로 수정.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유근식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4) 주요내용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기술장려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이들에 대한 의무와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수정 주요내용)

○ 기존 조례안에서 숙련기술인에 대한 기술장려금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의 의무와 선정취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추민규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제2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장은 학교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함.

○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황대호 의원 등 4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많은 수의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살인·상해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해왔음.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이제는 한국을 혐오하고 부정하는 혐한문화 양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으로서 긴 세월을 함께 교류하며 성장해 온 문화적 동반자이자 한국국민과 일본국민은 문화적 동질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온 우호선린 관계임. 하지만 일부 일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그릇된 제국주의 망상에 이용되며 서로를 부정하는 대립관계로 변질되고 있음. 이에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범기업과 그 행태를 명확히 기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를 통해 올바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 기관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와 교육공동체의 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전범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2조에서 전범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생활에서 구분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혼용되어 있는 소비자 주권을 한 개의 조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전범기업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범기업” 이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 안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하고 제6조 중 “세계 시민”을 “인류”로 하고,

○ 안 제6조제2항을 제7조(소비자 주권)제1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을 “제2항”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경기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등 56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조 6,81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620억 원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19년 2추 (a)	'19년 3추(안) (b)	증감 (c=b-a)	증감률 (d=c/a)	비고
계	265,196	266,816	1,620	0.6%	
일반회계	231,524	233,076	1,552	0.7%	
특별회계	33,672	33,740	68	0.2%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28,035백만 원 증액 및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등 29,679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조 83억 원 대비 10억 원 증액된 18조 93억 원임.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2회 추경안(B)	추경 증감 금액(B-A)
총규모	180,083	180,093	10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건의·결의안

□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이필근(수원1)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수도권 주택공급확대('18.9.21, 국가정책사업 30만호 공급)에 따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함.

(4) 제안이유

○ 최근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신도시(광교, 동탄2, 평택고덕 등) 조성 경험이 풍부하고 경기도 내 개발사업의 중책을 맡아온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이영봉 의원 등 6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지역별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지역별 거주비용을 재산에서 공제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대도시 기준을, 도(道)의 시(市)는 중소도시 기준을, 도(道)의 군(郡)은 농촌 기준을 적용

○ 이로 인해 경기도는 실제 거주비용이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높지만,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전국에서 복지수급률이 최하위 수준임.

○ 따라서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로 몰린 11만여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소득 공제액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을 촉구함.

(4) 주요내용

○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임.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주택과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도시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기초연금수급률은 61.6%로 도(道)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임.

○ 이에 경기도의회는 어디에 살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좀 더 명확한 논리전개를 위해 이 건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데이터를 최신 시점의 통계데이터로 수정 보완하고, 내용상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건의안 첫 번째 단락 중 "사람들의"를 "사람들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으로 수정함.

○ 건의안 두 번째 단락 중 "농촌 기준을 일방적"을 "농어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지역별 형평성 문제"로 수정함.

○ 건의안 세 번째 단락 중 "2018년 평균 주택매매가격"을 "2019년 6월 평균 아파트가격"으로, "18개"를 "16개"로 수정함.

○ 건의안 여섯 번째 단락 중 "특별시·광역시"를 "광역시"로, "10만여 가구가"를 "11만여 명이"로, "있고, 2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7만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향조정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를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2만여 명의 신규대상자와 3만 4천여 명의 급여액이 상향조정되어 복지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6일, 유광혁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은 국방상 이유로 협상이 부진하여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임.

○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국가가 보전책임이 있으며 지자체가 대규모 반환공여지 개발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가 개발주체로서 사업추진 의무 발생.

○ 道-시·군(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간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업무협약'이 체결(2019. 7. 29.)된 상황에서 활용계획이 수립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⑷ 주요내용

○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을 촉구함.

- 의정부시(레드크라우드, 스탠리, 잭슨), 동두천시(모빌, 케이시, 호비) 등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하여 즉각 협상을 하여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
- 정부가 미군공여지 개발의 전문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공여지개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공장업종 제한 및 지상문 민간사용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⑸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이유 및 주요수정내용〉

○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촉구 부분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안 세 번째 문단, 제3호 등).

⑹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

⑴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9일, 김용성 의원 등 20명

⑵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⑶ 주 문

○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는 과거사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싸워온 우리 국민에 대한 보복이며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옛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의 흔적을 지워 역사를 정립하고 왜곡·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135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전국의 문화재와 정부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흔적을 조사하고 일소(一掃)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4) 제안이유

○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과거사 문제로부터 이어온 부당한 행위를 끊임없이 일삼고 있음.

○ 일제의 식민지배는 민족말살 정책으로서 우리의 전통을 단절시키고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을 일제의 문화로 대체시켰고, 현재에도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재에 숨어 있는 일제, 친일의 잔재가 마치 우리 고유의 것인 양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

○ 경기도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홍렬씨가 작곡한 '도가(道歌)' 제창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친일 문화잔재를 전수조사하여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 내년부터 청산작업에 들어갈 계획임.

○ 우리는 옛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의 흔적을 지워 역사를 정립하고 우리 문화재를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135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전국의 문화재와 정부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흔적 조사하고 일소(一掃)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11장 339회 정례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1장 제339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과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10월 15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	출석의원 141인
10월 16일 ~ 10월 21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 1차, 경제노동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제1교육위 1차, 교육행정위 1차(이상 10월 16일), 보건복지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이상 10월 17일), 기획재정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2차, 교육행정위 2차(이상 10월 21일)	
10월 22일 (화)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등 66건	출석의원 141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10월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남종섭·이애형·진용복·성준모·장대석·김경호 의원)을 실시하고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심규순·김경일·전승희·성수석·이필근(수원1)·

최만식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6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1건이 접수되어, 73건(원안 51, 수정 22)을 처리하고 8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석 의원수	심의안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10. 15.(화) (11:20~11:59)	141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 자유발언 - 남종섭·이애형·진용복·성준모·장대석·김경호 의원 1.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9. 10. 22.(화) (10:07~12:33)	141	※ 5분 자유발언 - 심규순·김경일·전승희·성수석·이필근(수원1)·최만식 의원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2.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13.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15.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9.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20.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21.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2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결
			29.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30.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36.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37.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41.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42.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4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8.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가 결
			49.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50.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가 결
			51.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5.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가 결
			56.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7.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8.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59.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60.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가 결
			6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2.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가 결
			63.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가 결
			6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가 결
			6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파주에서 시작되어 연천, 김포, 다시 연천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여서 긴장이 더했습니다. 경기도는 저지선이자 전국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방역과 관리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지원과 확산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지사께서 "극한 대응, 과잉 대응일지라도 사후약방문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유례가 없는 만큼 선제적 위험 요소 제거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나서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중앙은 중앙의 할 일을 하고 지방은 지방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대의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와 사명으로 법 제도 개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라는 철옹성 앞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142명의 도의원은 중앙 중심의 질서를 재편해 지방 중심으로 바꾸려는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겠습니다. 지방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도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6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이 생각하는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과 창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협치 차원에서 공론화했던 여러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도민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도 치열하게 준비해서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종배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현재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었음.

○ 이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마련·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소재·부품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소재·부품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소재·부품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소재·부품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소재·부품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심민자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안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전수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도시형소공인 간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심규순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의 운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기준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
○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및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및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및 별표2)
○ 인증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함(안 제10조)
○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협력하여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오진택 의원 등 66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제7호).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15조 제3항).

○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15조 제4항).

○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기능은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2개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2018. 4. 25.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아동의 돌봄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이선구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빈집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도 빈집관리전략 수립 및 경기도형 지역맞춤 빈집정비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빈집관리전략 수립 방안·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빈집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빈집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2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배수문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로 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적용대상 이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원용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사업, 무궁화 종자생산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도지사는 무궁화를 원활하게 육성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5조).

○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랑 복원·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랑복원사업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예산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예산확보 방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권락용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염종현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교육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장현국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 육성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크루즈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경호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때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제2호).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문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의원 수를 '5명'에서 '5명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12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신정현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체들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 평화통일교육단체 간의 상호 협력증진,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평화통일교육 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조문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평화'라는 용어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임성환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경기도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정윤경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및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최만식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이스포츠의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원기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어린이는 어린이집, 학교주변, 가정 등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고 노출이 쉬운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하에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시책 개발 및 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보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종찬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 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비만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비만 예방 실천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강사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비만 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동철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의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려 함.

(4)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시 자격기준, 접수방법,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신설).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6조 신설).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요건 및 절차를 정함(안 제7조 신설).

○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서현옥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2019. 7. 1.자 콜센터 상담사 전원 공무직 전환으로 민간위탁에서 도 직접운영으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필요.

○ 감정노동에 근무하는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규정 및 콜센터 운영위원회(한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5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

○ 콜센터 교육 및 홍보 활동 시 필요한 물품 제작·배포 규정 신설(안 제7조).

○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규정 신설(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이명동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2019년 7월 1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비자 정책 업무 전반이 경제실에서 공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에서 '공정국장'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2항).

○ 당연직 위원 중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박창순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의 사업비 정산 시기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도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법령에서 지원을 규정하지 않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명을 제명과 해당 조항에서 제외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포함해 특정 단체명이 명시된 부분은 '아마추어무선 활동' 등으로 수정함(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판수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촉 자문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4)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정원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의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유광국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자치분권의 최종수혜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 혁신과 창의적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9.3.25. 시행)」 주요 내용을 지방의회 특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직무 관련 조언·자문,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의 제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의2~제4조의5).

○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등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규정함(안 제15조).

○ 의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안 제3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경호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교육감의 책무 중 내용상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에서 예산 확보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

○ 일부 조항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안 제7~8조).

-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천영미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함.

○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장태환 의원 등 3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 특히,「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자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년공간의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청년공간의 전문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의 입법취지가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에 맞게 청년공간 사용 시 일반 이용자보다 청년들을 배려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청년공간 사용 시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 청년 및 청년단체가 우선하도록 단서를 규정함(제4조제2항 단서 신설).

○ 청년공간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청년 및 청년단체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은주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6호~제9호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노력의무 규정을 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제9조제2항의 서술어를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한다"로 수정함.

⑹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이영봉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지원팀 업무 중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신설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정대운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이유 및 주요수정내용〉

○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바우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상품권'으로 수정하여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미숙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못해 약국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폐의약품이 별도로 관리되어 소각되지 못하고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매립될 경우 폐의약품은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음.

○ 폐의약품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 폐전구 등도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수거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나, 시·군별로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군이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폐전구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재활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재활용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재활용에 대한 용어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17일, 김미숙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이용자의 긴급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설치의무기관을 두어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의무기관 조차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엄교섭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에 국한되어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특히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위원의 불출석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신설학교 뿐 아니라 기존 학교의 전면 개축에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까지로 확대함(안 제1조).

○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용역 단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조광희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2016년 경주에서의 규모 5.8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고, 동해와 한반도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큰 규모의 강진도 있을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마저 있어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안전 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에 대비한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 재난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내진보강 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안기원 의원 등 3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팔당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함.

(4) 제안이유

○ 팔당상류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팔당특별종합대책 고시에 따른 중복규제로 수질관리의 비효율성 및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부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경호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전문에서 밝히듯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민족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일본정부가 행한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닌 과거 잘못을 부정하며 정당한 명분과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경제력을 무기삼아 경제문제를 정치·외교·역사 문제로 연계시키는 침략적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또다시 국제적 평화공동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로서 친일잔재청산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여 공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수 : 21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이유

○ 3·1운동의 의의는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제국에서 민국으로,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을 맞이한 것이고, 4·19 혁명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임.

○ 5·18 민주화운동은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명명되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등의 해결기준을 관철한 과거청산의 모범적인 대표 사례이고,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정치가 종식하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린 실질적인 계기임.

○ 이러한 과거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룬 역사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 되고 있음.

○ 다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달리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박혀있는 친일잔재는 아직 완벽하게 청산되지 못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대립관계의 불씨로 남아 있음. 이는 현대사를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집중한 시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로써 이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일잔재청산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음.

○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감정적인 항일을 넘어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기준을 가지고 친일잔재를 청산하여야 할 것임.

○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보다 철저한 친일잔재 청산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기 타

□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2018.10.16. ~ 2019.10.15.)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4) 제안이유

○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는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현장방문('18.11.30.), 양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현장방문('19.4.23.), 현장 간담회('19.6.3.)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2019.8.23.~2020.1.22.)를 진행 중에 있어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정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의 건의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2016.11.1.)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으므로, 활동기간을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에서 "2020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로 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4일, 배수문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 구성·운영 중인「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4) 제안이유

○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경기도 자치분권 대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의 과제들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침이 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음에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가 없음.

○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도민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조속한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2016.11.1.)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으므로, 활동기간을 2020년 4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에서 "2020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로 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12장 340회 정례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2장 제340회 정례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5차, 위원회는 총 6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11월 5일 (화)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출석의원 138인
	위원회 활동 농정해양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교육행정위 1차,	
11월 6일 (수)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출석의원 139인
11월 7일 (목)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5명) - 휴회결의의 건 등 2건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출석의원 137인
11월 8일 ~ 11월 10일	본회의 휴회	
11월 11일 ~ 11월 22일	본회의 휴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11.21~22), 기획재정위(11.11~18), 경제노동위(11.11~21), 안전행정위(11.11~20), 문화체육관광위(11.11~20), 농정해양위(11.11~19), 보건복지위(11.11~20), 건설교통위(11.11~21), 도시환경위(11.11~21), 여성가족평생교육위(11.11~18), 제1교육위 (11.11~22), 교육행정위(11.11~20)	
	위원회 활동 건설교통위 2차, 교육행정위 2차(이상 11일), 제1교육위 1차, 교육행정위 3차(이상 13일), 농정해양위 1차(15일)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11월 23일 ~ 12월 15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농정해양위 3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3차, 도시 환경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이상 25일), 기획재정위 2차, 경제노동위 1차, 안전행정위 2차, 농정해양위 4차, 보건복지위 3차, 건설교통위 4차, 도시환경위 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차, 제1교육위 2차, 교육행정위 4차(이상 26일), 경제노동위 2차, 안전행정위 3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보건복지위 4차, 건설교통위 5차, 도시환경위 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3차, 제1교육위 3차, 교육행정위 5차(이상 27일), 의회운영위 1차, 기획재정위 3차, 경제노동위 3차, 문화체육관광위 2차, 제1교육위 4차, 교육행정위 6차(이상 28일), 농정해양위 5차, 제1교육위 5차, 교육행정위 7차(이상 29일), 보건복지위 5차(30일), 예산결산특위 1~5차(12.2~6), 친일잔재청산특위 1차(11.19)	
12월 16일 (월)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5명) -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36건	출석의원 142인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4차, 예산결산특위 6차	
12월 17일 ~ 12월 19일	본회의 휴회	
	경제노동위 4차, 안전행정위 4차, 문화체육관광위 3차, 농정해양위 6차, 보건복지위 6차, 건설교통위 6차, 도시환경위 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4차, 제1교육위 6차, 교육행정위 8차(이상 17일), 의회운영위 2차(19일)	
12월 20일 (금)	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4명)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4건	출석의원 140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11월 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진용복·이혜원·조광주·배수문·이기형·조성환 의원)을 실시하고,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과 11월 7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명원·최경자·황진희·임창열·서현옥·김우석 의원, 안기권·허원·김장일·김진일·고은정 의원)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승현·소영환·김미숙·유상호·김영해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36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손희정·송치용·권재형·조광희 의원)을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4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9건이 접수되어, 125건(원안 92, 수정 32, 부결 1)을 처리하고 4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19. 11. 5.(화) (11:10~12:00)	138	※ 5분 자유발언 - 진용복·이혜원·조광주·배수문·이기형·조성환 의원 1.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19. 11. 6.(수) (10:05~16:07)	139	※ 5분 자유발언 - 김명원·최경자·황진희·임창열·서현옥·김우석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유광국·황대호·안광률·이필근(수원1)·신정현 의원	
3차	2019. 11. 7.(목) (10:06~16:00)	137	※ 5분 자유발언 - 안기권·허원·김장일·김진일·고은정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 2.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김영준·이애형·권정선·원용희·이영주 의원	 가 결 제안설명
4차	2019. 12. 16.(월) (11:20~12:00)	142	※ 5분 자유발언 - 정승현·소영환·김미숙·유상호·김영해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결
			11.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가 결
			1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가 결
			25.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가 결
			26.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27.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30.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3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결
			3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가 결
			3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결
			3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결
			35.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가 결
5차	2019. 12. 20.(금) (10:11~12:39)	140	※ 5분 자유발언 - 손희정·송치용·권재형·조광희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가 결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 결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 결
			4.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 결
			5.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가 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 결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가 결
			9.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가 결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가 결
			11.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1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결
			1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 결
			1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가 결
			18.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2.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안	가 결
			2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7.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가 결
			45.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가 결
			46.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가 결
			4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가 결
			49.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가 결
			50.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가 결
			5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5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5.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가 결
			56.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7.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가 결
			58.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1.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가 결
			62.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가 결
			63.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가 결
			64.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가 결
			6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7.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68.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가 결
			6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0.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결
			71.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72.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4.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제340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46일 동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

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6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도민 행복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공평한 사회, 공정한 과정에 대한 도민의 바람과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께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쓰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주목하면서 도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반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골목까지 선순환이 이뤄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안전이 행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민의 삶터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중앙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지방자치 현장의 어려움, 국제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까지 점검하면서 도민의 삶의 현장을 다각도로 살피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31개 시·군,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의회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은 기금 포함해서 48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경기도는 27조 319억 원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6조 4,647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해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원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10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에서 약속한 도의원의 공약이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정책 제안했던 50개 사업 7,856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분권의 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48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안을 142명의 도의원이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황수영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정책이 필요함. 이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경제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경제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가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고은정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19.6.18.)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 주요내용

○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등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채신덕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 변형, 없어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안광률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순국선열과 항일독립지사들의 항일 투쟁의 현장인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항일유적의 발굴·보존을 적극 지원하고,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국외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보존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항일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민주·자주·독립 정신을 기리고자 함.

(4) 주요내용

○ 국내외 항일운동 실태조사,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유적의 발굴 등 항일유적 발굴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 항일운동 유적관련 자문단의 역할에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 설치와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관련 자문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상 “표지석”을 “안내판 등”으로 수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함.

(수정 주요내용)

○ “안내판”을 “안내판 등”으로 표지판(바닥)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수정).

○ “표지석”을 “안내판”으로 수정하여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현행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수정).

○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함(현행 제9조제1항 후단 삭제).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이애형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근거 및 보조금 지원 시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이애형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중복 투약, 복용법 오류, 복약이행률 저하, 부작용 관리 미흡, 고위험군 약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 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방문약료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조사, 평가, 협력 및 조정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용어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사회약료복지서비스”를 “사회약료서비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의 용어 중 “사회약료복지서비스”를 “사회약료서비스”로 일괄적으로 변경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최경자 의원 등 59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 및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 발의 후 개최된 공청회에서 개진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및 가족캠프 운영 지원 조항을 교육지원 계획에 포함시키고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수정을 제안함.

(수정 주요내용)

○ 교육감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건강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박근철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경기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와 평화통일을 도민 속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려함.

(4)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최갑철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9.7.2. 개정('20.1.3. 시행)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법령 명시함(안 제1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공용차량 무상대부 대상자를 구체적(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정하고,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삭제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현삼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제정안은

-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현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갑질'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이에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갑질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갑질 행위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갑질 행위'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보하게 하며, 징계 감경 배제를 '기속행위'로 수정하고,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하는 등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정의 규정의 '갑질'과 '갑질 행위'는 그 내용이 달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갑질' 부분을 삭제함. 또한 '갑질 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및 감경 배제 관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정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없으므로,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 사유를 통보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재량행위'로 규정한 부분을 '기속행위'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등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요건에 맞게 직위해제 규정을 수정함(안 제7조제4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우석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절차 위반 논란이 있었음*.

* 사례 :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 협약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경기도-CJ E&M 컨소시엄 K-컬처밸리 개발 기본협약
경기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

○ 이에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결 대상, 사전 보고 대상, 그 밖에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며 경기도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경기도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그 밖의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이나영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난 5월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 모습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 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함.

○ 따라서,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쓰는 안전도시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해촉, 회의와 간사, 분과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시·군의 안전도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위원회를 안전도시협의회로 변경함.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에서 「경기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로 수정(조례 제명).

○ 성별에 관한 사항과 기조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삭제하고, 안전도시

위원회를 안전도시협의회로 수정(안 제4조~안 제7조 등).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박성훈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주거종합계획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안 제1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정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과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성수 의원 등 40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유광국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수식품 인증업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방사능 등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에 대해 안전성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경기도 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소영환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생산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 민관위원회에서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현행 민관정책협의회를 민관위원회로 수정하여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5조).

○ 토종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백승기 의원 등 60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가축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촉진과 현장중심의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축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 및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경희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월 30만원 정액지급의 건강관리비로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을 도민이 널리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고자 함.

(4) 주요내용

○ 건강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4조제2호 및 제4호).

○ 지원신청 중 진료비 영수증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제3호).

○ 건강관리비의 지원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제2호).

○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함.

(수정 주요내용)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범위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의4호, 안 제10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추민규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2019.10.1.) 되어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장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새로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지역교육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교육공동체 협의체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원화를 위해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중복된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9호)

○ 일본식 한자어인 "부의"를 정비함(안 제6조 제목)

○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 조문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미숙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소속기관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4) 주요내용

○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박윤영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사업비 재원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함 (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정윤경 의원 등 33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민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게 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 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국기 선양사업 및 관련 교육·홍보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안 제4조).

○ 국기·조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에게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 국기선양사업에 기여한 도민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원미경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인 '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성장하여 2018년 기준 약 15조원,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음.

○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데이터산업의 지원 사업 및 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데이터산업 육성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포괄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장일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에 들어서 재해율은 전년 대비 0.06% 증가, 재해자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사망자 역시 9.5% 증가하였음.

○ 아울러 월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일년 중 여름에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음.

○ 이에 경기도민의 노동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홍보하는 기간 운영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송영만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내 유망스타트업의 발굴 육성과 글로벌 창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경기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성장 분야 리더십 발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권재형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 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명원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를 도입하여 불법 외국인의 고용을 방지하고,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신설).

-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함(제1항)
- 전자카드제 운영 비용의 설계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항)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항)
-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항)
-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항)
- 대가 청구 및 지급 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 조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유상호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중 유효기관이 만료되어 실효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력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4)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대상(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100만원 범위)하여 지원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시·군에 포상금 지급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직란 의원 등 38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도로 지하에 매립·설치된 맨홀 지하식 소화전의 표시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들이 소화전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여 소화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화전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예산을 지원함.

(4) 주요내용

○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표시 설치 근거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용찬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신고포상금의 현금 지급으로 특정인들의 과잉신고가 우려되는 바,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고자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함(안 제5조).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변경함(안 제8조).

○ 결과통지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에서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경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신정현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민족이란 공동체가 함께 겪으며 이겨낸 시기로 과거와 현재가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나 실제 우리의 역사교육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특히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이었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독립운동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식하며, 항일운동에 참가한 선조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현실임.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고자 도모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당시 처한 서구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교육지원청에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경호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국유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유림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도유림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등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주기 등에 대하여 정하되,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도유림의 보호협약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 오탈자를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성준모 의원 등 34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미숙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경기도교육감의 메이커교육 활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메이커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계 프로그램 및 거점센터 지정·운영, 각급 학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메이커교육의 정의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1)」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및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한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을 명확히 규정함.

(수정 주요내용)

○ 메이커교육의 정의를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규칙을 둠(안 제11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1) 2018.4.25. 시행

□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권정선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노출되어 왔음. 그러나 기존 조례는 도 및 산하기관 등의 근무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도 전체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민간의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산하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산하 기관에서의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의 목적 조항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1조 목적조항을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정희시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사회의 다양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함께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조건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부부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수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지원대상의 조건을 특정성별에만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의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도민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 요건 중 부인의 연령기준을 정한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박태희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의사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기억되어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이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가 의사자를 기억하는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건 중 연령기준 등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이영봉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금연규제 정책의 강화에 따라 공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및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담배 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이 초래되는 등 담배흡연을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무조건적인 금연규제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10조).

○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정정함(안 제10조제2항).

○ 흡연실의 설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이애형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사업대상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독거·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함(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독거·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왕성옥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선식품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서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 신선식품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기부, 유통,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최만식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2019. 6. 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서예 진흥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경기도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서예관련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서예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도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간을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달수 의원 등 29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현재의 관광은 관광지의 생활과 문화, 역사 등의 체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의 충돌로 지역민이 관광객을 거부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관광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의 증가, 임대료 및 지가의 상승 등으로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생활 및 정주권의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분배와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공정관광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경기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공정관광을 위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봉균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경기도에서 융성한 실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학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경기도의 정체성의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실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6조).

○ 경기도 실학연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채신덕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현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이 권고수준에 그쳐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정책제언이 실제 사업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8조제6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정윤경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보조금 지급 시 따라야 할 조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 해석의 모호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종찬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비밀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전승희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경에 대한 권리(월경권)'를 인정하여,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저소득층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기도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박옥분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구축 및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평생학습대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확산 분위기 및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평생학습 시상 부문을 규정함(안 제3조).

○ 평생학습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조).

○ 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

○ 평생학습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손희정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로 개정함.

○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원기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의 개정사항(청소년참여위원회)을 반영하고,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개정함(안 제4조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3조제2항).

○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의 본문 중 중복된 문구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본문의 “20명이내 이내의”를 “20명이내의”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2년간 추진되어 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 적용범위를 경기도 내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정함(안 제4조).

○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안기권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대상을 노후주택 면적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 정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면적별(기초생활수급자 및 60㎡·85㎡·130㎡ 이하) 차등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 함.

(4)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신청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율을 정함(안 제12조).

○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신규 정비구역 등 지정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주택 공급순위 기준을 일원화 함(안 제26조).

○ 법 제1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32조).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적정한 시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함(안 제59조제7항).

○ 정비사업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금액을 상향함(안 제7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9일, 남운선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 위탁 시, 타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재정 총규모는 32조 6,429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109억 원(1.6%)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19년 3추(a)	'19년 4추안(b)	증감(c=b-a)	증감률(d=c/a)	비고
계	321,320	326,429	5,109	1.6%	
예 산	266,800	271,214	4,414	1.7%	
일반회계	233,060	235,980	2,920	1.3%	
특별회계	33,740	35,234	1,494	4.4%	
기 금	54,520	55,215	695	1.3%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살처분보상금 등 149,503백만 원 증액 및 일반예비비 등 31,462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조 94억 원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18조 527억원으로 0.2%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추경 증감	
			금액(B-A)	비율
총규모	180,094	180,527	433	0.2%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경기도 재정 총규모는 31조 7,313억 원으로 전년도 29조 4,662억 원 대비 7.7%인 2조 2,651억 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7조 319억 원으로 전년도 24조 3,731억 원 대비 10.9%인 2조 6,588억 원 증가.
- 기금은 4조 6,994억 원으로 전년도 5조 931억 원 대비 △7.7%인 3,937억 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당초 예산안(A)	'19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증가율 (C/B)
합 계	317,313	294,662	22,651	7.7%

구 분	'20당초 예산안(A)	'19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증가율 (C/B)
예 산	270,319	243,731	26,588	10.9%
일반회계	235,878	210,974	24,904	11.8%
특별회계	34,441	32,757	1,684	5.1%
기 금	46,994	50,931	-3,937	-7.7%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 등 87,015백만 원 증액 및 일반예비비 등 80,316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31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규모는 16조 4,647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8%, 1조 470억 원이 증액 편성됨.

(단위 : 억원)

2020년 예산안 (A)	2019년 예산액		증감액 및 비율	
	본 예 산	제3회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164,647	154,177	180,527	10,470 (6.8%)	△15,879 (△8.8%)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내부유보금 등 22,100백만 원 증액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21,800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건의·결의안

□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김경호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경기도의회는 환경부가 한강유역 상·하류지역이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수의 확대를 건의·촉구함.

(4) 제안이유

○ 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규제면적과 이용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균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의 가장 중요한 물 현안인 팔당 상수원관리의 당사자인 경기도 지역주민은 제외되어 있어 한강유역 상·하류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확대되어야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최승원 의원 등 39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주요내용

○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음.

○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2018~2047) 남한은 각각 159.2조원과 4.12조원, 북한은 각각 51.3조원과 17.3조원으로 전망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음.

○ 남북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지난 6월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미 간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임.

○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에 북한이 거부의사를 표명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음.

○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이고 북한 정부의 남북대화 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문맥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

(수정 주요내용)

○ 안 네 번째 문단 중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를 “북한이”로 수정.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정승현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의 종합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1975년에 최초로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고, 아직까지 보상금액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간과한 것임.

○ 또한 헌법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헌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2018. 9.~2019. 5.)에 따르면, 23만6천호(78.4%)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공급지역은 남양주, 고양, 하남, 부천, 과천 등 22개 지구 4,208만8천㎡임.

(4) 주요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개정하라.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를 개정하라.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미숙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주 문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차별해소를 촉구하면서 즉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을 학생 수에 맞게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기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범 도민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4)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재정의 기본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그 목적에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밝혀 '균형'이라는 화두는 교부금 배분의 중요한 가치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정작 현실은 경기도의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전국 학생수의 27.3%로 해마다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전국 신설학교의 대부분 역시 경기도에서 세워지고 있어 재원확보는 타 시·도에 비해 절실히 요구되지만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보통교부금은 고작 21.6%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교육력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

○ 타 시·도의 아이들을 위해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교육부 담당 공무원밖에 모르는 깜깜이식 교부금 배정의 결과가 결국 경기교육을 위기로 몰고 있음.

○ 타 시·도 교육을 위해 경기교육을 호구로 만드는 이상한 교부금 배정방식은 즉각 개선되어야 하며, 균형을 잃은 재원 배분은 교육 여건의 격차와 교육 결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임. 더욱이 이는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고민해야 할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경희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주요내용

○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채 오히려 차가운 시선 속에 방치되고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직면한 현실임.

○ 현재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수는 21,905명에 달하지만 이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820명에 불과하고, 13,871명의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3,214명의 아이들은 특수학급도 아닌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음. 이는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겨우 36개교에 불과하여, 수용인원이 4,82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용할 학교가 태부족하기 때문임.

○ 장애아를 낳은 것이 오로지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장애가 전염병도 아니며, 장애아를 둔 부모가 죄인도 아님. 그럼에도 장애아를 둔 부모를 죄인처럼 무릎 꿇게 하는 사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특수교육의 의무는 해태한 채, 교육의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함.

○ 특수학교는 당장 시급히 설립되어야 함.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을 꺼리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대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 의무 설립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원용희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주축이 되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 정부 및 국회는 실무협의회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시행하도록 건의함.

(4) 제안이유

○ 현재의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 사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유지시키고, 주택분양은 주택을 공급한 해당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가 최근 조성된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이 적용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성토행위 규제완화 및 상수원관리지역 내 체험·실습시설, 음식점용도 건축물,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 등에 대한 행위규제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함.

(4) 제안이유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4개 시·군에 158.8㎢에 걸쳐 1975년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음.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어 잘 처리되고 있으며 수처리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 변화에 발 맞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하려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주택법」 투기과열지정 주택담보대출(은행업

감독규정)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 하향 조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지역에 정주하여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원주민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선별적 완화를 건의함.

(4) 제안이유

○ 지난해 8월말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 ‘원주민조합원’들의 주택담보대출 (은행업감독규정)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 60%에서 40%까지만 가능해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주민조합원’들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지역에 정주하여 최종입주 전까지 멸실 건물 담보대출 상환, 추가입주부담금, 토지세 부담, 초과이익환수 환수제 등의 불편을 감내하는 조합원들로서, ‘원주민조합원’들은 투기세력이 아니므로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대출규제 완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함이 필요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12일, 지석환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비준의 미이행 시, 무역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음.

○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 국내의 무역관련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현실에서 유럽연합의 수출 보복조치는 다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

○ 이에 경기도민의 노동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홍보하게 하는 기간운영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지만,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이 되는 8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 187개 회원국 중 146개 국가가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네 개 이하의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1개 국가에 불과함.

○ 이에 정부는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비준동의안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관계 노동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였음.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건의안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문장 및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문단의 일부 문장 및 단어를 정비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4. 기 타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25일, 장현국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경기도의회에서 현재 구성·운영 중인「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0년 11월 5일까지 1년 연장한다.

(4) 제안이유

○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답보 속에서 남북 간 평화경제협력 정책구상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의 활동기간이 부족하고,

○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과 도민·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으로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2016.11, 2018.8)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으므로, 활동기간을 2020년 5월 5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5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4)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위 원 수 : 21명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5) 위원선임

○ 위원수 : 21명(더민주 20, 정의당 1)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기획재정	가평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건설교통	하남1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기획재정	용인6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도시환경	광명1
더불어민주당	유광혁	기획재정	동두천1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여성가족	파주2
더불어민주당	황수영	경제노동	수원6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여성가족	비례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안전행정	성남4	더불어민주당	이진연	여성가족	부천7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안전행정	평택5	더불어민주당	방재율	제1교육	고양2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문화체육	수원5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제1교육	의왕2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문화체육	김포2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교육행정	군포3
더불어민주당	장현국	농정해양	수원7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교육행정	고양6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보건복지	비례	정 의 당	이혜원	기획재정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영해	보건복지	평택3				

□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이나영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道의회에서 현재 구성·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1년 2월 11일까지 1년 연장한다.

(4)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道의회 차원의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 경기도가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문제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 마련의 활동기간이 부족하고,

○ 눈앞의 실적을 위한 행정을 지양하고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의 참여 등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2016.11.1., 2018.8.)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으므로, 활동기간 연장을 2020년 8월 11일까지 6개월만 연장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활동기간을 "2021년 2월 11일까지 연장한다."에서 "2020년 8월 11일까지 연장한다."로 한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2월 4일, 김현삼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4) 제안이유

○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경기도내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음.

○ 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①정부 및 경기도 노동정책의 현황 분석, ②경기도 노동관련 조례 유형화·분석, ③노동관련 조례 실효성 저해요인 인터뷰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경기도 노동관련 조례의 실효성 강화방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 의제를 제시하였음.

○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노동과 인권 관련 사무가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치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본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한 노동·인권 관련 조례의 제·개정 추진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집중적인 고민과 후속조치가 필요함.

○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13장 341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3장 제341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3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2월 11일 (화)	제1차 본회의 - 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등 4건	출석의원 140인
	위원회 활동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위 4차, 청년대책특위 3차, 친일잔재청산특위 2차	
2월 12일 ~ 2월 25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건설교통위 1차(13일), 기획재정위 1차, 경제노동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2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제1교육위 1차(이상 17일), 기획재정위 2차, 문화체육관광위 2차, 농정해양위 2차, 보건복지위 2차, 도시환경위 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차, 제1교육위 2차, 교육행정위 1차(이상 18일), 경제노동위 2차, 교육행정위 2차(이상 19일), 경제노동위 3차(20일), 의회운영위 1차 (21일), 평화경제특위 4차(25일),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위 5차(25일), 의회운영위 2차 [폐회중](3월5일), 청년대책특위 4차[폐회중](3월16일)	
2월 26일 (수)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7명)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7건	출석의원 137인
	위원회 활동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위 5차, 지방자치분권특위 3차, 일자리창출특위 3차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2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듣고,「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휴회 결의의 건」등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남종섭·김경일·오명근·황진희·김경호·권정선·김진일 의원)을 실시하고「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7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건이 접수되어, 42건(원안 34, 수정 8)을 처리하고 15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20. 2. 11.(화) (11:10~12:27)	140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 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2.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20. 2. 26.(수) (10:08~10:58)	137	※ 5분 자유발언 - 남종섭·김경일·오명근·황진희·김경호·권정선·김진일 의원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5.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1.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가 결
			22.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30.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가 결
			31.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가 결
			3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39.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 결
			44.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초비상 사태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늑장대응, 소극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침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의 졸업식과 종업식 축소 등 신속한 대처도 고맙습니다. 불철주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36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비상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의회건물 방역과 직원 안전을 강화했고 141분의 의원님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과 정희시 의원님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도민 안심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 때는 초기에 중앙정부가 환자 동선 등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불안이 증폭됐던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정부와의 공조도 원활합니다. 국민 저마다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한 체류 국민들의 송환 과정은 우한 주재 영사의 표현대로 국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진천 주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한 교민 3차 임시생활시설이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이재명 지사님의 입장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성숙된 공동체의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다 꼼꼼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예정된 대집행부 질문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선제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임시회 날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로 돌아가 처음처럼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의회 본회의 개의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예산안 법정시한도 지켜 냈습니다. 올해는 정시 개의를 목표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우리나라 정치의 새 역사를 쓰는 해이기도 합니다. 만 18세 참정권이 실현돼 올해 총선에서 첫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해마다 참여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과 공유로 청소년의회교실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기상 입춘을 지나 우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 나무는 차가운 땅을 헤집고 여린 잔뿌리를 뻗어 물을 길어 오르고 있습니다. 싹 틔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린 잔뿌리의 숭고한 헌신으로 봄이 옵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이러스도 누군가의 헌신과 우리들의 사랑으로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고 더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면역력이고 사랑이 최고의 치료약이라고 믿습니다. 1,360만 경기도민 곁에는 도민이 믿고 사랑하는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5. 교섭단체 대표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20일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시설들은 폐쇄 되고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각급 학교들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등 서민경제의 고통은 가중되고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극복해야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공포감에서 지혜롭게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일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아산, 진천, 이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신속했고, 개인위생 강화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직까지 단 한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 중 4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를 조기에 출범시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송한준 의장님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과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4.19 민주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공존과 공생, 공영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분배돼야 합니다.

성실한 땀방울이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라는 말처럼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에 체현되고, 개인의 가치가 공동체에 반영될 때, 공적인 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활짝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 민주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의 본질은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세계경기 침체,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경제생태계와 노동환경의 변화는 일자리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우리에게 또 다른 난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봄이 올 것 같던 남·북관계는 북미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여파로 난관에 봉착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인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쉽지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포용과 혁신 정책’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줄어들기만 하던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가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점차로 감소하고,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지표가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13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확충, 청소년 반값교통비 지원, 노후 생활SOC 정비사업 등 시급한 민생현안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현해 냈습니다.

제10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당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8대 정책비전인 보편적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추진, 일자리 창출 대책수립, 주거복지 정책강화, 교통불편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우고, 선도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대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 회기 기간 중에 이어진 1인 시위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청 앞에서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단’과‘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활동에 전 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총과 죽창을 들고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오늘의 우리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기술독립을 이루는 그 날까지 관련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념과 사고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와 대담한 시도로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치가 필요한 곳에, 정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133명 의원들은 공존과 공영, 공정사회, 자치분권 완성, 협치를 통한 정책생성,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정책 등을 중심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경기도 민생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 및 자산 거품, 금융산업의 비대한 발전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상위 10%가 전체 가구의 순자산 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라 여겼던 노동현장에서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불안정 노동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념과 경험에 의한 정책이 아닌 새롭고 대담한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의 허리이고 근간이지만, 인건비 부담과 대기업 대형 할인마트들의 영업확장,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조례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한편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주변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핵심공약 3호로 내세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20만호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숫자에만 연연한 공공주택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 및 생활편익 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일정평형 이상의 주택 공급 등 단순한 공급숫자 확대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면 몇 년 안에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존·공영의 경제시스템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경기도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을 맞아 조사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 3%는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공정'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였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가치의 확산을 위해 내세운 '은닉세원 발굴, 유통기한 단속, 하천과 계곡 정비,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은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문제, 경기도 산하기관 개혁, 매번 인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측근·보은 인사 논란 등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공정은 약자들이 강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이 똑같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이 노력한 정도보다 결과에 의해 더 큰 특권을 받습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평생 얻는 특권과 소득의 격차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무리 공정한 시험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쏟아 부을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출발선'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교무상교육,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경기도내 아이들이 적어도 '출발선'인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에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의 성과를 내었던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채용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관행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제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방분권제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중앙정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6개 부처에 걸쳐있는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400여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겨질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의지에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늦어도 21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제일 먼저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협치를 통한 정책 생성을 보다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로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협력하면서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민선 7기 이재명호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괄목할만한 혁신정책을 통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고,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혁신교육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협치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8대 정책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도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 도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접경지대인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북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립했던 많은 대북사업들이 중단됐고,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남쪽과 북쪽 모두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기반으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개성공단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향후 개성공단이 정상화돼 개성에 다시 입주할 때까지 재가동과 영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그마한 성과라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북미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남한 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오던 개성관광을 공개적으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공감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민간 교류협력 사업부터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4.15 총선이 돼야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총선은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겹겹이 쌓인 적폐를 걷어내고, 집중화된 권력들을 분산하고,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외쳤던 국민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실현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정당들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의 과도한 전횡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고 현재의 상황을 호도하며, 미래를 향한 전진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공영'을 향한 미래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고, 정책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 10대 전반기 의회도 1년 7개월을 보내고,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쏜 살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 하루입니다.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처음 이 자리에 서서 했던 대표연설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란 말씀처럼,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제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회피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사명,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의 팀으로서 의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때로는 따가운 질책 속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의 시간은 결코 저만의 시간이 아니었고, 133명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5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잘 평가하여 후반기 대표단에게 인수인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소통과 협치의 부족함과,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에는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은 물론 후반기에도 의장단 및 대표단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당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제10대 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공존과 공영, 공정, 지방자치 완성, 협치를 통한 정책 생성, 평화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고, 정책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박윤영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김철환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장태환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시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통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관급공사 수급인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와 관련 별지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임금 등 지급상황 확인을 통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체불임금 발생 시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체불 임금 등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황진희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 폐교재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된 정의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법적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달리 기술하고 있고, 그 외에 잘못 기술하고 있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과 목적에서 약칭을 정비함(안 제1조).

○ 폐교재산 및 폐교의 기록물 등 보존·활용을 규정함(안 제3조).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에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내용을 추가 규정함(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하는 법 근거 조항을 정비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방재율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생 등이 조난사고 등에 처한 경우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외에 구조·구급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별도의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이라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난사고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조난사고 대비 교육 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위탁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황진희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되며 학교에서는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사용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안심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 및 각 학교에 사용기준 안내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식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심급식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5조).

○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유해성 식품 등의 사용 기준을 안내하여야 함(안 제7조).

○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관련 본문을 정비함(안 제8조).

○ 교육관련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고찬석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심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행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임.

○ 이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지원대상자 구체화, 지원 방법의 세부 내용 제시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신설함(안 제4조).

○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고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5조의3' 중 지원대상자는 본 조례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10조"가 아니라 "제5조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의3' 중 "제10조"를 "제5조의2"로 수정함(안 제5조의3).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양경석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체육증진, 여가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안광률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마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오광덕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및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관계전문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및 제24조).

○ 도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행사 지원(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경기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처분 시 청문에 관한 사항과 행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3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이영봉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한국 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개최가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권정선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에 노인·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최적관람석 설치와 대상의 근거 법령을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중“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용어의 정의 중“공연장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근거 법령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최적관람석 수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조성환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임.

○ 그런데 시·군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뿐임.

○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아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지도·감독, 지정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정희시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에는 축산 농가가 다수 있어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동물 전염병의 확산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외부 인력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음.

○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심리적 외상의 치료 대책 마련, 치료 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심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심리지원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정승현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무연고 및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 지원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등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공영장례 지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7조).

○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상위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연고자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내용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상위법의 위임 근거 규정 없이 독립된 법인격인 시장·군수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는 보고의무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밖에 조례체계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를 삭제함(안 제2조, 제5조, 제8조).

○ 지원내용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례식장'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조정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시장·군수의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을 수정함.

○ 그 밖에 띄어쓰기, 오탈자, 자구 등을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이선구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 보조 근거조항을 마련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나대지(안 제3조제3항 신설)를 포함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안 제3조의2 신설).

○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하여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일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7조제2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배수문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 도지사는 민관협치조직, 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조광희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2019. 8. 6.)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와 징계 면책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우대조치를 규정함(안 제13조~14조).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31일, 김미숙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함(안 제5조).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학교의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를 삭제함(안 제2조).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함(안 제8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자함.

(4) 주요내용

○ 정의 중 사용자를 삭제함(안 제2조).

○ 공공기관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17일, 도시환경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주 문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상의 이주택지가격에 대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정한 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건의함.

(4) 주요내용

○ 지난 12월 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48호)에서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부칙에서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주대상자가 확정되는 '최초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상자 선정 공고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이주대상자가 저렴한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3. 기 타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2) 소관위원회 : 본회의

(3) 제의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경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4) 위원선임

○ 결산검사위원 : 10명

○ 선임기준

• 의장추천(8) :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사회단체 1명

• 도지사·교육감 추천(2) :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2명

구 성	인 원	비 고
계	10	
도 의 원	3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3명
회 계 사	2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세 무 사	2	• 한국세무사회 추천
시민사회단체	1	• 시민사회단체 추천
재무경험자	2	• 도지사 추천 1명 • 교육감 추천 1명

제14장 342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4장 제342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의 원포인트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3월 23일 (화)	제1차 본회의 -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출석의원 141인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노동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제1교육위 1차, 교육행정위 1차, 예산결산특위 1차	
3월 24일 (수)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 2차	
3월 25일 (목)	제2차 본회의 -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출석의원 136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3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개의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건이 접수되어, 8건(원안 5, 수정 3)을 처리하였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20. 3. 23.(월) (11:02~11:27)	141	1.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가 결 가 결 제안설명 가 결
2차	2020. 3. 25.(수) (10:09~10:36)	136	1.「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의 평화를 앗아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발병초기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꾸려서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의회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관리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공직자가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적십자를 통해 대구·경북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 방역전문가, 공직자,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못지않게 경제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확정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상식을

뛰어넘는 적극적 재정으로 전염병도 멈추고 민생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 불굴의 의지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이고 밝은 미래를 여는 원동력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터널 끝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3월 20일, 남운선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청원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제안이 빗발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기본소득위원회 해당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 지원과 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함.

(수정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5조제1항).

○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함(안 제5조제2항).

○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정함(안 제6조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8조 2,3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1,917억 원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20년 본예산 (A)	'20년 제1회 추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D=C/A)	비고
계	270,383	282,300	11,917	4.4%	
일반회계	235,945	247,862	11,917	5.1%	
특별회계	34,438	34,438	0	0.0%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811,130백만 원 증액 및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등 63,389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3월 17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개요

○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95억 원 증액된 16조 7,045억원으로 1.5% 증가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1회 추경안(B)	추경증감		비고
			금액(B-A)	증감률	
총 규 모	164,650	167,045	2,395	1.5%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지원 등 17,399백만 원 증액 및 예비비 770백만 원 감액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15장 343회 임시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5장 제343회 임시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2차, 위원회는 총 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4월 21일 (화)	제1차 본회의 -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	출석의원 139인
4월 22일 (수)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1차, 경제노동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4월 23일 (목)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안전행정위 2차, 제1교육위 1차, 교육행정위 1차	
4월 28일 (화)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운영위 1차	
4월 29일 (수)	본회의 휴회	
	평화경제특위 5차	
4월 29일 (수)	제2차 본회의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7건	출석의원 141인
5월 28일 (목)	본회의 휴회	
	일자리창출특위 4차(폐회중)	
6월 2일 (화)	본회의 휴회	
	운영위 2차(폐회중)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4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 결의의 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개의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7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9건이 접수되어, 95건(원안 78, 수정 18)을 처리하고 2건이 폐기되었으며, 21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20. 4. 21.(화) (11:16~11:32)	139	※ 5분자유발언 - 남종섭·이애형·안광률·소영환 의원 1.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2020. 4. 29.(수) (10:06~11:36)	141	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4.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15.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6.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8.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9.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0.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결
			21.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가 결
			22.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가 결
			2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결
			28.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1.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34.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41.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9.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1.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가 결
			55.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6.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7.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8.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9.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0.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2.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6.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7.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8.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9.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70.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1.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2.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가 결
			73.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가 결
			74.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7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7.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78.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가 결
			79.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0.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1.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2.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3.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4.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5.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가 결
			86.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가 결
			8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8.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9.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0.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2.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가 결
			93.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5.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가 결
			9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97.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9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101.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10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3.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4.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가 결
			10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6.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7.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느꼈던 무섭고 두려웠던 민심의 심판이 다시금 떠올라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민생 현장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을 목적으로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고통이 매우 절박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결단과 의회와의 공존 속에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매우 빠르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광역정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런 좋은 사례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재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주에는 세월호 6주기 기억식도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남긴 정신 유산인 공감과 연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힘이 됐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걸음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엊그제는 4·19혁명 6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피로써 지켜냈던 민주주의! 그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총선을 치른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우리 앞에 닥친 역경을 헤쳐 나가는 힘은 바로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도 이러한 원칙하에 준비해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담대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절박하게 도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유상호 의원 등 53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의 기념, 계승, 실천 등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3조).

○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김직란 의원 등 3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 주차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이 보장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위해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 제출을 시장·군수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문경희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장려를 위해 경기도 소관 공기업·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소관 공기업·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건설공사까지 신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건설공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 발주청은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최승원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로공사,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도로의 신규 설치 및 보수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확장시킬 경우에도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연계방안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내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 필요한 수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업자가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방안을 작성하고, 승인받도록 사항을 개정함(안 제8조제1항제4호 개정).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시 필요한 수리를 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김진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중대사고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중대사고 발생 즉시 구성하고 임무완수 후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김인영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김직란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민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도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개정).

○ 감염병 발생시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관리 방안조치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목적의 용어를 재정비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본문 중 "향상 및 도민의 건강 증진"을 "향상과 도민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오명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2조(정의)에 따라, "대중교통"이란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로서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의2 제1항 중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항 및 제3항 중 "대중교통"을 각각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오진택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하여 기존 대행업체의 업무의 연속성 및 기대 가능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함.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

○ 대행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확인·재기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 일체를 정비함.

(4) 주요내용

○ '대행자 지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모호한 문구 수정(안 제4조제3항 개정).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개정).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8조 개정).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상호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 제1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최승원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4호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1항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일부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의2 제1항 중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김규창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용어 및 어휘 등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함.

(4)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 어휘 정비를 통한 조문 개정(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2항).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하여 조문 개정(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6일, 유상호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하천점용료 부과 면제기준을 일부 상향함.

(4) 주요내용

○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민부담을 완화함(안 제2조 단서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지나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일·생활 균형이란 'Work and Life Balance', 즉 '워라밸'로 통용되는 용어로 일(직장)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를 의미함. 국가 차원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도 일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동관계 부서에서 도내 기업 문화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별도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일·생활 균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일·생활 균형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중식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생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시행계획에 담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제8호).

○ 경영지원 사업에 보건위생 증진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제10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오지혜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18.10.16.)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보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과 적용일을 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7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장일 의원 등 3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조례는 상여금, 성과금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범주에 담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에 이를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무기계약노동자 및 통상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를 보장하고자 함.

○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목적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닌

고용의 형태를 지칭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함이 있는바, 이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

○ '차별적 처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서현옥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개정(19.4.29)으로 청원산림보호직이 신설되고, 제명이「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청장 지원 대상에 청원산림보호직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청장 지원 대상에 청원산림보호직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국중범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경기도지사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기관이 2년 단위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본래 업무 이외에 위·수탁 심사

준비를 위해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현재 2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 조례에서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 중 위촉직 위원 자격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모두 갖춘 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참여권을 제한한다는 인권담당관실의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제2호).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무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수탁 할 때에 위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안 제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용찬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시·군에 18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2020년에는 행복마을관리소를 43개소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 사업 계획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사업 확장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업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포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안 제11조).

○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국중현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일 경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에서 명시한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2020년 2월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겨울철 도로 결빙 현상(블랙아이스)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용차량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편의증진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2).

○ 동절기에 자동차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물품을 공용차량에 비치·장착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임시표지 신청을 시장·군수로 명확히 규정함.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대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임시표지를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임시표지를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대신할 물품이 있을 경우, 이것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의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이필근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화재 현장에서 불에 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을 조금이라도 흡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와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력, 교육·홍보의 근거를 마련하려 함.

(4) 주요내용

○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방연마스크 비치와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력 및 교육, 홍보 활동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방연마스크 구입, 비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최갑철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면 누구든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 후에 장비 조작과 화재진압 등에 관해 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점, 소방관서별로 일부 교육 내용이 상이한 점, 교육과정 개발 및 진행으로 인한 관할 소방서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모집 신청자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 있는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에 대해 우선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단서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정윤경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기존 경기도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사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비효율성이 있었음.

○ 이에 전통사찰의 보존·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조례로 제정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산업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전통문화산업 관련 우수상품 지정 제도를 규정함(안 제5조).

○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전통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채신덕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체육복지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체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을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4호).

○ 체육복지를 위한 예산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복된 조문인 "업무의 위탁"을 삭제·정비함

(수정 주요내용)

○ "관리, 업무의 위탁"을 "관리"로 수정하여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함(안 제6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용성 의원 등 74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명예회복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용성 의원 등 7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독도교육 강화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독도교육 강화 계획과, 독도교육주간 지정·운영 및 독도 관련 행사를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독도교육 강화 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 독도교육주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독도관련 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권정선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서 병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은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여성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노숙상황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노숙생활 가운데서도 성폭력 및 신체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건전한 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숙인에 대한 인권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 계획 수립 시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6호).

○ 지원 사업에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호).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 비밀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왕성옥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중 신선식품에 대한 용어 정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이용자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부식품 제공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4호다목).

○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지석환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경기도에서 다양한 청년정책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러한 조례는 대부분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안에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시 연간 청년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熟考)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청년 관련 조례의 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 청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다른 청년 관련 조례의 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9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조성환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지급기준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 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최종현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고령장애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권정선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제11호~제12호).

○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대응체계가 포함되도록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함(안 제15조 제1항 제1호~제4호).

○ 협력체계 대상에 약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 제3항~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9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이애형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제11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정희시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법 제44조의 집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

○ 국가의 지원 등과 중복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제8호, 제9호 수정).

○ 비용 지원 대상에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진단 및 치료비를 추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입원비 및 후송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수정).

○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자 조건을 변경함(안 제5조 수정).

○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왕성옥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를 위해 인증대상과 인증절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식품의 표시기준,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2가지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근거 법률로써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인증업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함.

○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함.

(수정 주요내용)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중 제5조제1항제2호의 근거법률을 「식품위생법」 외에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 규정함.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인증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신설함(제11조 신설).

○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 신설).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권정선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내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컨설팅, 놀이지도, 발달검사,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습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제1호 및 제12호~제18호 신설).

○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삭제).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이진연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들의 재심청구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불복에 따른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주요 업무였던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제2항~제7조제6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김원기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일정 나이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퇴소청소년 지원 사업들의 대다수가 복지시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퇴소청소년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7조의5).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중복문구 자구 수정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 제7조의2제3항의 단서를 삭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남운선 의원 등 35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공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 및 소속 직원 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시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김성수 의원 등 43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2kg('18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0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2%로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산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산·유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경기도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유광국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단체 간 정보교류와 농업·농촌분야의 학술활동을 통해 농정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경기도 농업인회관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회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장대석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2020년 1월 14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고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최초로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가함(안 제4조제5호 신설).

○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참정권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함(안 제5조제2호 및 제4호 신설).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도구적 의미로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어,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사회적 참여 능력”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4호).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최경자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따라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교장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교폭력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에 수당을 지급하려는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에 따라 공무원 수당지급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폭력 사건처리의 교육적 노력인 “관계회복”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교육장은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운영 예산 및 담당인력 확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신설).

○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및 제25조제1항).

○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약칭을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위원회'로 규정하여 혼동이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

○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련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방재율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안전의 범위 중 기존 재난대비안전 외에 조난대비안전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조난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안전의 범위 중 조난대비안전을 추가함(안 제5조제9호).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황진희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경기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상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필수로 감시하여야 하는 구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 관련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이기형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지역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지역내 시설공사 완료시 해당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및 금액, 자재 사용 비율 및 금액을 공표·활용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 및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그 밖에 잘못 인용된 법령 및 띄어쓰기 수정, 조례 내 통일된 용어 등을 반영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9일, 최경자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2월 북부청사를 신축·이전하면서 기존에 북부청사로 사용된 경기북부교육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학생자치가 강조되고 학생주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 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몽실학교를 기획하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9월 몽실학교가 처음으로 탄생하였음.

○ 지난 3년간의 몽실학교 운영은 연인원 5만 여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특히 전국의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탐방 및 벤치마킹이 이루어져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자치 배움터는 타 시·도교육청에도 전파되고 있음.

○ 현재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몽실학교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실현하는 학생자치 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 몽실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교육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몽실학교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몽실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용어를 수정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항 중 "자치위원"을 "자치회원"으로 수정함.

○ 안 제7조제3항 중 "자치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함.

○ 안 제8조제1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함.

○ 안 제9조제2항 중 "자치위원"을 "자치회원"으로 수정함.

○ 안 제9조제4항 중 "위원"을 "자치회원"으로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김영해 의원 등 3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5조제2항제1호).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김경호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제안이유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로 도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

○ 이에 도정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긍정적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민, 도민 소통, 도민 참여, 도정 정보, 소통 매체, 소셜 미디어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온·오프라인 각종 소통 매체를 활용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손희정 의원 등 28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갈등 관리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과의 협력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도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함(안 제3조).

○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소관 실·국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갈등 전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3항).

○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군 협력을 신설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박재만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의 지역별 및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는 사회주택 공급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센터에서 사회주택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건설, 임대,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0조).

○ 도지사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평가하여야 함(안 제2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내용 중 사회주택 위원회, 사회주택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5조).

○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경기도 사회주택 지원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

○ 사회주택 지원 사업 조문을 삭제함(안 제15조).

○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6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장동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2호).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배수문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록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안 제2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록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김영준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주민참여를 통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엄교섭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

○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함(안 제6조).

○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추민규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

○ 이에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관련 교육 시행 등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시책 수립·시행 및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황대호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신정현 의원 등 35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공모제안 심사 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 공무원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대상자 요건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지를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모제안 등 심사과정에 전문가 참여 및 여론조사 등 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10조의2, 제13조, 제22조제3항).

○ 제안의 보완, 숙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 제22조제1항).

○ 공무원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개정함(안 제20조).

○ 제안내용 실시에 직접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정승현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함.

(4)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도지사의 공적 책무를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규정, 분배의 투명성 등을 규정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강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그 근거규정을 두며 조문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조문 재배열 및 어법규정을 정비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3호 나목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 통일관련 회의, 학술연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문화 등에 관한 사업의 추진"으로 수정함.

○ 안 제5조 제3호 다목, 라목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21일, 김판수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함(안 제5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건의·결의안

□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이창균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둔 훼손지 정비사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토지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 함.

(4) 제안이유

○ '훼손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건의안 내용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 건의안 내용 중 "통보하라", "마련하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등으로 정비함.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16장 344회 정례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6장 제344회 정례회

■ 제1절 개 관 ■

1. 집회 경위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였다. 회기 중 본회의는 총 4차, 위원회는 총 3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6월 9일 (화)	제1차 본회의 -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	출석의원 140인
	위원회 활동 친일잔재청산특위 3차	
6월 10일 ~ 6월 15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문화체육관광위 1차, 농정해양위 1차, 보건복지위 1차, 도시환경위 1차, 제1교육위 1차, 교육행정위 1차(이상 10일), 기획재정위 1차, 경제노동위 1차, 안전행정위 1차, 문화체육관광위 2차, 농정해양위 2차, 보건복지위 2차, 건설교통위 1차, 도시환경위 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차, 제1교육위 2차, 교육행정위 2차(이상 11일), 기획재정위 2차, 경제노동위 2차, 안전행정위 2차, 건설교통위 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차, 제1교육위 3차, 교육행정위 3차(이상 12일), 의회운영위 1차, 안전행정위 3차, 제1교육위 4차, 교육행정위 4차(이상 15일)	
6월 16일 ~ 6월 19일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위 1차(16일), 예산결산특위 2차(17일), 예산결산특위 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 특위(이상 18일), 예산결산특위 4차(19일)	
6월 22일 (월)	제2차 본회의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출석의원 139인
	위원회 활동 기획재정위 3차, 제1교육위 5차	

일 자	의 사 일 정	비 고
6월 23일 (화)	제3차 본회의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출석의원 139인
6월 24일 (수)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6명)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4건	출석의원 139인

3. 본회의 운영상황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운영상황을 개관해 보면, 최초 집회일인 6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간부공무원 소개와 5분 자유발언(심규순·송치용·신정현·황대호·조성환 의원)을 실시하고,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인영·배수문·유광혁·원용희·임창열 의원)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천영미·이혜원·김장일·서현옥·황진희 의원)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산회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염종현·정윤경·방재율·심민자·장대석·정승현 의원)을 실시하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114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건이 접수되어, 97건(원안 77, 수정 16, 승인 4)을 처리하고 18건은 계류 중이다.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차	2020. 6. 9.(화) (11:14~12:07)	140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자유발언 - 심규순·송치용··신정현·황대호·조성환 의원 1.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6.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7.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안설명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차	2020. 6. 22.(월) (10:07~15:27)	139	※ 5분자유발언 - 김인영·배수문·유광혁·원용희·임창열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명원·김규창·김경호· 추민규·박관열 의원)	
3차	2020. 6. 23.(화) (10:07~15:27)	139	※ 5분자유발언 - 천영미·이혜원·김장일·서현옥·황진희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최종현·김성수·정대운· 김은주 의원)	
4차	2020. 6. 24.(수) (10:09~12:48)	139	※ 5분 자유발언 - 염종현·정윤경·방재율·심민자·장대석·정승현 의원 1.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5.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6.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12.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1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6.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램리서치 R&D센터「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동의안 19.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20.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3.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2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7.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29.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0.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결
			31.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2.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3.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4.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5.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37.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38.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39.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0.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가 결
			4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2.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43.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5.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46.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가 결
			47.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가 결
			48.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가 결
			49.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0.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1.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2.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3.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4.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가 결
			55.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56.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57.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58.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가 결
			5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0.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1.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4.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65.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가 결
			66.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6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0.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 결
			71.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가 결
			7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4.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5.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8.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79.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0.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1.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2.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3.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84.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가 결
			85.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6.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가 결
			87.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가 결
			8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89.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가 결
			90.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91.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결
			9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결
			93.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가 결
			9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결
			95.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가 결
			9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98.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가 결
			99.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10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1.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2.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가 결
			103.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4.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가 결
			105.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6.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8.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결
			109.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 결

차수	일 시	출 석 의원수	심 의 안 건 등	의결형태
			110.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결
			11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결
			11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결
			113.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결
			114.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결

4. 개회사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니 불안이 가중되고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의 세계 모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받으며 희망을 일궜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소비로, 마음으로 십시일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내가 방역의 최일선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에 힘썼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경기도기본소득 조례안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여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더 꼼꼼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도민 행복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가 다져놓은 자양분 위에서 후반기에 더 튼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 조례안

□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3월 26일, 김규창 의원 등 30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부대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신축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비를 지원 받는 주체를 명확히 함.

(4) 주요내용

○ 향교·서원의 활성화사업의 대상 및 사업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4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현행 "기관 및 법인"을 삭제하는 경우 민간단체 등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여 다시 포함하고,

○ 사업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대시설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도록 함.

(수정 주요내용)

○ "향교·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를 "기관 및 법인, 향교·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로 수정함(안 제4조).

○ "부대시설(주차장, 휴게소, 공중화장실)"을 "부대시설"로 수정함(안 제4조제4호)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이영주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비용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일부 조문에 오탈자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환수조치의 근거를 제3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4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정을 통해 바로잡음(안 제5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김경호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 경기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를 보장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

○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도지사는 도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행정정보 공개와 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기능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도지사가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의 예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 주민의 도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청구 시 집행기관이 검토하여 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 도지사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13조 단서).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박창순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함.

(4)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8일, 조성환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기존의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와 화장의 증가로 인한 봉안시설의 설치로 인해 국토훼손과 장묘수요·공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묘지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두와 핵가족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기인하여 장묘 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인 자연장을 장려하고 도민들의 편리 도모와 자연장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연장지 조성 및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민의 자연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자연장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공설자연장지 설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자연장 관리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자연장 장려 및 교육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더 효율적인 자연장 장려 및 확산과 장사업무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요청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의 정의, 지원 사업 등에 공동·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설 자연장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박성훈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19. 8. 6.)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현행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기숙사로 확대함(안 제6조의3제4항)

○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의4)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군수의 결정 권한을 확대함(안 제6조의5)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확대함(안 제15조제2항)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함(안 제19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심규순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 공개 적용대상에 행복주택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조).

○ 국민·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 등을 공개하고, 행복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 임대시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월) 등을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3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김태형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교통시설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함.

(4) 주요내용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서 4. 가로시설물 중 교통시설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포함함(별표 1)

가로시설물	현행	변경
교통시설물	가. 가로등 나. 휀스 다. 볼라드 라. 가드레일 마. 버스·택시 승차대 바. 자전거보관대 사. 보행유도등 아. 교통차단·억제물 자. 주차관련 시설물 등	가. 가로등 나. 휀스 다. 볼라드 라. 가드레일 마. 버스·택시 승차대 바. 자전거보관대 사. 보행유도등 아. 교통차단·억제물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 차. 주차관련 시설물 등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배수문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2일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 2020. 4. 3.)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 조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및 조기폐차 권고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인용을 삭제함(안 제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이필근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함(안 제5조의2 신설).

○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인증마크 수여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안기권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管井) 및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자문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허가·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0일, 신정현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책무로 부여하고, 공공기관장에게는 노동이사의 학습기회와 훈련, 활동시간 보장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 노동이사가 이사회의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자 권익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학습기회와 훈련, 활동 시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노동이사제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추가함(안 제3조의2)

○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 재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노동이사의 인원을 정함(안 제5조제1항)

○ 노동이사의 임기를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더해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7조)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공사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경기도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정함 (안 제10조제1항, 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62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임직원 수를 강제할 수 없음. 노동이사의 수를 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 이사회 안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나 관련 부서의 장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노동이사의 안건제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이사가 안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이사의 정보열람권의 실효를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령이 없어 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기관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이사 수를 정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때, 노동이사가 안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이사가 정보 열람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때,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

○ 노동이사의 직무수행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6일, 오명근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더라도 공사시행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도지사가 도로점용을 수반하는 공사로 인해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내용

○ 도지사가 등교 및 출근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7일, 오진택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는 업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일체를 정비하고,

○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 및 물리적으로 준공석·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건립비용 공개를 위한 준공석·준공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개정, 같은 조 제2호 삭제).

○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나 물리적으로 준공석,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설치비용을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되, 개별 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 일괄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9호 개정, 같은 항 제8호 신설).

○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에 맞게 문맥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용어 정비를 통한 조항 수정(안 제3조제3항)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이명동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19. 1. 1 시행)에 따라 지역자원신설세 관련 조항이 제147조제3항에서 제147조제6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 중 "법 제147조제3항"을 "법 제147조제6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국중현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려 함.

○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과세전적부 심사 과정에서 법률·조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함.

○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례에서 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운영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의 정의를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6호와 같이 개정함(안 제2조).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의 위촉, 지정, 비밀유지 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국중범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소유자동차 중 보철용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도세 감면' 사항에 대한 위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음.

○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선정한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4) 주요내용

○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목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16조).

○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함(안 제1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이동현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인증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착한기업 지원 내역 중 '상장 수여'에 관한 사항이 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한편, 착한기업 인증 자격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므로, 인증 기간 내에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착한기업 인증기준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착한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상장 수여'를 삭제하고, '상표 사용권 부여'를 추가함(안 제10조).

○ 인증 취소 기준에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이 된 경우'를 신설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최갑철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20. 1. 7.) 및 시행('20. 4. 8.)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박근철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시장 확대에 따른 유통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령상 플랫폼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없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제도개선 자문단의 설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도지사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전승희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과거 여성의 생리는 생리혈이 불결하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성 혼자만이 감당하는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고 있었음.

○ 그러나,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써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박옥분 의원 등 24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Deep Fake) 포르노 등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이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포, 공유, 소지되는 등 갈수록 성범죄 수법이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어 가고 있음.

○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범위가 미치며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진일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지원 보행안전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설치 지원 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개정).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일부 용어를 행정안전부(경찰청)의 표준지침에 따른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혼용을 방지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용어 정비를 통한 조항 수정(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문경희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연면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완화하여 개정하고,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차량이 낙하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함.

(4)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기준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춤(안 별표 1 개정).

○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경일 의원 등 27명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로 인하여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만 더 나빠진 상황임.

○ 따라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택시경영 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함(안 제2조제2항제8호 신설).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동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양철민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확대 심의 권한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심의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정비함(안 제6조제3항).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대상 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장동일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영준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한을 규정함(안 제2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원용희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개정이유

○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영준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교원연수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의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와 자문 사항이 중복되므로 후자가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수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수정함(안 제13조)

(수정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수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수정함(안 제15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원용희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기본소득의 정의 규정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진용복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되면서 도지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여성폭력” 및 “피해자” 등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강화함(안 제5조~제6조).

○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회의 및 의결 등의 규정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승계함(안 제7조~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전승희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공포, 2020.5.27.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안 제1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2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유영호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강식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개정이유

○ 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명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경호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등(안 제4조, 제7조~제9조).

○ 공동사업, 재산 및 시설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경비보조, 포상(안 제13조, 제1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정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 위탁자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수정하며, 상위법으로 이미 규정된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의 실태파악과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 위탁자의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의 경비 보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유영호 의원 등 25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지원 대상, 지원 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 신청과 지원 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제명을 조례의 취지에 알맞게 수정하고 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함.

○ 조례안의 제명이 수정되어 타 조례에 규정된 본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 목적 부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 부분을 "경기도 아동·청소년"으로 수정(안 제1조).

○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로 각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제명이 수정되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로 수정(부칙).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철환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고,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위원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함(안 제6조).

○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백승기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인증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축행복농장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의에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 시장·군수로 하여금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4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소영환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3)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신설함(안 제1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조광주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높은 기대수명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조기구산업은 신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음.

○ 이에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조).

○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강태형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제안이유

○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경기도민에게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

○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에 추진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오광덕 의원 등 19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전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공연 상설화 사업을 추가하고, 국악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경기도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

○ 경기도지사는 국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국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문형근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 등을 위한 국어 사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경기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오광덕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2020. 9. 17. 시행 예정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 도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문을 일괄적으로 삭제·정비함.

○ 도 등록문화재와 관련하여 종전에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재정비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이원웅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 분야임에도 미술시장의 지속적 침체로 창작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술작품의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적 환경 조성이 요구됨.

○ 이에, 경기도 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시장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미술품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정윤경 의원 등 21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최근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조례의 상위법령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조).

○ 조례의 정의에 “영화” 및 “영화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

○ 진흥계획 수립, 사업, 시·군,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영화산업을 추가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영화와 관련된 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0조).

○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최만식 의원 등 22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개정이유

○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 시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취약예술계층”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에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제5호 신설).

○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임성환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제안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인문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영해 의원 등 20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전문성, 통합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이영봉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장제21조 신설).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장제22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권정선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활동지원사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교육·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은주 의원 등 18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락한 생존권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써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노인 지속거주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박태희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50조에 규정된 경기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 협의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체계 및 매뉴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인권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동료지원가의 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지석환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통하여 당뇨병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뇨병은 각 유형의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달라 기존 조례만으로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지원사업과 당뇨병지원센터 설치 등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당뇨병환자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당뇨병환자 현황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협력관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조성환 의원 등 17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현대 사회에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런데 신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검진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지역협의체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검진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박태희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거주 조건을 완화함(안 제5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최종현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설치를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신설).

○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이애형 의원 등 15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 등은 각각 정보 부족과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됨. 이에 사회약료서비스 대상자와 방문약료 사업 내용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방문약료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제5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천영미 의원 등 12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적으로 1급 감염병 방역 체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재의 감염증 확산을 막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교육감의 책무 및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 휴교 및 휴업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기숙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안 제15조).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수정함 (안 제15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황진희 의원 등 23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과학실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화학약품은 잘못 보관하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등 잠깐의 실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경기도 내 학교 과학실에서 화학약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과학실 설치, 안전점검, 안전교육, 약품 및 폐수·폐기물 관리 등 안전한 과학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과학실 설치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교육장 및 학교장의 과학실 안전교육·연수 시행, 학교장의 안전장구에 관한 교육 시행, 담당교원의 학생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과학실에 비치하는 안전장구, 안전한 약품 관리,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 사고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함(안 제12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장태환 의원 등 26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수업, 문화·체육행사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교육부, 통일부, 경기도, 다른 시·도 교육청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통일교육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포상제도를 시행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긍정적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기여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제9판)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14조 상호협력체제는 기관간 재량에 의해 협력체제 구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14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경근 의원 등 14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교육의 내용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결혼·육아, 노년기 등 생애 주기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위원장을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인구교육의 정의 내용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협의회를 통한 지원을 삭제함(안 제6조).

○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위원장을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수당 지급 대상을 위촉위원으로 한정함(안 제9조단서 삭제).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경희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이들을 공익제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기관"의 범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부패행위 제보 등 공익제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기관"의 범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신설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엄교섭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경기교육대상의 수상자격 요건 중 근속연수 산정에서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기간을 일원화하고,

○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으며,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당연직 과장 직위를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명)

-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등

○ 경기교육대상의 수상자격 요건 중 근속연수에서 유치원 교육부문을 삭제함(안 제5조)

-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유치원 교육부문 5년)근속한 공무원" →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당연직 위원의 과장 직위를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 "총무과장" → "지방공무원 인사담당부서의 과장"
- "교원정책과장" → "교육공무원 인사담당부서의 과장"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미숙 의원 등 13명

(2)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나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극기 중 상당수는 싸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량품마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기관에서는 국내 업체가 제조한 태극기 또는 국기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을 갖춘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기관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교육감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황대호 의원 등 11명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관련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으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신규채용의 규모가 작아 조례에 규정된 우선채용의 효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매년 파악하여 고용촉진 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계획수립 시 경기도교육청에 알리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로 수정함(안 제명)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 내용에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공기업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 공기업 등에서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조례 용어 중 '취업 지원'을 '고용촉진'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잘못 인용된 법령 및 띄어쓰기 수정, 조례 내 통일된 용어 등을 반영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미숙 의원 등 32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사용제한을 초등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이자 무상급식 대상인 중·고등학교 급식에서도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4)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용어를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통일함(안 제1조, 제3조제2항).

○ 적용대상을 "초등학교급식"에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급식"으로 확대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안 제2조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도록 재배치하며, 안 제6조 중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를 정식 명칭인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목 외 부분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 신설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수정함(안 제2조).

○ 안 제6조 중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를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로 수정함(안 제6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일, 최갑철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3) 개정이유

○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이 공사장 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약 12년이 지났음에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특히, 화재 발생 초기에 적절한 진압도구가 준비되었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법률과 자치법규의 미비로 인해 진압도구가 없어 초기에 진압할 수 없었음.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로 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작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작업자 개인별로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조문에서 '간이소화용구'와 '소화용구'가 혼용되고 있어 이를 '간이소화용구'로 일치시키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정함(안 제3조제2항 및 별표1).

(수정 주요내용)

○ 설비 관계인이 작업자의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의 휴대를 권고하는 것에서 작업자가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정함(안 제3조제2항).

○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로 수정해 조문 상의 표현을 일치시킴(안 별표1).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1일, 경제노동위원장

(2)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3)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제1조)과 이에 따른 경기지역화폐 운영기준(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음.

○ 일부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실태가 점차 도의 운영지침과 상이해짐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른 도 예산 차등지원의 근거 마련.

(4) 주요내용

○ 지역화폐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개정).

○ 도지사는 시·군의 가맹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 공동운영 대행사의 사무범위와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운영대행사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도지사는 시·군이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제5조의2에 따른 운영기준의 반영정도에 따라 도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개정).

○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추가(안 제14조제7호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2일, 건설교통위원장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노동관련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것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4) 주요내용

○ 사납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및 제11조의2제2항).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일정한 제재를 하는 근거를 둠(안 제6조제3항 단서 및 각 호).

○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안 제8조제13호).

○ 재정지원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재정상태 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제8조 및 제8조의2제1항).

○ 여객자동차법 및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둠(안 제8조의3제2항).

○ 노동 관련법규 위반의 단속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근거를 둠(안 제9조의2제4호).

○ 상위법의 범위에 맞게 개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본문).

○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맞게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요금·요율

인상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 요금·요율 인상시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의 위반을 합동단속반이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11조의2제3항).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강조함(안 제11조의3제1항).

○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11조의3제2항).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2일, 건설교통위원장

(2)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3)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매뉴얼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등 안전준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통일된 표준매뉴얼을 시·군에 권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4)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사용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방안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자문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20조의5 신설).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2. 예산·결산안

□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5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08억 원 증액된 17조 4,919억 원으로 4.6% 증가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2회 추경안(B)	추경증감		비고
			금액(B-A)	증감률	
총 규 모	167,211	174,919	7,708	4.6%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계수조정안〉

○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설립 등 3,810백만원 감액 및 내부유보금 등 3,810백만원 증액

○ 직속기관 시설관리(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설립) 사업계획 미비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미준수, 계속비 조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금년도 계획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22,912백만원의 계속비사업 조서 미승인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결산개요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결 산 액 (나)	잔 액 (가-나)	비 고
세 입(A)	24,799,178	25,346,993	△547,815	
세 출(B)	24,799,178	23,912,432	886,746	
잉여금(A-B)	-	1,434,561	-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1,434,56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59,222백만원(명시 131,646백만원, 사고 32,989백만원, 계속비 394,587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4,98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0,354백만원임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결산액 (나)	잔 액 (가-나)	비 고
세 입(A)	3,250,755	3,273,670	△22,915	
세 출(B)	3,250,755	2,833,998	416,757	
잉여금(A-B)	-	439,672	-	

○ 의료급여기금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439,67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4,931백만원(명시 46,619백만원, 사고 8,898백만원, 계속비 69,414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14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3,593백만원임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승인

(5) 본회의 심의결과 : 승인

□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8일, 경기도교육감

(2)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결산개요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계잉여금(C=A-B)			
			소 계	이월금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188,846	190,802	175,187	15,615	7,967	65	7,583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19조 80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7조 5,18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5,615억 원임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승인

(5) 본회의 심의결과 : 승인

3. 건의·결의안

□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김현삼 의원 등 16명

(2)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제안이유

○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체류자격 부재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현행법에 의해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기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4) 주요내용

○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9일, 황진희 의원 등 10명

(2) 소관위원회 : 제1교육위원회

(3) 주 문

○ 초·중·고등학교 과학실과 가장 환경이 유사한 대학교의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 과학실에 관련한 법령은 따로 없어, 사업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과학실 실정에 맞는 '학교 과학실 중심'의 안전한 과학실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을 요청함.

(4) 제안이유

○ 과학실은 각종 화학약품, 실험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임.

○ 현재 학교 과학실은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학교 현장에 맞는 과학실 구축, 관리, 안전점검, 교육, 응급상황 대처 등 과학실 운영·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과학실 안전 보장'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 건의 내용에 '국회에 법률 제정 촉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건의안 본문 중 "2.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교육부 등에 강력한 건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를 "2. 국회는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라!"로 수정함.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1일, 보건복지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정신 질환자 관련 강력 범죄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마련과 공적 의료 안전망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소유자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1982년과1983년 재단 이사회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요양소(경기도립정신병원) 건립 부지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안건을 가결시켰으나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경기도에 약속한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경기도와 약속한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의 기부채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른 행정적 노력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함.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2일, 기획재정위원장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주 문

○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음. 또한 남북한 간 대화가 중단되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방해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음.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백해무익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가칭 '대북전단 등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함.

(4) 제안이유

○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음. 또한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부의 금지조치를 방해하고,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행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9일,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장

(2) 소관위원회 : 특별위원회

(3) 주 문

○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을 개정하라.

(4) 제안이유

○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여야 함.

○ 이에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함을 선언하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22일, 기획재정위원장

(2)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3) 주 문

○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7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이 필요함.

○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 대화·교류 등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선언의 시급성이 중요해짐.

○ 이에 경기도의회는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요구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함.

(4) 제안이유

○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6·25 전쟁의 포화는 멈췄지만, 이는 전쟁이 멈춘 것에 불과하여 재발의 위험이 상존해 왔음.

○ 7·4남북공동성명 이래 6·15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북핵문제, 남북한 대화와 교류 등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

○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군사 도발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

○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제일 먼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 이처럼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여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4)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5)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4. 기 타

□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12일, 도시환경위원장

(2)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3) 주 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적정성 여부

나. 부장의 실정보고 없이 방음시설 기초부분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여부

다.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라.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

(4) 제안이유

○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중, 진건지구는 당초 4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지금지구는 당초 600억원에서 870억원으로 설계 변경되어 약 720억원의 공사비 증가가 이루어졌고, 분리발주가 필요한 방음터널 공사를 기존의 부지조성 업체가 그대로 진행하는 등 착공 절차가 부적정 하였음.

○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 ○○○부장은 다산신도시 F1 블록 부지의 49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시설 하부 구간공사를 착공하기 전 정당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대책보고 또는 실정보고 이후 시공절차를 진행했어야 함. 그러나 방음시설 하부구간 설치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실정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선시공을 지시함.

○ 상급자 보고 또는 실정보고 없이 방음시설 선시공을 지시한 ○○○ 부장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경기도시공사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2020년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으나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함.

○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선시공 지시 시점을 공정회의 개최일인 2017년 11월 17일과 동년 11월 24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공정회의 개최 전 △10월 27일 자재구입 계획 보고 △10월 30일 자재발주 의뢰 △11월 6일 자재구매 계약체결 등 인사위원회의 선시공 지시 판단시점인 11월 17일 이전부터 선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사전준비가 이루어짐. 이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적정성, 방음시설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 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5)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원안가결

(6) 본회의 심의결과 : 가결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3편 자료편

3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1장 원구성 현황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1장 원구성 현황

■ 제1절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

1.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가. 의장, 부의장

(2020년 6월 30일 기준)

직 위	의 원 명	소 속 정 당	지역구	피 선 일	임기만료일	비고
의 장	송한준	더불어민주당	안산1	2018. 7. 10	2020. 7. 9	
부의장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2018. 7. 10	2020. 7. 9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11	2018. 7. 10	2020. 7. 9	

나. 상임위원회 위원장

(2020년 6월 30일 기준)

위 원 회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피 선 일	임기만료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용인3	2018. 7. 17.	2020. 7. 16.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더불어민주당	광명2	2018. 7. 17.	2020. 7. 16.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더불어민주당	성남3	2018. 7. 17.	2020. 7. 16.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의왕1	2018. 7. 17.	2020. 7.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더불어민주당	고양10	2018. 7. 17.	2020. 7. 16.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더불어민주당	화성5	2018. 7. 17.	2020. 7. 16.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더불어민주당	군포2	2018. 7. 17.	2020. 7. 16.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더불어민주당	오산2	2018. 7. 17.	2020. 7. 16.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양주2	2018. 7. 17.	2018. 7. 16.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더불어민주당	수원2	2018. 7. 17.	2018. 7. 16.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더불어민주당	안산2	2018. 7. 17.	2018. 7. 16.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안양5	2018. 7. 17.	2018. 7. 16.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명칭변경 2019. 8. 6)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명칭변경 2019. 4. 29)
제2교육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명칭변경 2019. 10. 1)

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 6월 30일 기준)

위 원 회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활동기간	비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	2018. 7. 23.~2019. 6. 30.	제1기
	서형열	더불어민주당	구리1	2015. 7. 9.~2020. 6. 30.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송영만	더불어민주당	오산1	2018. 7. 23.~2020. 7. 22.	
경기도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김영준	더불어민주당	광명1	2018. 10. 16.~2020. 4. 15.	종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배수문	더불어민주당	과천	2018. 10. 16~2020. 4. 15	종료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장현국	더불어민주당	수원7	2018. 11. 6.~2020. 5. 5.	종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3	2018. 12. 14.~2019. 6. 11.	종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성수석	더불어민주당	안양1	2018. 12. 14~2019. 6. 25.	종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명원	더불어민주당	부천6	2018. 12. 14~2019. 6. 11.	종료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원웅	더불어민주당	포천2	2019. 2. 12~2020. 2. 11.	종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안산7	2019. 2. 12~2020. 6. 30.	종료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성남7	2019. 2. 12~2020. 1. 15.	사직
	김강식	더불어민주당	수원10	2020. 1. 15~2020. 8. 11.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원미정	더불어민주당	안산8	2019. 6. 11~2020. 6. 10.	종료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가평	2019. 11. 5~2020. 11. 4.	

2. 상임위원회 위원

(2020년 6월 30일 기준)

구분	의회운영 (15)	기획재정 (13)	경제노동 (14)	안전행정 (13)	문화체육관광 (14)	농정해양 (11)	보건복지 (12)	건설교통 (14)	도시환경 (14)	여성가족교육협력 (11)	제1교육 (11)	교육행정 (13)
위원장	진용복 (용인3)	정대운 (광명2)	조광주 (성남3)	박근철 (의왕1)	김달수 (고양10)	박윤영 (화성5)	정희시 (군포2)	조재훈 (오산2)	박재만 (양주2)	박옥분 (수원2)	천영미 (안산2)	조광희 (안양5)
부위원장	남종섭 (용인4)	정승현 (안산4)	심민자 (김포1)	김판수 (군포4)	정윤경 (군포1)	성수석 (이천1)	최종현 (비례)	김명원 (부천6)	김영준 (광명1)	김종찬 (안양2)	고찬석 (용인8)	김미리 (남양주1)
	이필근 (수원3)	박관열 (광주2)	김중식 (용인7)	임창열 (구리2)	양경석 (평택1)	백승기 (안성2)	왕성옥 (비례)	김규창 (여주2)	권락용 (성남6)	김인순 (화성1)	황진희 (부천3)	송치용 (비례)
더불어민주당	국중현 (안양6)	김강식 (수원10)	고은정 (고양9)	국중범 (성남4)	강태형 (안산6)	김성수 (안양1)	권정선 (부천5)	권재형 (의정부3)	김태형 (화성3)	김원기 (의정부4)	김경근 (남양주6)	김경희 (고양6)
	권정선 (부천5)	김경호 (가평)	김장일 (비례)	국중현 (안양6)	김봉균 (수원5)	김철환 (김포3)	김영해 (평택3)	김경일 (파주3)	박성훈 (남양주4)	김현삼 (안산7)	김재균 (평택2)	김미숙 (군포3)
	김경호 (가평)	김우석 (포천1)	김종배 (시흥3)	김동철 (동두천2)	김용성 (비례)	남종섭 (용인4)	김은주 (비례)	김인영 (이천2)	배수문 (과천)	남운선 (고양1)	방재율 (고양2)	박덕동 (광주4)
	손희정 (파주2)	민경선 (고양4)	송영만 (오산1)	김용찬 (용인5)	문형근 (안양3)	소영환 (고양7)	박태희 (양주1)	김직란 (수원9)	심규순 (안양4)	손희정 (파주2)	이기형 (김포4)	박세원 (화성4)
	염종현 (부천1)	신정현 (고양3)	오지혜 (비례)	박창순 (성남2)	안광률 (시흥1)	안혜영 (수원11)	이영봉 (의정부2)	김진일 (하남1)	안기권 (광주1)	이진연 (부천7)	이진 (파주4)	성준모 (안산5)
	유광국 (여주1)	유광혁 (동두천1)	원미정 (안산8)	서현옥 (평택5)	양운석 (안성1)	염종현 (부천1)	조성환 (파주1)	문경희 (남양주2)	양철민 (수원8)	전승희 (비례)	장대석 (시흥2)	엄교섭 (용인2)
	이동현 (시흥4)	유영호 (용인6)	윤용수 (남양주3)	이동현 (시흥4)	오광덕 (광명3)	유광국 (여주1)	지석환 (용인1)	故서형열 (구리1)	원용희 (고양5)	진용복 (용인3)	장태환 (의왕2)	유근식 (광명4)
	전승희 (비례)	이종인 (양평2)		이명동 (광주3)	이원웅 (포천2)	장현국 (수원7)	이은주 (화성6)	오명근 (평택4)	이선구 (부천2)		최경자 (의정부1)	최세명 (성남8)
	정윤경 (군포1)	임채철 (성남5)	황수영 (수원6)	이필근 (수원3)	임성환 (부천4)			오진택 (화성2)	이창균 (남양주5)			추민규 (하남2)
	최세명 (성남8)			최갑철 (부천8)	채신덕 (김포2)			유상호 (연천)	이필근 (수원1)			황대호 (수원4)
	황대호 (수원4)				최만식 (성남1)			최승원 (고양8)	장동일 (안산3)			
미래통합당	이애형 (비례)		허원 (비례)				이애형 (비례)			한미림 (비례)	이제영 (성남7)	
정의당		이혜원 (비례)										
민생당			김지나 (비례)									
무소속			이영주 (양평1)									

※위원수 : 141인 (의장 제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 의원 가나다순

■ 제2절 제10대 전반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구성현황 ■

1. 대표의원, 수석대표단

직위	성명	지역구	상임위	비고
대 표 의 원	염종현	부천1	농정해양	3선
총 괄 수 석	남종섭	용인4	농정해양	재선
정 무 수 석	김용성	비례	문화체육	초선
기 획 수 석	심규순	안양4	도시환경	초선
정 책 수 석	이동현	시흥4	안전행정	초선
수 석 대 변 인	정윤경	군포1	문화체육	재선
정 책 위 원 장	민경선	고양4	기획재정	3선
운 영 위 원 장	진용복	용인3	여성가족	재선

2. 대변인단

직위	성명	지역구	상임위	비고
수 석 대 변 인	정윤경	군포1	문화체육	재선
대 변 인	고은정	고양9	경제노동	초선
	국중범	성남4	안전행정	초선
	김강식	수원10	기획재정	초선
	김태형	화성3	도시환경	초선
	조성환	파주1	보건복지	초선

3. 정책위원회

직위	성명	지역구	상임위	비고
정 책 위 원 장	민경선	고양4	기획재정	3선
제1정조위원장	최경자	의정부1	제1교육	초선
제2정조위원장	유영호	용인6	기획재정	초선
제3정조위원장	장대석	시흥2	제1교육	초선
제4정조위원장	김봉균	수원5	문화체육	초선
제5정조위원장	신정현	고양3	기획재정	초선
제6정조위원장	오지혜	비례	경제노동	초선
제7정조위원장	김경일	파주3	건설교통	초선

4. 1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

직위	성명	지역구	상임위	비고
정무부대표	오광덕	광명3	문화체육	초선
	추민규	하남2	교육행정	초선
	김경일	파주3	건설교통	초선
	전승희	비례	여성가족	초선
	김경희	고양6	제2교육	초선
기획부대표	채신덕	김포2	문화체육	초선
	권재형	의정부3	건설교통	초선
	임채철	성남5	기획재정	초선
	성준모	안산5	교육행정	초선
	박성훈	남양주4	도시환경	초선
정책부대표	김은주	비례	보건복지	초선
	김종배	시흥3	경제노동	초선
	서현옥	평택5	안전행정	초선
	김우석	포천1	기획재정	초선
	김성수	안양1	농정해양	초선

■ 제3절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변동 ■

(2020년 6월 30일 기준)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사직일	변동 후 소속	변동사유
이영주	양평1	더불어민주당	2019. 12. 31.	무소속	당적 변경
이나영	성남시7	더불어민주당	2020. 1. 15.		궐원(사직)
김지나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020. 2. 27.	민생당	당적 변경
서형열	구리1	더불어민주당	2020. 6. 8.		궐원(사망)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2020. 2. 17) / 바른미래당 ⇒ 민생당(2020. 2. 24)

제2장 집회와 회기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2장 집회와 회기

■ 제1절 회기별 개회일, 산회일, 개의일수, 본회의 차수 ■

회 기 별	개 회 일	산 회 일	개의일수	본회의 차수
제329회 임 시 회	2018. 7. 10	2018. 7. 23	14	3
제330회 임 시 회	2018. 8. 28	2018. 9. 12	16	4
제331회 임 시 회	2018. 10. 16	2018. 10. 23	8	2
제332회 정 례 회	2018. 11. 6	2018. 12. 21	46	6
제333회 임 시 회	2019. 2. 12	2019. 2. 19	8	2
제334회 임 시 회	2019. 3. 26	2019. 4. 4	10	2
제335회 임 시 회	2019. 5. 14	2019. 5. 28	15	4
제336회 정 례 회	2019. 6. 11	2019. 6. 25	15	2
제337회 임 시 회	2019. 7. 9	2019. 7. 16	8	2
제338회 임 시 회	2019. 8. 26	2019. 9. 10	16	4
제339회 임 시 회	2019. 10. 15	2019. 10. 22	8	2
제340회 정 례 회	2019. 11. 5	2019. 12. 20	46	5
제341회 임 시 회	2020. 2. 11	2020. 2. 26	16	2
제342회 임 시 회	2020. 3. 23	2020. 3. 25	3	2
제343회 임 시 회	2020. 4. 21	2020. 4. 29	9	2
제344회 정 례 회	2020. 6. 9	2020. 6. 24	16	4

■ 제2절 회기별 본회의 참석률 ■

회기별, 차수별 \ 구분		재적의원수	참석의원수	참석률(%)	비 고
제329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42명	100	
	제2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3차 본회의	142명	140명	98.6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40명	98.6	
	제2차 본회의	142명	139명	97.9	
	제3차 본회의	142명	137명	96.5	
	제4차 본회의	142명	138명	97.2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2차 본회의	142명	142명	100	
제332회 정 례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9명	97.9	
	제2차 본회의	142명	142명	100	
	제3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4차 본회의	142명	128명	90.1	
	제5차 본회의	142명	139명	97.9	
	제6차 본회의	142명	138명	97.2	
제333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6명	95.8	
	제2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334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40명	98.6	
	제2차 본회의	142명	140명	98.6	
	제3차 본회의	142명	138명	97.2	
	제4차 본회의	142명	140명	98.6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6명	95.8	
	제2차 본회의	142명	133명	93.7	
	제3차 본회의	142명	126명	88.7	
	제4차 본회의	142명	136명	95.8	

회기별, 차수별 \ 구분		재적의원수	참석의원수	참석률(%)	비 고
제336회 정 례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6명	95.8	
	제2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337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9명	97.9	
	제2차 본회의	142명	136명	95.8	
제338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9명	97.9	
	제2차 본회의	142명	137명	96.5	
	제3차 본회의	142명	138명	97.2	
	제4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339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2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340회 정 례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5명	95.1	
	제2차 본회의	142명	137명	96.5	
	제3차 본회의	142명	135명	95.1	
	제4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5차 본회의	142명	140명	98.6	
제341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1명	138명	97.9	
	제2차 본회의	141명	134명	95.0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1명	140명	99.3	
	제2차 본회의	141명	134명	95.0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본회의	142명	139명	97.9	
	제2차 본회의	142명	141명	99.3	
제344회 정 례 회	제1차 본회의	141명	140명	99.3	
	제2차 본회의	141명	139명	98.6	
	제3차 본회의	141명	139명	98.6	
	제4차 본회의	141명	139명	98.6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3장 안건처리 현황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3장 안건처리 현황

■ 제1절 의안별 처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유형별)		접수 (A=B+L)	처리 (B=D)	처 리 결 과 (D=E+H+I+J+K)						계류 (L)
				가결(E=F+G)		승인 (H)	부결 (I)	철회 (J)	폐기 (K)	
				원안(F)	수정(G)					
계		1,282	1,201	890	279	8	7	7	10	81
조례안	소 계	864	804	550	236	·	7	1	10	60
	의 원	699	641	444	184	·	3	1	9	58
	위원회	29	29	29	·	·	·	·	·	·
	도지사	110	108	57	47	·	3	·	1	2
	교육감	26	26	20	5	·	1	·	·	·
규칙안(의회)	11	10	9	1	·	·	·	·	1	
승 인	48	48	48	·	·	·	·	·	·	
동 의	113	109	101	5	·	·	3	·	4	
중요동의	35	35	35	·	·	·	·	·	·	
결의안	31	25	21	4	·	·	·	·	6	
건의안	55	49	38	10	·	·	1	·	6	
예산·결산	37	37	9	19	8	·	1	·	·	
의견청취	10	10	10	·	·	·	·	·	·	
재 의	5	1	1	·	·	·	·	·	4	
청 원	6	6	5	·	·	·	1	·	·	
조 사	16	16	16	·	·	·	·	·	·	
기 타	51	51	47	4	·	·	·	·	·	

■ 제2절 위원회별 처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접수 (A=B+L)	처리 (B=D)	처 리 결 과 (D=F+G+H+I+J+K)						계류 (L)
			가결(E=F+G)		승인 (H)	부결 (I)	철회 (J)	폐기 (K)	
			원안(F)	수정(G)					
계	1,282 (846)	1,201 (804)	890 (550)	279 (236)	8	7 (7)	7 (1)	10 (10)	81 (60)
본회의	202 (29)	198 (29)	198 (29)						4
운영위	54 (25)	44 (22)	25 (11)	19 (11)					10 (3)
기획위	99 (81)	92 (75)	45 (34)	40 (35)		2 (2)	1	4 (4)	7 (6)
경제위	85 (62)	79 (58)	57 (40)	19 (17)		1 (1)	2		6 (4)
안행위	115 (93)	111 (89)	83 (67)	24 (20)		1 (1)	3 (1)		4 (4)
문체위	58 (53)	57 (52)	46 (41)	11 (11)					1 (1)
농정위	38 (35)	34 (32)	27 (25)	7 (7)					4 (3)
복지위	111 (102)	106 (97)	78 (70)	28 (27)					5 (5)
건설위	90 (72)	83 (66)	59 (42)	17 (17)		1 (1)		6 (6)	7 (6)
도시위	135 (98)	129 (95)	107 (75)	21 (19)		1 (1)			6 (3)
여가교위	64 (57)	59 (53)	41 (35)	18 (18)					5 (4)
제1교육위	114 (82)	105 (74)	73 (44)	31 (29)		1 (1)			9 (8)
교행위	80 (75)	67 (62)	42 (37)	25 (25)					13 (13)
예결특위	37	37	9	19	8		1		

*( )는 조례안 건수임.

■ 제3절 의안 접수 및 처리 일람 ■

가. 조례안(804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29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9.05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9.05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10.17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10.17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12.10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12.10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8.12.14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	19.02.12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9.02.18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기획재정 위원장	19.03.29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기획재정 위원장	19.03.29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9.04.03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 위원장	19.05.23	19.05.28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 위원장	19.05.2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교육 위원장	19.05.2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 위원장	19.06.13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9.07.12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 위원장	19.07.10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기획재정 위원장	19.08.30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9.09.03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9.10.16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	20.02.18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 위원장	20.04.22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 위원장	20.04.22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노동 위원장	20.06.11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 위원장	20.06.12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 위원장	20.06.12	20.06.24	원안가결
운영위 (22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정대운 의원 등 47명	18.10.05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미정 의원 등 57명	18.11.28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16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운영위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등 13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24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11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등 20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호 의원 등 29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종현 의원 등 14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종섭 의원 등 13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22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3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15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세명 의원 등 17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세명 의원 등 12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광국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철 의원 등 16명	19.10.25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4명	20.04.08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9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28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운영위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기획위 (75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07.11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7명	18.08.17	18.09.12	수정가결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8명	18.08.17	18.09.12	수정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혁 의원 등 17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8.08.17	18.09.12	수정가결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18.08.17	18.09.12	수정가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23명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16	부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23명	18.10.26	19.03.29	폐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0.26	18.11.30	부결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	18.10.26	19.03.29	폐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0.26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18.10.26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도지사	18.10.26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인 의원 등 17명	18.11.28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운 의원 등 26명	18.11.28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열 의원 등 16명	18.11.28	18.12.2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기획위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경선 의원 등 20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49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21명	18.11.29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김원기 의원 등 11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순 의원 등 18명	19.03.14	19.03.29	폐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등 17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철 의원 등 20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식 의원 등 11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 등 12명	19.03.15	19.03.29	폐기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36명	19.03.15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3.2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식 의원 등 10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신덕 의원 등 10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기획위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형 의원 등 27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호 의원 등 31명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정 의원 등 37명	19.06.28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수석 의원 등 40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성 의원 등 49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26명	19.06.28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이혜원 의원 등 23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현 의원 등 16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25명	19.10.04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28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9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운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현삼 의원 등 15명	19.10.25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석 의원 등 27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25	19.12.16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기획위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혜영 의원 등 80명	19.12.04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형 의원 등 24명	19.12.04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도지사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14명	20.04.10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35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18명	20.04.10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승현 의원 등 15명	20.04.10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6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0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호 의원 등 26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식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제위 (58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 등 32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지혜 의원 등 32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의원 등 33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경제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0.26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등 20명	18.11.28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광주 의원 등 47명	18.11.28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나 의원 등 14명	19.01.23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영 의원 등 25명	19.01.23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원 의원 등 20명	19.01.23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 등 30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영만 의원 등 34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영만 의원 등 35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민자 의원 등 35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일 의원 등 35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림 의원 등 19명	19.05.03	19.06.25	수정가결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19.05.03	19.05.28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경제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영 의원 등 28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용수 의원 등 23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32명	19.05.31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도지사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삼 의원 등 14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22명	19.06.28	19.08.29	부결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김중식 의원 등 40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원 의원 등 21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임채철 의원 등 16명	19.08.16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근식 의원 등 26명	19.08.16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김종배 의원 등 29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민자 의원 등 30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미정 의원 등 41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34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경제위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수영 의원 등 26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등 26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미정 의원 등 12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일 의원 등 16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송영만 의원 등 23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6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21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나 의원 등 17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의원 등 30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지혜 의원 등 15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용수 의원 등 25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일 의원 등 36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17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4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경제위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주 의원 등 26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안행위 (89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2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현옥 의원 등 49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18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찬 의원 등 17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30명	19.03.07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4명	19.03.15	20.03.03	철회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창열 의원 등 12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수 의원 등 14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15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20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국중현 의원 등 15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중범 의원 등 14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근철 의원 등 16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현 의원 등 23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등 16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창열 의원 등 10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2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찬 의원 등 1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동 의원 등 18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안	도지사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0명	19.05.31	19.06.14	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수 의원 등 13명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철 의원 등 21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이명동 의원 등 10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4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국중현 의원 등 20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중범 의원 등 10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임창열 의원 등 17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이동현 의원 등 22명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현옥 의원 등 32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19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등 24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박근철 의원 등 16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찬 의원 등 10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락용 의원 등 16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철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현옥 의원 등 25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동 의원 등 12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20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수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근철 의원 등 10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0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이나영 의원 등 13명	19.10.25	19.12.16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9.10.25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22명	19.10.25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33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38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찬 의원 등 10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10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남운선 의원 등 12명	20.03.20	20.03.25	수정가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유상호 의원 등 53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이영주 의원 등 19명	20.04.08	20.06.24	수정가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현옥 의원 등 14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중범 의원 등 18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찬 의원 등 12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중현 의원 등 18명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31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8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35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성 의원 등 74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10	20.04.29	원안가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수 의원 등 26명	20.04.2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동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중현 의원 등 19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중범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철 의원 등 20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동철 의원 등 18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등 11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박근철 의원 등 1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강태형 의원 등 16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6명	20.06.01	20.06.24	수정가결
문체위 (52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달수 의원 등 3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웅 의원 등 18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문체위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덕 의원 등 19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균 의원 등 23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태형 의원 등 16명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27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성환 의원 등 24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성 의원 등 29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22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운석 의원 등 24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24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14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석 의원 등 15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형근 의원 등 22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채신덕 의원 등 25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22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29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문체위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32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봉균 의원 등 31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24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성환 의원 등 28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신덕 의원 등 32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23명	19.10.25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25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달수 의원 등 29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봉균 의원 등 25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신덕 의원 등 27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경석 의원 등 27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16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오광덕 의원 등 23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문체위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등 30명	20.03.26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11명	20.04.08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13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12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신덕 의원 등 15명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덕 의원 등 19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형근 의원 등 16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덕 의원 등 18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원웅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21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22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성환 의원 등 1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운석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농정위 (32건)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60명	18.10.05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성수석 의원 등 21명	18.10.25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39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유광국 의원 등 39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농정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등 44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14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수 의원 등 19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남종섭 의원 등 16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승기 의원 등 40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철환 의원 등 21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영환 의원 등 31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승기 의원 등 45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수석 의원 등 16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염종현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종섭 의원 등 22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현국 의원 등 36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성수 의원 등 40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국 의원 등 27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영환 의원 등 18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기 의원 등 60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영 의원 등 14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농정위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28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영 의원 등 11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김철환 의원 등 11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수 의원 등 43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광국 의원 등 31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기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영환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복지위 (97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50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권락용 의원 등 59명	18.10.05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김미리 의원 등 62명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도지사	18.10.08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수 의원 등 28명	18.10.25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36명	18.10.25	18.12.1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복지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 등 29명	18.10.25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3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봉 의원 등 20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23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태희 의원 등 28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19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26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27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24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8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주 의원 등 20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27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8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5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3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28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복지위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1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해 의원 등 16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5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7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12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31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5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15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영주 의원 등 30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28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은주 의원 등 76명	19.06.28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29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13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 등 15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 등 15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6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31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4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복지위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20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4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태희 의원 등 17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37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종찬 의원 등 15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태환 의원 등 33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 등 16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등 12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1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6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7명	19.10.25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4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태희 의원 등 11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등 12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5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19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등 12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복지위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1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20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2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승현 의원 등 15명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1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 등 17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27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석환 의원 등 19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19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17명	20.04.08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24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20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9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21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3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복지위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26명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 등 23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 등 31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해 의원 등 20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등 1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김은주 의원 등 18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박태희 의원 등 17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지석환 의원 등 14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 의원 등 17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태희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15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11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건설위 (66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등 14명	18.08.14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등 34명	18.09.28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영 의원 등 50명	18.09.28	18.10.23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건설위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등 14명	18.09.28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 등 41명	18.09.28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원 의원 등 39명	18.09.28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등 37명	18.09.28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의원 등 43명	18.09.28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진택 의원 등 21명	18.10.25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명근 의원 등 12명	18.10.25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명근 의원 등 13명	18.10.25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 등 14명	18.10.26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재훈 의원 등 13명	18.10.26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상호 의원 등 13명	18.10.26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41명	18.11.26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등 40명	18.11.26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의원 등 36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28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등 34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건설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의원 등 29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 등 25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등 34명	19.06.28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등 21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원 의원 등 15명	19.06.28	19.08.29	부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김진일 의원 등 26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영 의원 등 51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등 35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 등 27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진택 의원 등 66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 등 15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원 의원 등 32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상호 의원 등 13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31	20.02.26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건설위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37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37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의원 등 17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등 30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 등 17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영 의원 등 25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32명	20.04.06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명근 의원 등 17명	20.04.06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진택 의원 등 14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인영 의원 등 25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등 24명	20.04.06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 등 14명	20.04.06	20.04.22	폐기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등 20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상호 의원 등 16명	20.04.06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등 29명	20.04.10	20.04.22	폐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명근 의원 등 17명	20.05.26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진택 의원 등 17명	20.05.27	20.06.24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건설위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형열 의원 등 16명	20.05.27	20.06.24	원안가결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 등 26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의원 등 20명	20.05.29	20.06.12	폐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의원 등 16명	20.05.29	20.06.12	폐기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재훈 의원 등 16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등 18명	20.05.29	20.06.12	폐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등 22명	20.05.29	20.06.12	폐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의원 등 27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등 27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도시위 (95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등 16명	18.08.16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08.17	18.08.31	부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3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 등 4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 등 40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3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26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40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4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 등 39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19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구 의원 등 15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26명	18.10.26	18.11.08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락용 의원 등 10명	18.10.26	18.11.08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철 의원 등 33명	18.10.26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박재만 의원 등 28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25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21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21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1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심규순 의원 등 13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14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1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11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만 의원 등 15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만 의원 등 15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11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9.01.30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3명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3명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도지사	19.03.15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소영환 의원 등 47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이선구 의원 등 20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1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 등 19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 등 2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20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13명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10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13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4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13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24명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31명	19.05.31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21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순 의원 등 12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1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14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1명	19.06.28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 등 25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순 의원 등 11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13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구 의원 등 12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23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1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28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11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19.10.04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7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12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2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12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2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2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창균 의원 등 14명	19.12.04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안기권 의원 등 22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11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10명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10명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 등 10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구 의원 등 12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10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10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 등 10명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0명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1명	20.01.31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4.08	20.06.24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 등 13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순 의원 등 14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14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만 의원 등 12명	20.04.10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 등 17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18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 등 16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근 의원 등 13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15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 등 25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 등 25명	20.04.10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 등 1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 등 14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10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용희 의원 등 14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여가교위 (53건)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15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32명	18.08.17	18.09.12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여가교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연 의원 등 36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21명	18.10.01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운선 의원 등 11명	18.10.01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정 의원 등 25명	18.10.05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29명	18.10.26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찬 의원 등 29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2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삼 의원 등 11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등 23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3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찬 의원 등 11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31명	19.03.12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14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15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19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17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림 의원 등 16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여가교위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원기 의원 등 15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정대운 의원 등 11명	19.05.03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 등 26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림 의원 등 17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1명	19.05.31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23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14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진용복 의원 등 26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17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연 의원 등 11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13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삼 의원 등 13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김원기 의원 등 18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등 17명	19.10.25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도지사	19.10.25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찬 의원 등 16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32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1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여가교위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11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기 의원 등 14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운선 의원 등 11명	19.12.09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11명	20.01.31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찬 의원 등 29명	20.01.31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23명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연 의원 등 17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기 의원 등 28명	20.04.09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운선 의원 등 17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운선 의원 등 35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21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20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24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등 18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유영호 의원 등 25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제1교육위 (74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8.08.16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8.08.16	18.09.12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22명	18.10.26	18.12.1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71명	18.11.28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43명	19.01.24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	송치용 의원 등 14명	19.01.25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감	19.03.14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교육감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최경자 의원 등 44명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15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민경선 의원 등 35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추민규 의원 등 46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장태환 의원 등 41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주 의원 등 11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 의원 등 30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32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30명	19.05.02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지교육 지원 조례안	유근식 의원 등 41명	19.05.02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이진 의원 등 12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18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등 12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 등 14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81명	19.05.3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43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 의원 등 18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근 의원 등 28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22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재균 의원 등 23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근 의원 등 11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나영 의원 등 13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고찬석 의원 등 21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기형 의원 등 21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43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8명	19.10.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천영미 의원 등 19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15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최경자 의원 등 59명	19.10.25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신정현 의원 등 16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의원 등 34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20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장대석 의원 등 25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교육감	19.12.04	19.12.17	부결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장태환 의원 등 15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23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지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13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23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등 14명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1명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20명	20.01.31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김용성 의원 등 71명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대석 의원 등 13명	20.04.09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자 의원 등 30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추민규 의원 등 23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25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05.28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21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천영미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2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환 의원 등 26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 의원 등 2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근 의원 등 14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32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교행위 (62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민경선 의원 등 41명	18.07.10	18.09.12	수정가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원 의원 등 49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최경자 의원 등 58명	18.10.25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8.10.26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재훈 의원 등 15명	18.10.26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16명	18.10.26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의원 등 16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준모 의원 등 16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세원 의원 등 13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민규 의원 등 18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 등 43명	18.11.29	19.02.19	수정가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동 의원 등 40명	18.11.29	18.12.21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대석 의원 등 25명	19.01.24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34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25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광희 의원 등 18명	19.01.25	19.02.19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교행위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3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31명	19.01.25	19.09.1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등 44명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 등 18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근식 의원 등 37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 등 26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29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5.01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감	19.05.01	19.06.25	수정가결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5.0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37명	19.05.02	19.05.28	수정가결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18명	19.05.02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원 의원 등 20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민규 의원 등 25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원 의원 등 18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동 의원 등 1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희 의원 등 1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 등 25명	19.05.03	19.05.28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교행위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나영 의원 등 11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동 의원 등 18명	19.05.3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대석 의원 등 18명	19.06.28	19.07.1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환 의원 등 44명	19.08.16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민규 의원 등 14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10.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18명	19.10.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조광희 의원 등 15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32명	19.10.25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민규 의원 등 11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4명	19.10.25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29명	19.12.04	20.02.26	수정가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28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조광희 의원 등 12명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18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30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교행위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이기형 의원 등 24명	20.04.09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 등 26명	20.04.09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	최경자 의원 등 26명	20.04.09	20.04.29	수정가결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2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25명	20.04.10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16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10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11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3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나. 규칙안(10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4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18.10.17	18.10.23	원안가결
운영위 (6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정선 의원 등 33명	18.11.06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용성 의원 등 23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운영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동현 의원 등 18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국중현 의원 등 18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은정 의원 등 64명	20.04.08	20.04.29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염종현 의원 등 12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다. 승인안(48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48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 위원장	18.09.05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획재정 위원장	18.09.04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제노동 위원장	18.09.03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전행정 위원장	18.08.31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18.09.03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농정해양 위원장	18.09.03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건복지 위원장	18.09.03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설교통 위원장	18.09.03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환경 위원장	18.08.31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	18.08.31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1교육 위원장	18.09.03	18.09.12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교행 위원장	18.08.31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 위원장	18.12.14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정 위원장	18.12.19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노동 위원장	18.12.18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전행정 위원장	18.11.30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정해양 위원장	18.12.14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 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 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환경 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교육 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교행 위원장	18.12.18	18.12.21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 위원장	19.09.03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획재정 위원장	19.08.30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제노동 위원장	19.08.29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전행정 위원장	19.08.29	19.09.1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19.08.30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농정해양 위원장	19.09.02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건복지 위원장	19.08.30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설교통 위원장	19.08.29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환경 위원장	19.08.29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	19.08.29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1교육 위원장	19.08.29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교행 위원장	19.08.30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 위원장	19.12.19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정 위원장	19.12.16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노동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전행정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정해양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환경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교육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행정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라. 동의안(109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운영위 (2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도지사	19.01.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도지사	19.12.04	19.12.20	원안가결
기획위 (6건)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8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제위 (19건)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경제위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2020년도 경제노동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2020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8	19.10.22	원안가결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도지사	19.11.21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19.12.04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도지사	20.01.31	20.02.03	철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도지사	20.03.13	20.03.18	철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도지사	20.03.18	20.03.25	원안가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도지사	20.05.29	20.06.24	원안가결
안행위 (13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18.10.08	18.10.15	철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18.10.15	18.10.23	수정가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19.03.15	19.04.04	원안가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19.06.28	19.07.16	원안가결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19.10.04	19.10.22	수정가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20.05.29	20.06.24	원안가결
문체위 (3건)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농정위 (2건)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2020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복지위 (6건)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도지사	19.06.28	19.07.16	원안가결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14	19.10.22	원안가결
건설위 (5건)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19.08.19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도지사	20.05.29	20.06.24	원안가결
도시위 (16건)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럭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8.10.05	18.10.23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03.15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융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도지사	19.10.04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19.10.25	19.12.20	원안가결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도지사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여가교위 (4건)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10	18.10.23	원안가결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10.10	18.10.23	원안가결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08.16	19.10.22	원안가결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9.10.04	19.10.22	원안가결
제1교육위 (29건)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교육감	18.07.04	18.10.23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18.08.16	18.09.12	원안가결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08.16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0.2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0.2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0.2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0.2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0.2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0.2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18.11.06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8.11.29	18.12.21	원안가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19.05.01	19.05.28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19.08.16	19.09.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9.08.16	19.09.10	원안가결
	2020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교육감	19.10.04	19.10.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9.10.25	19.12.1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19.11.08	19.12.1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20.01.31	20.02.26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20.04.08	20.04.29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20.05.28	20.06.2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교육감	20.05.28	20.06.24	원안가결
교행위 (4건)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	18.08.16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교육감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교육감	19.08.16	19.09.10	원안가결
	2020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	19.08.16	19.09.10	원안가결

마. 중요동의(35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35건)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8.07.04	18.07.10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8.7.11~7.16.(6일간)〉	의장	18.07.04	18.07.10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8.7.18~7.20.(3일간)〉	의장	18.07.16	18.07.17	원안가결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8.08.27	18.08.28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건〈2018.8.31.~9.11.(12일간)〉	의장	18.08.27	18.08.28	원안가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8.10.12	18.10.16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8.10.17.~10.22.(6일간)〉	의장	18.10.12	18.10.16	원안가결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8.11.05	18.11.06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8.11.9.~11.23.(15일간)〉	의장	18.11.08	18.11.08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8. 11.27.~12.13.(17일간)〉	의장	18.11.22	18.11.26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8.12.17.~12.20.(4일간)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02.11	19.02.12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2.13.~2.18.(6일간)〉	의장	19.02.11	19.02.12	원안가결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03.25	19.03.26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3.29.~4.3.(6일간)〉	의장	19.03.27	19.03.28	원안가결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05.07	19.05.14	원안가결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06.10	19.06.11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6.12.~6.24.(13일간)〉	의장	19.06.10	19.06.11	원안가결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07.02	19.07.09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7.10.~7.15.(6일간)〉	의장	19.07.02	19.07.09	원안가결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08.21	19.08.26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8.29.~9.9.(12일간)〉	의장	19.08.21	19.08.28	원안가결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10.15	19.10.15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10.16.~10.21.(6일간)〉	의장	19.10.15	19.10.15	원안가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9.11.05	19.11.05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11.8.~12.15.(38일간)〉	의장	19.11.06	19.11.06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19.12.17.~12.19.(3일간)〉	의장	19.12.16	19.12.16	원안가결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20.02.11	20.02.1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2020.2.12.~2.25.(14일간)〉	의장	20.02.11	20.02.11	원안가결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20.03.20	20.03.23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20.3.24.(1일간)〉	의장	20.03.20	20.03.23	원안가결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20.04.21	20.04.21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20.4.22.~4.28.(7일간)〉	의장	20.04.21	20.04.21	원안가결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20.06.09	20.06.09	원안가결
	휴회 결의의 건〈2020.6.10.~ 6.21.(12일간)〉	의장	20.06.09	20.06.09	원안가결

바. 결의안(25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14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 위원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지나 의원 등 10명	18.08.27	18.08.28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추민규 의원 등 11명	18.11.05	18.11.06	원안가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건설교통 위원장	19.02.14	19.02.19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태환 의원 등 12명	19.03.25	19.03.26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선구 의원 등 10명	19.05.07	19.05.14	원안가결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경제노동 위원장	19.07.10	19.07.16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 위원장	19.07.12	19.07.16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황수영 의원 등 11명	19.08.19	19.08.26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만 의원 등 10명	19.11.05	19.11.05	원안가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민경선 의원 등 13명	20.01.31	20.02.1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광률 의원 등 12명	20.06.09	20.06.09	원안가결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보건복지 위원장	20.06.11	20.06.24	원안가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기획재정 위원장	20.06.22	20.06.24	원안가결
운영위 (8건)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대운 의원 등 29명	18.07.31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배수문 의원 등 13명	18.08.14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현국 의원 등 34명	18.10.04	18.10.23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우석 의원 등 60명	18.10.25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동현 의원 등 36명	18.10.25	18.12.21	원안가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삼 의원 등 25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종배 의원 등 26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경호 의원 등 14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기획위 (1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최승원 의원 등 39명	19.12.04	20.02.26	수정가결
안행위 (1건)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장현국 의원 등 63명	19.03.15	19.04.04	수정가결
건설위 (1건)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유상호 의원 등 81명	19.03.08	19.04.04	원안가결

사. 건의안(49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5건)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 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테크노밸리조성 특별위원장	19.07.12	19.07.16	원안가결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환경 위원장	20.02.17	20.02.26	원안가결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기획재정 위원장	20.06.12	20.06.24	원안가결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장	20.06.09	20.06.24	원안가결
운영위 (1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남종섭 의원 등 21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기획위 (10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정대운 의원 등 10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승현 의원 등 16명	18.08.17	18.09.12	수정가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장현국 의원 등 13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유광혁 의원 등 23명	18.11.29	19.04.04	수정가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김인영 의원 등 32명	19.03.08	19.04.04	수정가결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강식 의원 등 10명	19.03.15	19.05.08	철회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대운 의원 등 14명	19.03.15	19.04.04	원안가결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강식 의원 등 20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유광혁 의원 등 12명	19.08.16	19.10.22	수정가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정승현 의원 등 11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경제위 (2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김장일 의원 등 44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지석환 의원 등 30명	19.12.12	19.12.20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3건)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유상호 의원 등 32명	18.10.25	19.02.19	수정가결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서현옥 의원 등 17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염종현 의원 등 10명	19.05.03	19.05.28	원안가결
문체위 (1건)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	김용성 의원 등 20명	19.08.19	19.09.10	원안가결
복지위 (3건)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박태희 의원 등 47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유영호 의원 등 14명	19.01.25	19.02.19	원안가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이영봉 의원 등 67명	19.08.16	19.09.10	수정가결
건설위 (4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	권재형 의원 등 34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오진택 의원 등 22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배수문 의원 등 16명	19.03.14	19.05.28	원안가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김경일 의원 등 42명	19.06.28	19.07.16	원안가결
도시위 (15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권락용 의원 등 82명	18.10.05	18.10.23	원안가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권락용 의원 등 60명	18.10.26	18.11.08	원안가결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김경호 의원 등 26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심규순 의원 등 14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영준 의원 등 12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남운선 의원 등 11명	18.11.29	18.12.21	원안가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김영준 의원 등 12명	19.03.14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이필근 의원 등 28명	19.08.16	19.09.10	원안가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안기권 의원 등 33명	19.10.04	19.10.22	원안가결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김경호 의원 등 15명	19.10.25	19.12.16	원안가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원용희 의원 등 24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이창균 의원 등 10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김영준 의원 등 11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황진희 의원 등 12명	20.01.31	20.04.29	수정가결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창균 의원 등 13명	20.04.10	20.04.29	수정가결
여가교위 (2건)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김종찬 의원 등 33명	18.08.17	18.09.12	원안가결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김현삼 의원 등 17명	20.05.29	20.06.24	원안가결
제1교육위 (2건)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김미숙 의원 등 15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황진희 의원 등 10명	20.05.29	20.06.24	수정가결
교행위 (1건)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경희 의원 등 13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아. 예산·결산안(37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예결특위 (37건)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18.08.16	18.09.12	수정가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18.08.17	18.09.12	수정가결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감	18.10.30	18.12.14	수정가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18.11.06	18.12.14	수정가결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18.11.06	18.12.14	수정가결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도지사	18.11.06	18.12.14	수정가결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18.11.07	18.12.14	수정가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18.11.16	18.12.14	수정가결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18.11.16	18.12.14	원안가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19.05.01	19.05.2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교육감	19.05.01	19.05.28	원안가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19.05.03	19.05.28	수정가결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19.05.03	19.05.28	원안가결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19.05.31	19.06.25	승인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19.05.31	19.06.25	승인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19.05.31	19.06.25	승인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19.05.31	19.06.25	승인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19.07.02	19.07.16	수정가결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19.08.16	19.09.10	원안가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19.08.20	19.09.10	수정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예결특위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19.10.25	19.12.16	원안가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19.10.25		철회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	19.10.25	19.12.16	원안가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19.10.31	19.12.16	수정가결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도지사	19.11.05	19.12.16	수정가결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19.11.05	19.12.16	수정가결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19.11.05	19.12.16	수정가결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19.11.05	19.12.16	원안가결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20.03.17	20.03.25	수정가결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20.03.20	20.03.25	수정가결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20.03.20	20.03.25	원안가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20.05.21	20.06.24	수정가결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20.05.28	20.06.24	승인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20.05.28	20.06.24	승인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20.05.29	20.06.24	승인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20.05.29	20.06.24	승인

자. 의견청취안(10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3건)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지사	18.10.26	18.12.14	원안가결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지사	19.03.21	19.04.0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도지사	19.12.04	19.12.20	원안가결
건설위 (7건)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도지사	18.08.17	18.09.12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	도지사	19.01.25	19.02.19	원안가결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도지사	19.01.30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	도지사	19.03.15	19.04.04	원안가결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도지사	19.03.18	19.04.04	원안가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도지사	19.06.28	19.07.16	원안가결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도지사	20.04.08	20.04.29	원안가결

차. 재의요구안(1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1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도지사	19.01.14	19.02.19	원안가결

카. 청원(6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안행위 (2건)	경기도 소유 토지 불하 신청 청원	박상석 (엄교섭 의원)	19.04.15	19.05.14	철회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	한상운 (권락용 의원)	19.06.14	19.07.16	원안가결
문체위 (1건)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완화 청원	이시영, 김인섭 (박성훈 의원)	19.02.27	19.04.04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도시위 (3건)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정우섭 (이창균 의원)	18.12.21	19.02.19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김성주 (정대운 의원)	19.04.15	19.05.28	원안가결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 (진안사거리 ~ 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표재학 (김경근, 이창균 의원)	19.08.19	19.10.22	원안가결

타. 조사(16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16건)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최승원 의원 등 51명	18.11.28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성수석 의원 등 61명	18.11.29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김직란 의원 등 62명	18.12.10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8.12.17	18.12.21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8.12.20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8.12.21	18.12.21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9.02.12	19.02.19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9.06.1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9.06.11	19.06.25	원안가결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9.06.11	19.06.25	원안가결

파. 기타(51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46건)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태형,고은정)	의장	18.07.04	18.07.10	원안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18.07.16	18.07.17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8.07.20	18.07.23	원안가결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8.08.27	18.08.28	원안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18.08.27	18.08.28	원안가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8.10.12	18.10.16	원안가결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18.10.12	18.10.16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18.10.12	18.10.16	원안가결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8.11.05	18.11.0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8.11.05	18.11.06	원안가결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	의장	18.12.14	18.12.14	원안가결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02.11	19.02.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9.02.11	19.02.12	원안가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9.02.11	19.02.1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9.02.11	19.02.12	원안가결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03.25	19.03.26	원안가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19.03.25	19.03.2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장	19.04.03	19.04.04	원안가결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05.07	19.05.14	원안가결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06.10	19.06.1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9.06.10	19.06.11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장	19.06.21	19.06.25	원안가결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07.02	19.07.09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19.07.02	19.07.09	원안가결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19.07.02	19.07.0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19.07.02	19.07.0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08.21	19.08.2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19.09.10	19.09.10	원안가결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10.15	19.10.15	원안가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19.11.05	19.11.05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19.11.05	19.11.05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건설교통 위원장	19.12.17	19.12.20	원안가결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20.02.11	20.02.1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진상 특별위원장	20.02.11	20.02.26	원안가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20.02.26	20.02.26	원안가결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20.03.20	20.03.2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장	20.03.25	20.04.21	원안가결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테크노밸리 조성 지원 특별위원장	20.04.10	20.04.21	원안가결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20.04.21	20.04.21	원안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20.04.21	20.04.2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장	20.05.04	20.06.0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20.05.29	20.06.09	원안가결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20.06.09	20.06.09	원안가결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처리결과	
				처리일	결과
본회의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도시환경 위원장	20.06.12	20.06.24	원안가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노동과 인권 존중 특별위원장	20.06.18	20.06.24	원안가결
운영위 (5건)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영준 의원 등 16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배수문 의원 등 20명	19.10.04	19.10.22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장현국 의원 등 12명	19.10.25	19.12.2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나영 의원 등 10명	19.12.04	19.12.20	수정가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현삼 의원 등 15명	19.12.04	19.12.20	원안가결

하. 계류(81건)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비 고
본회의 (4건)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교육감	19.01.1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도지사	19.06.18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교육감	19.09.30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도지사	20.01.06	
운영위 (10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삼 의원 등 37명	18.08.08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명원 의원 등 11명	18.08.09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창균 의원 등 20명	18.08.17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근철 의원 등 16명	18.08.17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비 고
운영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세명 의원 등 13명	18.10.05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현옥 의원 등 22명	19.01.2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성훈 의원 등 27명	19.01.25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김경호 의원 등 10명	19.03.15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등 14명	19.10.0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등 18명	19.10.25	
기획위 (7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식 의원 등 10명	19.03.15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준 의원 등 13명	19.06.28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혜원 의원 등 11명	19.08.16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식 의원 등 17명	20.01.3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도지사	20.01.3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혁 의원 등 20명	20.04.10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5명	20.04.10	
경제위 (6건)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18.08.17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오지혜 의원 등 22명	18.11.28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9명	18.11.29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옥분 의원 등 15명	19.03.15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등 51명	19.08.16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비 고
경제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영 의원 등 26명	20.05.29	
안행위 (4건)	경기도 우리동네 안전봉사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24명	18.08.17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65명	19.10.0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동 의원 등 17명	20.05.29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갑철 의원 등 16명	20.06.01	
문체위 (1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순 의원 등 22명	20.05.29	
농정위 (4건)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김철환 의원 등 31명	19.05.03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8명	19.10.04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김경호 의원 등 13명	20.01.31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3명	20.05.29	
복지위 (5건)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시 의원 등 13명	18.08.17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열 의원 등 56명	18.11.28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 등 37명	19.03.15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강태형 의원 등 27명	19.05.31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19.12.04	
건설위 (7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의원 등 18명	18.10.0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8.10.05	
	경기도 건설기능 훈련·취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명원 의원 등 27명	19.05.0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원 의원 등 29명	19.05.03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비 고
건설위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연 의원 등 15명	19.05.03	
	경기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21명	20.05.29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정대운 의원 등 18명	20.05.29	
도시위 (6건)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한 환경부 공동주체 참여 촉구 건의안	이선구 의원 등 12명	19.10.0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김경호 의원 등 10명	19.10.04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심규순 의원 등 13명	19.12.0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락용 의원 등 12명	20.01.31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왕숙(왕숙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20.04.08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조광희 의원 등 29명	20.04.10	
여가교위 (5건)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	김경희 의원 등 44명	18.11.2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 등 30명	19.05.3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16명	19.06.28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유영호 의원 등 17명	20.04.10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한미림 의원 등 14명	20.05.29	
제1교육위 (9건)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 의원 등 30명	18.11.28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율 의원 등 35명	18.11.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18.12.07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황대호 의원 등 27명	19.03.15	

소관위	의 안 명	발의자 (제안·제출)	제출일	비 고
제1교육위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강태형 의원 등 21명	19.05.31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권정선 의원 등 65명	19.10.04	
	경기도교육청 단군기원 연호(檀君紀元 年號)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고찬석 의원 등 13명	19.10.04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26명	20.05.29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등 13명	20.05.29	
교행위 (13건)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13명	19.08.16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19명	19.08.16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천영미 의원 등 18명	20.05.29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영미 의원 등 19명	20.05.29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덕동 의원 등 17명	20.05.29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등 14명	20.05.2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의원 등 11명	20.05.29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리 의원 등 25명	20.05.29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조광희 의원 등 19명	20.05.29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세명 의원 등 10명	20.05.29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 등 25명	19.05.31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등 13명	19.08.16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의원 등 19명	19.08.16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4장 의정활동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4장 의정활동

■ 제1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 ■

1.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명단 (2018. 8. ~ 2019. 8.)

직 위	소 속	회원명	비 고
회 장	경기도의회	송한준	
수석부회장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부 회 장	강원도의회	한금석	
부 회 장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부 회 장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부 회 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감 사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감 사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사무총장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정책위원장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정 책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정 책 위 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정 책 위 원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정 책 위 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정 책 위 원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정 책 위 원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정 책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2. 제16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명단 (2019. 8. ~ 2020. 6.)

직 위	소 속	회원명	비 고
회 장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수석부회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부 회 장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부 회 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부 회 장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부 회 장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감 사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감 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사무총장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고 문	경기도의회	송한준	
고 문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정책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정 책 위 원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정 책 위 원	강원도의회	한금석	
정 책 위 원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정 책 위 원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정 책 위 원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 (2018. 8 ~ 2020. 6)

일 자	장소	활 동 내 역	비 고
2018. 8. 16.	대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선출 및 임원선임 6건 협의, 기관건의 3건	
2018. 9. 14.	수원	-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동참 건의안 등 11건 협의, 기관건의 6건	
2018. 10. 30.	경주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 7건 협의	
2018. 12. 6.	원주	-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 등 8건 협의, 기관건의 7건	
2019. 2. 21.	대구	- 원격지 거주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선 건의안 등 9건 협의, 기관건의 6건	
2019. 3. 28.	광주	-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등 11건 협의	
2019. 4. 25.	대전	- 임업·임업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등 9건 협의	
2019. 5. 20.	여수	- 광역시도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 등 13건 협의, 기관건의 8건	
2019. 6. 18.	제주	- 주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등 8건 협의, 기관건의 3건	
2019. 7. 18.	청주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등 9건 협의, 기관건의 6건	
2019. 8. 20.	대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 회장선출의 건 등 안건 3건 협의	
2019. 9. 27.	서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11건 협의, 기관건의 7건	
2019. 11. 1.	부산	-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 역할 제고 및 매입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5건 협의	
2019. 12. 3.	인천	-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등 10건 협의, 기관건의 8건	
2020. 1. 8.	울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9건 협의, 기관건의 8건	
2020. 4. 24.	서울	-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건의안 등 13건 협의, 기관건의 11건	
2020. 5. 26.	부여	-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건 협의, 기관건의 6건	
2020. 6. 19.	통영	-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2건 협의, 기관건의 10건	

■ 제2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 ■

1. (제8대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 명단

직 위	소 속	회원명	비 고
회 장	서울특별시	서윤기	
부 회 장	부산광역시	노기섭	
회 원	대구광역시	이만규	
부 회 장	인천광역시	노태손	
회 원	광주광역시	이경호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	남진근	
정책위원장	울산광역시	안도영	
회 원	세종특별자치시	이재현	
회 원	경기도	진용복	
회 원	강원도	원태경	
회 원	충청북도	김영주	
회 원	충청남도	김형도	
사무총장	전라북도	김대중	
회 원	전라남도	서동욱	
회 원	경상북도	박용선	
회 원	경상남도	김호대	
부 회 장	제주특별자치도	김경학	

2. (제8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 명단

직 위	소 속	회원명	비 고
회 원	서울특별시	서윤기	
회 원	부산광역시	노기섭	
부 회 장	대구광역시	이만규	
회 원	인천광역시	노태손	
회 원	광주광역시	이경호	
회 장	대전광역시	남진근	
회 원	울산광역시	안도영	
수석부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이재현	
사 무 총 장	경기도	진용복	
부 회 장	강원도	원태경	
회 원	충청북도	김영주	
회 원	충청남도	김형도	
회 원	전라북도	김대중	
부 회 장	전라남도	서동욱	
회 원	경상북도	박용선	
정책위원장	경상남도	김호대	
회 원	제주특별자치도	김경학	

3.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

(제8대 전반기)

구분	일 자	장소	활 동 내 역	비고
1차	2018.09.06.	대전	• 제8대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회장 선출 • 제8대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임원 선임 결과보고 • 실무위원회 소관 2018년 추가경정예산 건의안 • 실무위원회 소관 2019년 본예산 건의안	
2차	2018.10.18.	서울	•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입장 발표의 건	
3차	2018.11.16.	대전	• 현안업무 추진 보고의 건 (실무위원회 워크숍 및 국외연수 추진)	
4차	2019.02.26.	부산	• 전국 수소충전소 신속 구축 건의의 건 •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차	2019.03.29.	인천	• 현안업무 추진 보고의 건 (2019년 정책사업 추진)	
6차	2019.04.29.	제주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차	2019.05.29.	전북	• 주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8차	2019.06.21.	울산	• 제8대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선출 • 제8대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임원 선임 결과보고	

(제8대 후반기)

구분	일 자	장소	활 동 내 역	비고
1차	2019.09.26.	대구	• 현안업무 추진 보고의 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운영 계획안) • 실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	
2차	2019.10.24.	경북	• 의장협의회 동향 보고의 건	
3차	2019.11.29.	강원	• 현안업무 추진 보고의 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4차	2019.01.16.	전남	• 현안업무 추진 보고의 건 (실무위원회 연구용역 사업 등)	
5차	2020.05.28.	경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6차	2020.06.19.	충남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 지방의회 운영 우수사례 공유(시도별 우수사례 19건)	

※ 코로나 19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2월 ~ 4월 정기회 개최 취소

■ 제3절 교섭단체 활동 ■

1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1.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경과

-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업무협약식 개최('19.1.3. 의장, 대표의원, 도지사)
-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 '19.2.11.(목)

○ 구성인원 : 18명

- 경기도(9명) : 평화부지사,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노동실장, 정책기획관, 소통협치국장 * 현안관련 실·국장
- 도의회(9명) : 대표의원, 수석부대표단(4), 수석대변인, 정책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현안관련 상임위원장

○ 공동의장 :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평화부지사

※ 간사 : 소통협력과장

○ 주요기능

- 도정관련 정책설명 및 협의
- 조례안, 예산안 등 주요안건 사전설명 및 협의
- 주요 이슈사항 점검 등

○ 운영계획

- 회의개최 : 매 회기 개회 전(정기·임시회의시, 필요시 수시 개최)
- 협약 체결 : 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동 협약문 서명(1.3.)

○ 회의안건 작성 및 회의운영

- 매회기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정안건은 2~3건 이내 원칙
- 안건으로 상정할 도정현안 및 이슈사항은 대표단 회의에서 검토 및 최종 선정

※ 안건 제출한 실·국장이 제안 설명

- 도 소통협력과에서 회의 총괄운영 및 후속 조치관리

2. 2019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총 4회 19개 안건 협의

구분	협의안건(19건)	협의결과
제1회 정책협의회 '19.2.11(월) 도청 상황실	정책협의회 세부 운영계획(안)	회의 비공개 원칙, 합의하 공개 가능 등
	'19 경기도 정원조례 개정	6번 안건과 병합 논의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보고	창출된 이익이 경기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LH 및 의회와 적극 협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건교위에서 회기 중 촉구결의안 채택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대상기관 12개 확대, 사전 제출서류 재논의
	의회사무처 조직확대 및 전문성 강화	임기제 24명은 6월까지 임용 매년 4급,5급 2개 직위를 순차적으로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토록 전향적 노력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조실, 교육국 및 상임위와 지속협의
제2회 정책협의회 '19.3.26(화) 도의회 대회의실	'19년 기본소득박람회 추진	의회차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적극 협력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	큰 틀 공감, 세부사항은 상임위와 협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완료 후 상임위와 협의하여 처리
	'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	분담비율 등 교육청과 협의, 2학기 시행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사전제출서류 도의 최종방침 1주일 내 도의회 통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 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연구용역(경기-서울-인천-코레일) 결과 참고하여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도 방침을 1주일 이내에 도의회 통보
	정책협의회 개최시기 조정	정례회 폐지, 수시회의 개최
제3회 정책협의회 '19.8.26(월) 도청 상황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도는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제4회 정책협의회 '19.10.21(월) 도청 제1회의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여 다음 협의회 시 재논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6개→12개)와 제출서류 축소(17종→11종)하되, 초본은 주소이동 내용 포함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방안	4급은 개방직 및 별정직 증원 검토 5급 임기제는 조직 정원 확대시 반영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은 정부 건의

2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2018~2020)

1. 2018년 경기도의회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의원교육

가. 추진목적

2018년도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의원 교육을 추진하여 의원 정치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

나.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정치아카데미 수강신청 도의원 40명 중심
(비교섭단체 및 미신청 의원, 공무원, 민간인 청강 허용)

□ 교육과정 : 정치철학, 리더십, 정치현안, 인문학 강좌 4강으로 구성

□ 교육기간 : 2018년 10월 중 시행(비회기)

□ 교육장소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1~3강), 4층 소회의실(4강)

다. 2018년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수강신청 의원 명단

순번	성명	지역구	상임위원회	비고
1	정승현	안산4	기획재정	
2	김판수	군포4	안전행정	
3	김진일	하남1	건설교통	
4	국중현	안양6	안전행정	
5	권정선	부천5	보건복지	
6	김경희	고양6	제2교육	
7	김철환	김포3	농정해양	
8	안기권	광주1	도시환경	
9	송영만	오산1	경제과학	
10	유광혁	동두천1	기획재정	
11	유영호	용인6	기획재정	
12	김명원	부천6	건설교통	
13	성수석	이천1	농정해양	
14	고찬석	용인8	제1교육	

순번	성명	지역구	상임위원회	비고
15	이명동	광주3	안전행정	
16	손희정	파주2	여성가족	
17	김미숙	군포3	제2교육	
18	백승기	안성2	농정해양	
19	최종현	비례	보건복지	
20	조성환	파주1	보건복지	
21	장대석	시흥2	제1교육	
22	김경호	가평	기획재정	
23	김경일	파주3	건설교통	
24	이 진	파주4	제1교육	
25	이종인	양평2	기획재정	
26	전승희	비례	여성가족	
27	양운석	안성1	문화체육	
28	최승원	고양8	건설교통	
29	소영환	고양7	농정해양	
30	민경선	고양4	기획재정	
31	이동현	시흥4	안전행정	
32	김태형	화성3	도시환경	
33	장현국	수원7	농정해양	
34	김인순	화성1	여성가족	
35	장태완	의왕2	제1교육	
36	조재훈	오산2	건설교통	
37	정윤경	군포1	문화체육	
38	추민규	하남2	제2교육	
39	이영주	양평1	경제과학	
40	김현삼	안산7	여성가족	

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지역구	상임위원회	비고
원장	김현삼	안산7	여성가족	
부원장	이영주	양평1	경제과학	19.12.31. 탈당
부원장	추민규	하남2	제2교육	
사무총장	정윤경	군포1	문화체육	~ 2019년 상반기
사무총장	김태형	화성3	도시환경	2019년 하반기 ~

마.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교육 현황

일 자	장 소	강사	강의 내용	비고
2018. 10. 4.	경기도의회	- 전우용 박사	- 전우용의 역사특강	
2018. 10. 10.	경기도의회	- 정청래 前 국회의원	- 정치철학과 리더십 특강	
2018. 10. 25.	경기도의회	- 김부겸 행안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2018. 10. 31.	경기도의회	- 강헌 명리학자	- 강헌의 명리학 이야기	
2019. 4. 11.	경기도의회	- 표창원 국회의원	- 우리시대, 정의란 무엇인가?	
2019. 4. 17.	경기도의회	- 김두관 국회의원	-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2019. 4. 24.	경기도의회	- 방학진 사)민족문제 연구소 기획실장	- 제국에서 민국으로, 시민의 탄생	
2019. 5. 1.	경기도의회	- 김용현 동국대 교수	- 한반도 평화체제의 나아갈 길	
2019. 5. 8.	경기도의회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 한식세계화와 음식민족주의	
2019. 10. 4.	경기도의회	-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	-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규범	
2019. 10. 10.	경기도의회	- 박광온 국회의원	-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2019. 10. 23.	경기도의회	- 전해철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	
2019. 10. 30.	경기도의회	- 김준혁 한신대 교수	- 아베정권 경제침략의 본질과 역사적 대응	
2019. 11. 1.	경기도의회	-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 포용국가의 이해	

3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1.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기획사진전

가. 추진목적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던 광주민주화운동 열사와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념식과 기획사진전을 추진

나. 행사개요

□ 추진근거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일시/장소 : 2019.5.15.(수) ~ 5.17.(금)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참석대상 : 도민, 도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념식 및 기획사진전

"5·18 위대한 유산" 사진 견본

4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

1.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기념 강연 및 집담회, 추모사진전

가. 추진목적

5. 23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단순 추모행사를 넘어 자치분권을 강조한 노무현 정신의 가치와 철학을 논의하고 노무현 정신을 지방정치에 승화시킬 방향을 모색하는 기조 강연 및 집담회를 추진

나.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9.5.21.(화) ~ 5.23.(목) / 경기도의회 로비,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참석대상 : 도민, 도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지방정치 철학의 기반으로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논의 및 추모사진전 개최

다. 기념강연 및 집담회 계획(안)

시간		소요(분)	주 요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5.22.(수) 14:30	14:45	15	◇ **개회 및 추모사** • 내빈소개/국민의례/추모 묵념 • 개회 및 추모사 - 인사말씀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 추모사 :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4:45	15:00	15	◇ **추모 동영상 시청**		
15:00	15:30	30	기념강연	'노무현 정신을 말하다' (이민원 광주대 경제학과 교수) 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5:30	16:20	50	집담회	발제자 및 도의원 패널 등 진행 : 노정렬(경기도홍보대사, 방송인)	도의원 4명
16:20	16:30	10	◇ **자유토론 : 방청객 모두**		
16:30			◇ **마무리**		

5 이희호 여사 서거 추모분향소 운영

1. 故 이희호 여사 서거 추모분향소 운영

가. 추진목적

2019.6.11. 고 이희호 여사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추모분향소를 운영하고자 함

나. 분향소 운영 개요

□ 일　시 : 2019.6.12.(수) 09시 ~ 6.14.(금) 정오

□ 장　소 : 경기도의회 제2간담회실(3층)

□ 주최/주관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대　상 : 도민, 도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공무원 등

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분향소 사인물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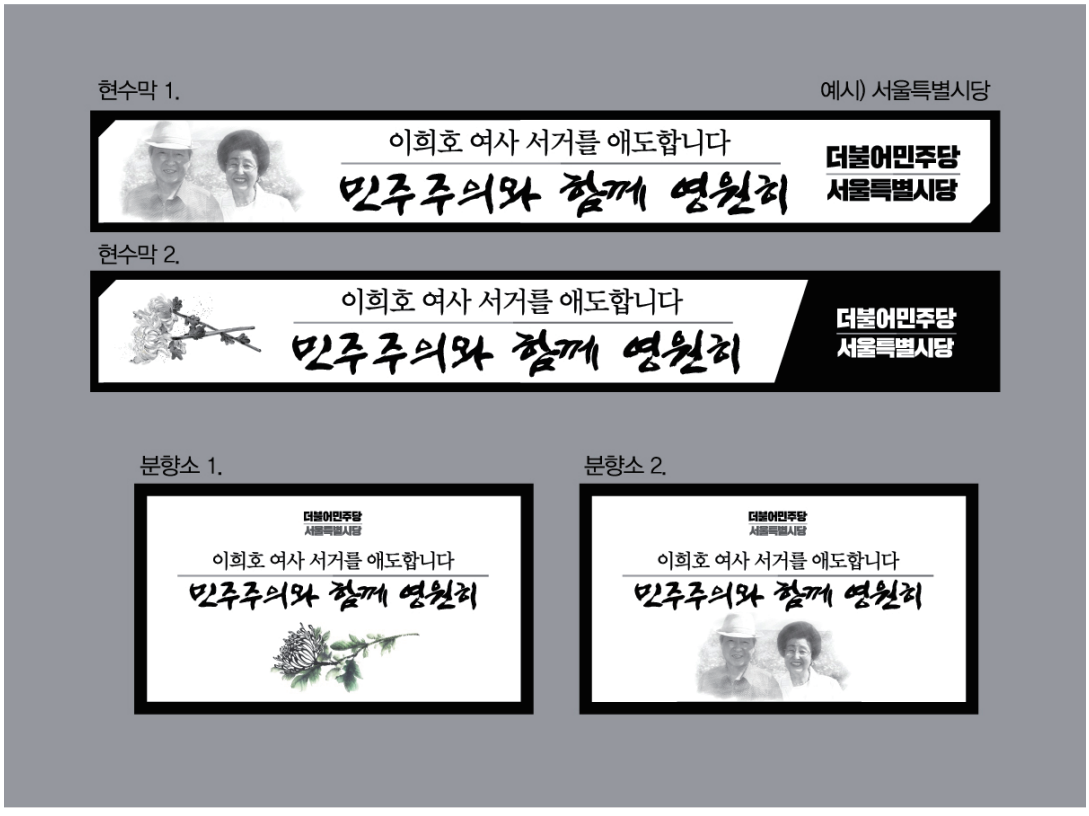

6 개성공단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개성공단 사진전

1.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개성공단 사진전

가. 추진목적

개성공단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품 전시/판매와 사진전을 통해 남북이 서로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작은 통일'을 만들었던 개성공단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함

나. 행사 개요

□ 행사명 : 열어라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개성공단 사진전

□ 일시/장소 : 2019.12.16.(월) ~ 12.19.(목) / 경기도의회 로비,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 /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상 공동주최)

□ 참석대상 : 개성공단입주기업 관계자, 도의원, 시민단체, 도민, 언론사 등

다. 행사개요

□ 제　목 : "평화, 번영의 꽃 개성공단"

□ 일시/장소 : 2019.12.16.(월) 12시 30분 ~ 13시 40분 / 경기도의회

시간		소요(분)	주 요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12:30	12:40	10	• 여는 공연(율동 공연) - 청년, 대학생	
12:40	12:45	5	• 국민의례	사회자
12:45	12:55	10	• 인사말(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경제특위 위원장)	
12:55	13:10	15	• 축사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명예대표
13:10	13:15	5	• 축하공연	공연자
13:15	13:30	15	• 각계 발언(개성공단기업, 여성, 청년)	
13:30	13:35	5	• 개막식 커팅식	주요내외빈
13:35	13:40	5	• 폐회 및 기념사진	참가자

7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정 합동 보고대회(2018.11.26)

가. 목적

도민 숙원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0개 시·군 및 시·군 의회 모두 합심하여 이룬 협치 사업임을 기념하고 도민께 합동 보고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협치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되게 하기 위함

나. 보고대회 개요

□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11시

□ 장　　소 : 경기도의회 입구(우천시 브리핑룸)

□ 참석대상 : 9명(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제1·2 교육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0~10:32	2분	개회	
10:32~10:35	3분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말씀	
10:35~10:38	3분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인사말씀	
10:38~10:41	3분	경기도교육감 인사말씀	
10:41~10:44	3분	경기도지사 인사말씀	
10:44~10:47	3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인사말씀(수원시장)	
10:47~10:50	3분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인사말씀(성남시의회의장)	
10:50~10:59	9분	경기도의회 1,2교육위원회·여가교위 위원장 인사말씀	
10:59~11:00	1분	기념 촬영	

8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2018.12.14.)

가. 추진목적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10대 경기도의회 다수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도의회 청사 앞에 건립하게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막식 행사를 추진함

나.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2. 14.(금) 14:00~15:00

□ 장　　소 : 경기도의회 현관 앞 국기게양대

□ 참 석 자 :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모금 참여 의원 130명 외

□ 주요내용

○ 식전행사, 국민의례, 경과보고, 축사

○ 제막식 및 평화의 소녀상 헌화 등

□ 식순 및 시간계획

구분	행사명	세부 내용	비고
13:20~13:30	식전행사	풍물패 길잡이공연	'삶터' 풍물패
13:30~13:35	개회	축하공연단 및 참여단위 대표	사회자
13:35~13:40	국민의례	애국가 및 묵념	사회자
13:40~13:45	경과보고	경과보고(김봉균 단장)	
13:45~14:05	인사말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내외빈
14:05~14:10	연대사	이주현 경기평화비연대위원장	
14:10~14:15	취지문낭독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14:15~14:25	제막식헌화	※ 나눔의 집 할머니 외 총 10명	
14:25~14:30	기념촬영	단체사진, 상임위별, 추진단, 기타	폐회

※ 나눔의 집 할머니, 안신권 소장, 윤미향 대표, 의장, 부의장2, 대표의원,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추진단 단장, 경기평화연대 위원장

9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정 합동 보고대회(2019.9.10.)

가. 목적

도민 숙원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0개 시·군 및 시·군 의회 모두 합심하여 이룬 협치 사업임을 기념하고 도민께 합동 보고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협치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되게 하기 위함

나. 보고대회 개요

□ 일　　시 : 2019. 9. 10.(화) 오전 09시 30분~09시 50분

□ 장　　소 : 경기도의회 입구

□ 참석대상 : 9명(도의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더민주 대표의원, 제1·2교육위원회 위원장, 여가교위위원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09:30~09:32	2분	개회	사회자 (심규순 기획수석부대표)
09:32~09:35	3분	경과보고	채신덕 기획부대표
09:35~09:37	2분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말씀	
09:37~09:39	2분	경기도지사 인사말씀	
09:39~09:41	2분	경기도교육감 인사말씀	
09:41~09:43	2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인사말씀	안병용 의정부시장
09:43~09:45	2분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인사말씀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09:45~09:47	2분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인사말씀	
09:47~09:50	3분	기념 촬영 및 폐회	

10 각종 결의 대회

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2018.9.12.)

가. 추진목적

현재 관계부처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즈음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뜻과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나. 행사개요

□ 일　　시 : 2018.9.12.(수) 12시(본회의 직후)

□ 장　　소 : 경기도의회 입구 계단 앞

□ 행사순서

구분	담당	비고
배경설명	김용성 수석부대표	사회자
모두발언	배수문 자치분권혁신추진단 위원장	
퍼포먼스	자치분권혁신추진단 남녀 각 1인 선창	손피켓 활용 구호제창
폐회		사회자

□ 손피켓(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정책지원인력 확대하라**
의회인사권 독립하라	**지방자치권 전면 강화하라**

2.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대회(2018.10.16.)

가. 목적

□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계류 중인 바,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촉구 건의함.

나. 보고대회 개요

□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의원 총회 후

□ 장　　소 : 경기도의회 계단 앞

□ 참석대상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부계획

구분	담당	비고
배경설명	김용성 수석부대표	사회자
인사말씀	염종현 대표의원	
	송한준 의장	
모두발언	장현국 평화경제추진위원회 위원장	
결의문 낭독	김경일 의원, 남운선 의원	
구호제창	김용성 수석부대표	손피켓 활용 구호제창
폐회		사회자

다. 홍보물(손피켓, 현수막)

□ 손피켓(600mm×150mm)

3. 검찰개혁촉구 결의대회(2019.10.15.)

가. 추진목적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촉구 및 사법개혁완수 의지를 모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대회를 추진하고자 함

나. 행사개요

□ 일　시 : 2019.10.15.(화) 10:40~11:00(본회의 전)

□ 장　소 : 경기도의회 입구 계단 앞

□ 참석대상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 주요내용 :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퍼포먼스

○ 식전행사, 국민의례, 경과보고, 축하공연

□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40~10:41	1분	개회	사회:이동현 정책수석
10:41~10:43	2분	내빈소개	
10:43~10:46	3분	의장 인사말	
10:46~10:49	3분	대표의원 인사말	
10:49~10:54	5분	결의문 낭독(김성수·서현옥 의원)	
10:54~10:57	3분	구호 제창 퍼포먼스	
10:57~11:00	3분	기념 촬영 및 폐회	

■ 제4절 국제교류협력 활동 ■

(2020. 6월말 기준)

1. 국제 친선의원연맹 구성 현황

활동연도	국가명	지역명	회원수	비고
2019	중국	랴오닝성	12	6개 지역 77명
	중국	광둥성	13	
	일본	가나가와현	13	
	베트남	응헤안성	13	
	몽골	다르항올도	13	
	호주	빅토리아주	13	
2020	중국	장쑤성	12	5개 지역 64명
	호주	퀸즈랜드주	13	
	캐나다	BC주	13	
	독일	작센주	13	
	베트남	하남성	13	

2. 국제 친선의원연맹 추진실적

연도	방문기간	방문단	방문지	인원
2019	01.07.~ 01.10.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광저우, 선전	13
	06.30.~ 07.04.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다르항올도, 울란바토르	11
	09.15.~ 09.21.	호주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	멜버른	8
	10.23.~ 10.26.	중국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선양	9
	10.23.~ 10.26.	베트남 응헤안성 친선의원연맹	빈	7
2020	01.06.~ 01.10.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난징, 상하이	10
	01.07.~ 01.11.	베트남 하남성 친선의원연맹	하노이, 폴리, 하롱	11

* 2019년 한일관계 악화 장기화로 일본 가나가와현 연맹 교류방문 비추진

3. 국제외빈 도의회 방문

연도	날짜	방 문 단	인원	주요내용
2018	09.06.~07.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	26	친선교류
	09.10.	중국 푸젠성 총공회 방문단	8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10.30.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 방문단	8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모색
	11.07.~08.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5	교류협력 증진, 벤치마킹
	12.05.	아시아 장애인 활동가 연수단	14	장애인 국제교류 지원
2019	02.13.	페루, 볼리비아 국회의원 방문단	4	교류협력 증진
	04.02.	몽골 다르항올도 다르항관광협회 방문단	2	친선교류
	05.27.	대만 대창 수원 라이온스 클럽 방문단	15	교류협력 증진
	06.18.	일본 가나가와연합회 방문단	5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07.15.	중국 장쑤성 공무원 경기도연수단	15	교류협력 증진, 벤치마킹
	08.13.	중국 산둥성 룽청시 방문단	9	청소년 교류 추진
	08.27.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단	4	친선교류
	09.04.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노총 방문단	6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10.04.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 방문단	26	친선교류
	10.14.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	8	친선교류
	10.21.	베트남 응헤안성 노총 방문단	5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10.21.	중국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	14	친선교류
	11.20.	아시아 장애인 운동 활동가 연수단	14	장애인 국제교류 지원
	12.05.	대만 단수이 청년회의소 방문단	15	국제교류 지원, 벤치마킹
	12.05	캐나다 BC주의회 대표단	3	친선교류합의서 체결

■ 제5절 상임위원회별 활동 ■

(2018. 7 ~ 2020. 6)

□ 의회운영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9. 11 ~ 21	수원, 용인, 양평	2018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8. 10. 1 ~ 2	용인	2018년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2018. 12. 11	용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2019. 1. 7	수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2019. 1. 12	경기도의회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방문·간담회	
2019. 3. 6 ~ 8	광주광역시, 완도	2019년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2019. 6. 20	수원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 현장 방문	
2019. 7. 1 ~ 2	제주도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 합동 토론회	
2019. 7. 2 ~ 3	제주도	제주도 주요기관 방문	
2019. 8. 20 ~ 21	양평, 가평	2019년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2019. 9. 11 ~ 16	가평, 여주, 군포	2019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9. 11. 29	수원	제1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시상식	
2019. 12. 06	경기도의회	캐나다 BC주의회 대표단 의회운영위원회 방문·간담회	
2019. 12. 25 ~ 26	안양, 부천, 파주	2019년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20. 2. 6	경기도청	경기도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실 방문 및 격려	
2020. 2. 19	용인	경기도의회 함께 나누는 도서 기증식	

□ 기획재정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20 ~ 22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와 분권 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 지방자치 강화 모색 연찬회	
2018. 9. 17	동두천	동두천 지역현안사업장 현장방문	
2018. 9. 19	파주	DMZ 현장방문	
2018. 10. 17 ~ 18	가평	지역개발사업지 시찰(지방도387, 364호선)	
2018. 11. 9	경기도의회	경기도 평화협력 정책 추진 토론회	
2018. 11. 16	고양	고양테크노밸리 및 통일경제특구 추진 관련 현장방문	
2018. 11. 21	경기도청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참석	
2018. 11. 22	양평	양평군 지역개발사업지 시찰 및 현장의견 청취	
2019. 1. 14	경기광주(수자원본부)	팔당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1. 28 ~ 29	연천	연천군 보건의료원 및 DMZ 접경지대 현장방문	
2019. 2. 14	안성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현장방문	
2019. 2. 18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	
2019. 3. 3	고양	청년세대 연구회 정책세미나	
2019. 4. 3	포천	포천시 시정현안 청취 및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현장방문	
2019. 4. 24 ~ 26	남해, 순천, 목포	2019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연찬회	
2019. 5. 2	경기도의회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9. 7. 12	김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건립 현장방문	
2019. 7. 23 ~ 24	연천	접경지역 지원방안 모색 및 DMZ 안보체험시설 확충 점검 현장방문	
2019. 9. 23 ~ 10. 2	독일, 스위스	기본소득제도 및 접경지 교류·협력 등 연수	
2019. 9. 9	경기도의회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참석	
2019. 11. 20 ~ 22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연천 양돈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방문	
2020. 2. 21	파주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경기관광활성화 포럼	

□ 경제노동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20 ~ 22	제주도	집행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토론 등	
2018. 8. 31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업무보고 및 시제품 제작 참석	
2018. 8. 31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및 패션쇼 참관	
2018. 9. 5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기업애로 해결 우수사례 참관	
2018. 10. 11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요사업 업무보고	
2018. 10. 11	킨텍스	뷰티박람회 개막식 참석	
2018. 10. 25	차세대융합기술원	업무보고 및 자율주행차 시승 참석	
2018. 10. 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우수사례 참관	
2018. 10. 25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례 참석 및 현장방문	
2018. 12. 18 ~ 19	화성시	해양레저산업 현장방문 및 미래 발전전략 모색 등	
2019. 3. 14 ~ 15	김포권역	김포권역 산업단지 현장방문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2019. 3. 25	광주시청	가구 기업체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등 의견 수렴	
2019. 3. 29	한국나노기술원	업무보고 및 나노소자분야 연구개발지원 체계 구축 논의	
2019. 4. 2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나노펩 투어, 입주자 간담회, 교육훈련 현장 방문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4. 3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랩	업무보고 및 스타트업 육성 방안 논의	
2019. 4. 24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네크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2019. 5. 7	경기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2019. 5. 20	경기도의회	경기도 120콜센터 희망연대노조 요구사항 및 집행부 의견 수렴	
2019. 5. 21	경기도의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평택항 마린센터 현장 방문 의견 수렴	
2019. 6. 5	경기도의회	경기도 비정규직 전환 방안 및 로드맵 마련 사전 협의	
2019. 6. 11	경기도의회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및 조례개정 의견 수렴	
2019. 6. 11	경기도의회	대규모 유통상가 내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활성화 방안 논의	
2019. 6.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입문기업 간담회 개최	
2019. 6. 14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시승	
2019. 7. 3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전문가 조례안 의견 수렴·토론	
2019. 7. 4 ~ 6	백령도	남북분단 및 통일안보정책 논의 및 자연문화유산 활용 관광사업 현장방문 등	
2019. 7. 10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한국노총 및 경제노동위원회 협력관계 구축, 노동정책 협의 등	
2019. 7. 11	경기도기술학교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및 업무관련 간담회 참석	
2019. 7. 11	여성능력개발본부	현장방문	
2019. 7. 26	경기도의회	쟁점 조례안 사전 논의	
2019. 8. 29	경기도의회	대학생 노동 인권 교육의 필요성 환기, 교육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9. 8. 30	(주)FST	현황 보고 및 의견수렴 간담회	
2019. 8. 30	한국나노기술원	수출규제 관련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2019. 9. 3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DMC 디지털미디어시티)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협력관계 구축 현황 보고 및 주요시설 시찰	
2019. 9. 6	경기도의회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선정 지역 사업 주체 의견 청취 및 조례안 의견 수렴	
2019. 10. 1	경기도의회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제안 설명, 조례안 의견 수렴 및 토론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10. 22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 조례안 의견 수렴 및 토론	
2019. 10. 23 ~ 25	제주도	2020년 본예산 관련 토론	
2019. 11. 29	경기도의회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 조례안 의견 수렴 및 토론	
2019. 12. 20	경기도의회	현안 관련 집행부 의견 수렴 등 경제노동위원회 간담회	
2020. 2. 18	이천 관고시장	상인 격려, 장보기, 방역활동 및 간담회 참석	

□ 안전행정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20 ~ 22	제주도	안전행정위원회 연찬회	
2018. 8. 31	용인	경기도 소방학교 현장방문	
2018. 10. 11	안양	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 참관	
2018. 10. 16	서울	경기도 장학관 현장방문	
2018. 10. 17	여주, 평택, 수원, 남양주, 하남, 광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2018. 10. 18	양주, 동두천, 연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2018. 10. 18	동두천	제1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2018. 10. 29	수원	수원소방서 격려 방문	
2018. 12. 20	용인	제68기 신임소방공무원 임용식	
2018. 12. 26 ~ 28	제주도	안전행정위원회 연찬회	
2019. 1. 29	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격려 방문	
2019. 3. 8	수원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식 참석	
2019. 3. 11 ~ 13	전남 여수, 순천	안전행정위원회 연찬회	
2019. 3. 29	성남, 광주, 하남, 용인, 수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2019. 4. 1	군포, 시흥, 연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2019. 5. 9	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합동토론회	
2019. 5. 14	이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2019. 5. 29	수원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2019. 6. 14	용인	제69기 신임소방공무원 임용식	
2019. 7. 3 ~ 5	강원도 속초	안전행정위원회 연찬회	
2019. 8. 22	가평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현장방문	
2019. 9. 5	포천	포천소방서 격려방문	
2019. 9. 30	수원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토론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10. 16	평택, 수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	
2019. 10. 17	시흥, 화성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	
2019. 9. 3	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2019. 10. 29	수원	201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전야제	
2019. 10. 29	수원	201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2019. 12. 3	수원	제5회 경기CSR활성화 포럼	
2019. 12. 4	수원	2019년 경기도 지체장애인대회	
2019. 12. 13	수원	2019년 의용소방대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	
2019. 12. 26 ~ 28	제주도	안전행정위원회 연찬회	
2019. 12. 26	용인	제70기 신임소방공무원 임용식	
2020. 2. 21	광주	광주소방서 격려 방문	
2020. 4. 22	화성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11	파주	광복73주년기념 2018 DMZ 평화콘서트	
2018. 8. 20 ~ 22	영광, 목포, 군산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찬회	
2018. 9. 13 ~ 14	파주, 고양	DMZ 국제다큐영화제 참가 및 격려	
2018. 9. 18	양평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 참가 및 격려	
2018. 10. 8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팀업캠퍼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현장방문	
2018. 10. 13	전라북도 익산	전국체전 개회식 및 경기도선수단 격려	
2018. 10. 17	화성	경기도종합사격장 현장방문	
2018. 10. 18	수원, 용인	경기도문화의전당, G-뮤지엄파크 현장방문	
2018. 10. 20	수원	경기천년 대축제	
2018. 10. 23 ~ 24	양평	2018년 경기도의회 한마음연찬회	
2018. 10. 27	양평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및 격려	
2018. 11. 09	안산	2018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전	
2018. 11. 10	성남	제2회 경기크리에이터즈데이 참가 및 격려	
2018. 11. 15	서울	북한산성 국제학술 심포지엄 연구발표	
2018. 12. 3	성남	2018 제5차 GRI 문화예술정책포럼	
2018. 12. 6	평택	경기 MICE DAY	
2018. 12. 7	수원	2018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2018. 12. 13	고양	체육발전 대토론회	
2018. 12. 17	수원	2018년 민평통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2. 26	수원	제7회 홍재 의정 공직대상 시상식	
2018. 12. 27	수원	장애인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	
2019. 1. 16 ~ 18	제주도	지역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찬회	
2019. 1. 23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식	
2019. 2. 12 ~ 13	파주	제1회 경기문화비전포럼 개최	
2019. 2. 20 ~ 21	평창	전국동계체전 경기도선수단 격려	
2019. 2. 26	수원	한국체육정책학회 동계세미나	
2019. 4. 1	수원	제2회 경기문화비전포럼 개최	
2019. 4. 14	안산	'경기페스티벌' 약속 참석	
2019. 4. 18	군포	2019년 경기도 춘계정책토론회	
2019. 4. 23	광주	2019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막식	
2019. 4. 27	수원	장애인 선수권대회	
2019. 4. 29	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활성화 방안 토론회	
2019. 5. 1 ~ 2	속초	제3회 경기문화비전포럼 개최	
2019. 5. 9	안산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9. 5. 9	고양	PlayX4(플레이엑스포) 개막식	
2019. 5. 10	고양	2019 경기국제웹툰페어 개막식	
2019. 5. 11	고양	경기국제e-스포츠대회 개회식	
2019. 5. 17	이천, 여주	한국도자재단 현장방문	
2019. 5. 23	안산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19. 6. 14	수원	제4회 경기문화비전포럼 개최	
2019. 6. 27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2019. 6. 29	수원	포레포레 행사 참석	
2019. 7. 2	고양	한류월드 토론회	
2019. 7. 10	안산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현장방문	
2019. 7. 18	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글로벌 개발자포럼	
2019. 7. 25	서울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2019. 8. 8	안성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참석	
2019. 8. 23	성남	경기도 e-sports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9. 8. 30	수원	제5회 경기문화비전포럼 개최	
2019. 9. 05	수원	어울림체육대회 개회식	
2019. 9. 18	시흥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	
2019. 9. 20	고양	DMZ 국제다큐영화제 참가 및 격려	
2019. 9. 23	수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및 종합우승 다짐대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9. 24	고양	故 최인훈 작가 문학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 9. 24 ~ 10. 2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019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체육관광팀)	
2019. 9. 30 ~ 10. 8	프랑스	2019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문화예술팀)	
2019. 10. 4	서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2019. 10. 8	수원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개막식	
2019. 10. 15	서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9. 10. 17	서울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격려	
2019. 10. 23	남양주	실학박물관 10주년 기념식	
2019. 10. 25	일산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	
2019. 11. 4	성남	'도시재생에 문화를 입히다' 토론회 개최	
2019. 11. 8	여주	여주도자세상 현장방문	
2019. 11. 25	수원	제6회 경기문화비전포럼 개최	
2019. 12. 5	서울	2019 제4회 경기도자페어 개막식	
2019. 12. 5	수원	경기마이스데이	
2019. 12. 6	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 진흥유공자 표창 수여식	
2019. 12. 6	부천	인간문화재 대축제	
2020. 1. 13 ~ 15	제주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찬회	
2020. 1. 29	파주	2020년 경기관광 활성화 포럼	
2020. 1. 29	수원	2020 경기도 문화예술인 신년회	

□ 농정해양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14	이천	폭염피해농가 현장방문	
2018. 9. 4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현장방문	
2018. 10. 17	양평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현장방문	
2018. 10. 30 ~ 11. 1	삼척	농정해양위원회 연찬회(예산심의 토론회)	
2018. 12. 26	이천, 화성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2018. 11. 7	수원	동절기 AI 방역 개선대책 간담회	
2019. 1. 22 ~ 24	여수, 순천	농정해양위원회 역량강화 연찬회	
2019. 2. 19	수원	축사운영 관련 주요 민원 간담회	
2019. 2. 27	양평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현장방문·간담회	
2019. 3. 19	광주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자단체 현장방문·간담회	
2019. 4. 2	안산	풍도 현장방문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4. 9	수원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유통진흥원 간담회	
2019. 5. 2	고양	고양국제꽃박람회 현장방문	
2019. 5. 21	가평	경기도 잣향기 푸른숲 현장방문	
2019. 8. 26	수원	토종종자 활성화 간담회	
2019. 9. 3	김포	대명항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2019. 9. 17	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회의(1차)	
2019. 9. 20	안성	과수농가 현장방문	
2019. 9. 30	의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회의(2차)	
2019. 10. 10	서울	제16회 선인장페스티벌 참석	
2019. 11. 20	서울	경기도 안심먹거리 G푸드쇼 참석	
2019. 10. 29 ~ 31	제주도	농정해양위원회 역량강화 연찬회	
2019. 11. 28	평택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현판식 참석	
2019. 12. 6	수원	공공급식 도농상생방안 간담회	
2019. 12. 23 ~ 29	대만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9. 12. 30	김포, 안성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2020. 2. 20	고양, 이천	고양·이천 농업분야 정책간담회	
2020. 3. 4	수원	안성 도축장 설립 관련 간담회	
2020. 6. 18	수원	학생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 정담회	

□ 보건복지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3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2018. 8. 21 ~ 23	제주도	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2018. 9. 4	의정부, 동두천, 포천	북부권역외상센터,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8. 9. 10	경기도의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추진 관련 간담회	
2018. 9. 11	수원	메르스 관련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현장방문	
2018. 9. 14	이천, 용인, 수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8. 10. 15	의정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병원 현장방문	
2018. 10. 19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2018. 10. 29	수원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추계 체육행사	
2018. 11. 1	경기도의회	장애인 성 권리 확보를 위한 간담회	
2018. 11. 16	경기도의회	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18. 11. 29	경기도청 북부청사	미래형 돌봄 교육정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1. 30	경기도의회	복지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18. 12. 10	경기도의회	지방분권과 경기외교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18. 12. 14	경기도의회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8. 12. 20	경기도의회	경기도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청년과의 토론회	
2018. 12. 25	도내 사회복지시설	2018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2019. 1. 15	경기도의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	
2019. 1. 25	경기도의회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 3.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통일시대 대비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	
2019. 3. 11	경기도의회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	
2019. 3. 14	경기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	
2019. 3. 18 ~ 20	제주도	2019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2019. 3. 28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역 불법 마약류 문제의 실태 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 4. 4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4. 15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 4. 18	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4. 26	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춘계 체육행사	
2019. 4. 30	수원	경기도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2019. 5. 10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9. 5. 21	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축현장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6. 2 ~ 4	파주	공공의료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19. 6. 13	파주,연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연천군 보건의료원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6. 20	경기도의회	2019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행사 개최	
2019. 6. 26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9. 7. 4 ~ 6	제주도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2019. 7. 18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신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7. 24	경기도의회	경기도 인권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2019. 7. 25	수원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7. 29	안산, 성남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TF팀 우수사례기관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7. 29	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9. 5	경기도의회	경기도 제1형 당뇨형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19. 9. 18	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시작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 10. 7 ~ 8	화성	2019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2019. 10. 17	경기도의회	한의약을 통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방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한의사회 토론회	
2019. 11. 18	양평	장애인복지시설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019. 12. 11	경기도의회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 12. 25	도내 사회복지시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2019. 12. 17 ~ 18	화성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2019. 12. 25 ~ 31	베트남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2020. 3. 25	경기도의회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20. 4. 14	경기도의회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건설교통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7. 18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현장 방문	
2018. 8. 20 ~ 22	제주도	2018년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2018. 8. 28	경기도의회	도봉산 ~ 옥정 광역철도 건설 관련 간담회	
2018. 9. 3	신청사 건립 현장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 방문	
2018. 9. 5	킨텍스	2018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현장 방문	
2018. 9. 14	LH부천옥길사업단	옥길 공공주택지구 입주(예정)자 간담회	
2018. 9. 11 ~ 19	수원 (신곡초 등 4개소)	수원 권선구 학교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	
2018. 10. 16	경기도의회	건설산업 혁신 전문가 초청 강의	
2018. 10. 17	경기도의회	건설공사현장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2018. 10. 19	이천	이천시 지방도 건설 현장 방문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0. 30	경기도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공청회	
2018. 10. 31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2018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 방문	
2018. 11. 27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 관련 간담회	
2019. 1. 25	경기도의회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토론회	
2019. 4. 3	파주	파주시 지방도 및 철도 현안사업 현장 방문	
2019. 4. 16 ~ 17	연천군	2019년 춘계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2019. 4. 24	경기도의회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관련 간담회	
2019. 6. 5	수원 지속가능경영재단	협동조합을 통한 대중교통 안정화와 교통복지 확충 집담회	
2019. 6. 19	평택 이충레포츠공원	2019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 방문	
2019. 7. 4	부천 소사청소년수련관	지역공동체 안전통학로 설치 방안 토론회	
2019. 8. 2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 산업 분야 전문가 초청 강의	
2019. 8. 30	평택	평택항만공사 및 평택항 현장 방문	
2019. 9. 2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2019. 9. 4	오산역	오산역 환승센터 주변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2019. 9. 23 ~ 10. 1	독일, 영국	2019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2019. 10. 29 ~ 30	화성	2019년 추계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2019. 11. 8	킨텍스	2019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현장 방문	
2019. 12. 17	경기도의회	사납금폐지와 전액관리제 실시로 인한 택시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 토론회	
2020. 1. 20	하남시의회	하남-광주 지역 택시부족 해결을 위한 토론회	

□ 도시환경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22 ~ 24	태안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연찬회	
2018. 9. 3	광주	팔당호 수질보전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2018. 9. 5	경기도의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2018. 9. 6	경기도의회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2018. 10. 10 ~ 12	제주도	2018년도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연찬회	
2018. 10. 18	과천	과천시 지역 현안 관련 현장 방문	
2018. 11. 16	경기도의회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9. 2. 28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관련 토론회	
2019. 3. 6 ~ 8	제주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연찬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3. 20	광명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목감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 청취 및 현장 확인	
2019. 3. 25	경기도의회	광교 개발이익금 합리적 정산 간담회	
2019. 4. 2	안양	인덕원, 관양동, 냉천마을, 연현마들 등 안양시 지역개발현장 확인	
2019. 4. 3	고양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현장방문	
2019. 4. 3	킨텍스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2019. 4. 23	양주, 구리	양주시 및 구리남양주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현장 확인	
2019. 4. 23	평택	미세먼지대책 소위원회 현장 방문	
2019. 5. 2	고양	고양시 뉴딜사업 관련 현장 방문	
2019. 6. 3	LH광명시흥사업본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운영 지원 특위 간담회	
2019. 6. 4	업사이클플라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개관 관련 현장 방문	
2019. 6. 4	수원컨벤션센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토론회	
2019. 7. 9	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권역별 MICE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착수 보고회	
2019. 7. 10	화성, 광교	경기도 신청사 및 동탄2 라끄몽사업 추진 현황 및 공사 현장 확인	
2019. 8. 27	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권역별 MICE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	
2019. 9. 2	의정부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시설 이전 관련 현장점검	
2019. 9. 17 ~ 26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너지 정책 및 도시재생 관련 선진 사례 벤치마킹	
2019. 11. 4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9. 11. 5	경기도의회	후분양제, 경기행복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등 경기도 주택정책 소개 및 토론	
2019. 11. 12	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현장 점검	
2019. 11. 12	안산	세계 정원 경기 가든(가칭) 조성 현장 방문	
2019. 11. 20	광주	행정사무감사 관련 수자원본부 현장 점검	
2019. 11. 29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19. 12. 8 ~ 14	미국	미국 유타주 경기정원 실시설계 추진 및 교류협력 활성화	
2019. 12. 13	경기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방문에 따른 간담회	
2019. 12. 18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0. 1. 13 ~ 15	제주도	2020년도 상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연찬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2	가평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폐교시설 현장방문	
2018. 8. 20	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현안논의(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를 위한 간담회	
2018. 8. 23	안산	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와의 현안(종사자 처우개선, 운영비 지원 등) 간담회	
2018. 9. 3 ~ 5	수원	제10대 상임위(여가교위) 구성에 따른 위원회운영 및 의원간 소통을 위한 연찬회	
2018. 9. 18	안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평생교육대학 현장방문	
2018. 10. 4 ~ 6	제주도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2018. 10. 16	수원	새로운 경기 보육정책 대토론회	
2018. 10. 17	양평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현장방문	
2018. 11. 2	파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파주교하도서관 현장방문	
2018. 11. 6	수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2018. 11. 9	용인, 수원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경기도기숙사(수원) 현장방문	
2018. 11. 19	의정부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2018. 12. 12	성남	201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2018. 12. 27	화성	청년·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2018. 12. 27	수원	행복한 가족과 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 1. 31	수원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일빛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2019. 2. 15	수원	경기도콜센터 직접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2019. 3. 11 ~ 13	경남 통영, 전남 순천, 광주	2019년 여가교위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연찬회	
2019. 3. 15	수원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 4. 2	용인, 수원, 의정부	경기여성의 전당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여성능력개발본부 현장방문	
2019. 4 .9	수원	경기도 이주아동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9. 4. 10	수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의 현안논의(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등)를 위한 간담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6. 12	파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현장방문	
2019. 6. 27	수원	2019 경기 가족정책포럼	
2019. 7. 11 ~ 12	광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2019. 8. 6	수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왜곡 및 확대해석 자제 촉구 성명서 발표	
2019. 8. 13	수원	2019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토크&토크 토론회 개최	
2019. 8. 30	수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방문	
2019. 9. 23 ~ 10. 2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2019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외연수	
2019. 10. 16	시흥	시흥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현장방문	
2019. 10. 28 ~ 30	제주도	여성가족·평생교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2019. 11. 12	수원	2019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2019. 11. 20	수원	찾아가는 평생교육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19. 12. 6 ~ 7	광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연찬회	
2019. 12. 30	수원	평생교육진흥원 미래교육캠퍼스 현안논의(고용종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복귀 논의등) 간담회	
2020. 3 .18	수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	
2020. 3. 25	수원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처벌촉구 성명서 발표	

□ 제1교육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7. 25	의정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 공보육관련 간담회	
2018. 7. 31	김포	무상교복 추진 간담회	
2018. 8. 1	의정부	발달장애인 정책제안 간담회	
2018. 8. 3	용인	용인 생활체육 간담회	
2018. 8. 8	의정부	어머니폴리스단 사업추진 간담회	
2018. 8. 23	김포	사립유치원 실무자 간담회	
2018. 8. 27	의정부	유아교육현안 간담회	
2018. 8. 28	의왕	사립유치원 실무자 간담회	
2018. 8. 31	의정부	지체장애인 작업장환경개선 간담회	
2018. 8. 31	부천	학교 시설 환경개선 간담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0. 10 ~ 12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분석 기법 습득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	
2018. 10. 18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및 몽실학교 현장방문	
2018. 10. 18	시흥	시흥시 엘림요양원 현장방문	
2018. 10. 22	성남	G-스포츠 활성화 간담회	
2018. 11. 6 ~ 7	화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요구자료 분석 및 토의 연수	
2018. 11. 9	의왕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 실현간담회	
2018. 11. 27	수원	영덕초등학교 현장방문	
2018. 12. 18	평택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방문	
2018. 12. 18	평택	애향아동복지센터 현장방문	
2018. 12. 21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 현장방문	
2018. 12. 30	의왕	고촌고 확장 관련 간담회	
2019. 1. 4	부천	중원고 탁구부학부 간담회	
2019. 2. 7	부천	경기도영양교사회 간담회	
2019. 2. 18	의왕	명륜보육원 위문	
2019. 3. 18	용인	혁신교육지구 간담회	
2019. 4. 8	거제, 여수	제1교육위원회 상반기 연찬회	
2019. 4. 15	시흥	유아교육 발전 방안 간담회	
2019. 4. 23	수원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연계 등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2019. 4. 24	시흥	시흥교육발전방안 토론회(고교평준화)	
2019. 4. 30	성남	도민과 함께 그리는 학교폭력 대책모색 토론회	
2019. 5. 7	의왕	노인복지 간담회	
2019. 5. 7	부천	혁신학교 활성화 간담회	
2019. 5. 9	수원	물품 공동구매시 품질 보증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2019. 5. 21	수원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2019. 6. 19	수원	과학실험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9. 6. 27	의정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급식지원 간담회	
2019. 7. 10	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안 및 대안 마련 토론회	
2019. 7. 26	고양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추진 간담회	
2019. 7. 29	부천	부천지역 초등학교 중학교배정 관련 간담회	
2019. 8. 14	안산	경기도 학교 현장의 생생한목소리 청취 간담회	
2019. 8. 21	남양주	찾아가는 상담으로 성평등조례개정취지 간담회	
2019. 8. 23	안산	안산 지역학교 현장 순회중 간담회	
2019. 9. 3	수원	융합과학교육원 현장방문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9. 3	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현장방문	
2019. 9. 6	수원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인프라 확충 방안 토론회	
2019. 9. 16	안산	공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관련 간담회	
2019. 9. 17	수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2019. 9. 23 ~ 24	곤지암	하반기 연찬회	
2019. 9. 25	수원	교권 확립 방안 마련 토론회	
2019. 9. 27	수원	미래 평택 교육 방향과 고교평준화 토론회	
2019. 10. 2	의정부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간담회	
2019. 10. 17	안양	혁신교육연수원 현장방문	
2019. 10. 21	안산	대남초 풍도분교 현장방문	
2019. 10. 21	부천	부천 학교 교육환경조성 대안모색 간담회	
2019. 12. 4	부천	부천 지역 공원 관리방안 간담회	
2019. 12. 4	수원	예술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	
2020. 4. 6	부천	코로나19 교습소 정책지원방안 간담회	
2020. 4. 8	의왕	경기도 사립유치원과 유치원 운영난 간담회	
2020. 4. 10	부천	경기도사립유치원 운영애로사항 수렴 및 현장소통 간담회	

□ 교육행정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8. 20 ~ 22	제주도	경기도교육청 2018 주요 정책방향 토론	
2018. 8. 24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8. 10. 12	미사중앙초등학교	하남시 과밀학급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토론회	
2018. 10. 18	용인학생야영장, 동탄중앙초, 동탄중앙이음터	시설 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점검	
2018. 10. 24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8. 10. 29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아동 청소년 난독증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2018. 11. 5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 조례 개정 공청회	
2018. 12. 10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체육공동체 토론회	
2018. 12. 12	권선구청 대회의실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공청회	
2018. 12. 27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의회와 경기사학 소통을 위한 토론회	
2019. 1. 9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1. 31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초등보육 전담사 정책 토론회	
2019. 2. 7 ~ 8	영종도	경기도학생교육 연수 운영현황 점검	
2019. 2. 21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혁신을 위한 토론회	
2019. 2. 28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혁신교육지구사업 정책 토론회	
2019. 3. 14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9. 3. 25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토론회	
2019. 4. 1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노인 건강지킴이 바우처 지원 조례를 위한 공청회	
2019. 4. 23 ~ 25	통영, 거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토론	
2019. 5. 30	일산동구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9. 6. 22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2019. 7. 4	경기과학고등학교	모두 상생하는 경기학교체육정책을 위한 대토론회	
2019. 8. 14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학교 공기정화장치 합리적인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9. 9. 19	신안산대학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9. 9. 26 ~ 27	양평	2019년 하반기 상임위 운영방안 및 의정활동 토론	
2019. 10. 18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찬 토론회	
2019. 10. 23	권선구청 대회의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9. 10. 23	하남 남한고등학교	경기 꿈의학교 문제점과 방향 토론회	
2019. 10. 25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2019. 10. 29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학생 심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19. 10. 29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2019. 10. 31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학교 우유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2019. 12. 5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토론회	
2019. 12. 25 ~ 31	베트남, 태국	2019년 교육행정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2020. 1. 1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역할 정립에 관한 토론회	
2020. 6. 29	효순이·미선이 추모공원,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 제6절 특별위원회 활동 ■

(2018. 7. 1 ~ 2020. 6. 3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7. 23.	경기도의회	제10대 제1기 예결위원장 선출	
2018. 8. 16.~17.	양평	예결위 2018년 추경예산 심사대비 연찬회	
2018. 9. 6.~11.	경기도의회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및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2018. 10. 25.~27.	제주	예결위 2019년 본예산 심사대비 연찬회	
2018. 10. 28.~11.2.	경기도	예결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주요사업 현장방문	
2018. 12. 3.~14.	경기도의회	2019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2019. 4. 29.~30.	화성	예결위 2019년 추경예산 심사대비 연찬회	
2019. 5. 22.~27.	경기도의회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2019. 6. 17.~20.	경기도의회	2018회계연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의	
2019. 7. 9.~16.	경기도의회	제10대 제2기 예결위원장 선출 및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 심의	
2019. 8. 19.~20.	속초	예결위 2019년 추경예산 심사대비 연찬회	
2019. 9. 4.~5.	경기도의회	경기도 제3회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	
2019. 10. 24.~29.	경기도	예결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주요사업 현장방문	
2019. 10. 30.~11.1.	제주	예결위 2020년 본예산 심사대비 연찬회	
2019. 12. 2.~16.	경기도의회	2020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2020. 3. 23.~25.	경기도의회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2020. 6. 16.~19.	경기도의회	2019회계연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결산심의 2020년도 제2회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2. 윤리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7. 23.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제1차 회의 개최(위원장 선출)	
2018. 8. 30.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제2차 회의 개최(부위원장 선출)	

3.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0. 16.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의석 배정)	
2018. 11. 2.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테크노밸리 현황 업무보고, 목감천 치수대책)	
2018. 11. 30.	광명	현장방문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목감천 치수대책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2019. 3. 27.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추진상황 점검, 법규점검, 워크숍 일정토의)	
2019. 4. 23.	양주, 구리, 남양주	양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테크노밸리 조성 대상 현장 확인	
2019. 6. 3.	광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관계 기관간 협력 및 지원 사항 도출	
2019. 7. 9.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석배정, 건의안 안건, 연구용역 추진 논의)	
2019. 9. 10.	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향후 연구방향 및 진행과정 등 논의	
2019. 11. 29.	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사업체 및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 및 입주수요 조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급방향	
2019. 12. 18.	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중간 보고시 요구사항 보완내용 등	
2020. 2. 26	경기도의회	테크노밸리 조성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4.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0. 16.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8. 11. 26.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2차 회의(업무보고)	
2018. 12. 26.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 (지방분권위원회 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역할, 서울시 지방분권TF활동과 향후계획)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4. 15.~16.	대전, 세종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 (지방분권위원회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자치경찰 간담회)	
2019. 8. 28.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 (자치분권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2019. 10. 8.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2020. 2. 26.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3차 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5.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1. 8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8. 11. 27.	국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론회 참석	
2019. 2. 11.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9 상반기 업무보고)	
2019. 4. 11.~12.	연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현장방문(경기도 연천)	
2019. 8. 26.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9 하반기 업무보고)	
2019. 12. 16.~18.	경기도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전시 및 사진전 주최	
2020. 2. 25.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0 상반기 업무보고)	
2020. 4. 29.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6.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2. 12.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9. 3. 14.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업무보고 등)	
2019. 3. 21.	포천시청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4. 26.	포천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2019. 7. 29.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관계자 진술 청취)	
2019. 2. 11.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활동결과보고서 채택)	

7.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2. 12.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등)	
2019. 3. 5.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업무보고 등)	
2019. 5. 27.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업무보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2019. 9. 9.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4차 회의(현안보고,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2019. 11. 5.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연찬회(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	
2020. 2. 25.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업무보고 등)	
2020. 6. 18.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6차 회의(활동결과보고서 채택)	

8.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2. 19.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장선출, 부위원장 선출, 의석배정)	
2019. 4. 22.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 업무보고)	
2019. 6. 28.	포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2019. 9. 17.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정책제안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축)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20. 2. 11.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위원장선출, 부위원장 선출, 의석배정)	
2020. 2. 18.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제안사항 추진경과 약식 보고(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협의기구 구성)	
2020. 2. 25.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청년정책 플랫폼 시연회	
2020. 3. 16.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20년 경기도 청년정책 업무보고)	
2020. 6. 25.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정담회 개최	

9.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7. 9.	경기도의회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	
2019. 10. 14.	부천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	
2019. 10. 14.	부천	경기도일자리재단 현장방문	
2020. 2. 26.	경기도의회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 2019년 성과보고 및 2020년 업무보고	
2020. 5. 28.	경기도기술학교	일자리특위 현장방문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10.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20. 2. 11.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관련부서 업무보고	
2020. 2. 26.	경기도의회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성명서 발표	
2020. 4. 10.	경기도의회	'일본어 투 용어' 바로쓰기 추진	
2020. 5. 26.	경기도의회	일제잔재 청산 추진을 위한 정담회	
2020. 6. 9.	경기도의회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1.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2. 17.	경기도의회	제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9. 1. 15.	경기도의회	제2차 회의(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9. 1. 15.	경기도의회	제1차 조사(참고인1명 의견청취)	
2019. 2. 18.	경기도의회	제2차 조사(증인6명 신문, 참고인1명 의견청취)	
2019. 2. 18.	경기도의회	제3차 회의(증인 채택)	
2019. 3. 5.	경기도의회	제3차 조사(증인2명 신문)	
2019. 3. 6.	경기도의회	前경기도지사 출석 촉구 기자회견	
2019. 3. 6.	경기도의회	제4차 조사(증인6명 신문)	
2019. 3. 25.	경기도의회	제4차 회의(업무보고, 증인 채택)	
2019. 4. 15.	경기도의회	제5차 조사(증인4명 신문)	
2019. 5. 13.	경기도의회	제6차 조사(증인7명 신문)	
2019. 6. 11.	경기도의회	제5차 회의(결과보고서 채택)	

12. 경기도친환경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2. 20.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9. 1. 11.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회의 (업무보고 등)	
2019. 2. 12.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차회의 (활동기간 연장)	
2019. 2. 27.	양평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2019. 3. 7.	이천·광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2019. 4. 9.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 (농식품유통진흥원)	
2019. 4. 30.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4차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수정)	

13. 경기도도유재산매각임대등과정에서특혜불법의혹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고
2018. 12. 21.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19. 1. 28.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관련기관 업무보고 및 증인 채택)	
2019. 2. 27.	수원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경기도 종자관리소 및 삼성전자)	
2019. 3. 5.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증인 신문)	
2019. 4. 4.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증인 추가 채택)	
2019. 4. 18.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2019. 6. 11.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제7절 특별대책위원회 활동 ■

1 일본정부 경제침략 철회촉구 대응 활동

1.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T/F)

가. 추진목적

경기도의회 차원의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하여 도내 기업지원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추진개요

□ 기　　간 : 2019.8.13.(화). ~ 상황종료 시기까지
□ 구　　성 : 상임위원회 위원, 전문가, 집행부 등 22명
□ 역　　할 : 일본경제침략에 따른 도내 기업 및 경제 피해 지원방안 모색
□ 활　　동 : 상황실 운영, 정례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
□ 행정지원 : 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상황실 운영)

다. 추진계획

□ 상임위 위원 추천 : 상임위원회별 1명(경제노동 3명) 추천 → 8.9(금) 완료
□ 집행부 위원 협조 요청 및 전문가 추천 → 8.12(월) 완료
□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실무지원단 구성 → 협치지원담당관 6명
□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출범 및 현판식 : 8.13(화) → 언론 브리핑

마. 현판식 및 언론브리핑 추진

□ 일　　시 : 2019. 8.13.(화) 11:00 ~ 11:40
□ 장　　소 :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 앞
□ 참 석 자 : 의장, 대표의원, 부의장, 조광주 비상대책단장 등 T/F 의원

바.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1차 회의 추진개요

□ 일　　시 : 2019. 8.13.(화) 14:00~16:00 (예정)
□ 장　　소 : 경기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단장, 부단장, 상임위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로드맵) 준비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위원 명단

순번	직위	성 명	소속	직위
1	단장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2	부단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3	상임위원	김강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4	상임위원	원미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5	상임위원	오지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6	상임위원	김종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7	상임위원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8	상임위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9	상임위원	김철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10	상임위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1	상임위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2	상임위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13	상임위원	양철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	상임위원	김종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5	상임위원	이나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6	상임위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위원
17	전문가위원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18	전문가위원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19	전문가위원	한정숙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장
20	집행부위원	안동광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1	집행부위원	최계동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22	집행부위원	이소춘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장

사.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현장방문

□ 추진개요

○ 일　시 : 2019.10.18.(금) 15:00~16:30

○ 장　소 : (주)동진쎄미캠 3층 대회의실(화성시 소재)

○ 참 석 자 : 총 28명
- 도의회 :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위원 16명
- 전문가 : 한국무역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경과원 정책연구실장
- 기업체 : (주)동진쎄미캠, AP시스템(주), 삼흥기계(주) 등 5개사
- 화성시 : 일자리경제국장
- 경기도 : 집행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특화기업지원과장)

○ 주요내용
- 일본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 기업 대응 및 피해실태를 파악
-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정부 경제침략 릴레이 1인 시위

가. 추진목적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2018.10.30.)에 따른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한반도 강제병합과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철회시키기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추진하고자 함

나. 추진개요

□ 기　　간 : 2019.7.26.(금) ~ 8.23.(금) 주말 제외 21일간
□ 장　　소 : 주한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서울시 종로구)
□ 시위방식 : 1인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아님)
○ 1일 1인당 30분간 시위 : 오전 10시~12시 / 오후 4시~6시 4명(8명)
○ 21일간 참여시 총 168명 실시 → 의원 1명당 1~2회 자율 선택

차수	기간	일수	실시횟수	대상	비고
	계	21일	168회		
1차	7.26	1일간	8회	대표단	대표의원 등
2차	7.29~8.2	5일간	40회	희망의원	
3차	8.5~8.9	5일간	40회	희망의원	
4차	8.12~8.16	5일간	40회	희망의원	광복절 포함
5차	8.19~8.23	5일간	40회	희망의원	

○ 세부사항

연번	오전	소요시간
	계	2시간
1회	10:00~10:30	30분
2회	10:30~11:00	30분
3회	11:00~11:30	30분
4회	11:30~12:00	30분

연번	오후	소요시간
	계	2시간
5회	16:00~16:30	30분
6회	16:30~17:00	30분
7회	17:00~17:30	30분
8회	17:30~18:00	30분

□ 행정사항

○ 참여 의원님은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하여 협치지원담당관실 신청

○ 형식적 추진지양, 엄숙하고 결연한 자세 및 복장으로 참여

○ 시위용 피켓, 무더위쉼터 커피숍 섭외 등 협치지원담당관실 지원

다. 제1차 릴레이1인 시위 현황

구분		일일실시계획							
		오 전				오 후			
		1회 (10:00 ~10:30)	2회 (10:30 ~11:00)	3회 (11:00 ~11:30)	4회 (11:30 ~12:00)	5회 (16:00 ~16:30)	6회 (16:30 ~17:00)	7회 (17:00 ~17:30)	8회 (17:30 ~18:00)
1	7.26(금)	염종현 대표의원	남종섭 총괄수석	진용복 위원장	임채철 성남5	심규순 기획수석	민경선 위원장	전승희 비례	김미숙 군포3
2	7.29(월)	김성수 안양1	김미숙 군포3	서현옥 평택5	조광희 위원장	유영호 용인6	김경호 가평	신정현 고양3	정윤경 대변인
3	7.30(화)	권정선 부천5	김경희 고양6	채신덕 김포2	이영주(경) 양평1	김진일 하남1	김원기 부의장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4	7.31(수)	장태환 의왕2	이영봉 의정2	심민자 부위원장	고은정 고양9	박관열 부위원장	김은주 비례	장대석 시흥2	김장일 비례
5	8.1(목)	박덕동 광주4	권재형 의정3	최만식 성남1	원미정 안산8	양경석 부위원장	안기권 광주1	오진택 화성2	오진택 화성2
6	8.2(금)	유근식 광명4	엄교섭 용인2	송영만 오산1	남운선 고양1	추민규 하남2	추민규 하남2	김미리 부위원장	윤용수 남양주3
7	8.5(월)	김경일 파주3	조성환 파주1	손희정 파주2	오지혜 비례	김중식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	김중식 고찬석	지석환 용인1
8	8.6(화)	김동철 동두천2	유상호 연천	백승기 부위원장	문경희 남양주2	오진택 화성2	오진택 화성2	김명원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구분		일일실시계획							
		오 전				오 후			
		1회 (10:00 ~10:30)	2회 (10:30 ~11:00)	3회 (11:00 ~11:30)	4회 (11:30 ~12:00)	5회 (16:00 ~16:30)	6회 (16:30 ~17:00)	7회 (17:00 ~17:30)	8회 (17:30 ~18:00)
9	8.7(수)	성수석 부위원장	김인영 이천2	유광국 여주1	안광률 시흥1	김용성 정무수석	안혜영 부의장	이원웅 포천2	신정현 고양3
10	8.8(목)	김봉균 수원5	황수영 수원6	이필근 수원	김강식 수원10	김경희 고양6	임창열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	유광혁 동두천1
11	8.9(금)	성준모 안산5	이종인 양평2	정승현 부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	추민규 하남2	추민규 하남2	김종배 시흥3	강태형 안산6
12	8.12(월)	권정선 부천5	소영환 고양7	최승원 고양8	김영해 평택3	이필근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	김우석 포천1	양철민 수원8
13	8.13(화)	이진연 부천7	이창균 남양주5	김경근 남양주6	최경자 의정부1	이나영 부위원장	김재균 평택2	김재균 평택2	김재균 평택2
14	8.14(수)	황대호 수원4	황대호 수원4	김직란 수원9	배수문 과천	이기형 김포4	김철환 김포3	박옥분 위원장	고은정 고양9
15	8.15(목)	이선구 부천2	이선구 부천2	오광덕 광명3	김영준 부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	고은정 고양9	신정현 고양3
16	8.16(금)	이진 파주4	민경선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	박태희 양주1	유근식 광명4	유근식 광명4
17	8.19(월)	박창순 성남2	황진희 부천3	최갑철 부천8	임성환 부천4	문형근 안양3	김명원 부위원장	방재율 고양2	방재율 고양2
18	8.20(화)	이영주 양평1	이영주 양평1	백승기 부위원장	양운석 안성1	조광주 위원장	조광주 위원장	박옥분 위원장	임성환 부천4
19	8.21(수)	신정현 고양3	이명동 광주3	김달수 위원장	채신덕 김포2	김태형 화성3	박세원 화성4	김용찬 용인5	김용찬 용인5
20	8.22(목)	김성수 안양1	김성수 안양1	김영해 평택3	김영해 평택3	남운선 고양1	원용희 고양5	권정선 부천5	권정선 부천5
21	8.23(금)	박관열 부위원장	유영호 용인6	왕성옥 부의원장	김현삼 안산7	이동현 정책수석	국중현 안양6	장현국 수원7	염종현 대표의원

3. 제2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정부 경제침략 릴레이 1인 시위

가. 추진개요

□ 기　간 : 2019.8.27.(화)~12.20.(금) 주말 제외 51일간 회기중 실시

□ 장　소 : 경기도청 정문 등

□ 시위방식 : 1인 시위(일별 1인)

나. 제1차 릴레이1인 시위 현황

연번	일자	의원명	연번	일자	의원명
제338회 임시회			25	11.14(목)	박관열 의원
1	8.27(화)	염종현 대표의원	26	11.15(금)	최만식 의원
2	8.28(수)	원미정 의원	27	11.18(월)	지석환 의원
3	8.29(목)	진용복 의원	28	11.19(화)	김재균 의원
4	8.30(금)	정윤경 의원	29	11.20(수)	천영미 의원
5	9.2(월)	민경선 의원	30	11.21(목)	왕성옥 의원
6	9.3(화)	심규순 의원	31	11.22(금)	안광률 의원
7	9.4(수)	김진일 의원	32	11.25(월)	신정현 의원
8	9.5(목)	배수문 의원	33	11.26(화)	방재율 의원
9	9.6(금)	이동현 의원	34	11.27(수)	김장일 의원
10	9.9(월)	김용성 의원	35	11.28(목)	김명원 의원
11	9.10(화)	권정선 의원	36	11.29(금)	송영만 의원
제339회 임시회			37	12.2(월)	전승희 의원
12	10.15(화)	남운선 의원	38	12.3(화)	조광희/오진택의원
13	10.16(수)	이 진 의원	39	12.4(수)	양철민 의원
14	10.17(목)	장대석 의원	40	12.5(목)	박근철 의원
15	10.18(금)	김은주 의원	41	12.6(금)	고은정 의원
16	10.21(월)	김현삼 의원	42	12.9(월)	김직란 의원
17	10.22(화)	백승기 의원	43	12.10(화)	장태환 의원
제340회 정례회			44	12.11(수)	박재만 의원
18	11.5(화)	고찬석 의원	45	12.12(목)	이종인 의원
19	11.6(수)	엄교섭 의원	46	12.13(금)	김미숙 의원
20	11.7(목)	장현국 의원	47	12.16(월)	김영해 의원
21	11.8(금)	서현옥 의원	48	12.17(화)	암창열 의원
22	11.11(월)	김인순 의원	49	12.18(수)	이영주 의원
23	11.12(화)		50	12.19(목)	최종현 의원
24	11.13(수)	이진연 의원	51	12.20(금)	김경희 의원

4. 제3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정부 경제침략 릴레이 1인 시위

가. 추진개요

□ 기　간 : 2020.2.11.(화)~4.29.(수) 주말 제외 22일간 회기중 실시

□ 장　소 : 경기도청 정문 등

□ 시위방식 : 1인 시위(일별 1인)

연번	일자	의원명	연번	일자	의원명
제341회 임시회			9	2.21(금)	김성수 의원
1	2.11(화)	진용복 의원	10	2.24(월)	박근철 의원
2	2.13(수)	김현삼 의원	11	2.25(화)	민경선 의원
3	2.14(목)	조광희 의원	12	2.26(수)	국중현 의원
4	2.15(금)	김명원 의원	제342회 임시회		
5	2.17(월)	심규순 의원	13	3.23(월)	신정현 의원
6	2.18(화)	신정현 의원	14	3.24(화)	유광혁 의원
7	2.19(수)	정윤경 의원	15	3.25(수)	남종섭 의원
8	2.20(목)	김강식 의원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활동

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 추진 구성

가. 추진목적

도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가 9.27 현재 '심각' 단계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돼지열병 극복 T/F 추진단'을 구성하여 돼지농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나. T/F 구성 추진개요

□ 일　시 : 2019.11.7.(목) 오전 9시~10시(본회의 시작 전)

□ 장　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실

□ 참 석 자 : 도의원 10명, 축산산림국장, 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위생과장

□ 주요내용 : 피해농가 지원방안 및 도의회 협력 방안 논의

다. T/F 구성

연번	지역	의원명	상임위	비고
1	안성시2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단장
2	김포시2	채신덕	문화체육위원회	부단장
3	포천시1	김우석	기획재정위원회	
4	양평군2	이종인	기획재정위원회	
5	김포시3	김철환	농정해양위원회	
6	여주시1	유광국	농정해양위원회	
7	이천시1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8	파주시1	조성환	보건복지위원회	
9	파주시3	김경일	건설교통위원회	
10	연천군	유상호	건설교통위원회	

라. 주요활동방향

□ 파주·연천·김포 지역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지원방안 논의 및 모색

○ 집행부 보고 및 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피해지역 현장방문 자제

□ 돼지열병으로 인한 농축산 유통 및 축산 관련 기업 피해 논의

○ 돈육 중심 농축산업 피해 및 지원방안 모색

□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시 정육점 및 재래시장 손실 대책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25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2,716원으로 24일보다 116원 하락(연합뉴스, 9.26)

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 회의결과

일 자	장 소	활 동 내 용	비고
2019. 11. 7.	경기도의회	제1차 회의 업무보고 및 살처분 피해 농가 지원대책 논의	
2020. 1. 22.	경기도의회	제2차 회의 업무보고 및 살처분 피해 농가 지원대책 논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최소화 대책	

3 코로나19 대응 활동

1.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단 구성 및 주요성과

가.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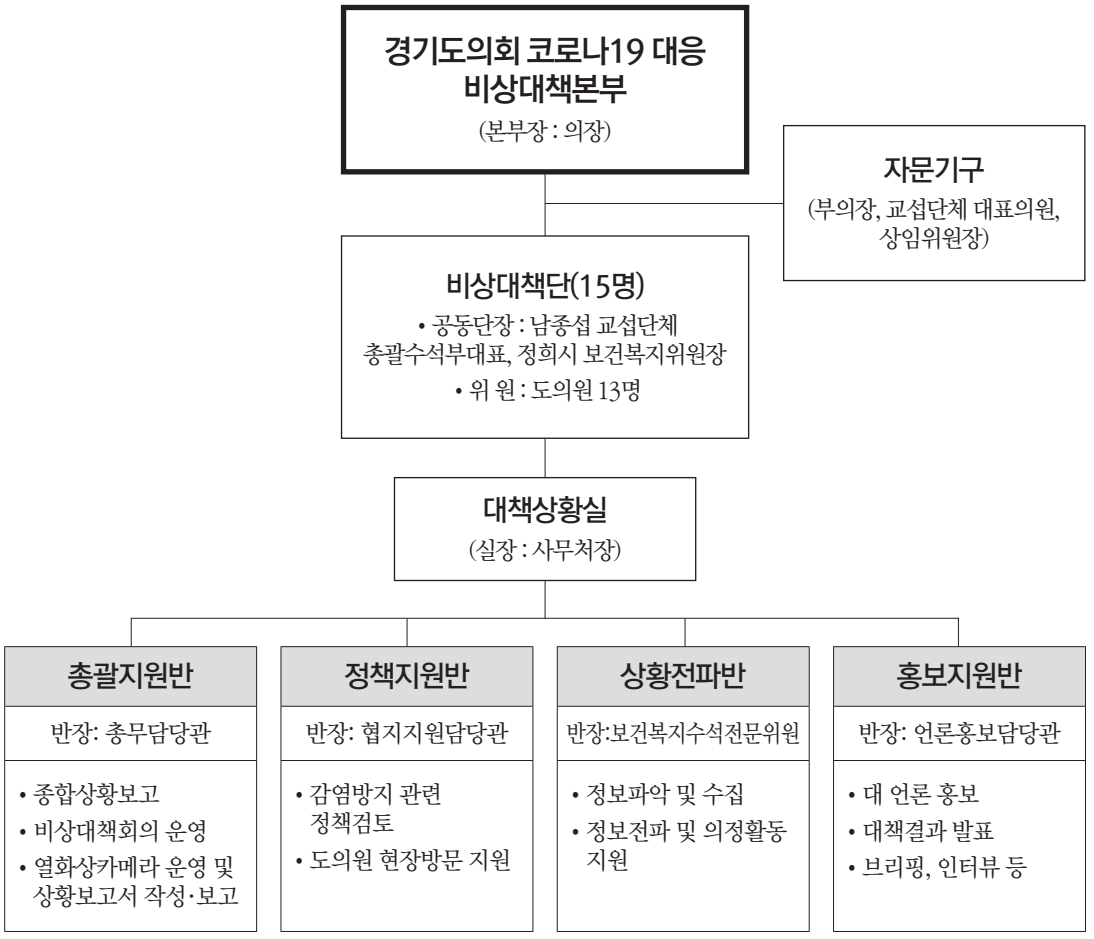

나. 전반기 비상대책단 위원(15명)

- 공동단장(2) : 남종섭 총괄수석,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위　　원(13) : 정승현의원, 황수영의원, 국중현의원, 안광률의원, 김철환의원, 최종현의원, 김직란의원, 심규순의원, 김인순의원, 김재균의원, 김미숙의원, 이애형의원, 이혜원의원

다. 추진활동

○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 전체회의 개최(총 6회)

- 1차(1.31), 2차(2.7), 3차(2.25), 4차(3.25), 5차(4.21), 6차(5.12)

○ 비상대책단 일일상황 회의 개최(총 93차, 422건 건의)

- 비상대책단 위원들이 순번제로 비상대책단 일일상황회의 주재
-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 및 집행부 협조사항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 요청

라. 주요성과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
1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사등 유사시 절대부족 개선 방안 검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 민간 역학조사관을 확충하여 대응 강화(역학조사관 71명 충원)
2	공적 마스크 지자체별 배분 및 주민전달 방안 정부 지속 건의	-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 참석하여 중앙에 건의(3.3)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조속완료	- 1회 추경 예산편성 반영 추진(`20.3~12/729백만원) -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운영
4	체납자 최저생계비 상태일 경우 체납 처분등을 자제 또는 완화 방안 검토	-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5	노숙인 등 신용불량자 등이 재난기본 소득을 수령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용불량자 관계없이 선불카드 지급 가능
6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	-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7	코로나19 학교급식업체 및 농가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자 판매, SNS와 전화접수를 통한 농산물 판매, 인터넷쇼핑몰 마켓경기 통한 꾸러미 판매 등 추진
8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상시 모니터링 및 불법거래 발견시 특사경 통보하여 특사경에서 불법매매 거래 적발
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응 융자지원 신속 처리 건의	- 시중 협약은행에서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10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에 지도·단속 강화 건의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조치(6.21~7.5/2주간)

2.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단 주요 제안사항 (2020.6.22 기준)

회차	일자	주재자	제안	주요 제안사항
계			421	
1	2.03(월)	최종현	6	전통시장 마스크 지원, 대중교통 위생안전 대책 및 승객 마스크 착용 실행요구
2	2.04(화)	안광률	5	역학조사관 시군별 배치방안
3	2.05(수)	김직란	5	시군 검역관 및 감염병 대응 인력증원 문제 - 유사시 반복대두 道 조직개편반영과제
4	2.06(목)	남종섭	3	마스크를 국가위기 전략 공공소비재로 지정 지자체 중심 한시적 시장공급 정부건의
5	2.10(월)	정승현	5	자가 격리 중 가족 간 감염 방지대책 마련 검토
6	2.11(화)	황수영	3	유통업자 등 개인이 마스크 제조업체 직접 방문하여 사재기 현상 차단방안 마련
7	2.12(수)	국중현	3	도교육청, 신종CV 여파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으로 방과 후 학교 교사 처우 배려 검토
8	2.13(목)	김철환	5	위기 시 다양한 목적 지원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탄력적 운용방안 검토
9	2.14(금)	심규순	5	중국관광객 감소 및 방역관계로 관광농업 및 체험농업 침체,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10	2.17(월)	최종현	5	도의회 차원, 이천 쌀 및 특산품 구매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농정국 협조지원
11	2.18(화)	김재균	5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영향 한시적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정부건의
12	2.19(수)	김미숙	6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강화 당부 및 지원검토
13	2.20(목)	김인순	4	도내 대학교 중국 유학생 관리방안 적극 검토 - 대안준비 당부
14	2.21(금)	이혜원	3	道 및 도교육청, 지역사회 감염 장기화 대비 유치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장기휴업 대비 육아 지원 및 돌봄방안 마련
15	2.24(월)	이애형	6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위한 지하철역 및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지속적 방역강화
16	2.26(수)	김직란	6	추가확진시군에 대한 재난안전기금 추가교부 및 공공 차량2부제 해제 정부 건의
17	2.27(목)	남종섭	5	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학교 실내 마스크 쓰기 지도필요 →대안, 현장학습 강화검토
18	2.28(금)	정희시	5	종교 집회 및 예배 등 종교행사 최소 2주간 중지 중앙정부 건의
19	3.02(월)	정승현	6	道, 신천지 교인 중 청년 비중이 높은 원인 파악 및 대책 검토 필요
20	3.03(화)	황수영	8	시군 시달, 농협마트 등 판매 중인 마스크 동별 주민센터 활용 접수 후, 민방위 재난 구호차원 통반장 전달체계로 이행당부
21	3.04(수)	국중현	7	경제실, 시군과 협력하여 신용보증 소요기간 2개월 단축방안 검토 건의

회차	일자	주재자	제안	주요 제안사항
22	3.05(목)	김철환	7	도의회 비상대책단 20회차 논의내용 중심 추경예산사업 반영 적극 검토 당부
23	3.06(금)	심규순	8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사 및 간호사 등 유사시 절대부족 개선방안 검토
24	3.09(월)	김인순	8	教 및 道,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연기로 가계비용 이중 지출 문제 있음. 개선방안 강구 필요
25	3.10(화)	김미숙	7	道, 시군별 소상공인 종합지원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금융·세제 지원 등을 상담하고 조사할 창구마련
26	3.11(수)	김재균	8	道, 구로 콜센터 감염사례를 감안, 시군과 협력하여 각종 공공 콜센터 방역 강화 및 직원 감염유무 체크
27	3.12(목)	이애형	5	도의회사무처, 도의원 및 공무원 개인 위생관리 철저 당부 안내 문자 발송 당부
28	3.13(금)	이혜원	7	道, 코로나19 여파 어린이집 등 휴원 중 어린이집 종사자 급여 선지급 후 비공식 반납 등 법령위반 행위가 음성적 발생 동향 있음. 노동관계법령 불법행위 여부 조사 검토 당부
29	3.16(월)	안광률	5	道, 아동 그룹홈 아동용 마스크 공급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검토 당부
30	3.17(화)	최종현	7	道, 유럽 감염병 전파 지속되고 있으니, 공무원 업무상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반 도민들도 가급적 유럽여행이나 방문을 당분간 자제하도록 계도 당부
31	3.18(수)	정희시	7	道, 학교개학 연기로 급식납품 농수산물 적극구매로 도내 농민 돕기 방안 지속마련 필요
32	3.19(목)	남종섭	8	道 및 教,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여 도민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일상' 전환 방안 실국별 검토 당부
33	3.20(금)	김직란	7	道,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자체 검토 및 조속한 시행 정부건의 필요
34	3.23(월)	정승현	5	道, 버스업체 임의적 감차 운행 여론 있으며, 버스업체 종사자 임금체불 및 분할지급 등 불법 노동행위 버스업체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 있어 행정조사 및 지도감독 필요할 것임
35	3.24(화)	김미숙	5	教, 4.6 개학 후, 학교별 소집단적 감염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보완방안 필요
36	3.26(목)	최문환	2	(공통)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생활화 동참하도록 독려
37	3.27(금)	전진석	3	道,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조속마련 당부
38	3.30(월)	전진석	2	道, 재난기본소득 신속 집행 및 70세 이상 고령자 지역화폐 전달방안 강구
39	3.31(화)	정희시	4	道,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5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정부 및 지자체 발표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임 → 종합가이드북 제작 필요

회차	일자	주재자	제안	주요 제안사항
40	4.01(수)	전진석	2	道, 제1회 추경 예산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예산 적극적인 도민 홍보 및 안내 필요
41	4.02(목)	남종섭	4	道,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주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 금융지원 안내 가이드 신속 제작 당부
42	4.03(금)	전진석	2	道, 어린이집 및 유치원 돌봄 취소 후, 가구별 자가 돌봄 추진 경향 높아져서 어린이집 등 종사자 실업발생 대두됨. 재고용 또는 고용유지 방안 강구 당부
43	4.06(월)	전진석	2	道, 도내 노점상 등 제도권 밖 생계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당부
44	4.07(화)	전진석	2	道, 노숙인 등 신용불량자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당부
45	4.08(수)	전진석	4	道, '배달의 민족' 지방세조사 시 해당기업 본사가 서울 소재임을 감안하여 도내 영세한 '배달의 민족'관련 업체가 피해 또는 손실이 없도록 노력 당부
46	4.09(목)	전진석	1	敎, 신학기 교과서 배부 담임교사 확진 여파에 따른 조치 현황 파악 및 사후 대책 마련 필요
47	4.10(금)	전진석	4	道,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관리 철저
48	4.13(월)	전진석	4	道, 외국인 및 주민등록 미등록자인 노숙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검토 필요
49	4.14(화)	전진석	3	道, 개학연기에 따른 낙농업계 미납품 우유 처리에 대한 대책 필요
50	4.16(목)	최문환	2	道,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내를 위한 31개 시·군 콜센터 운영 방안 검토 필요
51	4.17(금)	전진석	3	敎, 온라인개학에 따른 미비점 등 실태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대책으로 추진 필요
52	4.20(월)	전진석	2	道, 재난기본소득 추진으로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사용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홍보 및 사용처 스티커 부착 독려 필요
53	4.22(수)	김철환	5	道,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기숙사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추진 필요
54	4.23(목)	국중현	5	道, 재난기본소득을 로컬푸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및 조속한 검토결과 회신 요청
55	4.24(금)	이혜원	2	道,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 거래(금융깡)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필요
56	4.27(월)	심규순	9	道,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사가 폐점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행업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필요
57	4.28(화)	김인순	3	道, KF94 등 공적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을 코로나 사태 이전 가격으로 낮춰 공급하는 방안 필요(정부건의 등)

회차	일자	주재자	제안	주요 제안사항
58	4.29(수)	김재균	2	道, 4.20 건의한 사항으로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기숙사 등에 방역조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조치 필요
59	5.01(금)	이애형	2	敎, 5.11 이후 초·중·고 등교에 대한 여론이 있는데, 싱가포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및 대책 마련 등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
60	5.04(월)	황수영	0	道,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시·군 현장의 목소리가 지역화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61	5.06(수)	최종현	4	(공통) 5.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생활속 거리두기)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부지침 준수 및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단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62	5.07(목)	안광률	7	道, 경기도청 직원 대상 생활속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대응방법 포럼 개최 관련하여 도민들도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필요
63	5.08(금)	김직란	5	道, 경기도 차원의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 적극 홍보 강화
64	5.11(월)	남종섭 정희시	6	道,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관련 공유재산 입주 실태조사 필요
65	5.13(수)	김철환	2	道, 생활방역 체제속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사회적거리두기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체계 추진 필요
66	5.14(목)	황수영	5	敎, 교육청 비정규직 인건비에 기숙사 직원 인건비가 제외되어 기숙사비로 충당하는 구조임. 코로나19 여파로 입소하지 않는데도 기숙사비를 징수하는 문제로 학부모들과 갈등 발생. 해결방안 마련 필요
67	5.15(금)	정희시	3	道,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무형자산인 의료와 복지기술을 융합하는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 필요
68	5.18(월)	김인순	1	敎, 코로나 19에 따른 등교수업 연기로 인해 급여 및 처우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직종 및 사업 종사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 건의
69	5.19(화)	김재균	4	敎, 5.20(수) 고교 등교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교 순차적 등교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31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소방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대응체계 구축 필요
70	5.20(수)	정승현	4	道, 콜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수단에 따른 사용처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
71	5.21(목)	심규순	4	道,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가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강력한 처벌 필요
72	5.22(금)	김미숙	6	道, 코로나19 방역 시 분무방식의 경우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소독제를 천에 적셔 닦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회차	일자	주재자	제안	주요 제안사항
73	5.25(월)	이애형	3	道, 긴급재난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아 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할 경우, 매출 10억 이상인 약국, 병원에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시군별 조사 및 결과 도민 안내 필요
74	5.26(화)	이혜원	4	道, 5.26(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75	5.27(수)	최종현	4	道·敎, 무상급식 재원 활용 농산물꾸러미사업 관련 각 학교에서 선정한 농산물과 축산물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 필요
76	5.28(목)	안광률	6	道, 쿠팡發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도 차원에서 1,600명 근무하는 인근 콜센터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필요
77	5.29(금)	김직란	9	道,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관련 실적 저조함. 신청 독려 안내(홍보) 및 31개 시·군 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 실태조사 및 경기도 차원에서 총괄관리 필요
78	6.01(월)	남종섭	3	사무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용 마스크, 체온계 등 비축물량 확보 필요
79	6.02(화)	최문환	2	道, 초중고교 등교 개학으로 덴탈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원활한 수급을 위해 덴탈마스크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
80	6.03(수)	정승현	3	道, 집합제한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집단사례 우려가 높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실태 점검 및 조치 필요
81	6.04(목)	황수영	1	사무처, 제344회 정례회 개회 관련 도의원과 의회 출입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 전파 필요
82	6.05(금)	국중현	7	敎, 등교 및 꾸러미사업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시 대응 지침을 조속히 통보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 필요
83	6.08(월)	김철환	3	道,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필요
84	6.09(화)	심규순	2	道·敎 당초 친환경농산물 납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꾸러미사업 추진하였으나, 대다수 가공품으로 품목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가 피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85	6.10(수)	김인순	1	道,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행정명령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 발표(6.4)관련. 금융권 대출 제한 업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보증 지원」에 대해서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86	6.11(목)	김재균	5	道,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에 단속·지도 강화 필요
87	6.12(금)	김미숙	1	사무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체온검사장 운영하고 있는데, 체온검사장 근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회차	일자	주재자	제안	주요 제안사항
88	6.15(월)	이애형	2	敎,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추진 파행(친환경농산물 1%미만)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89	6.16(화)	이혜원	2	道,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하는 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효과로 연결될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90	6.17(수)	안광률	4	敎,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 수에 비례하여 보건교사 확충 필요
91	6.18(목)	최종현	2	道,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비상대응 조직체계 개편 필요
92	6.19(금)	김직란	5	道·敎, 비말차단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음. 초·중·고교 학생 특히 고3 학생들이 비말차단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공적마스크 지정을 정부에 건의 또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는 방안 마련 필요
93	6.22(월)	남종섭	1	의회사무처,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전반기 비상대책본부(대책단)활동 마무리 차원에서 전체회의 개최 필요
94	6.23(화)	정희시	6	道, 2차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병상 확보 등 대응책 마련
1차	1.31(금)	전체회의	-	각 지자체 외국인 대응과 관련 대응책이 부재하여 외국인들이 밀집 거주 지자체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 필요. 청소년 등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대책 필요
2차	2.07(금)	전체회의	-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청
3차	2.25(화)	전체회의	-	지금 '심각' 단계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왔음.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비상대책단 위원들과 논의하여 우리 본회의 일정을 비롯한 향후에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4차	3.25(수)	전체회의	9	경기도 내 약 141개 정도 미인가 대안학교 존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아니라 도가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음.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방역 및 마스크 지원 등 요청
5차	4.21(화)	전체회의	7	기존 방역대책 중심에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경제살리기 방안 마련 강구
6차	5.12(화)	전체회의	4	(道-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약국 등 보건 및 의료 관련 업종에 대한 연매출 10억 제한 해제 건의

■ 제8절 의원연구단체 운영 ■

(2018. 7. ~ 2020. 6.)

□ 운영개요

○ 근　　거 :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13조

○ 운영목적 :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

○ 등록단체 : 23개(총 회원수 300명)

○ 구성요건

- 연구단체당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3개까지 가입 가능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위 포함)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 회장 겸직 불가

□ 의원연구단체 현황

연번	연구단체명	회장	연구내용 및 목적 / 회원					회원수
1	평화시대 경기도발전포럼	최경자 (1교육)	경기북부 발전전략 및 평화특별도 설치 타당성 연구					12
			이영봉(복지)	김우석(기획)	유상호(건설)	황진희(1교육)	이진(1교육)	
			유광혁(기획)	김원기(여가)	박태희(복지)	박재만(도시)	이원웅(문체)	
			이영주(경제)					
2	경기문화 정책연구포럼	정윤경 (문체)	경기도 문화환경 특색에 맞는 문화정책 방향 설정					11
			김달수(문체)	강태형(문체)	김봉균(문체)	채신덕(문체)	문형근(문체)	
			안광률(문체)	양운석(문체)	오광덕(문체)	임성환(문체)	최만식(문체)	
3	친환경 한강상수원 및 지천보호연구회	김규창 (건설)	친환경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관리 정책 연구					10
			김인영(건설)	이명동(행정)	유광국(농정)	이애형(복지)	한미림(여가)	
			서형열(건설)	권재형(건설)	유상호(건설)	장현국(농정)		
4	대중교통의 공공성강화포럼	권재형 (건설)	대중교통 낙후지역 공공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 정책연구					14
			고찬석(1교육)	문경희(건설)	김경일(건설)	김명원(건설)	김진일(건설)	
			김판수(행정)	서형열(건설)	양경석(문체)	김직란(건설)	윤용수(경제)	
			이기형(1교육)	이진연(여가)	최승원(건설)			

연번	연구단체명	회장	연구내용 및 목적 / 회원					회원수
5	경기말산업육성 연구회	정대운 (기획)	경기도형 말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연구					24
			박근철(행정)	이명동(행정)	김동철(행정)	서현옥(행정)	이동현(안행)	
			최갑철(행정)	이필근(행정)	심규순(도시)	김영준(도시)	김진일(건설)	
			박옥분(여가)	오진택(건설)	유광국(농정)	박덕동(교행)	조성환(복지)	
			이종인(기획)	유영호(기획)	박관열(기획)	권정선(복지)	임채철(기획)	
			조광주(경제)	김우석(기획)	김인순(여가)			
6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신정현 (기획)	건강한 청년생태계 방안 연구 및 대안적 청년정책 연구					12
			유광혁(기획)	오지혜(경제)	임채철(기획)	박성훈(도시)	최세명(교행)	
			안혜영(농정)	양철민(도시)	김강식(기획)	김철환(농정)	지석환(복지)	
			김지나(경제)					
7	팔당포럼	이종인 (기획)	팔당유역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입법정책 연구					11
			박관열(기획)	김경호(기획)	유광국(농정)	엄교섭(교행)	성수석(농정)	
			전승희(여가)	김규창(건설)	안기권(도시)	이창균(도시)	김경근(1교육)	
8	포용도시포럼	박옥분 (여가)	경기도형 포용도시 정책방향 설정 통한 실천방안 연구					21
			한미림(여가)	김인순(여가)	김태형(도시)	이필근(도시)	고은정(경제)	
			황수영(경제)	김현삼(여가)	이은주(1교육)	진용복(여가)	황대호(교행)	
			남운선(여가)	남종섭(농정)	김강식(기획)	김직란(건설)	김종찬(여가)	
			손희정(여가)	이진연(여가)	민경선(기획)	김은주(복지)	김영해(복지)	
9	경기교육정책포럼	조광희 (교행)	경기도교육 현안과제 숙의 공론을 통한 대안 연구					10
			추민규(교행)	김미숙(교행)	박덕동(교행)	이영주(경제)	최세명(교행)	
			유근식(교행)	엄교섭(교행)	박세원(교행)	황대호(교행)		
10	정치토론연구회	추민규 (교행)	도의회 정치발전 및 토론문화 발전방안 연구					13
			황진희(1교육)	김철환(농정)	김원기(여가)	조광주(경제)	박성훈(도시)	
			김태형(도시)	심민자(경제)	김경희(교행)	김경일(건설)	배수문(도시)	
			송치용(교행)	유근식(교행)				
11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복지)	남북간 협력 발전 전략 및 도의회 외교분야 방안 마련					11
			김현삼(여가)	김장일(경제)	오지혜(경제)	박덕동(교행	송치용(교행)	
			성수석(농정)	원용희(도시)	배수문(도시)	최종현(복지)	권정선(복지)	

연번	연구단체명	회장	연구내용 및 목적 / 회원					회원수
12	하천문화연구회	송영만(경제)	경기도 하천관리 변화과정 분석 통한 하천관리방안 연구					12
			백승기(농정)	서현옥(행정)	양경석(문체)	박세원(교행)	오진택(건설)	
			김인영(건설)	이은주(1교육)	박윤영(농정)	김영해(복지)	오명근(건설)	
			조재훈(건설)					
13	스포츠복지 정책연구회	채신덕(문체)	스포츠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한 삶의 가치 연구					10
			안광률(문체)	권재형(건설)	최만식(문체)	오광덕(문체)	강태형(문체)	
			정윤경(문체)	김용성(문체)	임성환(문체)	문형근(문체)		
14	경기도노동 정책포럼	김장일(경제)	도내 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산업별 노동정책 대안마련 연구					10
			허원(경제)	장현국(농정)	김현삼(여가)	이필근(행정)	김종배(경제)	
			이선구(도시)	김중식(경제)	장태환(제1교육)	황수영(경제)		
15	경기 마이스(MICE)포럼	권락용(도시)	경기도내 마이스시설에 대한 상호간 특색 연구 및 마이스 클러스터 발전 도모					11
			이선구(도시)	원용희(도시)	안기권(도시)	이동현(행정)	양철민(도시)	
			이창균(도시)	안혜영(농정)	민경선(기획)	장동일(도시)	김용성(문체)	
16	신도시·도시 정비사업 연구회	이필근(도시)	도내 1,2,3기 신도시 조성과정과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 점검 및 건전 발전방향 모색					10
			김경호(기획)	김미리(교행)	김미숙(교행)	왕성옥(복지)	윤용수(경제)	
			전승희(여가)	조광희(교행)	이원웅(문체)	최종현(복지)		
17	경기 스포츠 산업 활성화 포럼	양운석(문체)	경기도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도민의 여가선용기회 확대					22
			정대운(기획)	정승현(기획)	박관열(기획)	민경선(기획)	유영호(기획)	
			김장일(경제)	송영만(경제)	허원(경제)	박근철(안행)	김판수(안행)	
			이명동(안행)	황대호(교행)	김봉균(문체)	김태형(도시)	진용복(여가)	
			김재균(1교육)	백승기(농정)	성수석(농정)	장현국(농정)	김규창(건설)	
			박재만(도시)					
18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복지)	마약류 투약자 및 중독자들의 재활 정책 연구					11
			정희시(복지)	최종현(복지)	이필근(안행)	허원(경제)	김지나(경제)	
			한미림(여가)	김미숙(교행)	송치용(교행)	이혜원(기획)	황진희(1교육)	
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회	이영봉(복지)	경기도 각 지자체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프로그램 연구					11
			박태희(복지)	왕성옥(복지)	지석환(복지)	이애형(복지)	이종인(기획)	
			이선구(도시)	원용희(도시)	손희정(여가)	김인순(여가)	유근식(교행)	

연번	연구단체명	회장	연구내용 및 목적 회원					회원수
20	경기 다산 연구회	김봉균 (문체)	경기도의 정신문화 정체성과 핵심가치 고취					19
			진용복(여가)	양철민(도시)	염종현(농정)	김은주(복지)	김영해(복지)	
			서현옥(안행)	국중범(안행)	유영호(기획)	황수영(경제)	양경석(문체)	
			문형근(문체)	양운석(문체)	안광률(문체)	이원웅(문체)	오광덕(문체)	
			최만식(문체)	김용성(문체)	강태형(문체)			
21	진보정책연구회 (경자유전)	이영주 (경제)	개혁진보정치집단 이론과 정책프로그램 발굴					10
			심민자(경제)	원미정(경제)	장태환(1교육)	오지혜(경제)	고은정(경제)	
			손희정(여가)	조성환(복지)	왕성옥(복지)	김경일(건설)		
22	고출산·장수사회 지원정책 연구회	장태환 (1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경기도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연구					13
			고찬석(1교육)	지석환(복지)	이진(1교육)	성준모(교행)	임채철(기재)	
			김인영(건설)	최승원(건설)	박창순(안행)	정승현(기재)	이은주(1교육)	
			오명근(건설)	김재균(1교육)				
23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권정선 (복지)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모색					12
			국중현(안행)	김용찬(안행)	김판수(안행)	최갑철(안행)	김성수(농정)	
			남종섭(농정)	소영환(농정)	김명원(건설)	최경자(1교육)	방재율(1교육)	
			조광희(교행)					

□ 연구용역 추진실적

연도	연구단체명	연 구 과 제 명	수행기관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간
2020	하천문화연구회	수달보호정책을 통한 하천보호문화 발전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수달 보호협회	20,441	2020.3.25. ~2020.7.24.
	진보정책연구회	경기도 박사급 연구자 지원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450	2020.3.24. ~2020.6.23.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경기도 요양시설 사회약료서비스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요양병원 환자 대상의 약료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329	2020.4.2. ~2020.7.2.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원	18,579	2020.4.2. ~2020.8.1.

연도	연구단체명	연 구 과 제 명	수행기관	용역금액(천원)	용역기간
2020	경기 마이스(MICE)포럼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경기지역 특화관광 및 MICE 발전모델 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441	2020.3.26. ~2020.7.25.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441	2020.4.9. ~2020.7.9.
2019	경기말산업 육성연구회	경기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양에리카 산학협력단	18,590	2019.5.16. ~2020.8.14.
	하천문화연구회	경기도 지방하천에서의 하천횡단 시설물(낙차공,보,교량)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수자원학회	16,809	2019.5.15. ~2019.9.14.
	경기 마이스(MICE)포럼	경기도내 권역별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연구(고양,수원,성남 각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450	2019.5.15. ~2019.9.14.
	스포츠복지 정책연구회	경기도 노인들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운동실태 조사 및 건강 증진 정책방안 연구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441	2019.5.27. ~2019.8.26.
	경기외교 연구포럼	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성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사)경기시민 연구소울림	17,916	2019.7.30. ~2019.11.2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회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20,301	2019.8.9. ~2019.12.8.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8,348	2019.11.22. ~2020.3.21.
	고출산·장수사회 지원정책 연구회	고출산 장수사회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모형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441	2019.11.22. ~2020.2.21.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기교육연구원	16,740	2019.12.27. ~2020.3.26.
	경기문화정책 연구포럼	경기도 성인지정책 수립과 이행분석 연구(2016년 이후 문화예술 분야 조례와 성인지 예산 평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16,740	2019.12.17. ~2020.3.16.
2018	미래형돌봄 교육정책 연구회	사회적경제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운영방안 연구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19,213	2018.11.1. ~2019.1.29.
	복지포럼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공화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노인 상담연구소	18,752	2018.11.21. ~2019.2.18.

연도	연구단체명	연 구 과 제 명	수행기관	용역금액(천원)	용역기간
2018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방향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18,823	2018.10.10. ~2019.1.7.
	경기외교 연구포럼	경기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연구	(사)경기시민연구소울림	16,895	2018.11.21. ~2019.2.18.
	경기교육 정책포럼	경기도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	17,784	2019.1.24. ~2019.4.23.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경기도 청년의 비전형 노동 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8,586	2018.11.1. ~2019.1.29.
	팔당포럼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환경연구원	18,161	2018.11.1. ~2019.1.29.

■ 제9절 정책토론대축제 ■

1. 2018년 정책토론대축제

가. 2018 정책토론대축제 개요

○ 추진시기 : 2018. 10. 15(월)~10.31(수) 17일간

※ 2018년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서 제안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함

○ 주 최 : 경기도의회

○ 주 관 : 경기도의회

○ 개최회수 : 총 28회(의회 내 16회, 시군 현장 12회)

○ 참여인원 : 토론자 참가자 205명, 참관 추정 인원 1,800여명

○ 언론보도횟수 : 501회

나. 2018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현황(28회)

연번	일시	장소	토 론 명	좌장
1	10.15(월) 10:30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경기도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발전방안	최종현
2	10.15(월)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커뮤니티케어추진방향에따른사회적경제	유영호
3	10.15(월) 14:00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경기도형공유경제육성방안	심규순
4	10.15(월) 14:00	4층대회의실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간정책커뮤니티구성	정희시
5	10.17(수) 10: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학교자치,학부모의역할과현장속이야기”	조성환
6	10.17(수)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건설공사현장 선진화를 통한 건설공사현장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김명원
7	10.17(수) 14:00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경기도 미혼모 기본권 제고 방안	진용복
8	10.18(목) 10: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제도정비	민경선
9	10.18(목)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체육의 전환 - 실업과 독립야구 활성화	이원웅

연번	일시	장소	토 론 명	좌장
10	10.18(목) 14:00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경기도형 도시농업발전방안	김성수
11	10.19(금) 10: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유소년야구 건전육성방안	김봉균
12	10.19(금) 10:00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지역언론의 공공성, 언론기본소득	이영주
13	10.19(금)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확대 및 발전방안	최경자
14	10.19(금) 14:00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경기도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권정선
15	10.22(월) 10: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역할 및 발전방향	김은주
16	10.22(월)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형 도제교육 발전방안	남종섭
17	10.25(목) 15:00	성남시백현동 주민센터	성남시 MICE클러스터 개발	권락용
18	10.25(목) 14:00	고양 어린이박물관	남북협력시대, 경기북부의 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신정현
19	10.26(금) 14:00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찾기	장대석
20	10.26(금) 16:00	양평군청	경기도 아스콘 공장 대책찾기	이영주
21	10.29(월) 13:00	하남시청 대강의실	'하남역사가 하남교육이 되다'	추민규
22	10.29(월) 14:00	일산동구청	도심 골프장과 도심 숲의 사회적 가치 비교 토론회	김경희
23	10.29(월) 14:00	화성시 향남읍사무소	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학교 통학로 안전정책	김인순
24	10.30(화) 10:00	성남시청 한누리실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활성화방안	최만식
25	10.30(화) 15:00	만안종합 사회복지관	경기도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	김종찬
26	10.31(수) 14:00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기본계획노선 이대로 좋은가?	권재형
27	10.31(수) 14:00	고양시일산서구 청소년수련원 강당	자기주도시대, 청소년 정책방향	고은정
28	10.31(수) 19:00	포천반월 아트홀 소극장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 - 석탄발전소를 중심으로	김우석

2. 2019년 춘계 정책토론대축제

가. 2019년 춘계 정책토론대축제 개요

○ 추진시기 : 2019. 4. 8(월)~4. 30(화) 23일간

※ 2019년 정책토론대축제는 최초로 경기도와 경기의회가 공동 추진함

○ 주　　최 : 경기도·경기도의회

○ 주　　관 : 경기도

○ 개최횟수 : 총 30회(의회 내 15회, 도청 2회, 시·군 현장 13회)

○ 참여인원 : 토론자 참가자 194명, 참관 추정 인원 2,200여명

○ 언론보도횟수 : 749회

나. 2019년 춘계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현황(30회)

연번	일 시	장 소	토 론 명	좌장
1	4.08(월) 14:00	경기도 대회의실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토론회	신정현
2	4.12(금) 14:00	성남시 한누리실	학교체육관의 원활한 대관 및 사용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박창순
3	4.15(월) 10:00	도의회 대회의실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형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건립' 토론회)	최종현
4	4.15(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주민주권시대의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최만식
5	4.17(수) 14:00	하남시 대회의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하남위례길 조성 추진	추민규
6	4.17(수) 16:00	도의회 대회의실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지석환
7	4.18(목) 10:00	도의회 대회의실	언론주권자 배당제도의 도입과 지역언론 공공성 모색 정책토론회	이영주
8	4.18(목) 10:30	군포 문화예술회관	'경기도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정윤경
9	4.18(목) 14:00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미세먼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 만들기	서현옥
10	4.18(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보육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권정선
11	4.19(금) 10:00	소흘읍사무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김우석
12	4.19(금) 15:00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바람직한가?' 정책토론회	김원기

연번	일 시	장 소	토 론 명	좌장
13	4.22(월) 10:00	도의회 대회의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토론회	김은주
14	4.22(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영봉
15	4.23(화) 10:30	도의회 대회의실	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조성환
16	4.23(화) 14:00	가평 뮤직빌리지	가평군 먹거리체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경호
17	4.23(화) 14:00	도의회 소회의실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정희시
18	4.23(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은주
19	4.24(수) 14:00	시흥 능곡어울림센터	시흥교육발전방안 '시흥지역 고교평준화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장대석
20	4.24(수) 14:00	도의회 소회의실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김용찬
21	4.24(수) 15:00	양평 평생학습센터	양평교육발전 정책토론회, '양평 교육의 미래를 묻다'	전승희
22	4.25(목) 10:00	도의회 대회의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안혜영
23	4.25(목) 14:00	로컬푸드 체험장 '곳'	잘 사는 혁신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영해
24	4.25(목) 14:00	도의회 소회의실	요양시설 입소환자의 다제약물복용 실태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애형
25	4.25(목) 15:00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고양동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만들기 정책토론회	남운선
26	4.26(금) 14:00	도의회 소회의실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비용 절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원용희
27	4.26(금) 15:00	도의회 대회의실	시대에 역행하는 화성호 담수화 정책 대안 토론	조재훈
28	4.29(월) 14:00	용인수지구청 대회의실	중학교 입학배정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유영호
29	4.29(월) 15:00	시흥 에코센터	경기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동현
30	4.30(화) 10:00	국립국제교육원 강당	도민과 함께 그리는 학교폭력대책 모색 정책토론회	이나영

3. 2019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

가. 2019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 개요

○ 추진시기 : 2019. 9. 2(월)~9. 30(월) 29일간

※ 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시와 김포시는 11월과 12월로 연기하여 추진함

○ 주 최 : 경기도·경기도의회

○ 주 관 : 경기도

○ 개최회수 : 총 25회(의회 내 10회, 시·군 현장 15회)

○ 참여인원 : 토론자 참가자 167명, 참관 추정 인원 2,330여명

○ 언론보도횟수 : 566회

나. 2019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현황(25회)

연번	일시	장소	토 론 명	좌장
1	9.2(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모색 토론회	김장일
2	9.3(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	배수문
3	9.5.(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김종찬
4	9.6(금) 14:00	부천시의회 대회의실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 토론	황진희
5	9.9(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공정 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유영호
6	9.10(화) 16:00	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뇌병변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왕성옥
7	9.16(월) 14:00	수자원본부 대회의실	팔당상류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안기권
8	9.16(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형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해
9	9.16(월) 14:00	동두천 두드림뮤직센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유광혁
10	9.17(화) 10:00	기흥도서관 시청각실	어린이가 가고 싶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남종섭
11	9.17(화) 15:00	도의회 대회의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	장태환
12	9.18(수) 14:00	하남농협 대강당	하남시민을 위한 경기도 택시정책 토론회	김진일

연번	일시	장소	토 론 명	좌장
13	9.18(수) 14:00	이천서희 청소년문화센터 대회의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성수석
14	9.18(수) 14:00	양평군 용문면사무소 대회의실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이종인
15	9.18(수) 14:00	시흥시 ABC학습타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안광률
16	9.20(금) 14:00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승현
17	9.20(금) 14:00	도의회 대회의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민경선
18	9.25(수) 14:00	도의회 대회의실	교권확립 방안 마련 토론	방재율
19	9.27(금) 16:00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	미래 평택 교육 방향과 고교평준화	김재균
20	9.30(월) 10:30	성남시 서현2동 주민센터 대강당	서당어린이공원 재정비와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문화 토론회	권락용
21	9.30(월) 15:00	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방향	박근철
22	9.30(월) 16:00	장안구청 대회의실	수원시(장안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	이필근
23	10.29(화) 15:00	김포시 모두의공간	김포 민속 5일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채신덕
24	12.10(화) 14:00	김포농업 기술센터 대회의실	환경(생태계)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방향 모색 토론회	김철환
25	12.24(화) 13:00	파주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일자리 정책토론	오지혜

4. 2020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

가. 2020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 개요

○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 일 시 : 2020. 5.28.(목) 14:00, 도의회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염종현 대표의원,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약 60명

○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총 21건 중 총 11건 완료(6.30. 기준)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상반기 정책토론회 일부 일정 미정 및 하반기 연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책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무관중으로 진행. 경기도의회 유튜브(경기도의회 e끌림) 또는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진행

※ 코로나19 생활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손 소독 후 입장, 좌석간 거리두기)

나. 2020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현황(11회)

(2020.6월말 기준)

연번	일시	장소	토 론 명	좌장
1	5.28(목) 15:00	도의회 대회의실	청소년부모(이른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이진연
2	6. 1(월) 14:00	썬밸리호텔 크리스탈룸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규창
3	6. 4(목) 14:00	김포시 지역상담소	방과 후 아동 돌봄을 통한 따뜻한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모색	심민자
4	6.11(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전 도민 고용보험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한가?	남운선
5	6.15(월) 15:00	도의회 소회의실	유아 체육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채신덕
6	6.18(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학교자치에서의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송치용
7	6.25(목) 14:00	광명시도서관 강당 M층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	정대운
8	6.26(금) 14:00	도의회 소회의실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정책토론회	김영준
9	6.29(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	김직란
10	6.30(화) 14:00	파주시의회 세미나실	신분당선의 지축, 조리, 금촌선 연결에 따른 경기 서북부 지역 파급효과	김경일
11	6.30(화) 16:00	도의회 대회의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을 묻다	정윤경

5. 정책토론대축제 다시 보기(백서 발간)

가. 정책토론대축제 다시보기 개요

○ 추진시기 : 2019. 10월 ~ 2020. 1월

○ 발간목적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2018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를 시범 추진하고 2019년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정책토론마다 제안되고 논의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 발간부수 : 700부(칼라 50, 흑백 650)

○ 배 부 처 : 도의원,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도청,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

○ 내용구성 : 공통주제, 2018년 토론, 2019년 춘·추계 토론

○ 공통주제 현황

-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경기도형 노인복지 강화방안 / 농업경쟁력 및 발전 모색 / 교육발전 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 / 지역교육 발전방안 / 바람직한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 조성방안 / 경기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에 따른 사회적 경제 / 장애인지원 체계 현황과 대책/ 야구를 중심으로 본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방안 /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나. 책자사진

■ 제10절 지역상담소 운영 ■

(2018. 7. 1 ~ 2020. 5. 31)

□ 설치 개요

○ 근 거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15. 1. 5.시행) ※시행규칙 '15. 2. 17. 시행

○ 규 모 : 31개 시·군별 1개소('15. 3. 31 ~ 9. 10. 설치 완료)

공공청사 (9개소)	민간임차 (22개소)
용인, 부천, 안양, 파주, 군포,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양평, 가평, 과천, 연천

□ 운영 현황

○ 운영인력 : 상담소별 1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 상 담 관 : 도의원(당연직), 시·군·교육청 퇴직공무원·해당지역 출신 관련 전문가(위촉직 31명)

○ 운영시간 : 평일(월~금) 10:00 ~18:00 ※공휴일 휴무

○ 이용방법 : 방문상담(전화·홈페이지 상담일정 예약 가능)

□ 주요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 등 각종 건의사항 상담

○ 지역주민의 입법·정책 건의 수렴

○ 입법·예산정책 관련 자료 등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의안 검토 등을 위한 도의원의 의정업무 공간(스마트워크)

□ 운영실적 (2018. 7. ~ 2020. 5.)

운영 구분	주요 운영 사례	건수
합 계		30,305회
민원 건의·협의면담 등	지역현안에 대한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원 상담	11,129
	교육, 체육시설, 교통, 지역개발 등 협의 면담	
	지역 민원 상담	
정책 현안회의	지역주민 관련 회의	634
	정책관련 시군 관계자 회의	
	도의원 간 정책회의 등	
스마트워크 센터 활용	의정 활동 관련 자료수집·검토	12,915
	입법정책·의안 및 도정질문 자료 검토	
	예산안 자료수집 및 검토 등	
기타	의정활동 관련 언론 인터뷰	5,627
	언론사, 시민단체, 민원인 대상 지역상담소 안내	

※방문자수 : 47,523명(도의원 12,726 주민 14,883 단체 7,705 공무원 9,649 언론인 2,560 등)

□ 설치 현황

시 군	위 치	전 화	최초설치일
수원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층	031-267-4558	'15.07.29.
고양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501호	031-968-8651	'15.06.10.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본관 2층	031-324-3485	'15.03.31.
성남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7-3, 1층	031-759-8586	'15.06.22.
부천	길주로 210, 부천시청 본관 3층	032-625-8310	'15.04.10.
화성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3층	031-298-0920	'15.07.29.
안산	단원구 고잔2길 16, 에메랄드빌딩 401호	031-487-9556	'15.05.07.
남양주	진관로 15,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4층	031-595-9425	'15.09.08.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별관 2층	031-476-8480	'15.04.10.
평택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031-692-4138	'15.06.25.
시흥	시흥시 새재로 23-1 702호	031-315-4635	'15.04.10.
파주	시민회관길 33,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	031-941-8189	'15.06.30.
의정부	의정로 46번길 18, 2층	031-879-7616	'15.05.01.
김포	김포대로 835, e-프라자 504호	031-981-7407	'15.03.31.
광주	광주시 파발로 89, 2층	031-798-2203	'15.06.10.
광명	시청로 15, 힐팰리스 101호	02-2689-9135	'15.06.10.
군포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본관 4층	031-390-0469	'15.05.07.
하남	대청로 5, 우성빌딩 401호	031-796-4691	'15.06.29.
오산	운암로 37, 거성프라자 502호	031-378-8641	'15.05.01.
양주	부흥로 1938, 오션타워 206호	031-856-4450	'15.04.01.
이천	부악로 40, 이천시청 본관 1층	031-644-2543	'15.03.31.
구리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층	031-555-2191	'15.04.01.
안성	보개원삼로 1, 서우(염광빌딩) 201호	031-673-5220	'15.04.14.
포천	중앙로 73, 성주빌딩 3층	031-533-8981	'15.08.17.
의왕	효행로 46, 의왕시새마을회관 2층	031-477-7745	'15.06.22.
양평	역전길 3, 하늘타워 6층	031-773-2528	'15.03.31.
여주	세종로 1, 여주시청 신관 4층	031-881-4533	'15.06.17.
동두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3층	031-858-1356	'15.09.10.
가평	청평역1로 19, 앨앤비빌딩 201호	031-584-6289	'15.06.22.
과천	별양상가1로 31, 502호(별양동)	02-502-7850	'15.04.08.
연천	연천역로 1, 2층	031-834-9485	'15.07.27.

■ 제11절 시군정책 간담회 ■

□ 추진배경

제10대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도의회와 시·군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 정책과의 연계 및 정책제안 실효성 확보

□ 개최현황

구분	시·군	일시	의원수			논의안건수				시군 건의
			계	지역	비례	계	도	교	시군	
계	31		142	129	13	1,427	282	288	857	111
1	안성	’18.10.17.	2	2	-	41	6	1	34	-
2	가평	’18.12. 7.	1	1	-	61	9	2	50	1
3	김포	’18.12.10.	4	4	-	84	16	17	51	1
4	포천	’18.12.20.	2	2	-	57	8	6	43	5
5	연천	’18.12.20.	1	1	-	24	5	3	16	2
6	시흥	’19. 1.30.	4	4	-	44	11	13	20	-
7	하남	’19. 2.20.	2	2	-	29	4	10	15	4
8	양평	’19. 2.27.	3	2	1	38	4	5	29	4
9	이천	’19. 3.15.	3	2	1	18	2	2	14	4
10	여주	’19. 3.15.	2	2	-	28	3	3	22	3
11	구리	’19. 3.18.	2	2	-	30	6	2	22	5
12	광주	’19. 3.19.	4	4	-	39	12	10	17	2
13	동두천	’19. 4.10.	2	2	-	25	2	5	18	2
14	양주	’19. 4.22.	2	2	-	33	7	7	19	4
15	의왕	’19. 4.24.	2	2	-	28	5	7	16	4
16	과천	’19. 4.24.	1	1	-	12	1	1	10	5
17	평택	’19. 5.13.	6	5	1	49	9	12	28	5
18	군포	’19. 5.31.	4	4	-	35	10	7	18	3
19	안양	’19. 5.31.	6	6	-	47	10	9	28	8
20	오산	’19. 6. 5.	2	2	-	16	3	4	9	4
21	안산	’19. 6. 5.	9	8	1	66	19	9	38	5
22	용인	’19. 6.28.	8	8	-	79	16	29	34	2

구분	시·군	일시	의원수			논의안건수				시군건의
			계	지역	비례	계	도	교	시군	
23	광명	'19. 7.19.	4	4	-	23	7	4	12	4
24	고양	'19. 8.22.	11	10	1	88	12	21	55	6
25	파주	'19. 8.22.	5	4	1	44	11	8	25	7
26	성남	'19.10.10.	9	8	1	76	20	19	37	6
27	부천	'19.10.23.	9	8	1	72	16	15	41	4
28	의정부	'19.10.24.	4	4	-	33	10	5	18	3
29	남양주	'19.10.24.	7	6	1	65	18	13	34	3
30	수원	'19.12. 9.	15	11	4	98	12	25	61	3
31	화성	'19.12.12.	6	6	-	45	8	14	23	2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미개최

□ 31개 시군정책 간담회 개최성과

○ 기　간 : 2018.10.17. ~ 2019. 12. 12.

○ 이동거리 : 2,660(서울~부산 7회 왕복)

○ 회의시간 : 145시간(서울~부산 KTX 31회 왕복)

○ 논의안건 : 1,427건

○ 시군건의 : 111건

○ 예산반영 : 7,50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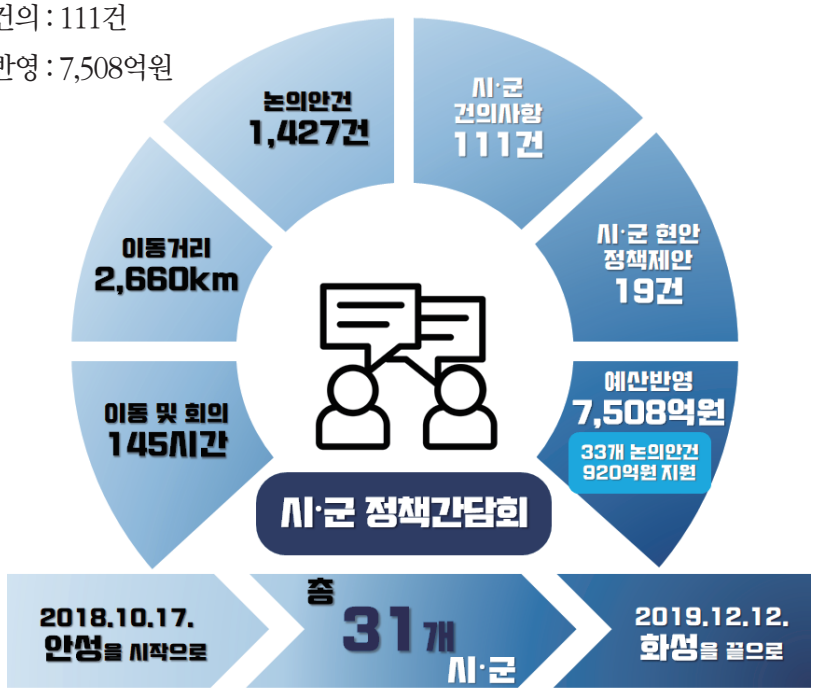

■ 제12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2018. 7. 1 ~ 2020. 6. 30)

□ 운영 개요

○ 기간/장소 : 학기 중/ 도의회 본회의장

○ 참여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프로그램 : 1일 도의원, 참여식 의회체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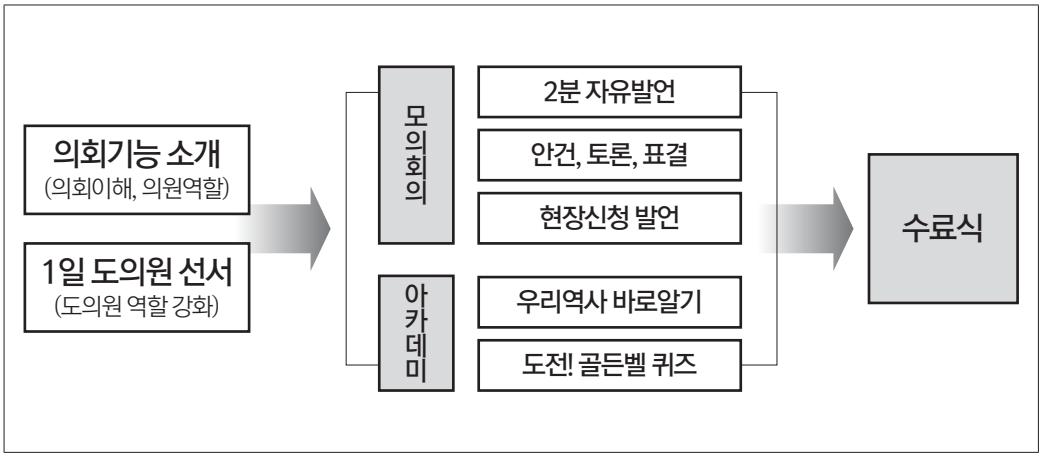

□ 연도별 의회교실 참가현황

(단위 : 회, 명)

연도	시기	참 가 현 황			주요프로그램
		학 생			
		소계	초등부	중·고등부	
계		56회 5,551명	34회 3,447명	22회 2,104명	
2018	7월~12월 (총19회)	19회 2,117명	13회 1,488명	6회 629명	1일 도의원 체험 (도의원 선서, 안건처리, 자유발언, 현장발언) 퀴즈, 수료식 등
2019	4월~11월 (총37회)	37회 3,434명	21회 1,959명	16회 1,475명	1일 도의원 체험 (도의원 선서, 안건처리, 자유발언, 현장발언) 퀴즈, 수료식 등

■ 제13절 SNS, 소셜TV 활용 의정활동 ■

(2018. 7. 1 ~ 2020. 6. 30)

□ 사업 개요

○ 도의회 대표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제작·운영, 소셜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등) 제작·운영, SNS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등

□ 운영 현황

(단위 : 명, 회)

연 도	블로그 (순방문자 수)	페이스북 (좋아요 수)	인스타그램 (팔로워수)	카카오스토리 (구독자수)	유튜브 (구독자수)
2018	2,013,243	28,709	-	11,868	72
2019	3,467,482	36,099	-	14,878	1,254
2020.6	3,962,999	38,973	1,807	15,839	2,251
개설일	2015.2	2012.9	2020.2	2015.2	2014.5

□ 주요 성과

○ SNS를 통해 의정소식, 조례소개, 위원회 활동은 물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담아 꾸준히 방문자수 증가(주 5회이상 콘텐츠 업로드)

○ 조례 및 의정활동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구성하여 도민 정보전달 및 공감 유도

- 포토툰, 인포그래픽, 영상/유튜브 등

○ 도민 참여형 이벤트 진행으로 관심과 참여 등 적극적인 소통

○ SNS홍보 및 소통 경쟁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

- 제8회 2018 대한민국 SNS대상(최우수상),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대상(대상)

※ 지방정부 의회 최초 수상

○ SNS서포터즈단 운영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발굴

○ SNS캐릭터(소원이) 이모티콘(16종) 제작 및 배포로 의정활동 홍보강화

경기도의회 SNS캐릭터 '소원이'

■ 제14절 의정모니터 운영 ■

(2018. 10. 8 ~ 2020. 6. 30)

□ 운영 개요

○ 구　　성 : 도민 40명 〈제2기 모니터〉

○ 활동기간 : 2018. 10. 8. ~ 2020. 6. 30

○ 주요역할 : 정책제안 및 자치입법 제·개정 건의, 의회 방청 및 모니터링 등

〈 의정모니터 지역별 참여현황 〉

구 분	선발인원	남부지역	북부지역
제2기	22개 시·군 40명	15개 시·군 30명	7개 시·군 10명

□ 운영 성과

○ 정책제안 활성화

- 자치입법 제·개정 건의 등 정책제안 74건

○ 의회방청 및 모니터링

- 모니터 상임위별 방청 및 모니터링 〈2018·2019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모니터 30명 참여, 12개 상임위원회 51회 방청 〈2018년 23회, 2019년 28회〉

○ 모니터 정책역량 강화 등

- 모니터 운영위원회 회의(9회), 기본교육, 워크숍(2회)으로 역량 강화
- 본회의 단체반청, 현장견학, 자체 연구모임 구성 등으로 정책역량 배양

■ 제15절 공공기관 인사청문 ■

(2018. 7. 1 ~ 2020. 6. 30)

□ 대상기관 : 6개 기관

○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일자리재단

□ 청문절차

인사청문 요청		도덕성검증		정책(능력)검증		청문결과송부		공공기관장 임명
도지사 → 도의회 의장 (소관 위원회 회부)	⇒	도덕성 검증위	⇒	소관 상임위	⇒	도의회 의장 → 도지사	⇒	임명권자

□ 인사청문 성과

○ 6개 공공기관 12회 실시

기 관 명	직 위	도덕성 검증위	소관 상임위
경 기 연 구 원	원 장	2018. 9. 3	2018. 9. 4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2018.10.17	2018.10.1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 장	2018.11.26	2018.11.30
경 기 문 화 재 단	대표이사	2018.12.19	2018.12.20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2018.12.19	2018.12.20
경 기 도 시 공 사	사 장	2018. 2.14	2019. 2.18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5장 경기도 의회사무처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10th first half GYEONGGIDO ASSEMBLY

제5장 경기도의회사무처

■ 제1절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근거법규 ■

1.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제5장 지방의회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2.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 2019. 7. 1. 조례 제62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부터 제9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① 경기도의회(이하"의회"로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1.〉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교섭단체의 직원)①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직원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정책연구원) ① 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연구원은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원은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④ 정책연구원은 해당 의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기도의회사무처와 사무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3.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직원의 정원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두는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236호,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20. 3. 16, 규칙 제38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언론홍보담당관·의사담당관·도민권익담당관·협치지원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언론홍보담당관·의사담당관·도민권익담당관·협치지원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담당관 및 협치지원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별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
2. 문서보안과 공인의 관리
3. 삭제
4. 사무처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전과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9.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련 사항
10. 의원에 대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항
11.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무처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언론(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뷰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과 의정백서 발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위원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회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9. 미디어홍보 전략기획 및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출입기자 취재지원 및 브리핑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영상음향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회기운영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2. 정기회·임시회의 소집공고와 의사진행을 위한 지원 보조
3. 본회의장의 사용과 조정
4. 의원의 대외업무참여에 관한 협조(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섭단체와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청가(請暇)에 관한 사항
7.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참관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처리와 의결문서의 관리
9. 의안의 접수, 회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각종 위원회 의안의 처리와 회의상황의 종합
12.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3. 회의록의 작성·발간 및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4.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의안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도민권익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서비스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원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의원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민 및 도의원 의정 관련 제안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와 처리에 관한 사항
6. 의정민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7. 일반 및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8. 의정만족도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서비스 매뉴얼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13.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14.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5. 의원 재산등록 및 겸직 등 의무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제8조(협치지원담당관) 협치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 및 교육행정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및 도민단체 등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원교육, 연찬회, 워크숍,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체 일반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섭단체 등 요청 정책현안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책이슈보고서 정기발간에 관한 사항

제9조(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조사·분석·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정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에 관한 사항 등
6.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발의 안건 등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이나 검토에 관한 사항
9. 지방의회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0.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지원
11.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등
12. 의회관련 쟁송업무의 처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예산정책담당관) ① 예산정책담당관은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2. 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4. 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5.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
6.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9.기타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3.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
5. 소속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소속위원회 자료실의 운영
7.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
8. 그 밖에 소속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특별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79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6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중 가족여성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88호, 201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중 문화관광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31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20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 두며, 각각 지방서기관"을 "입법정책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2. 도·교육청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조사 및 분석 3.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4.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5.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6.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9.기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지원 등
②항 부터 ⑫항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64호,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경제투자전문위원"을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608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삭제
제2조(직종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삭제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문위원의 직위와 직급은 별표와 같다"를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⑪항 생략
⑫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를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로 한다.
⑬항부터 ⑳항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662호, 2015.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7일부터, 환경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678호, 201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43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45호, 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48호, 2017.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 중 행정8급 1명(본청), 시설7급 1명(사업소)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총무담당관"을 각각 "총무담당관·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81호, 2017.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사담당관"을 각각 "의사담당관·의정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정지원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회 쟁점 안건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회계조사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5. 결산검사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9.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8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
11.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부칙 〈201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40호, 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공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2019.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56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96호, 2020.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추진"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립"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영상음향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913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를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종합"을 "종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0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분석"을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용추계"를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분석"을 각각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공"을 각각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좌"를 "보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운영"을 각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2절 경기도의회사무처 연혁 ■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과정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공포(법률 제4310호)와 더불어 1991년 2월 9일 경기도 내무국 지방과 소속으로 한 의회준비반이 발령됨을 시발로 의회개원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1991년 7월 8일 개원과 더불어 1국 2과 6전문위원실 4계 공무원 정원 33명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국이 발족되었다. 당시에 의회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의사과를 두고 총무과에 총무계, 자료계를 의사과에는 의사계, 의안계를 두었으며,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6개 위원회별 각 1명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1992년 1월 29일 경기도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개정되어 사무국을 사무처로 총무과, 의사과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실로 각각 개정하였다.

1993년 9월 10일 경기도 직제규칙 개정을 통해 경리·공보·기록계를 신설하여 총무담당관실의 직제는 총무·경리·자료·공보계순으로, 의사담당관실은 의사·의안·기록계순으로 편제되었다.

1998년 9월 14일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계 명칭을 담당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리계를 회계시설담당, 자료계를 자료정보담당, 의안계를 법제의안담당으로 개칭하였다.

2003년 3월 6일 총무담당관실의 공보담당과 자료정보담당을 통합하여 공보자료담당으로 하고 의전담당을 신설했다.

2005년 4월 11일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개칭하고, 총무담당관실의 공보자료담당을 폐지, 의정담당관실에 의정홍보담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과 담당관 아래 입법지원담당과 입법정책담당을 신설하였다.

2006년 8월 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환경전문위원실을 설치하고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에 5급 전문위원 10명을 배정하였으며, 2007년 2월 22일 공보담당관과 담당관 아래 공보담당, 언론담당을 신설하였다.

2010년 7월 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족여성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를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12전문위원 10담당이 되었으며, 2011년 4월과 7월에는 가족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2년 3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관 아래

경제예산담당과 정책분석담당을 신설하였고, 2012년 11월 5일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보담당관실에 미디어팀을 신설하였다.

2018년 10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민원을 관리하고, 道 시책 반영을 위한 도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과의 협치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인 협치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다.

2019년 4월 1일에는 공보담당관실의 언론 기능을 강화하여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예산정책담당관 내에 교육청 예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교육예산분석팀을 신설하였다.

2020년 3월 16일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대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홍보담당관 내에 방송팀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사무처 기구는 2020년 6월 현재 사무처장, 7담당관 13전문위원이며 정원은 262명이다.

구 분	1991. 7. 8. 개원당시	2020. 6. 30. 현재
사무기구	도의회사무국	도의회사무처
총무분야	총무과 (총무계, 자료계)	총무담당관 (총무팀, 의전팀, 회계팀, 청사관리팀)
의정지원 분야	-	총무담당관(총무팀) 도민권익담당관(역량개발지원팀)
민원처리 및 정책개발 분야	-	도민권익담당관 (권익행정팀, 민원관리팀, 현장소통팀)
대외협력 분야	-	협치지원담당관 (협치기획, 협치분석)
홍보분야	-	언론홍보담당관 (언론팀, 방송팀, 홍보팀, 미디어팀)
입법정책분야	-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팀, 입법운영팀)
예산정책분야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팀, 예산분석팀, 교육예산분석팀)
본회의 분야	의사과 (의사계, 의안계)	의사담당관 (의사팀, 의안팀, 기록팀)
위원회 구성	6 전문위원	13 전문위원

2.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

□조 직 : 사무처장, 7담당관, 13전문위원

(2020. 6 30. 현재)

□ 정원현황 : 262명

(2020. 6. 30. 현재/명)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계	262(66)	1	18(2)	35(7)	90(23)	92(29)	21(2)	4(3)	1
총 무	51(1)	1	1	6	20(1)	18	5	1	
언론홍보	27(6)		1	4(1)	9	10(3)	2(2)		1
의 사	35		1	3	13	9	9		
도민권익	17		1	4	5	7			
협치지원	12(8)		1(1)	2(2)	4(2)	5(3)			
입법정책	13(5)		1(1)	2	8(4)	2			
예산정책	21(16)		1	2(1)	5(4)	13(11)			
전문위원실	86(30)		11	12(3)	26(12)	29(12)	5	3(3)	

※ ( ) : 임기제

※ 정원외인력(113) : 시간선택제 62명(총무 4, 언론홍보 2, 의사 1, 도민권익 39, 협치지원 4, 전문위원실 12),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직 15명 (총무11, 언론홍보4), 기간제근로자 9명(환경미화 6, 차량관리 1, SNS의정홍보지원 1, 장애보조 1), 교육청소속 18명(도민권익3, 예산정책 3, 제1교육위 4, 교육행정위 5, 특위 3명), 소방직1(안행)

3. 경기도의회사무처 간부

(2020. 6. 30 기준)

〈의회사무처장〉

구 분	성 명	직 급	재임기간
제1대	방제환	지방부이사관	1991. 6. 24 ~ 1992. 11. 19
제2대	백종민	지방부이사관	1992. 11. 20 ~ 1994. 9. 30
제3대	하영수	지방부이사관	1994. 10. 1 ~ 1994. 12. 31
제4대	이갑균	지방부이사관	1995. 1. 1 ~ 1996. 3. 25
제5대	박계민	지방부이사관	1996. 3. 26 ~ 1997. 1. 29
제6대	김관수	지방부이사관	1997. 1. 30 ~ 1998. 11. 9
제7대	이무광	지방부이사관	1998. 11. 10 ~ 2000. 6. 20
제8대	황준기	지방부이사관	2000. 6. 24 ~ 2001. 7. 27
제9대	장양운	지방부이사관	2001. 7. 28 ~ 2003. 2. 9
제10대	소병주	지방부이사관	2003. 2. 10 ~ 2004. 2. 9
제11대	이병만	지방부이사관	2004. 2. 10 ~ 2005. 2. 9
제12대	홍영표	지방이사관	2005. 2. 10 ~ 2006. 1. 31
제13대	이규웅	지방이사관	2006. 2. 1 ~ 2007. 12. 24
제14대	박신흥	지방이사관	2007. 12. 24 ~ 2011. 6. 27
제15대	이근홍	지방이사관	2011. 6. 27 ~ 2012. 1. 5
제16대	홍승표	지방이사관	2012. 1. 6 ~ 2012. 7. 1
제17대	양진철	지방이사관	2012. 7. 1 ~ 2013. 1. 5
제18대	이진호	지방이사관	2013. 1. 7 ~ 2015. 1. 4
제19대	조청식	지방이사관	2015. 1. 5 ~ 2015. 7. 14
제20대	박익수	지방이사관	2015. 7 15 ~ 2016. 6.30
제21대	이화순	지방이사관	2016. 7. 4 ~ 2017. 3. 2
제22대	박신환	지방이사관	2017. 3. 3 ~ 2017. 3. 9
제23대	최원용	지방부이사관	2017. 5. 2 ~ 2018. 2. 18
	최원용	지방이사관	2018. 2. 19 ~ 2018. 12. 19
제24대	신낭현	지방부이사관	2019. 1. 1 ~ 2019. 2. 10
	신낭현	지방이사관	2019. 2. 11 ~ 2019. 12. 31
제25대	최문환	지방부이사관	2020. 1. 1 ~ 2020. 2. 26
	최문환	지방이사관	2020. 2. 27 ~ 현재

〈담당관실〉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신춘범	1991. 6. 24~1993. 1. 25
		지방서기관	장명수	1993. 1. 26~1993. 12. 13
		지방서기관	표찬섭	1994. 1. 28~1995. 5 .9
		지방서기관	박제헌	1995. 5. 10~1996. 4. 2
		지방서기관	우병권	1996. 4. 3~1997. 7. 9
		지방서기관	백우현	1997. 7. 10~1998. 9. 20
		지방서기관	석금식	1998. 10. 1~2000. 2. 16
		지방서기관	박상국	2000. 2. 28~2001. 1. 9
		지방서기관	오영학	2001. 1. 10~2002. 8. 8
		지방서기관	정병헌	2002. 8. 24~2004. 2. 24
		지방서기관	김창규	2004. 2. 25~2005. 2. 10
		지방서기관	이용희	2005. 2. 19~2007. 2. 21
		지방서기관	김호겸	2007. 2. 22~2008. 1. 3
		지방서기관	조종화	2008. 1. 4~2009. 7. 6
		지방서기관	한태석	2009. 7. 7~2011. 1. 16
		지방서기관	송영국	2010. 1. 17~2012. 1. 19
		지방서기관	김성년	2012. 1. 19~2013. 1. 5
		지방서기관	장수진	2013. 1. 18~2014. 10. 1
		지방서기관	박승삼	2014. 10. 2~2016. 1. 18
		지방서기관	김기상	2016. 1. 19~2016. 7. 26
		지방서기관	오재영	2016. 7. 27~2018. 12. 31
		지방서기관	전진석	2019. 1. 8~현재
	총무계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웅	1991. 6. 24~1992. 7. 20
		지방행정사무관	박효갑	1992. 8. 6~1995. 1. 22
		지방행정사무관	우인환	1995. 1. 23~1997. 2. 12
		지방행정사무관	최병선	1997. 2. 13~1998. 9. 13
	총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최병선	1998. 9. 14~1998. 10. 7
		지방행정사무관	이현수	1998. 10. 8~2000. 3. 6
		지방행정사무관	김유근	2000. 3. 10~2000. 9. 7
		지방행정사무관	이병홍	2000. 9. 8~2002. 3. 30
		지방행정사무관	최진석	2002. 4. 25~2005. 2. 24
		지방행정사무관	김성년	2005. 2. 25~2006. 5. 7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총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오동희	2006. 5. 8~2009. 1. 2
		지방행정사무관	김동기	2009. 1. 19~2010. 1. 8
		지방행정사무관	이문영	2010. 1. 19~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이연재	2012. 1. 30~2012. 8. 30
	총무팀	지방행정사무관	이연재	2012. 8. 31~2013. 1. 17
		지방행정사무관	최병길	2013. 1. 25~2013. 7. 17
		지방행정사무관	이영종	2013. 7. 18~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상	2014. 10. 2~2015. 7. 15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식	2015. 7. 27~2016. 1.28
		지방행정사무관	전영섭	2016. 2. 29~2017. 3. 13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7. 3.17~2018. 8. 2
		지방행정사무관	한완희	2018. 8. 3~2019. 7. 4
		지방행정사무관	홍성호	2019. 7. 17~현재
	의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유희종	2003. 10. 1~2004. 4. 4
		지방행정사무관	변용현	2004. 5. 28~2005. 5. 30
		지방행정사무관	김동기	2005. 5. 31~2005. 12. 26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2005. 12. 27~2007. 2. 21
		지방행정사무관	김선근	2007. 2. 22~2008. 1. 15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순	2008. 1. 16~2009. 1. 16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식	2008. 1. 19~2010. 1. 18
		지방행정사무관	김용근	2010. 1. 19~2011. 1. 26
		지방행정사무관	조돈협	2011. 1. 27~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조창범	2012. 1. 30~2012. 8. 30
	의전팀	지방행정사무관	조창범	2012. 8. 31~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권문주	2013. 1. 25~2014. 1. 23
		지방행정사무관	박일만	2014. 1. 24~2015. 1. 29
		지방행정사무관	정태희	2015. 1. 30~2015. 7. 26
		지방행정사무관	박호순	2015. 7. 27~2017. 1. 25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욱	2017. 1. 26~2018. 7. 4
		지방행정사무관	홍성호	2018. 7. 12~2019. 7. 16
		지방행정사무관	김부용	2019. 7. 17~현재
	경리계	지방행정사무관	정홍재	1993. 9. 10~1994. 5. 25
		지방행정사무관	조경행	1994. 5. 26~1996. 3. 1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경리계	지방행정사무관	장두석	1996. 3. 2~1997. 2. 12
		지방행정사무관	천성기	1997. 2. 13~1997. 6. 20
		지방행정사무관	김유근	1997. 6. 21~1998. 9. 13
	회계시설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유근	1998. 9. 14~2000. 3. 9
		지방행정사무관	안경엽	2000. 3. 10~2000. 6. 23
		지방행정사무관	이병홍	2000. 6. 24~2000. 9. 8
		지방행정사무관	홍국선	2000. 9. 9~2001. 7. 5
		지방행정사무관	최진석	2001. 7. 6~2002. 4. 25
		지방행정사무관	유동운	2002. 4. 26~2002. 8. 7
		지방행정사무관	정찬열	2002. 8. 8~2003. 3. 2
		지방행정사무관	박석앙	2003. 3. 3~2004. 3. 5
		지방행정사무관	박충호	2004. 3. 6~2005. 2. 24
		지방행정사무관	한인교	2005. 2. 25~2007. 2. 21
		지방행정사무관	권금섭	2007. 2. 22~2008. 1. 15
		지방행정사무관	유재필	2008. 1. 16~2010. 1. 18
		지방행정사무관	이연재	2010. 1. 19~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이용근	2012. 1. 30~2012. 8. 30
	회계시설팀	지방행정사무관	이용근	2012. 8. 31~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최선규	2013. 1. 25~2015. 1. 21
		지방행정사무관	김수찬	2015. 1. 30~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식	2016. 1. 29~2017. 3. 16
	회계팀	지방행정사무관	서관호	2017. 3. 17~2019. 1. 17
		지방행정사무관	하재병	2019. 1. 18~현재
	청사관리팀	지방시설주사	홍일영	2016. 11 .1~2017.2.20
		지방시설사무관	홍일영	2017. 2. 21~2018. 1. 4
		지방시설사무관	최성주	2018. 1. 29~현재
	공보계	지방행정사무관	조경행	1993. 9. 10~1994. 5. 25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규	1994. 5. 26~1995. 5. 28
		지방행정사무관	이용록	1995. 6. 28~1997. 2. 12
		지방행정사무관	장두석	1997. 2. 13~1997. 6. 20
		지방행정사무관	이현수	1997. 6. 21~1998. 9. 13
	공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현수	1998. 9. 14~1998. 10. 7
		지방행정사무관	이강욱	1998. 10. 8~2001. 10. 3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공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유천희	2001. 10. 4~2002. 8. 7
		지방행정사무관	유동운	2002. 8. 8~2003. 3. 3
	자료계	지방행정사무관	이한구	1991. 6. 24~1992. 7. 20
		지방행정사무관	정흥재	1992. 8. 6~1993. 9. 9
		지방행정사무관	임학열	1993. 9. 10~1996. 4. 2
		지방행정사무관	류흥수	1996. 4. 3~1997. 2. 12
		지방행정사무관	문금용	1997. 2. 13~1998. 9. 13
	자료정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문금용	1998. 9. 14~1998. 10. 7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일	1998. 10. 8~1998. 10. 30
		지방행정사무관	안경엽	1999. 2. 19~2000. 3. 9
		지방행정사무관	송유면	2000. 3. 10~2001. 7. 5
		지방행정사무관	홍국선	2001. 7. 6~2003. 3. 2
		지방행정사무관	박덕순	2003. 3. 3~2003. 3. 5
	공보자료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덕순	2003. 3. 6~2004. 3. 5
		지방행정사무관	박석앙	2004. 3. 6~2005. 2. 24
		지방행정사무관	최문환	2005. 2. 25~2005. 4. 10
	비서실장	지방별정5급	이종명	1992. 2. 26~1993. 7. 4
		지방행정사무관	심재인	1993. 7. 20~1995. 5. 28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규	1995. 5. 29~1997. 2. 12
		지방행정사무관	우인환	1997. 2. 13~1998. 10. 7
		지방행정사무관	송유면	1998. 10. 8~2000. 3. 9
		지방행정사무관	김한섭	2000. 3. 10~2000. 7. 28
		지방행정사무관	정찬열	2000. 7. 29~2002. 8. 7
		지방행정사무관	류흥수	2002. 8. 8~2004. 3. 5
		지방행정사무관	강희진	2004. 7. 23~2005. 5. 30
		지방행정사무관	변용현	2005. 5. 31~2006. 9. 27
		지방행정사무관	정연규	2006. 10. 13~2007. 1. 29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2007. 2. 22~2008. 7. 9
		지방행정사무관	이길재	2008. 7. 10~2009. 1. 16
		지방행정사무관	남상중	2009. 1. 19~2010. 7. 18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우	2010. 7. 19~2012. 7. 22
		지방행정사무관	장종재	2012. 7. 23~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이준형	2013. 1. 25~2013. 7. 17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비서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길관국	2013. 7. 18~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김도형	2014. 10. 2~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조창범	2016. 1. 29~2017. 7. 9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훈	2017. 7. 21~2018. 7. 3
		지방행정사무관	박호순	2018. 7.10 ~ 현재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지방서기관	조종화	2007. 2. 22~2008. 1. 3
		지방서기관	이강석	2008. 1. 4~2009. 7. 6
		지방서기관	김인구	2009. 7. 7~2011. 1. 16
		지방서기관	정은섭	2011. 1. 17~2012. 1. 19
		지방서기관	김명기	2012. 1. 19~2013. 1. 17
		지방서기관	한양희	2013. 1. 18~2014. 10. 1
		지방서기관	한인교	2014. 10. 2~2015. 1. 21
		지방서기관	김동기	2015. 1. 22~2016. 1. 16
		지방서기관	김종구	2016. 7. 27~2017. 1. 16
		지방행정사무관	박덕진	2017. 1. 17~2017. 2. 20
		지방서기관	박덕진	2017. 2. 21~2019. 1. 7
		지방서기관	김영태	2019. 1. 8~2019. 3. 31
	공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일만	2007. 2. 22~2008. 1. 15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준	2008. 1. 16~2011. 1. 26
		지방행정사무관	고대영	2011. 1. 27~2012. 8. 30
	공보팀	지방행정사무관	고대영	2012. 8. 31~2014. 5. 6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수	2014. 5. 7~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문남훈	2014. 10. 2~2015. 7. 3
		지방행정사무관	김용	2015. 7. 27~2017. 1. 25
		지방행정사무관	한완희	2017. 1. 26~2018. 8. 2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8. 8. 3~2019. 1.17
		지방행정사무관	도연수	2019. 1. 18 ~ 2019. 3. 31
	언론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창수	2007. 2. 22~2008. 1. 15
		지방행정사무관	박일만	2008. 1. 16~2010. 1. 19
		지방행정사무관	유연식	2010. 1. 19~2011. 1. 26
		지방행정사무관	김용근	2011. 1. 27~2011. 7. 20
		지방행정사무관	조추동	2011. 7. 21~2012. 8. 30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언론팀	지방행정사무관	조추동	2012. 8. 31~2012. 9. 23
		지방행정사무관	김정문	2012. 10. 2~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조창범	2013. 1. 25~2014. 1. 23
		지방행정사무관	김도형	2014. 1. 24~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홍은기	2014. 10. 2~2015. 1. 29
		지방행정사무관	김광덕	2015. 1. 30~2017. 3. 16
		지방행정사무관	하명열	2017. 3. 17~2018. 1. 28
		지방행정사무관	전경근	2018. 1. 29~2019. 1.17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9. 1. 18~2019. 3. 31
	미디어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이창현	2012. 8. 31~2014. 2. 7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고홍숙	2014. 3. 18~2019. 3.17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강희택	2019. 3. 26~2019. 3. 31
언론홍보담당관실	언론홍보담당관	지방서기관	김영태	2019. 4. 1 ~ 현재
	언론팀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9. 4. 1~2020. 1. 8
		지방행정사무관	도연수	2020. 1. 21 ~ 현재
	방송팀	지방행정사무관	서봉석	2020. 3. 16 ~ 현재
	홍보팀	지방행정사무관	도연수	2019. 4. 1~2020. 1. 20.
		지방행정사무관	이민재	2020. 1. 21. ~ 현재
	미디어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강희택	2019. 4. 1. ~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한순석	1991. 6. 24~1993. 3. 29
		지방서기관	이우형	1993. 4. 10~1994. 1. 27
		지방서기관	허 남	1994. 1. 28~1994. 5. 7
		지방서기관	전태경	1994. 5. 19~1995. 4. 11
		지방서기관	이성렬	1995. 8. 10~1997. 11. 10
		지방서기관	최송웅	1997. 11. 11~2000. 4. 20
		지방서기관	이병걸	2000. 4. 21~2001. 11. 20
		지방서기관	이병만	2001. 11. 21~2003. 2. 21
		지방서기관	박종선	2003. 2. 22~2004. 2. 9
		지방서기관	이종인	2004. 2. 10~2005. 2. 18
		지방서기관	김호겸	2005. 2. 19~2005. 4. 10
	의사계	지방행정사무관	윤희경	1991. 6. 24~1992. 5. 8
		지방행정사무관	유준세	1992. 5. 9~1993. 11. 6
		지방행정사무관	이한규	1993. 12. 7~1995. 1. 12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의사계	지방행정사무관	양진철	1995. 1. 18~1996. 4. 2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열	1996. 4. 3~1997. 6. 30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일	1997. 6. 21~1998. 10. 7
		지방행정사무관	이진수	1998. 10. 8~1999. 1. 4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원	1999. 5. 4~2003. 3. 5
	의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원	2003. 3. 6~2005. 2. 24
		지방행정사무관	김한욱	2005. 2. 25~2005. 4. 10
	의안계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오	1991. 6. 24~1992. 11. 2
		지방행정사무관	홍광식	1992. 11. 3~1995. 1. 12
		지방행정사무관	이연복	1995. 1. 13~1996. 3. 1
		지방행정사무관	이해성	1996. 3. 2~1998. 4. 7
		지방행정사무관	강승호	1998. 4. 11~1998. 9. 13
	법제의안계	지방행정사무관	강승호	1998. 9. 14~1998. 10. 9
		지방행정사무관	박충호	1998. 10. 10~1999. 10. 28
		지방행정사무관	김한섭	1999. 10. 29~2000. 3. 8
		지방행정사무관	김필경	2000. 3. 9~2002. 8. 8
		지방행정사무관	김명기	2002. 9. 3~2003. 3. 5
	법제의안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명기	2003. 3. 6~2004. 3. 6
		지방행정사무관	이갑봉	2004. 3. 7~2005. 2. 24
		지방행정사무관	김동기	2005. 2. 25~2005. 4. 10
	기록계	지방행정사무관	임동빈	1993. 9. 10~1998. 9. 13
	기록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임동빈	1998. 9. 14~2005. 4. 10
의정담당관실	의정담당관	지방서기관	김호겸	2005. 4. 11~2007. 2. 21
		지방서기관	이용희	2007. 2. 22~2009. 1. 2
		지방서기관	천성기	2009. 1. 5~2010. 1. 7
		지방서기관	이홍균	2010. 1. 8~2011. 1. 16
		지방서기관	김춘식	2011. 1. 17~2012. 1. 1
		지방서기관	이종호	2012. 1. 2~2016. 1 3
		지방서기관	고재학	2016. 1. 19~2017. 1. 1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환	2017. 1. 17~2017. 2. 20
		지방서기관	이정환	2017. 2. 21~2018. 1. 18
		지방서기관	차광회	2018. 1.19 ~ 현재
	의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한욱	2005. 4. 12~2006. 9. 27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의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규	2006. 9. 28~2008. 1. 15
		지방행정사무관	이창수	2008. 1. 16~2008. 10. 16
		지방행정사무관	손종천	2008. 10. 17~2009. 7. 6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호	2009. 7. 13~2010. 7. 18
		지방행정사무관	남상중	2010. 7. 19~2011. 4. 27
		지방행정사무관	조성두	2011. 4. 28~2012. 8. 30
	의사팀	지방행정사무관	조성두	2012. 8. 31~2015. 6.30
		지방행정사무관	강지숙	2015. 7. 27~2018. 1. 7
		지방행정사무관	강석봉	2018. 1. 29 ~ 현재
	의안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동기	2005. 4. 11~2005. 5. 30
		지방행정사무관	조성두	2005. 5. 31~2006. 9. 27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승	2006. 9. 28~2008. 7. 10
		지방행정사무관	이희동	2008. 7. 11~2011. 1. 26
		지방행정사무관	조성두	2011. 1. 27~2011. 4. 27
		지방행정사무관	이용근	2011. 4. 28~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이문영	2012. 1. 30~2012. 7. 16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우	2012. 7. 23~2012. 8. 30
	의안팀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우	2012. 8. 31~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길관국	2014. 10. 2~2015. 7. 26
		지방행정사무관	한영열	2015. 7. 27~2017. 1. 16
		지방행정사무관	강석봉	2017. 1. 26~2018. 1.28
		지방행정사무관	설종진	2018. 1. 29~2019. 7.16
		지방행정사무관	이복규	2019. 7. 17 ~현재
	의정홍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최문환	2005. 4. 11~2006. 2. 9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규	2006. 2. 10~2006. 9. 27
		지방행정사무관	최창호	2006. 9. 28~2007. 2. 21
	기록담당	지방별정5급	임동빈	2005. 4. 11~2006. 12. 31
		지방별정5급	장동익	2007. 2. 1~2012. 8. 30
	기록팀	지방별정5급	장동익	2012. 8. 31~2014. 7. 17
		지방행정사무관	한영열	2014. 7. 18~2015. 7. 26
		지방행정사무관	정태희	2015. 7. 27~2017. 7. 20
		지방속기사무관	임숙영	2017. 7.21 ~ 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의정지원담당관실	의정지원담당관	지방서기관	박찬구	2017. 9.29 ~ 현재
	의정정책팀	지방행정사무관	배영철	2017. 9.29 ~ 현재
	분석지원팀	지방행정사무관	도연수	2017. 9. 30 ~ 현재
	현장소통팀	지방행정사무관	강일희	2017. 9. 29 ~ 2018. 8. 2
		지방행정사무관	진덕훈	2018. 8. 3 ~ 2019. 9.30
도민권익담당관실	도민권익담당관	지방서기관	박찬구	2018. 10. 1 ~ 2019. 2. 12
		지방행정사무관	장균택	2019. 1. 8 ~ 2019. 2. 12
		지방서기관	장균택	2019. 2. 13 ~ 현재
	권익행정팀	지방행정사무관	김병연	2018. 10. 1 ~ 현재
	민원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도연수	2018. 10. 1 ~ 2019. 1.17
		지방행정사무관	윤성덕	2019. 1. 18 ~ 현재
	역량개발지원팀	지방행정사무관	배영철	2018. 10. 1 ~ 2019. 1. 13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욱	2019. 1. 18 ~ 현재
	현장소통팀	지방행정사무관	진덕훈	2018. 10. 1 ~ 현재
협치지원담당관실	협치지원담당관	지방서기관(일반임기제)	박용진	2018. 12. 13 ~ 현재
	협치기획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조성수	2018. 11. 21 ~ 현재
	협치분석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정재삼	2018. 11. 21 ~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조규윤	2005. 5. 31~2007. 12. 24
		지방서기관	오택영	2008. 1. 4 ~2009. 1. 2
		지방서기관	한태석	2009. 1. 5~ 2009. 7. 5
		지방서기관	송영국	2009. 7. 6~2011. 1. 16
		지방서기관	박병선	2011. 1. 17~2012. 1. 18
		지방서기관	정은섭	2012. 1. 19~2013. 1. 17
		지방서기관	김한욱	2013. 1. 18~2014. 1. 12
		지방서기관	최영두	2014. 1. 13~2014. 10. 1
		지방서기관	이철상	2014. 10. 2~2015. 7. 15
		지방행정사무관	차광회	2015. 7. 16~2015. 9. 30
		지방서기관	차광회	2015. 10. 1~2016. 1. 18
		지방서기관	유덕규	2016. 1. 19~2016. 7. 17
		지방서기관	장종재	2016. 7. 27~2017. 1. 11
		지방행정사무관	문영근	2017. 1. 17~2017. 2. 20
		지방서기관	문영근	2017. 2. 21~2018. 1. 18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	박형규	2018. 3. 2 ~ 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입법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신재택	2005. 5. 31~2005. 8. 30
		지방행정사무관	정국현	2005. 8. 31~2008. 1. 15
		지방행정사무관	차광회	2008. 1. 16~2009. 7. 12
	입법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문영	2009. 7. 13~2010. 1. 18
		지방행정사무관	조돈협	2010. 1. 19~2011. 1. 26
		지방행정사무관	홍동기	2011. 1. 27~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원유성	2012. 1. 30~2012. 8. 30
	입법정책팀	지방행정사무관	원유성	2012. 8. 31~2013. 7. 18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규	2013. 7. 19~2014. 1. 12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용	2014. 1. 24 ~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식	2014. 10. 2~2015. 7. 26
		지방행정사무관	김미숙	2015. 7. 27~2018. 1. 28
		지방행정사무관	문남훈	2018. 1. 29~2019. 7. 16
		지방행정사무관	류우성	2019. 7.17 ~ 현재
	입법운영담당	개방형 5호	박형규	2005. 6. 15~2012 8.30
	입법운영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박형규	2012. 8. 31~2018 3 1
		지방행정사무관	전부열	2018. 3.30 ~ 현재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조선행	2012. 3. 5~2013. 1. 15
		지방서기관	김원섭	2013. 1. 18~2014. 1. 13
		지방서기관	손수익	2014. 1. 13~2014. 10. 1
		지방서기관	이계환	2014. 10. 2~2016. 1. 18
		지방행정사무관	김지영	2016. 1. 29~2016. 2. 22
		지방서기관	김지영	2016. 2. 23~2017. 1. 16
		지방행정사무관	정덕채	2017. 1. 17~2017. 2. 20
		지방서기관	정덕채	2017. 2. 21~2019. 1. 7
		지방행정사무관	이계연	2019. 1. 8~2019. 2. 12
		지방서기관	이계연	2019. 2. 13~현재
	정책분석담당	계약직 가급	최승열	2012. 5. 14~2012. 8. 30
	경제예산담당	계약직 가급	남승필	2012. 8. 13~2012. 8. 30
	경제예산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남승필	2012. 8. 31~2014. 1. 23
	정책분석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열	2012. 8. 31~2014. 1. 23

소 속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예산분석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남승필	2014. 1. 24~2015.10.30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6. 1.29 ~ 2016. 5.13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열	2016. 5.14 ~ 현재
	예산정책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열	2014. 1. 24~2016. 5. 13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6. 5. 14 ~ 2017. 3.16
		지방행정사무관	유용철	2017. 3.17 ~ 현재

〈전문위원실〉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진수	1992. 2. 10~1993. 4. 9
	지방별정4급	이용우	1993. 4. 10~2001. 1. 9
	지방서기관	유재규	2001. 1. 10~2001. 8. 31
	지방서기관	이병만	2001. 9. 1~2001. 11. 20
	지방서기관	한기택	2001. 11. 22~2003. 2. 20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03. 2. 21~2005. 9. 1
	지방서기관	김필경	2005. 9. 2~2006. 1. 30
	지방서기관	임봉재	2006. 2. 9~2008. 3. 13
	지방서기관	이문재	2008. 3. 14~2009. 1. 2
	지방서기관	윤석환	2009. 1. 5~2011. 1. 16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유동운	2011. 1. 17~2012. 1. 18
	지방서기관	이희원	2012. 1. 19~2014. 1. 12
	지방서기관	변용현	2014. 1. 13~2014. 10. 1
	지방서기관	이상범	2014. 10. 2~2017. 1. 1
	지방서기관	장문호	2017. 1.17 ~ 2017. 12. 31
	지방서기관	전진석	2018. 1.18 ~ 2019. 1. 7
	지방서기관	박덕진	2019. 1. 8 ~ 현재
의회운영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수열	2006. 9. 4~2008. 7. 9
	지방행정사무관	원유성	2008. 7. 10~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홍동기	2012. 1. 30~2012. 7. 29
	지방행정사무관	윤명수	2012. 7. 30~2013. 1. 24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의회운영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정문	2013. 1. 25~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이태헌	2016. 1.29 ~ 2017. 12. 5
	지방행정사무관	한재홍	2018. 1.29 ~ 2020. 1 20
	지방행정사무관	황영주	2020. 1. 21 ~ 현재
재무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권영철	1992. 3. 27~1992. 7. 1
	지방서기관	박윤양	1992. 7. 15~1993. 4. 9
기획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유재봉	1993. 4. 17~1998. 9. 30
	지방별정4급	오태철	1998. 10. 2~2006. 9. 3
	지방서기관	박춘배	2006. 9. 4~2008. 1. 3
기획수석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오태철	2008. 1. 4~2012. 7. 29
	지방행정서기관	김용덕	2012. 7. 30~2013. 4. 30
기획재정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서기관	김용덕	2013. 5. 1~2013. 12. 31
	지방별정4급	오태철	2014. 1. 13~현재
기획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정승렬	2006. 9. 4~2008. 1. 3
	지방행정사무관	이덕한	2008. 1. 16~2009. 7. 12
	지방행정사무관	심창섭	2009. 7. 13~2010. 1. 19
	지방행정사무관	윤명수	2010. 1. 19~2012. 7. 30
	지방행정사무관	조 남	2012. 7. 30~2013. 4. 30
기획재정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조 남	2013. 5. 1~2014. 1. 23
	지방행정사무관	최서용	2014. 1. 24~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한상구	2016. 1.29~2018. 1.28
	지방행정사무관	윤성덕	2018. 1.29 ~ 2019. 1.17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우	2020. 1. 18 ~ 현재
내무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우형	1991. 8. 26~1993. 4. 9
	지방서기관	박윤양	1993. 4. 10~1995. 1. 6
	지방서기관	박원일	1995. 1. 7~1997. 4. 16
	지방서기관	석금식	1997. 4. 29~1998. 9. 30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자치행정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윤덕섭	1999. 10. 2~1999. 7. 31
	지방서기관	박상국	1999. 8. 22~2000. 2. 27
	지방서기관	한기택	2000. 2. 28~2001. 11. 21
	지방서기관	안차헌	2001. 11. 22~2004. 2. 24
	지방서기관	김호겸	2004. 2. 25~2005. 2. 18
	지방서기관	임명진	2005. 2. 19~2007. 2. 21
	지방서기관	안경엽	2007. 2. 22~2008. 1. 3
	지방서기관	백호현	2008. 1. 4~2008. 9. 30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류흥수	2008. 10. 1~2012. 7. 15
	지방서기관	우미리	2012. 7. 16~2012. 7. 29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12. 7. 30~2014. 7. 3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14. 7. 4~2019. 6. 30
	지방서기관	김진기	2019. 7. 5 ~ 현재
자치행정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길재	2006. 9. 4~2008. 7. 9
	지방행정사무관	김수열	2008. 7. 10~2008. 9. 30
행정자치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수열	2008. 10. 1~2009. 1. 16
	지방행정사무관	이인용	2009. 1. 19~2010. 6. 1
	지방행정사무관	김승구	2010. 6. 2~2012. 7. 22
	지방행정사무관	김창진	2012. 7. 23~2014. 7. 3
안전행정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창진	2014. 7. 4~2015. 7. 26
	지방행정사무관	김병만	2015. 7. 27~2017. 1. 25
	지방행정사무관	손경식	2017. 1.26 ~ 2018. 1.25
	지방행정사무관	이태헌	2018. 1.29 ~ 현재
상공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강문원	1992. 1. 27~1994. 5. 11
통상경제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성렬	1994. 5. 24~1995. 8. 9
	지방서기관	안병상	1995. 8. 10~1998. 9. 30
경제투자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오영학	1998. 10. 1~2001. 1. 19
	지방기술서기관	이정열	2001. 1. 20~2003. 2. 14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경제투자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김기태	2003. 2. 21~2004. 2. 25
	지방기술서기관	이병기	2004. 2. 25~2005. 2. 19
	지방기술서기관	이종군	2005. 2. 19~2008. 1. 3
	지방기술서기관	구자중	2008. 1. 4~2011. 1. 14
경제투자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이문선	2011. 1. 17~2012. 11. 4
경제과학기술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이문선	2012. 11. 5~2014. 10. 1
	지방기술서기관	한정길	2014. 10. 2~2015. 1. 21
	지방행정사무관	차종회	2015. 1. 22~2015. 2. 10
	지방서기관	차종회	2015. 2. 11~2018. 1. 18
	지방서기관	김정문	2018. 1.19 ~ 2019. 8. 5
경제노동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정문	2019. 8. 6 ~ 현재
경제투자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범	2006. 9. 4~2009. 1. 16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상	2009. 1. 19~2011. 7. 20
	지방행정사무관	한영렬	2011. 7. 21~2012. 7. 29
	지방행정사무관	홍동기	2012. 7. 30~2012. 11. 4
경제과학기술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홍동기	2012. 11. 5~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최영환	2014. 10. 2~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이정구	2016. 1. 29~2017. 1. 25
	지방행정사무관	김용	2017. 1. 26~2017. 7. 20
	지방행정사무관	장향정	2017. 7.21 ~ 2019. 7. 16
	지방행정사무관	정준선	2019. 7. 17 ~ 2019. 8. 5
경제노동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정준선	2019. 8. 6 ~ 현재
문화교육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이용우	1991. 8. 26~1993. 4. 9
	지방별정4급	신승학	1993. 4. 27~1995. 8. 25
문교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최송웅	1995. 8. 26~1997. 11. 9
	지방서기관	김현기	1997. 11. 10~2000. 6. 30
	지방서기관	문홍길	2000. 7. 29~2001. 8. 31
	지방서기관	마창환	2001. 9. 1~2002. 8. 23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교육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민은기	2002. 8. 24~2005. 2. 18
	지방서기관	김춘식	2005. 2. 19~2007. 7. 24
	지방서기관	이영하	2007. 7. 25~2009. 7. 5
	지방서기관	이흔재	2009. 7. 6~2010. 7. 1
교육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수연	2010. 7. 2~2012. 1. 1
	지방서기관	서남철	2012. 1. 2~2014. 7. 31
	지방서기관	한근석	2014. 8. 1~2015. 6. 30
	지방서기관	송철근	2015. 7. 1~2016. 11. 2
	지방서기관	유대길	2016. 11. 3~2018. 2. 28
	지방서기관	박춘금	2018. 3. 1~현재
교육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배수옥	2010. 10. 16~현재
문화공보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신승학	1995. 8. 26~2000. 7. 28
문화여성공보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홍계선	2000. 8. 24~2001. 1. 9
문화여성공보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정병헌	2001. 1. 10~2002. 8. 23
	지방서기관	김창규	2002. 8. 24~2004. 2. 24
문화공보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장두석	2004. 2. 25~2005. 2. 11
	지방서기관	안수현	2005. 2. 19~2006. 1. 30
	지방서기관	송유면	2005. 2. 9~2007. 2. 5
	지방서기관	김상배	2007. 2. 22~2008. 1. 3
	지방서기관	이부영	2008. 1. 4~2009. 1. 2
	지방서기관	이세정	2009. 1. 5~2010. 6. 30
문화관광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세정	2010. 7. 1~2011. 1. 16
	지방서기관	고광갑	2011. 1. 17~2011. 4. 6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고광갑	2011. 4. 7~2012. 1. 18
	지방서기관	송대성	2012. 1. 19~2012. 7. 29
	지방서기관	조형근	2012. 7. 30~2015. 1. 21
	지방서기관	고재학	2015. 1. 22~2016. 1. 18
	지방서기관	이상진	2016. 1. 19~2017. 6. 29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최영환	2017. 7.10 ~ 2019. 1. 7
	지방서기관	전영섭	2019. 1. 8 ~ 현재
문화공보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임병주	2006. 9. 4~2009. 1. 16
	지방행정사무관	전영섭	2009. 1. 19~2010. 6. 30
문화관광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전영섭	2010. 7. 1~2011. 1. 26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1. 1. 27~2011. 4. 6
문화체육관광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남길우	2011. 4. 7~2012. 1. 29
	지방행정사무관	최 관	2012. 1. 30~2013. 1. 17
	지방행정사무관	전부열	2013. 1. 18~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엄지영	2016. 1. 29~2017. 7. 20
	지방행정사무관	최호균	2017. 7. 21~현재
농림수산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민은기	1991. 8. 26~2002. 8. 23
	지방서기관	윤종태	2002. 8. 24~2005. 2. 18
	지방별정4급	민은기	2005. 2. 19~2010. 7. 8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10. 7. 15~2011. 1. 16
농림수산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류호열	2011. 1. 17~2013. 7. 12
	지방서기관	김성재	2013. 7. 8~2014. 1. 2.
	지방서기관	김한욱	2014. 1. 13~2014. 7. 3
농정해양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한욱	2014. 7. 4~2015. 1. 15
	지방농업사무관	정지영	2015. 1. 22~2015. 2. 10
	지방기술서기관	정지영	2015. 2. 11~2017. 1. 1
	지방기술서기관	박종민	2017. 1. 17~2018. 7. 24
	지방기술서기관	김호원	2018. 7.25 ~ 현재
농림수산입법전문위원	지방농업사무관	김충범	2006. 9. 4~2008. 7. 9
	지방농업사무관	김호원	2008. 7. 10~2011. 7. 20
	지방농업사무관	김영수	2011. 7. 21~2014. 7. 3
농정해양입법전문위원	지방농업사무관	김영수	2014. 7. 4~2015. 1. 29
	지방행정사무관	박일만	2015. 1. 30~2018. 6. 30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농정해양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훈	2018. 7. 4~2018. 7. 24
	지방행정사무관	조인원	2018. 8. 3 ~ 현재
보사환경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장명수	1991. 8. 26~1993. 1. 29
	지방서기관	임유성	1993. 1. 30~1994. 11. 28
	지방서기관	박제헌	1994. 11. 29~1995. 5. 9
	지방서기관	이재동	1995. 5. 10~1996. 4. 2
	지방서기관	백우현	1996. 4. 3~1997. 7. 9
	지방서기관	박치순	1997. 7. 10~1998. 9. 30
	지방서기관	공재택	1998. 10. 2~2000. 6. 30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00. 7. 29~2003. 2. 20
	지방서기관	이용관	2003. 2. 21~2004. 2. 24
보사환경여성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홍국선	2004. 2. 25~2006. 6. 30
보사여성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홍국선	2006. 7. 1~2006. 11. 30
	지방서기관	이관수	2008. 1. 4~2009. 6. 29
보건복지가족여성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관수	2009. 6. 30~2010. 3. 18
	지방서기관	김용덕	2010. 3. 19~2010. 6. 30
보건복지공보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용덕	2010. 7. 1~2011. 1. 16
	지방서기관	조선행	2011. 1. 17~2012. 3. 4
	지방서기관	조형근	2012. 3. 5~2012. 7. 29
	지방서기관	우미리	2012. 7. 30~2014. 1. 12
	지방서기관	신동호	2014. 1. 13~2014. 7. 3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신동호	2014. 7. 4~2015. 8. 25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상	2015. 7. 16~2015. 8. 25
	지방서기관	김기상	2015. 8. 26~2016. 1. 18
	지방행정사무관	오태석	2016. 1. 29~2016. 2. 22
	지방서기관	오태석	2016. 2. 23~2017. 1. 16
	지방행정사무관	홍동기	2017. 1. 17~2017. 2. 20
	지방서기관	홍동기	2017. 2. 21~2018. 1. 9
	지방서기관	윤명수	2018. 1. 19~현재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보사여성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계환	2006. 9. 4~2009. 1. 16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구	2009. 1. 19~2009. 6. 29
보건복지가족여성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구	2009. 6. 30~2010. 6. 30
보건복지공보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구	2010. 7. 1~2010. 7. 10
	지방행정사무관	이소춘	2010. 7. 11~2011. 7. 20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은	2011. 8. 11~2013. 7. 17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준	2013. 7. 18~2014. 7. 3
보건복지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준	2014. 7. 4~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수	2014. 10. 2~2017. 7. 20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일	2017. 7. 21~현재
가족여성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흔재	2009. 6. 30~2012. 7. 30
여성가족평생교육수석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오태철	2012. 7. 30~2014. 1. 12
	지방서기관	한태석	2014. 1. 13~2015. 2. 22
	지방서기관	최창호	2015. 4. 7~2016. 1. 18
	지방서기관	이준목	2016. 1. 19~2017. 1. 11
	지방행정사무관	남상중	2017. 1. 17~2017. 2. 20
	지방서기관	남상중	2017. 2. 21~2018. 7. 24
여성가족평생교육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박준호	2018. 7. 25~현재
가족여성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구	2009. 6. 30~2011. 1. 26
여성가족평생교육입법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박민식	2011. 1. 27~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김상국	2011. 1. 27~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송병창	2013. 1. 25~2014. 1. 23
	지방행정사무관	최민식	2014. 1. 24~2016. 7. 28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욱	2016. 7. 29~2017. 1. 25
	지방행정사무관	공석성	2017. 1.28~2020. 1. 20
	지방행정사무관	조도현	2020. 1. 21~현재
건설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조철형	1991. 8. 7~1993. 4. 9
	지방서기관	이진수	1993. 4. 10~1993. 8. 13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건설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표찬섭	1993. 9. 1~1994. 1. 27
	지방별정4급	함홍규	1994. 2. 14~1995. 6. 25
건설교통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우병권	1995. 6. 27~1996. 4. 2
	지방서기관	이재동	1996. 4. 3~1997. 4. 28
	지방서기관	박상국	1997. 4. 29~1998. 2. 8
	지방서기관	황영철	1998. 2. 9~1998. 9. 13
건설도시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황영철	1998. 9. 14~1998. 9. 30
	지방시설서기관	최민석	1998. 10. 1~2000. 1. 31
	지방서기관	최문용	2000. 2. 8~2001. 8. 31
	지방서기관	이한규	2001. 9. 1~2002. 5. 16
	지방서기관	이명준	2002. 6. 17~2004. 2. 25
	지방서기관	김일수	2004. 2. 26~2006. 6. 30
건설교통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일수	2006. 7. 1~2007. 7. 6
	지방서기관	이기화	2007. 7. 10 ~2010. 1. 8
	지방서기관	조선행	2010. 1. 9~2011. 1. 16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우관명	2011. 1. 17~2012. 1. 16
	지방서기관	김용덕	2012. 1. 19~2012. 7. 29
	지방서기관	송대성	2012. 7. 30~2013. 7. 5
	지방서기관	홍덕표	2013. 7. 8~2014. 12. 30
	지방서기관	장문호	2015. 1. 22~2016. 1. 18
	지방서기관	신건성	2016. 1. 19~2017. 1. 16
	지방시설사무관	배재헌	2017. 1. 17~2017. 2.20
	지방기술서기관	배재헌	2017. 2.21~2019. 6. 16
	지방기술서기관	이귀웅	2019. 7. 5~현재
건설교통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이성호	2006. 10. 16~현재
도시계획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임두빈	1991. 8. 26~1996. 6. 30
지역계획전문위원	지방시설서기관	이유하	1996. 7. 24~1998. 9. 30
도시환경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최정춘	2008. 1. 4~2009. 1. 2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도시환경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관수	2009. 1. 5~2010. 1. 7
	지방서기관	류흥수	2010. 1. 8~2010. 6.29
	지방서기관	김준태	2010. 6. 30~2013. 1. 17
도시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고광갑	2013. 1. 18~2014. 1. 12
	지방서기관	조민호	2014. 1. 13~2016. 6. 30
	지방기술서기관	복승규	2016. 7. 27~2018. 12. 31
	지방환경사무관	최영남	2019. 1. 8~2019. 2. 12
	지방기술서기관	최영남	2019. 2. 13~2020. 1. 8
	지방별정4급	신성해	2020. 3. 9~현재
도시환경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신성해	2006. 9. 28~2020. 3. 8
특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동한	1992. 1. 28~1995. 4. 19
	지방서기관	우병권	1995. 4. 21~1995. 6. 27
	지방서기관	백우현	1995. 6. 28~1996. 4. 2
	지방서기관	이문재	1996. 4. 3~1997. 4. 28
	지방서기관	황영철	1997. 4. 29~1998. 2. 8
	지방서기관	윤덕섭	1998. 4. 1~1998. 9. 30
	지방서기관	황치문	1998. 10. 1~2000. 8. 13
	지방서기관	이병만	2000. 8. 24~2001. 8. 31
	지방서기관	유재규	2000. 9. 1~2004. 2. 25
	지방서기관	이연복	2004. 2. 25~2005. 2. 11
	지방서기관	윤종태	2005. 2. 19~2005. 4. 7
	지방서기관	김필경	2005. 4. 12~2005. 9. 2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05. 9. 3~2010. 7. 14
	지방서기관	이종호	2010. 9. 3~2011. 1. 16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신승학	2011. 1. 17~2012. 7. 30
	지방서기관	이흔재	2012. 7. 30~2014. 1. 12
	지방서기관	이문영	2014. 1. 13~2015. 1. 21
	지방행정사무관	전하식	2015. 1. 22~2015. 2. 9

소 속	직급	성 명	재임기간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전하식	2015. 2. 11~2016. 1. 18
	지방행정사무관	최동후	2016. 1. 29~2016. 2. 22
	지방서기관	최동후	2016. 2. 23~2017. 7. 9
	지방서기관	이인용	2017. 7.10~2018. 6.30
	지방서기관	유태일	2018. 7.25~현재
특별입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조 남	2012. 7. 23~2012. 7. 30
	지방행정사무관	한영렬	2012. 7. 30~2013. 1. 24
	지방행정사무관	이용근	2013. 1. 25~2014. 10. 1
	지방행정사무관	배호상	2014. 10. 2~2016. 1. 28
	지방행정사무관	김홍배	2016. 1. 29~2016. 10. 31
	지방행정사무관	엄기만	2016. 11. 1~2017. 9. 29
	지방행정사무관	이지현	2017. 9.30~2020. 1. 20
	지방행정사무관	강혜석	2020. 1. 21~현재

4. 경기도의회 의사당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부　지 : 28,577㎡(8,660평)

□ 건　물 : 연 19,359㎡(5,866평)

○ 철근 콘크리트조, 화강석 외장

○ 지상 4층, 지하 1층

○ '93. 2. 9 준공 / 총사업비 : 123억원

□ 배　치

층 별	배 치 현 황
지하1층	예산정책담당관실, 도민권익담당관실, 예산·입법 정책위 회의실, 중앙감시실, 통신실, 차량관리실, 국선도실, 문서고, 청소원 대기실, 동호회실, 주차장
지상1층	대회의실, 의회도서관, 북카페, 언론홍보담당관실, 제1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의원휴게실, 의정회, 당직실, 안내실
지상2층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처장실, 의사담당관실, 기록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지상3층	본회의장, 도지사·교육감대기실, 총무담당관실, 도민권익담당관실(역량개발팀, 민원관리팀), 협치지원담당관실, 교섭단체사무실, 정책위원실, 제1·2정담회실, 비교섭단체사무실,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브리핑룸, 위원회실(윤리,정보화,간행물편찬), 옥외휴게공간 및 흡연실
지상4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법정책담당관실, 경제노동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특별위원회, 소회의실(탁구장), 유튜브 스튜디오, 방송실, 영상기록실, 휴게실

□ 주차시설 : 221면(지하주차장 143, 의회주변 78)

※ 집행부(도청) 주차면수 : 1,189면(외곽주차장 포함)

□ 본회의장 : 의원석(142), 집행부 간부석(26), 방청석(197), 취재석(30)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 정 백 서

(2018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발 행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발 행 인 :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편 집 인 :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작부서 : 경기도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실
인 쇄 인 : 경인인쇄(031-494-8551)
인 쇄 일 : 2020. 7.
발 행 일 : 2020. 7.

〈비매품〉

경기도의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 8008-7000 팩스 : (031) 8008-7119

'의정백서'는 **e-book**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ggc.go.kr ▶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의정백서